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50호
2025. 3. 13.(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8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5-84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25-868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행정예고]

제2025-90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24

◆ 고 시

제2025-121호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33
제2025-122호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3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102
제2025-123호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173
제2025-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242
제2025-126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	246
제2025-127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51
제2025-128호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5
제2025-129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고시 철회	286
제2025-130호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승인 고시	287
제2025-132호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89
제2025-13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292

제2025-134호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93
제2025-135호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325
제2025-136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8

◆ 공 고

제2025-89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407
제2025-701호	서울공예박물관 자료구입공고	420
제2025-727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31
제2025-728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38
제2025-729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45
제2025-738호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시	449
제2025-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451
제2025-74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452
제2025-74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454
제2025-75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55
제2025-75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87
제2025-757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528
제2025-7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29
제2025-779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532
제2025-78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33
제2025-787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534
제2025-790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에너지정보관 외 1개소)	536
제2025-79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538
제2025-80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546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9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47

◆ 구 고 시

제2025-2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	553
제2025-31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금천구) …	554

◆ 구 공 고

제2025-228호	도시관리계획(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중구) …	556
제2025-244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중구) …	559
제2025-449호	도시관리계획(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마포구) …	563
제2025-49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강서구) …	565
제2025-5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결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강서구) …	567
제2025-30호	도시계획시설(목골지구)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금천구) …	568
제2025-4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근린공원) 완료 공고(서초구) …	575

◆ 사업소고시

제2025-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7
제2025-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7
제2025-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8
제2025-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8
제2025-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9
제2025-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79

◆ 기 타

제2024-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80
제2025-8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81
제2025-8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82
제2025-8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83
제2025-9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84

◆ 정 정

제2025-120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585
제2025-13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	588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8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편 ·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실”을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로 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② (생략) ③ <u>경제실</u>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조정실</u> 밑에 <u>규제혁신기획관</u> 을, <u>경제실</u> ----- ----- ----- ----- ----- -----.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 설></u>	제5조(기획조정실)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u> <u>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 · 제안 또는 제출 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 2133-67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84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혁신기획관(3급)」, 「규제개선담당관(4급)」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
- (본청) 3급 +1명, 4급 +1명, 5급이하 △2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6	16		1	9	
4급	270	165	19	8	71	7
5급 이하 소계	10,20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총계	11,730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일반직 계	10,700					
(생략)							(현행과 같음)						
3급	25	15		1	9		3급	26	16		1	9	
(생략)							(현행과 같음)						
4급	269	164	19	8	71	7	4급	270	165	19	8	71	7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07						5급 이하 소계	10,205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인력운영경비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소계(a)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 25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조직담당관 02-2133-672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변동없음

○ 일반직 : (-)

- 3급 +1, 4급 +1, 6급 △2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개월 기준) : +77,3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77,349	◆ 총 계 : +77,349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58,449 ▷ 3급(+1) : $118,172 \times 1\text{명} = 118,172$ ▷ 4급(+1) : $102,583 \times 1\text{명} = 102,583$ ▷ 6급(△2) : $81,153 \times \Delta 2\text{명} = -162,306$ ※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 [기구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18,900 ▷ 3급(+1) : $14,700 \times 1\text{명} = 14,700$ ▷ 4급(+1) : $4,200 \times 1\text{명} = 4,200$ ※ 기구운영비 : 업무추진비, 직책급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868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총괄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17조)
- 다.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이메일 : goguma@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4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u>규제시책</u> 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규제정책</u> ----- ----- -----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 -----.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신 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제4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5조(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과 위원 중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
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시장-----

-----.

③ -----

말는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
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
-----.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
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
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
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
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
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
· 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

<신 설>

- 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
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신 설>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
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
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
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
조의2의 위촉 해제 사유에 해

<u>제10조</u> (생 략)	<u>당하는 경우</u> 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u>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u>」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 <u>유에 해당하는 경우</u> <u>제18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행정예고]**◆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90호****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제정이유

한강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 활성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 안전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1조)

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전화: 02-3780-0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nomad35@seoul.go.kr
-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 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지역)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명	위치	구역	금지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망원 한강공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7	망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2025. 0. 0. ~ 2028. 0. 0. (3년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연중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경사로 좌/우 끝단 50m, 둔치 끝단으로부터 20m)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③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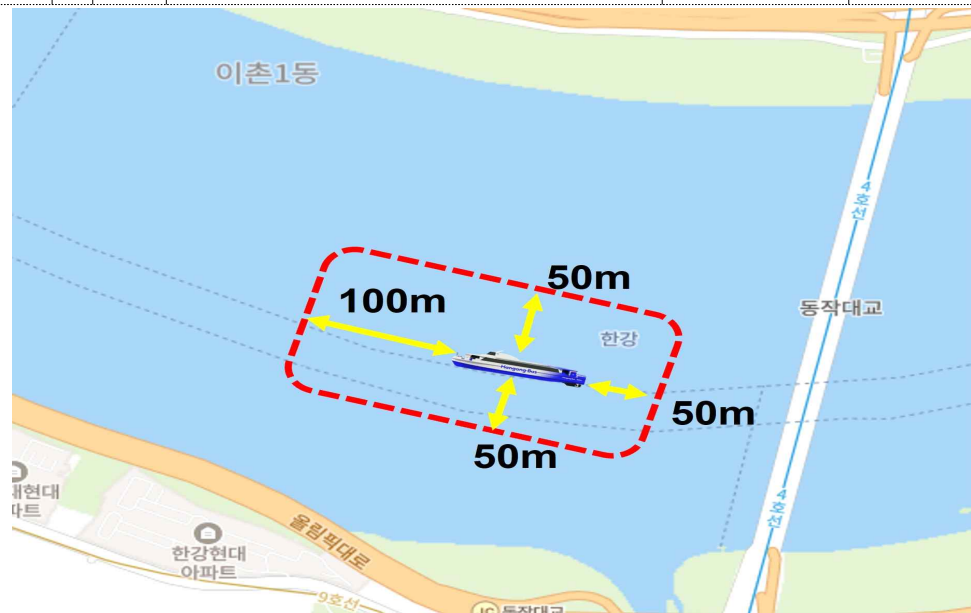
2.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위치	구역	지정기간	대상수상레저기구	사유
운항 중인 한강버스 주변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2025. 0. 0. ~ 2028. 0. 0. (3년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②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위치도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 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연중	운항 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③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라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20	30	50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수상관리과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주영, 수상관리과장 이성희, 주무관 라진형									
4. 근거법령명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30조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수상레저활동자(개인), 유/도선·수상레저사업자, 한강을 이용하는 관계기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수난구조대 등) 및 시민 ※ 한강 내 수상업체 및 관계기관 대상 간담회 완료(' 25. 2.17. ~18.)									
6. 규제존속기한	지정일로부터 3년 (3년 후 재검토 및 연장)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3개소) – 금지기간: ' 23.10. 6. ~ ' 26.10. 5. (3년) – 금지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위치: 반포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참고자료) – 과태료: 금지구역 진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설규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개소), 위험구역 (1구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금지기간: ' 25. 4. ~ (지정일로부터 3년) ✓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 ✓ 위치: 마포구 마포나루길437 망원한강공원 내 경사로 인근 50m x 20m (참고자료) ✓ 과태료: 금지구역 진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 금지기간: ' 25. 4. ~ (지정일로부터 3년) ✓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 ✓ 위치: 한강버스 주변,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참고자료) ✓ 과태료: 금지구역 진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자료>

○ 현재 운영 중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하류(400m x 50m)	마포대교에서 상류측(300m x 50m)	세빛섬(채빛) ~ 반포선착장(160m x 50m)

○ 추가 지정 예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 상황	금지구역 지정(안)

○ 신규 지정 예정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운행 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현 50m 이내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수상레저활동자 증가 및 한강버스 도입에 따라 수상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30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및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망원 한강공원 내 경사로 인근은 평소에도 유선장의 무동력선 및 많은 개인 수상레저활동자들로 붐비는 민원 다발 지역으로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 후 한강버스의 빈번한 입출항 시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사로 주변을 금지구역 지정 필요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한강 버스 주변은, 15노트(약 28km/h) 이상의 속도로 고속운행하는 한강 버스에서 발생하는 너울 등의 영향이 커 소형,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접근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험구역 지정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율 0%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한강에서 영업 중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 한강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상레저활동자
- 한강 수상업체 및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고시(안) 마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규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대체 필요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목적달성을 위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행동수칙 등을 교육 및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강 특성상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금지구역 진입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험구역 진입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개인 수상레저기구 등 진출입으로 매우 혼잡한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데 안전 확보
- 수상시설물(유선장, 도선장 등) 및 한강버스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사항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예방
- 원활한 한강버스 운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 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수상레저기구의 금지·위험구역 진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금지구역: 망원한강공원 내 경사로의 한강 진입부 인근 최소 면적
- 위험구역: 한강버스 항주파 영향 관련 용역결과 및 선박 안전이격 거리에 관한 논문 등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범위 지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제21조에 의거 금지·위험구역 지정 가능
- 법 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별도 명시되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설정
- 추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시, 해제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기존 미래한강본부 조직·인력 및 추가 채용 예정인 한강수상보안관 인력으로 집행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단속을 위한 한강 수상보안관 인력 보강 필요(12명→40명)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수상폐기안전법」 제64조에 의거 금지·위험구역 진입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 처리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1호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목동8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2024.12.16.)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1,097.4	증)7,226.6	4,378,324.0	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4,371,097.4	증)7,226.6	4,378,324.0	·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371,097.4	증) 7,226.6	4,378,324.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3,171,522.3	증) 7,226.6	3,178,748.9	7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905.2	증) 3,913.3	265,818.5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054.1	증) 3,313.3	2,071,367.4	47.3	-
중심 지역	소 계	568,384.8	-	568,384.8	13.0	-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
공업 지역	소 계	73,561.2	-	73,561.2	1.7	-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
녹지 지역	소 계	557,629.1	-	557,629.1	12.7	-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신정동 314-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2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목동 8단지 내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목동 8단지 내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소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00.0	· 목동 13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65.5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6.0	· 목동 13단지 내 녹지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81.0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6	· 목동 13단지 내 도로 확폭으로 녹지 중 일부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89	979,394	21	7,280	195,101	40	25,015	266,923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4	9,566	196,577	2	1,208	15,490	19	8,036	176,980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96	996,079	20	7,216	194,403	40	25,015	277,832	47	25,165	523,844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9,579	1	1,823	61,137	5	14,332	65,619	31	24,138	512,823
중로	24	9,566	207,021	2	1,208	15,490	19	8,036	187,424	3	322	4,107
소로	45	5,787	63,008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3	705	5,0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1 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2	73	3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교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기정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B	21~2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329-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1	15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5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 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확폭 - 30m → 33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대로 3-148	대로 3-148	· 도로 확폭 - B = 25m→25~28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확폭 - 15m → 16.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1.5m
중로 2-274	중로 2-274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5	중로 2-275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확폭 - B = 15m→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소로 1-10	-	· 도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대로 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라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

■ 공원 총괄표(기정)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1	169,712.1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5	48,598.4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0	179,486.5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2	44,937.8
소공원	2	13,435.0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서고시422호 (94.12.27)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3-2	2,985.4	-	2,985.4	서고시422호 (94.12.27)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4-1	6,517.0	-	6,517.0	서고시422호 (94.12.27)	4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2-1	3,963.8	-	3,963.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3-1	3,815.8	-	3,815.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25-1	2,375.1	-	2,375.1	서고시422호 (94.12.27)	7단지
폐지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422호 (94.12.27)	8단지
신설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3-2	1,738.6	-	1,738.6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2-2	3,500.0	-	3,500.0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1-1	3,148.2	-	3,148.2	서고시422호 (94.12.27)	10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㉓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	2,498.5	서고시422호 (94.12.27)	11단지
폐지	㉔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감)3,399.7	-	서고시422호 (94.12.27)	12단지
신설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	증)8,435.0	8,435.0	-	12단지
폐지	㉕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7-1	2,265.5	감)2,265.5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폐지	㉖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8-1	2,149.8	감)2,149.8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신설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	증)5,000.0	5,000.0	-	13단지
기정	근-①	신타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10-7	16,409.3	-	16,40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7,000.0	-	7,000.0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14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제9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3,730.1㎡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㉑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공원(신설) - 증)7,884.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㉔	제14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3,399.7㎡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A	공원	• 공원(신설) - 증)8,435.0㎡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㉕	제15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2,265.5㎡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㉖	제16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2,149.8㎡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B	공원	• 공원(신설) - 증) 5,000.0㎡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부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6,7, 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987.7	-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⑩	목동 927번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⑬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314-2, 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⑮	9,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 12,13,14,15,16,1 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㉑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감) 2,347.9	-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㉒	13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28-2	6,013.1	증) 641.2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636.1	-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4,629.9	-	4,62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㉘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2,812.3	-	2,812.3	서고제2024-401호 (24.08.16)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㉓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㉑	12단지 연변녹지	• 녹지(폐지) - 감) 2,347.9㎡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㉒	13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013.1㎡ → 6,654.3㎡ (증 641.2㎡)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A1	96,186.0	변경없음
	A2	177,564.6	A2	177,564.6	변경없음
	A3	171,688.4	A3	171,688.4	변경없음
	A4	163,149.1	A4	163,149.1	변경없음
	A5	122,825.3	A5	122,825.3	변경없음
	A6	80,923.2	A6	80,923.2	변경없음
	A7	117,450.6	A7	117,450.6	변경없음
	A8	181,713.1	A8	181,713.1	변경없음
	A9	146,916.7	A9	146,916.7	변경없음
	A10	104,961.0	A10	104,961.0	변경없음
	A11	135,726.0	A11	135,726.0	변경없음
	A12	40,339.4	A12	40,339.4	변경없음
	A13	65,872.3	A13	65,872.3	변경없음
	A14	89,260.9	A14	89,260.9	변경없음
	A15	105,520.4	A15	105,520.4	변경없음
	A16	115,397.0	A16	115,397.0	변경없음
	A17	148,024.4	A17	148,024.4	변경없음
	A18	40,343.7	A18	40,343.7	변경없음
	A19	80,011.8	A19	80,011.8	변경없음
	A20	79,831.2	A20	79,831.2	변경없음
	A21	127,339.5	A21	123,669.8	목동12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2	114,140.1	A22	110,639.8	목동13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3	59,420.0	A23	58,344.7	
	A24	3,878.3	A24	3,878.3	변경없음
	A25	76,081.8	A25	76,081.8	변경없음
	A26	94,128.7	A26	94,128.7	변경없음
	A27	135,005.9	A27	135,005.9	변경없음
	A28	17,593.8	A28	17,593.8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B1	12,816.8	변경없음
	B2	28,040.7	
	B3	21,071.8	
	B4	26,305.8	
	B5	29,619.3	
	B6	45,602.7	
	B7	33,246.0	
	B8	24,367.7	
	B9	49,207.0	
	B10	26,840.5	
	B11	22,945.9	
	B12	21,602.5	
	B13	16,835.0	
		23,863.0	
	B14	27,385.5	
	B15	29,559.5	
	B16	33,797.9	
	B17	22,220.7	
	B18	20,561.9	
	B19	18,044.4	
	B20	21,106.3	

2) 획지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변경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변경	A21-①	A21	신정동 326	114,234.8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신설	A21-②	A21	신정동 326	1,000.0	특별계획구역12	유치원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2-①	A22	신정동 327	105,639.8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3-①	A23	신정동 328	50,698.4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일원	69,445.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일원	36,512.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A26	신정동 331	41,680.4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③	A26	신정동 331	2,000.0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사회복지시설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084.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14-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② 획지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설치를 위한 획지 신설
	· A22-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3-① 획지 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허용 및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전층	비고
불허용도	공통 사항	A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침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사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전충	비고
불허 용도	공통 사항	A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침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신정동 326	C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 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사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신정동 326	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21	불허용도	신정동 326	「허용용도 외 불허」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신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신설	

■ 지정 및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지정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유치원 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2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정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14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옹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1.0×α건축물+0.7×α현금)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 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법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법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정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8, 12, 13,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2단지 유치원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 토지+0.7~1.0× α 건축물+0.7× α 현금)
-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토지+(1.0~1.2)× α 건축물) 이내] 적용
-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3) 높이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8, 13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3층 이하	12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치원 용지	-	5층 이하	12단지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I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12단지유치원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 및 형태·색채 등 계획 : 변경없음

3) 대지 안의 공지 계획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 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 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 3단지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 4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 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 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5,141.5	-	225,141.5	목동 7단지
변경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 243.3	88,842.3	목동 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 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 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 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 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 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 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특별계획구역1~7, 9~11, 1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88,599.0㎡			· 88,842.3㎡			증) 243.3㎡
획지면적	· 67,615.9㎡ (76.3%)			· 70,493.4㎡ (79.3%)			-
기반시설면적	· 20,983.1㎡ (23.7%)	근린공원	10,762.0㎡ (12.2%)	· 18,348.9㎡ (20.7%)	어린이공원	7,884.5㎡ (8.9%)	-
		녹지	8,606.5㎡ (9.7%)		연결녹지	8,606.5㎡ (9.7%)	-
		도로	1,614.6㎡ (1.8%)		도로	1,857.9㎡ (2.1%)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근린공원 신설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어린이공원 신설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입체보행교(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 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불허용 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용도 지정용 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최고높이 : 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배치	저층부 건축 지정선 (2층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 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교통처 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구 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목동서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저층배치구간 및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12 - 목동12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6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7,339.5㎡		좌동	-
획지면적				· 114,653.0㎡ (90.0%)		· 115,234.8㎡ (90.5%)	-
						획지1 (공동주택) 114,234.8㎡ 획지2 (유치원) 1,000.0㎡	
기반시설면적				· 12,686.5㎡ (10%)	소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9,016.8㎡ (7.1%) 도로 3,669.7㎡ (2.9%)	· 12,104.7㎡ (9.5%)	-
						소공원 8,435.0㎡ (6.6%) 도로 3,669.7㎡ (2.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8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 주차장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8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주차장 중복결정 삭제)	지침도에 따름
건축 용도 밀도	용도	불허 용도 A	획지1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획지2	-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 도나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지정 용도 a	획지1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충포관대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 공공도 민도	건폐율	획지1	· 50% 이하	· 50% 이하	-
		획지2	-	· 50% 이하	-
	용적률	획지1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획지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높이	획지1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43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획지2	-	· 최고높이 : 5층 이하	-
배치	저층부건축 지정선 (2층 이하)	획지1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2	-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대지 내 공지	전면 공지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공공보행 통로	획지1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 권 설정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교통 처리	차량 출입불허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동선	획지1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 는 구간은 보행우 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 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 동선	획지1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 (권장)	좌동	-
	커뮤 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동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 이드 조성(권장)	좌동	-
기타 사항	경관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주택의 규모	획지1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형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획지1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변(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복합 개발	획지1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복합화 비율은 중심지 위계 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용도지역 상향시의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특별계획구역13 - 목동13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7 일대	좌동	-
특별계획 구역 면적	· 178,919.9㎡	좌동	-
획지면적	· 151,950.5㎡(84.9%) - 획지1 101,252.1㎡(56.6%) - 획지2 50,698.4㎡(28.3%)	· 156,338.2㎡(87.4%) - 획지1 105,639.8㎡(59.0%) - 획지2 50,698.4㎡(28.4%)	-
기반시설 면적	· 26,969.4㎡(15.1%) - 유치원 992.0㎡(0.6%) - 사회복지시설 2,443.0㎡(1.4%) - 소공원 6,944.3㎡(3.9%) - 녹지 6,654.3㎡(3.7%) - 도로 9,935.8㎡(5.6%)	· 22,581.7㎡(12.6%) - 유치원 992.0㎡(0.6%) - 소공원 5,000.0㎡(2.8%) - 녹지 6,654.3㎡(3.7%) - 도로 9,935.4㎡(5.5%)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용도 지정 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156m 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
	부대 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	-
	공공 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복합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복합화비용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5)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에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건축지정선 지침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243.3	88,842.3	목동8단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특별계획구역8	구역 면적 및 선형 변경 - 88,599.0㎡ → 88,842.3㎡ (증) 243.3㎡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842.3	-	88,842.3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1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2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일부 폭원 변경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8	대로 3-148	구역 내 도로 확폭 - B = 25m → 25~28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소로1-10	-	도로 폐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소로 1-10 폐지
-	소로3-A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보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신설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9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14-2,3	12,760.9	감) 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소로3-A와 중복결정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획지	A14-①	양천구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획지1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3)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50% 이하	좌동	-

4) 용적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	210% 이하	좌동	획지1
	허용	230% 이하	좌동	
	상한	250% 이하	정비계획 249.95%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좌동	

5)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층수)	최고높이 : 180m 이하(49층 이하)	좌동	획지1
	- 저층배치구간 (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좌동	

6) 건축물 건축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획지1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획지1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획지1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획지1

7)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원 :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15m의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추후 분양공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내용을 명기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범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이전고시 시 토지등기부등본 '을구'에 명기하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및 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함	좌동	결정도 참고

8)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 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9) 배치구간 설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10) 기타사항

구 분	특별계획구역8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좌동	교통처리 계획도 참고

Ⅲ.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	증) 88,842.3	88,842.3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2.33%
⇒ (2,922,265,530천원 - 1,109,809,836천원) ÷ 1,771,126,365천원 × 100 ≒ 102.33%
-총 수입 추정 : 2,922,265,530천원
-총 지출 추정 : 1,109,809,836천원
-종전자산총액 추정 : 1,771,126,365천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매도호가 및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되, 최근 1년 (2024년01월~12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시세조화 하한가 평균에 중점을 두어 감정평가사의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추정함

구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지분 (㎡)	세대수 (호수)	형별 평균가격 (천원)	추정금액 (천원)	비고
아 파 트	전용54.94㎡	54.94	76.77	41.85	834	1,178,460	982,836,000	-
	전용71.77㎡	71.77	98.70	54.68	278	1,500,331	417,092,000	-
	전용92.90㎡	92.90	112.56	70.77	8	1,614,750	12,918,000	-
	전용105.35㎡	105.35	127.64	80.26	232	1,852,578	429,798,000	-
	소계	92,832.67	124,428.77	71,408.30	1,352	1,362,902	1,842,644,000	-
상 가	상가동(1층)	620.57	692.50	381.21	(17)	1,123,235	19,648,984	국공유지 제외
	상가동(2층)	574.8	846.83	538.65	(15)	670,400	9,502,000	
	유치원동	633.36	670.3	960.21	(2)	6,191,000	12,382,000	-
	소계	1,828.73	2,332.98	1,880.07	(34)	1,221,558	41,532,984	-
종전자산추정계(1)		94,661.40	126,761.75	73,288.37	1,352(34)	1,359,435	1,884,176,984	-
종전자산추정계(2)		현금청산(5%가정)					113,050,619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1)-(2)					1,771,126,365	-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산정방식=권리자분양가추정액 - (종전자산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천원)		추정권리가액(b)
	전용 59.99㎡	1,353,815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2.33%)
	전용 74.99㎡	1,612,499	
	전용 84.99㎡	1,809,433	
	전용 99.99㎡	2,064,919	
	전용 110.99㎡	2,221,193	
			권리자분양가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부담/-:환급)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 사업비(총지출액))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조합원 총재산) = (A - B) ÷ C = 102.33%

○ 총 수입 : A

구분(전용면적)		공급세대	공급면적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천원)	분양수입 (천원)	비고
공동주택소계		1,881	-	-	-	2,904,235,909	
조합원 분양	59.99	178	81.6	54,855	1,353,815	240,979,096	일반분양가의 90% 적용
	74.99	250	102.0	52,268	1,612,499	403,124,671	
	84.99	530	115.6	51,750	1,809,433	958,999,410	
	99.99	200	136.0	50,198	2,064,919	412,983,727	
	110.99	150	150.9	48,645	2,221,193	333,178,988	
일반 분양	59.99	101	81.6	60,950	1,504,239	151,928,144	
	74.99	36	102.0	58,075	1,791,665	66,291,612	
	84.99	81	115.6	57,500	2,010,481	160,838,475	
	99.99	32	136.0	55,775	2,294,354	73,419,329	
	110.99	30	150.9	54,050	2,467,993	74,039,775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59.99	184	81.6	5,333	131,840	24,258,543	
	74.99	14	102.0	5,329	164,690	2,140,970	
	84.99	10	115.6	5,329	186,652	2,053,169	
기부채납 임대주택	59.99	69	81.6	-	-	-	
	84.99	16	115.6	-	-	-	
근린생활시설		-	2,697.6	13,500	-	36,417,257	
부가가치세 수입차감액		-	-	-	-	-18,387,636	

구분(전용면적)	공급세대	공급면적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천원)	분양수입 (천원)	비고
총 수입	-	-	-	-	2,922,265,530	

※ 신축아파트의 면적기준 및 단가는 공급면적 기준이며, 신축 근린생활시설은 계약면적 기준임

※ 임대주택 분양단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에 건축비 가산항목(지하층, 발코니 샷시, 일괄시공)을 합산한 금액임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 B

항목	금액(천원)	비고
공사비	800,372,933	공사비 적용단가 : 8,000천원/3.3㎡
보상비	113,050,619	현금청산(5%)
관리비	6,896,333	-
설계비	9,799,926	-
감리비	19,619,381	-
부대경비	93,989,465	-
예비비	66,081,179	-
총 사업비	1,109,809,836	-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C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아파트·상가·유치원 종전자산가격 - 현금청산추정계

= 1,884,176,984원 - 113,050,619원

= 1,771,126,365원

가) 아파트 추정분담금

구분		기존 전용 54.94㎡형	기존 전용 71.77㎡형	기존 전용 92.90㎡형	기존 전용 105.35㎡형
종전자산추정가격(천원)		1,178,460	1,500,331	1,614,750	1,852,578
추정권리가액(천원) (비례율: 102.33%)		1,205,919	1,535,289	1,652,374	1,895,743
추정분담금(천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전용 59.99㎡ (분양가 추정 1,353,815천원)	147,897	-181,473	-298,559	-541,927

구분		기존 전용 54.94㎡형	기존 전용 71.77㎡형	기존 전용 92.90㎡형	기존 전용 105.35㎡형
	전용 74.99㎡ (분양가 추정 1,612,499천원)	406,580	77,210	-39,875	-283,244
	전용 84.99㎡ (분양가 추정 1,809,433천원)	603,514	274,144	157,059	-86,310
	전용 99.99㎡ (분양가 추정 2,064,919천원)	859,000	529,630	412,545	169,176
	전용 110.99㎡ (분양가 추정 2,221,193천원)	1,015,275	685,905	568,820	325,451

- ※ 종전자산 추정가격은 평형별 평균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나) 상가 추정분담금

구분			1층 (17개호 평균)	2층 (15개호 평균)
종전자산 평균 계약면적(㎡)			40.73	65.1
종전자산 평균 추정가액(천원)			1,155,823	633,467
추정권리가액 (비례율: 102.33%)			1,182,753	648,226
추정분담금	계약면적(㎡)	분양단가 (천원/계약3.3㎡)	추정분담금(천원) (※ 추정분담금 = 종전자산과 동일한 면적 분양신청 시 신축 상가분양가 -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균 계약면적	44,630	-631,911	232,202

- ※ 아파트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설계 상 분양호수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 상가 조합원의 상가 분양 선호도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체 근린 생활시설 분양분을 일반분양가로 산정함
-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 상가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계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종후자산 상가를 분양 신청할 경우를 가정하여 분담금을 추정하였음

- ※ 상가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정책 변경,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 분양신청, 부동산시장 동향 등으로 본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가정 또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정분담금도 변동될 수 있음
- ※ 상가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 ※ 상가 추정분담금에는 재건축분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식 감정평가금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 상가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 상가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방식 및 설계의 구체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큼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8,842.3	100.0	-
획지	소계	70,493.4	79.3	-
	획지	70,493.4	79.3	공동주택
정비 기반시설	소계	18,348.9	20.7	-
	녹지	8,606.5	9.7	연결녹지
	공원	7,884.5	8.9	어린이공원
	도로	1,857.9	2.1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842.3	-	88,842.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91.0	-	16,491.0	1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51.3	-	72,351.3	81.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1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2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5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 간선	일반 도로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 간선	일반 도로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	"	-
폐지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	"	-
신설	소로	3	A	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8	대로 3-148	구역 내 도로 확폭 - B = 25m → 25~28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소로1-10	-	도로 폐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소로 1-10 폐지
-	소로3-A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보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 422호 (94.12.27)	-
신설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9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14-2,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 7,025.0	7,025.0	-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	증) 725.0	725.0	725.0㎡ 이상
	어린이집	-	증) 800.0	800.0	725.0㎡ 이상
	작은도서관	-	증) 400.0	400.0	298.0㎡ 이상
	다함께 돌봄센터	-	증) 550.0	550.0	-
	주민운동시설	-	증) 1,000.0	1,000.0	-
	어린이놀이터	-	증) 1,500.0	1,500.0	-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공공개방)	-	증) 650.0	650.0	-
	커뮤니티(공공개방)	-	증) 350.0	350.0	-
	커뮤니티(미개방)	-	증) 800.0	800.0	-
	소계	-	증) 6,775.0	6,775.0	5,327.5㎡ 이상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증) 250.0	250.0	101.7㎡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500㎡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설치: $(500 + 1,881 \text{세대} \times 2.0 \text{㎡}) \times 1.25 = 5,327.5 \text{㎡}$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88,5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15	-	-	-	15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정상한																																																						
신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88,842.3	획지1	70,493.4	신정동 31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9.95% 이하	300.0% 이하	180m (최고49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 수 : 1,881세대 (분양 1,588세대, 공공 293세대) ※ 초과용적률(법정상한~상한)에 따른 세대 수 : 407세대 (분양 199세대, 공공 208세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th></tr><tr><th colspan="2"></th><th>세대수</th><th>비율(%)</th></tr><tr><td colspan="2">계</td><td>1,881</td><td>100.0</td></tr><tr><td rowspan="4">분양주택</td><td>소 계</td><td>1,588</td><td>84.4</td></tr><tr><td>50㎡ 초과~60㎡ 이하</td><td>279</td><td>14.8</td></tr><tr><td>60㎡ 초과~85㎡ 이하</td><td>897</td><td>47.7</td></tr><tr><td>85㎡ 초과</td><td>412</td><td>21.9</td></tr><tr><td rowspan="4">공공주택</td><td>소 계</td><td>293</td><td>15.6</td></tr><tr><td>50㎡ 초과~60㎡ 이하</td><td>253</td><td>13.5</td></tr><tr><td>60㎡ 초과~85㎡ 이하</td><td>40</td><td>2.1</td></tr><tr><td>85㎡ 초과</td><td>-</td><td>-</td></tr></table>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 → 계획 : 78.1%(1,469세대)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 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table><tr><th colspan="3">상한용적률 : 249.95% 이하</th><th colspan="2">법정상한용적률 : 300.00% 이하</th></tr><tr><th>정비계획 용적률</th><th>계획용적률</th><th>초과용적률 (계획-정비계획)</th><th>50%</th><th>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th></tr><tr><td>249.95%</td><td>299.88%</td><td>49.93%</td><td>24.96%</td><td>17,609㎡ (17,597㎡ 이상)</td></tr></table>										구 분		계 획				세대수	비율(%)	계		1,881	100.0	분양주택	소 계	1,588	84.4	50㎡ 초과~60㎡ 이하	279	14.8	60㎡ 초과~85㎡ 이하	897	47.7	85㎡ 초과	412	21.9	공공주택	소 계	293	15.6	50㎡ 초과~60㎡ 이하	253	13.5	60㎡ 초과~85㎡ 이하	40	2.1	85㎡ 초과	-	-	상한용적률 : 249.95% 이하			법정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계획-정비계획)	5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49.95%	299.88%	49.93%	24.96%	17,609㎡ (17,597㎡ 이상)
	구 분		계 획																																																												
			세대수	비율(%)																																																											
	계		1,881	100.0																																																											
	분양주택	소 계	1,588	84.4																																																											
		50㎡ 초과~60㎡ 이하	279	14.8																																																											
		60㎡ 초과~85㎡ 이하	897	47.7																																																											
		85㎡ 초과	412	21.9																																																											
	공공주택	소 계	293	15.6																																																											
		50㎡ 초과~60㎡ 이하	253	13.5																																																											
60㎡ 초과~85㎡ 이하		40	2.1																																																												
85㎡ 초과		-	-																																																												
상한용적률 : 249.95% 이하			법정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계획-정비계획)	5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249.95%	299.88%	49.93%	24.96%	17,609㎡ (17,597㎡ 이상)																																																											
심의 완화 사항	• 법정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계획용적률 299.88%(법정상한 용적률 300.00%) - 정비계획 용적률(249.95%) = 49.93%의 50%인 24.9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등 지정 -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 등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tr><th>구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고</th></tr><tr><td>건축한계선</td><td>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td><td rowspan="4">도면참고</td></tr><tr><td>건축한계선 (부대복리시설)</td><td>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td></tr><tr><td>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td><td>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td></tr><tr><td>고층부 벽면한계선</td><td>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도면참고	건축한계선 (부대복리시설)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도면참고																																																													
건축한계선 (부대복리시설)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내 폭원 15m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추후 분양공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내용을 명기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범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이전고시 시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명기하고,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및 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함									

■ 용적률 계획

구분	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면적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①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③
	88,842.3㎡	70,493.4㎡	22,334.2㎡	11,142.7㎡	6,289.3㎡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① - ② - ③ = 22,334.2㎡ - 11,142.7㎡ - 6,289.3㎡ = 4,902.2㎡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 [(도로+공원+녹지)] + [임대주택(대지지분+건축물)] + [입체보행로(건축물)] = 18,348.9㎡ + (2,533.9㎡ + 1,310.5㎡) + 140.9㎡ = 22,334.2㎡ ※ 임대주택 대지지분 및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대지지분 = 59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59형 세대수 + 84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84형 세대수 = 27.64㎡ x 69세대 + 39.17㎡ x 16세대 = 2,533.9㎡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임대주택 59형 지상 연면적 x 59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84형 지상 연면적 x 84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지하 연면적 x 기본형건축비) ÷ 공시지가 2배 = (5,756.19㎡ x 2,065,152원/㎡ + 1,891.01㎡ x 1,974,344원/㎡ + 4,164.51㎡ x 917,273원/㎡) ÷ (7,419,409원 x 2) = 1,310.5㎡ ※ 입체보행로(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입체 보행로 설치면적 x 설치 공사비 ÷ 공시지가 2배 = 357.7㎡ x 5,844,545원/㎡¹⁾ ÷ (7,417,409원 x 2) = 140.9㎡ 1)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 (2011년도 정책자료집) :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성수, 가양, 서빙고 보행교) 사업비 평균값 적용(부가세 제외)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0%				

구분	내용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0%) = 210.0% + 20.0%(공공보행통로 10%, 돌봄시설 5%, 열린단지 5%) = 230.0%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계		20% 적용 (최대 20%)
	공공 보행통로	공원, 학교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는 1이하) = 210.0% × (4,570㎡/70,493.4㎡) × 1 = 13.6%	10%
	돌봄시설	대상지 내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를무상으로 제공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주민공동시설 의무 면적) × a (※a는 0.1이하) = 210.0% × (1,275.0㎡ / 5,327.5㎡) × 0.1 = 5.0%	5%
	열린단지	목동서로 변 연도형 상가 및 공공보행통로변 공동이용시설 배치, 그 외 도로변 담장 미설치로 열린 단지 조성	5%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담장 미설치 : 관목 등 식재 불가			
상한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임대주택) + 0.7 × α(건축물)} = 230.0% × {1 + 1.3 × 1 × 0.05078 + 1.0 × 0.01928 + 0.7 × 0.00207} = 249.95% - 정비계획용적률 : 249.95%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30.0% / 230.0% = 1.0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450.8㎡ / (70,493.4㎡ - 2,533.9㎡) = 3,450.8㎡ / 67,959.5㎡ = 0.05078		
	α(임대주택)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10.5㎡ / (70,493.4㎡ - 2,533.9㎡) = 1,310.5㎡ / 67,959.5㎡ = 0.01928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0.9㎡ / (70,493.4㎡ - 2,533.9㎡) = 140.9㎡ / 67,959.5㎡ = 0.00207		
법적상한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249.95% +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하는 용적률 49.93% = 299.88%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으로 건설]		

사.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㉞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교통개선대책 반영 - 주변가로 확장 계획 및 차로운영방안 반영
	-	주변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①,②,③,④,⑤,⑦교차로(6개소)
진출입 동 선	㉞, ①	목동로8길, 목동서로상에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목동서로 사업지구간 1차로 확장(B=3.0m, 4차로→5차로)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상 본사업지 주변가로 진출입불허구간 변경(제안)
	-	진출입구 각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	단지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 20% 이상 설치 - 자전거보관소에 편의시설(공기주입기, 안내표지, 주차공간표시 등) 설치
주 차 계 획	-	- 향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2,112대, 주차수요(2031년) : 2,239대
	-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한 주차유형별 계획 수립 - 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조업주차, 확장형, 경형 등
교통안전 및 기타	-	차로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주차장 진출입구 PIS 설치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40.58%로 최대한 확보 - 폐기물 수거는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재난방지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긴급재난 구조차량 및 소방차 등의 접근 고려 - 자연재해 대비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합리적 설계 반영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서정초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100m 이내 위치

차.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계	유허가	무허가
15	12	3	15	15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347	1,347	724	623	3,368	1,810	1,558	-
공동주택	1,347	1,347	724	623	3,368	1,810	1,558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계		1,347	1,347	-	-	-
60㎡ 이하	소계	1,107	1,107	-	-	-
	30㎡ 이하	-	-	-	-	-
	30㎡ 초과 ~ 50㎡ 이하	-	-	-	-	-
	50㎡ 초과 ~ 60㎡ 이하	831	831	-	-	-
60㎡ 초과 ~ 85㎡ 이하		276	276	-	-	-
85㎡ 초과	소계	240	240	-	-	-
	85㎡ 초과 ~ 135㎡ 이하	240	240	-	-	-
	135㎡ 초과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계		1,881	1,377	211	293	-
85㎡ 이하	소계	1,469	1,027	149	293	-
	60㎡ 이하	532	247	32	253	-
	60㎡ 초과 ~ 85㎡ 이하	937	780	117	40	-
85㎡ 초과		412	350	62	-	-

다.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입 및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화 도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름
-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획지	A14	70,493.4	A14-①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공동주택

거.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300.00%(299.88%)

구분		내용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249.95%(249.95%)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0.88\% - 249.95\% = 40.93\%$				
	증가된 용적률의 50%	$40.93\% \times 0.5 = 20.46\%$ $70,493.4\text{m}^2 \times 0.2496 = 17,597\text{m}^2$				
	의무 연면적	17,597m²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 수	연면적	비고
		59.9m ²	81.6m ²	184	15,011.9m ²	획지 1
		74.9m ²	102.0m ²	13	1,325.8m ²	
		84.9m ²	115.6m ²	11	1,271.5m ²	
		합계		208	17,609.2m ²	> 17,597m ²

2) 기부채납 주택 계획

기부채납 주택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m ²)	
				대지지분	연면적
59m ² 형	59.9m ²	81.6m ²	69	2,533.9	11,811.7m ²
84m ² 형	84.9m ²	115.6m ²	16		(환산부지면적: 1,310.5m ²)

※ 기부채납 주택 면적 산출근거

- 기부채납 주택 전체 연면적 : 11,811.7m² (지상 연면적 : 7,647.2m² / 지하 연면적 : 4,164.5m²)

- 대지지분

= 59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59형 세대수 + 84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x 84형 세대수

= 27.64m² x 69세대 + 39.17m² x 16세대 = 2,533.9m²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임대주택 59형 지상 연면적 x 59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84형 지상 연면적 x 84형 기본형건축비 + 임대주택 지하 연면적 x 기본형건축비) ÷ 공시지가 2배

= (5,756.19m² x 2,065,152원/m² + 1,891.01m² x 1,974,344원/m² + 4,164.51m² x 917,273원/m²) ÷ (7,419,409원 x 2)= 1,310.5m²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더.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2등급지 포함), 개별비오름 평가제외 등급(3등급지 포함)으로 조사됨	• 연결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III, 내부 연결성 I, 외부연결성II	•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 강화 실시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적용 생태면적률 40.58%	•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토사유출량 변화예상 • 생활 오수 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배치시 기상(바람)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 운영시 녹지공간조정으로 소음감소	-
경관	가로녹시율 35%	○	• 대상지 내 녹시율은 32.6%	• 대상지 내 공원 조성	-
	조망권 확보	○	• 경관변화 발생	•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
	Skyline 보전	○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획지 등을 조성	-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 조성	•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내 자전거 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대상지 내 배치예정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며.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인구			주택수	
현황	계획		현황	계획
	가구당 인구	인구	가구수	세대수
3,368	2.5	4,703	1,347	1,881

버.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서.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2024년 제13차(’ 24.12.16.)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 사항	• 구역면적 : 88,842.0㎡ • 순부담면적 : 4,916.3㎡ • 세대수 : 1,881세대(임대주택 293세대) ※ 법적상한임대 208세대, 기부채납임대 85세대	• 수정 반영	반영
	• 입체보행교는 목동9단지외 연결성 고려하여 계획 할 것	• 해당 사항을 지침 및 도로 결정 조서 내 명시하였음	반영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 향후 일반 시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할 것	• 해당 사항을 공공보행통로 지침 내 반영하였음	반영
조건 사항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공원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구간 및 전면공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시행지침 포함) 유지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원의 위치, 저층배치구간, 전면공지 등을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경관녹지는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결녹지로 변경 검토	•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권고 사항	향후 단지별 녹지시설 유형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8단지의 입지 특성상, 양천공원과의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공원의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해당 사항을 지침 및 공원 결정 조서 내 명시하였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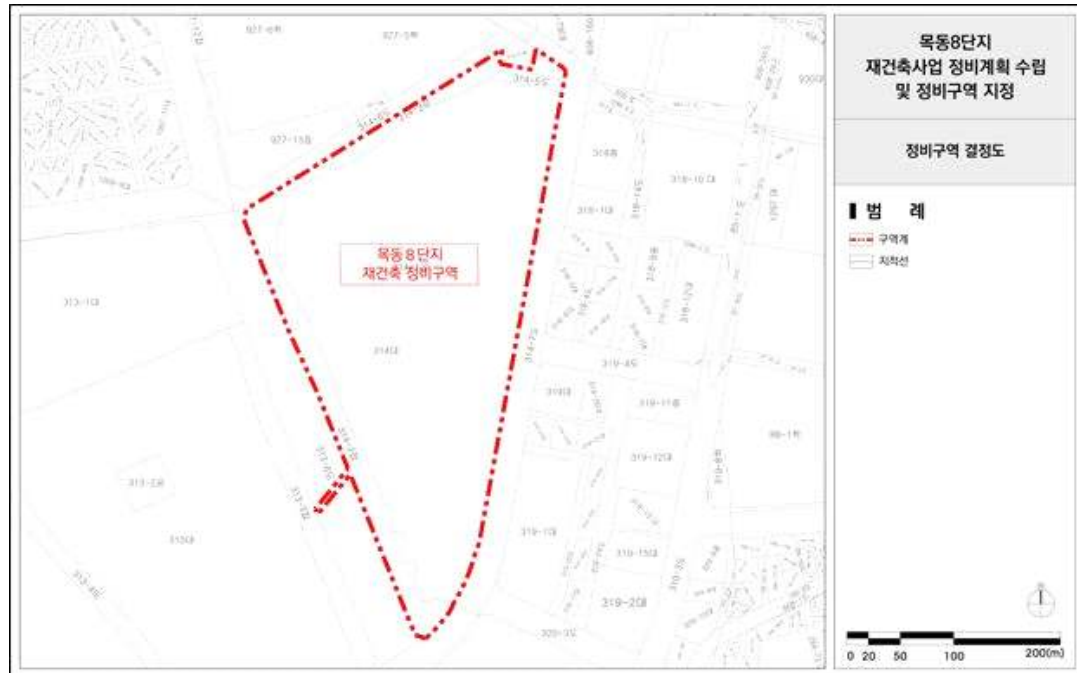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6),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붙임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8 세부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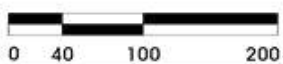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8 세부지침도(변경)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8 세부지침도(변경)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지적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고층부 역면한계선
- 저층 배차구간(7층)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차구간
- 획지(공동주택)
- 공원
- 녹지
- 녹지 내 보행로 조성구간
- 구역내 도로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전출입구

<붙임3>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2호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3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16.) 심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I.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1,097.4	증)7,226.6	4,378,324.0	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4,371,097.4	증)7,226.6	4,378,324.0	·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371,097.4	증) 7,226.6	4,378,324.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3,171,522.3	증) 7,226.6	3,178,748.9	7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905.2	증) 3,913.3	265,818.5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054.1	증) 3,313.3	2,071,367.4	47.3	-
중심 지역	소 계	568,384.8	-	568,384.8	13.0	-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
공업 지역	소 계	73,561.2	-	73,561.2	1.7	-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
녹지 지역	소 계	557,629.1	-	557,629.1	12.7	-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신정동 314-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2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목동 8단지 내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목동 8단지 내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목동 326-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소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00.0	· 목동 13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65.5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6.0	· 목동 13단지 내 녹지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81.0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6	· 목동 13단지 내 도로 확폭으로 녹지 중 일부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89	979,394	21	7,280	195,101	40	25,015	266,923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4	9,566	196,577	2	1,208	15,490	19	8,036	176,980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96	996,079	20	7,216	194,403	40	25,015	277,832	47	25,165	523,844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9,579	1	1,823	61,137	5	14,332	65,619	31	24,138	512,823
중로	24	9,566	207,021	2	1,208	15,490	19	8,036	187,424	3	322	4,107
소로	45	5,787	63,008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3	705	5,0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1 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2	73	3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교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기정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B	21~2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329-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1	15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5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 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 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확폭 - 30m → 33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대로 3-148	대로 3-148	· 도로 확폭 - B = 25m→25~28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확폭 - 15m → 16.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1.5m
중로 2-274	중로 2-274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5	중로 2-275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확폭 - B = 15m→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소로 1-10	-	· 도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대로 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라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

■ 공원 총괄표(기정)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1	169,712.1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5	48,598.4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0	179,486.5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2	44,937.8
소공원	2	13,435.0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서고시422호 (94.12.27)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3-2	2,985.4	-	2,985.4	서고시422호 (94.12.27)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4-1	6,517.0	-	6,517.0	서고시422호 (94.12.27)	4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2-1	3,963.8	-	3,963.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3-1	3,815.8	-	3,815.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25-1	2,375.1	-	2,375.1	서고시422호 (94.12.27)	7단지
폐지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422호 (94.12.27)	8단지
신설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3-2	1,738.6	-	1,738.6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2-2	3,500.0	-	3,500.0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1-1	3,148.2	-	3,148.2	서고시422호 (94.12.27)	10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㉑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	2,498.5	서고시422호 (94.12.27)	11단지
폐지	㉒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감)3,399.7	-	서고시422호 (94.12.27)	12단지
신설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	증)8,435.0	8,435.0	-	12단지
폐지	㉓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7-1	2,265.5	감)2,265.5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폐지	㉔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8-1	2,149.8	감)2,149.8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신설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	증)5,000.0	5,000.0	-	13단지
기정	근-①	신타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10-7	16,409.3	-	16,40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7,000.0	-	7,000.0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14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제9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3,730.1㎡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㉑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공원(신설) - 증)7,884.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㉒	제14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3,399.7㎡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A	공원	·공원(신설) - 증)8,435.0㎡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㉓	제15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2,265.5㎡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제16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 2,149.8㎡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B	공원	·공원(신설) - 증) 5,000.0㎡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6,7, 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987.7	-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C녹지	원충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⑦	목동교 서측C녹지	원충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⑩	목동 927번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⑬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314-2, 3	12,760.9	감) 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⑮	9,10단지 복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12, 13,14,15,16,1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양명초 등 복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㉑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㉑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감)2,347.9	-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㉒	13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28-2	6,013.1	증) 641.2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636.1	-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4,629.9	-	4,62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 -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㉘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2,812.3	-	2,812.3	서고제2024-401호 (24.08.16)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㉒	12단지 연변녹지	· 녹지(폐지) - 감)2,347.9㎡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㉓	13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013.1㎡ → 6,654.3㎡ (증 641.2㎡)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A1	96,186.0	변경없음
	A2	177,564.6	A2	177,564.6	변경없음
	A3	171,688.4	A3	171,688.4	변경없음
	A4	163,149.1	A4	163,149.1	변경없음
	A5	122,825.3	A5	122,825.3	변경없음
	A6	80,923.2	A6	80,923.2	변경없음
	A7	117,450.6	A7	117,450.6	변경없음
	A8	181,713.1	A8	181,713.1	변경없음
	A9	146,916.7	A9	146,916.7	변경없음
	A10	104,961.0	A10	104,961.0	변경없음
	A11	135,726.0	A11	135,726.0	변경없음
	A12	40,339.4	A12	40,339.4	변경없음
	A13	65,872.3	A13	65,872.3	변경없음
	A14	89,260.9	A14	89,260.9	변경없음
	A15	105,520.4	A15	105,520.4	변경없음
	A16	115,397.0	A16	115,397.0	변경없음
	A17	148,024.4	A17	148,024.4	변경없음
	A18	40,343.7	A18	40,343.7	변경없음
	A19	80,011.8	A19	80,011.8	변경없음
	A20	79,831.2	A20	79,831.2	변경없음
	A21	127,339.5	A21	123,669.8	목동12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2	114,140.1	A22	110,639.8	목동13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3	59,420.0	A23	58,344.7	
	A24	3,878.3	A24	3,878.3	변경없음
	A25	76,081.8	A25	76,081.8	변경없음
	A26	94,128.7	A26	94,128.7	변경없음
	A27	135,005.9	A27	135,005.9	변경없음
	A28	17,593.8	A28	17,593.8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B1	12,816.8	변경없음
	B2	28,040.7	
	B3	21,071.8	
	B4	26,305.8	
	B5	29,619.3	
	B6	45,602.7	
	B7	33,246.0	
	B8	24,367.7	
	B9	49,207.0	
	B10	26,840.5	
	B11	22,945.9	
	B12	21,602.5	
	B13	16,835.0	
		23,863.0	
	B14	27,385.5	
	B15	29,559.5	
	B16	33,797.9	
	B17	22,220.7	
	B18	20,561.9	
	B19	18,044.4	
	B20	21,106.3	

2) 획지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변경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변경	A21-①	A21	신정동 326	114,234.8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신설	A21-②	A21	신정동 326	1,000.0	특별계획구역12	유치원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2-①	A22	신정동 327	105,639.8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3-①	A23	신정동 328	50,698.4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일원	69,445.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일원	36,512.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A26	신정동 331	41,680.4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③	A26	신정동 331	2,000.0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사회복지시설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084.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14-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② 획지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설치를 위한 획지 신설
	· A22-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A23-① 획지 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허용 및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전층	비고
불허용도	공동 사항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	목동 900-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전충	비고
불허 용도	공동 사항	A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시설, 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신정동 326	C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 용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신정동 326	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21	불허용도	신정동 326	「허용용도 외 불허」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신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신설	

■ 지정 및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기정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유치원 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2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기정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14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 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공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토지+0.7~1.0× α건축물+0.7× α현금)
-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1.0~1.2)× α건축물) 이내] 적용
-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8, 12, 13,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2단지 유치원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 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sim 1.0 \times \alpha \text{건축물} + 0.7 \times \alpha \text{현금})$
 -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0 \sim 1.2) \times \alpha \text{건축물})$ 이내] 적용
 -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3) 높이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8, 13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3층 이하	12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치원 용지	-	5층 이하	12단지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기정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I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철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12단지유치원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 및 형태·색채 등 계획 : 변경없음

3) 대지 안의 공지 계획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 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 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 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 4단지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 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 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5,141.5	-	225,141.5	목동 7단지
변경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 243.3	88,842.3	목동 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 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 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 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 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 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 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특별계획구역1~7, 9~11, 1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88,599.0㎡			· 88,842.3㎡			증) 243.3㎡
획지면적	· 67,615.9㎡ (76.3%)			· 70,493.4㎡ (79.3%)			-
기반시설면적	· 20,983.1㎡ (23.7%)	근린공원	10,762.0㎡ (12.2%)	· 18,348.9㎡ (20.7%)	어린이공원	7,884.5㎡ (8.9%)	-
		녹지	8,606.5㎡ (9.7%)		연결녹지	8,606.5㎡ (9.7%)	-
		도로	1,614.6㎡ (1.8%)		도로	1,857.9㎡ (2.1%)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근린공원 신설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어린이공원 신설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입체보행교(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 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 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최종	-
		지정용 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최종	[전층]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최종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최고높이 : 180m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배치	저층부 건축 지정선 (2층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최종	-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 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최종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최종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교통통 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구 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목동서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저층배치구간 및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12 - 목동12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6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7,339.5㎡		좌동		-		
획지면적			· 114,653.0㎡ (90.0%)		· 115,234.8㎡ (90.5%)	획지1 (공동주택)	114,234.8㎡	-	
						획지2 (유치원)	1,000.0㎡		
기반시설면적			· 12,686.5㎡ (10%)	소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9,016.8㎡ (7.1%)	· 12,104.7㎡ (9.5%)	소공원	8,435.0㎡ (6.6%)	-
				도로	3,669.7㎡ (2.9%)		도로	3,669.7㎡ (2.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8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 주차장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8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주차장 중복결정 삭제)		지침도에 따름		
건축 용도의 변경 및 밀도	용도	불허 용도 A	획지1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 립시 결정		좌동		-	
			획지2	-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 용도 나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지정 용도 a	획지1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 (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 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 시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 용도 민도	건폐율	획지1	· 50% 이하	· 50% 이하	-
		획지2	-	· 50% 이하	-
	용적률	획지1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획지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높이	획지1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145m이하(43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획지2	-	· 최고높이 : 5층 이하	-
배치	저층부건축 지정선 (2층 이하)	획지1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2	-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대지 내 공지	전면 공지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공공 보행 통로	획지1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 권 설정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교통 처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동선	획지1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 는 구간은 보행우 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 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등	-
	단지내 보행 동선	획지1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 (권장)	좌등	-
	커뮤 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 구간 설정	획지1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 이드 조성(권장)	좌등	-
기타 사항	경관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좌등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주택의 규모	획지1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최동	-
	자전거 도로	획지1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변(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최동	-
	복합 개발	획지1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복합화 비율은 중심지 위계 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용도지역 상향시의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최동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특별계획구역13 - 목동13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7 일대	좌동	-
특별계획 구역 면적	· 178,919.9㎡	좌동	-
획지면적	· 151,950.5㎡(84.9%) - 획지1 101,252.1㎡(56.6%) - 획지2 50,698.4㎡(28.3%)	· 156,338.2㎡(87.4%) - 획지1 105,639.8㎡(59.0%) - 획지2 50,698.4㎡(28.4%)	-
기반시설 면적	· 26,969.4㎡(15.1%) - 유치원 992.0㎡(0.6%) - 사회복지시설 2,443.0㎡(1.4%) - 소공원 6,944.3㎡(3.9%) - 녹지 6,654.3㎡(3.7%) - 도로 9,935.8㎡(5.6%)	· 22,581.7㎡(12.6%) - 유치원 992.0㎡(0.6%) - 소공원 5,000.0㎡(2.8%) - 녹지 6,654.3㎡(3.7%) - 도로 9,935.4㎡(5.5%)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용도 지정 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정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156m 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
	부대 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	-
	공공 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 구간 설정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복합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5)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에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건축지정선 지침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 13단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78,919.9	-	178,919.9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28.4	증) 1,225.9	11,654.3	6.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491.5	감) 1,225.9	167,265.6	93.5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신정동 327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0.0	· 목동 13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65.5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66.0	· 목동 13단지 내 녹지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1.0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3.6	· 목동 13단지 내 도로 확폭으로 녹지 중 일부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도로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대로	3	149	25~28 (3)	보조간선도로	1,415 (514)	대 2-73	신정동 85-3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4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중로	2	274	18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5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중로	2	275	18(3)	국지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6	15	국지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3)	국지도로	1,092 (505)	대 2-38	대 2-37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 ()는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기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4	중로 2-274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구역내 획 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5	중로 2-275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종점 오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확폭 - B = 15m→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㉔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7-1	2,265.5	감) 2,265.5	-	서고시422호 (94.12.27)	
폐지	㉕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8-1	2,149.8	감) 2,149.8	-	서고시422호 (94.12.27)	
신설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	증) 5,000.0	5,000.0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제15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2,265.5㎡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㉕	제16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2,149.8㎡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B	공원	· 공원(신설) - 증) 5,000.0㎡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㉚	13단지 연변녹지	연결 녹지	신정동 328-2	6,013.1	증) 641.2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13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013.1㎡ → 6,654.3㎡ (증 641.2㎡)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㉞	13단지 유치원	유치원	양천구 신정동 328-3	992.0	-	992.0	서고시 422호 (94.12.27)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소 계		-	156,338.2	
획지	1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원	105,639.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양천구 신정동 328번지 일원	50,698.4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50% 이하	최동	획지1, 2

② 용적률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	210% 이하	최동	획지1, 2
	허용	230% 이하	최동	
	상한	250% 이하	247.77% 이하	
	법정상한	300% 이하	최동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층수)	• 최고높이 : 156m 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최동	획지1, 2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최동	획지1, 2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최동	획지1, 2

4)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획지 1,2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획지 1,2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획지 2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획지 2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통로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 획지1 : 1개소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획지1 : 1개소 - 획지2 : 1개소	결정도 참고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결정도 참고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 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세부 지침도 참고

3) 배치구간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4) 기타사항

구 분	특별계획구역1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 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 경관특화방안”을 수립	- 투시형 파사드 계획 및 이격배치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 - 낮은 식재배치로 열린경관 조성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1~2인 및 노령가구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9.8%로 건설하고 60㎡미만 소형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2.2%로 건설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관계지침에 따라 소설믹스 적용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 : 1.5m - 목동동로변 : 3.0m	교통처리 계획도 참고
복합개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결정도 참고

Ⅲ.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	증) 178,919.9	178,919.9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div$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times 100$ · 추정비례율 : 99.49% $\Rightarrow (6,494,093,984\text{천원} - 2,468,886,661\text{천원}) \div 4,045,891,000\text{천원} \times 100 \approx 99.49\%$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아파트는 최근(2024년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화를 통한 거래사례, KB부동산 시세평균,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고려하되, 한국부동산원 시세조회 하향평균에 중점을 두어 개략적으로 추정. · 상가의 경우 기존 세대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단지의 매매사례, 시세 조사를 고려하되, 감정평가기관의 개략적인 산정액으로 추정함. · 공동주택 소유자 = 39,628억원 · 상가 소유자 = 831억원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전용 59㎡	1,307,3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99.49%)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	1,564,700천원		
전용 84㎡	1,728,400천원		
전용 101㎡	1,950,200천원		
전용 108㎡	2,002,600천원		
전용 132㎡	2,368,300천원		
전용 162㎡	2,805,100천원		
전용 182㎡	3,111,000천원		

나.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4,045,891,000천원

■ 아파트 종전자산 추정가액

(단위 : 천원)

구분	평형	전용면적 (㎡)	세대수	세대당 평균 금액	종전자산 추산액	비고
아파트	20	16.3	240	1,150,000	276,000,000	
	27	21.4	780	1,490,000	1,162,200,000	
	29	25.5	24	1,660,000	39,840,000	
	34A	29.8	600	1,850,000	1,110,000,000	
	37B	30.0	96	1,850,000	177,600,000	
	38	31.5	14	1,880,000	26,320,000	
	45C	36.9	196	2,050,000	401,800,000	
	45B	36.9	16	2,050,000	32,800,000	
	46	37.7	64	2,050,000	131,200,000	
	55C	45.9	210	2,420,000	508,200,000	
	55A	47.4	32	2,420,000	77,440,000	
	55B	46.7	8	2,420,000	19,360,000	
합 계			2,280	-	3,962,760,000	

■ 상가 종전자산 추정가액

(단위 : 천원)

동	층	호수	층별 종전자산가액 추정 (천원)	호별 평균가액 (천원)
A동	1층	17	18,910,000	1,112,350
	2층	14	9,509,000	679,210
B동	1층	12	17,061,000	1,421,750
	2층	13	8,307,000	639,000

구분	층	호수	층별 종전자산가액 추정 (천원)	호별 평균가액 (천원)
	지층	1	834,000	834,000
C동	1층	31	19,048,000	614,450
	2층	9	9,462,000	1,051,330
합계		97	83,131,000	

※ 상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 총 수입 산출 : 6,494,093,984천원

구분	공동주택 면적		세대수 (세대)	분양가		분양수입
	전용면적	분양면적 (평균)		분양면적 m^2 당 평균분양가 (3.3 m^2 당 분양가)	세대당 평균분양가	
아파트 조합원 분양	59.99 m^2	82.18 m^2 (25평형)	-	15,908	52,590	1,307,300
	74.2 m^2	100.27 m^2 (30평형)	-	15,605	51,590	1,564,700
	84.99 m^2	114.08 m^2 (35평형)	1,118	15,151	50,090	1,728,400
	101.9 m^2	134.08 m^2 (41평형)	410	14,545	48,080	1,950,200
	108.9 m^2	143.67 m^2 (43평형)	172	13,939	46,080	2,002,600
	132 m^2	173.68 m^2 (53평형)	306	13,636	45,080	2,368,300
	162 m^2	210.39 m^2 (64평형)	262	13,333	44,080	2,805,100
	182 m^2	233.33 m^2 (71평형)	12	13,333	44,080	3,111,000
	소 계		2,280	-		4,573,348,400
아파트 일반분양	59.99 m^2	82.18 m^2 (25평형)	365	17,676	58,434	1,452,610
	74.2 m^2	100.27 m^2 (30평형)	297	17,340	57,321	1,738,680
	84.99 m^2	114.08 m^2 (35평형)	342	16,835	55,652	1,920,540
	소 계		1,004	-		1,703,415,290
국민주택 규모주택	59.99 m^2	82.18 m^2 (25평형)	444	-	-	137,263
	74.2 m^2	100.27 m^2	43	-	-	168,212

구분	공동주택 면적		세대수 (세대)	분양가		분양수입
	전용면적	분양면적 (평형)		분양면적 ㎡당 평균분양가 (3.3㎡당 분양가)	세대당 평균분양가	
		(30평형)				
	소 계		487	-		68,178,100
상가 조합원분양						76,881,800
상가 일반분양						73,745,300
매출부가세						-1,474,906
합 계			3,852			6,494,093,984

※ 종후자산 추정 : 일반분양가(55,000천원/평), 조합원분양가(47,500천원/평, 평형간 격차를 적용)

※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은 2024년 현재 양천구 신정동, 목동 및 인근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확한 분양아파트 가격은 시공사 선정 및 중후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시 결정됨.

※ 상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소유유형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상가 가격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형별 세대수 규모는 향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임.

※ 공공주택 중 59형 45세대, 74형 22세대, 84형 14세대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으로 매각가격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지출(사업비) 산출 : 2,468,886,661천원

항 목	금 액(천원)	포함 내용
공사비	2,115,114,248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비, 건축물철거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부분 매입부가세 8,741천원/3.3 m^2 (건축공사비:8,000천원/3.3 m^2)
보상비	-	추진위원회,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등
관리비	3,910,200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계, 기타 설계용역관련비용 등
설계비	15,041,117	건축, 전기, 소방 등
감리비	39,998,263	안전진단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경계명시분할확정총량비, 감정평가수수료, 기장, 세무회계, 외부감사, 세무조정, 이주관리 및 명도업무, 채권매입비, 분양보증수수료, 광고전선비, 민원처리비 등
수수료등기타사업비	118,344,26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및 공사비, 지역난방/도시가스 분담금
각종부(분)담금	20,561,160	사업비 대여금 이자 등
금융비용	41,049,700	추정법인세 등 (산출근거 후첨)
법인세	1,100,000	건본주택건축/임차운영비, 분양대행수수료 등
기타경비	8,012,000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의 예상치 못하여 발생한 제비용
예비비	105,755,710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의 예상치 못하여 발생한 제비용
합계	2,468,886,661	-

※ 상가 비용은 금회 정비계획 변경에 근거하여 개략적인 설계개요를 작성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략적분담금 산정프로그램 등에서 산출한 사업 비용으로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시공사 선정 시 제시된 공사비 등 제반 비용, 사업진행 과정 및 사업속도(사업지연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주택평형 (전용면적)	종전가액	권리가액	평형 (전용면적)	조합원 공급가	분담금
아파트	20형 (16.3㎡)	1,100,000	1,069,200	25(59㎡)	1,307,300	163,165
				30(74㎡)	1,564,700	420,565
				35(84㎡)	1,728,400	584,265
				41(101㎡)	1,950,200	806,065
				43(108㎡)	2,002,600	858,465
				53(132㎡)	2,368,300	1,224,165
				64(162㎡)	2,805,100	1,660,965
				71(182㎡)	3,111,000	1,966,865
	27형 (21.4㎡)	1,430,000	1,389,960	25(59㎡)	1,307,300	-175,101
				30(74㎡)	1,564,700	82,299
				35(84㎡)	1,728,400	245,999
				41(101㎡)	1,950,200	467,799
				43(108㎡)	2,002,600	520,199
				53(132㎡)	2,368,300	885,899
				64(162㎡)	2,805,100	1,322,699
				71(182㎡)	3,111,000	1,628,599
	29형 (25.5㎡)	1,620,000	1,574,640	25(59㎡)	1,307,300	-344,234
				30(74㎡)	1,564,700	-86,834
				35(84㎡)	1,728,400	76,866
				41(101㎡)	1,950,200	298,666
				43(108㎡)	2,002,600	351,066
				53(132㎡)	2,368,300	716,766
				64(162㎡)	2,805,100	1,153,566
				71(182㎡)	3,111,000	1,459,466
아파트	34A (29.8㎡), 37B형 (30.0㎡)	1,760,000	1,710,720	25(59㎡)	1,307,300	-533,265
				30(74㎡)	1,564,700	-275,865
				35(84㎡)	1,728,400	-112,165
				41(101㎡)	1,950,200	109,635
				43(108㎡)	2,002,600	162,035
				53(132㎡)	2,368,300	527,735
				64(162㎡)	2,805,100	964,535
				71(182㎡)	3,111,000	1,270,435
	38형 (31.5㎡)	1,780,000	1,730,160	25(59㎡)	1,307,300	-563,112
				30(74㎡)	1,564,700	-305,712
				35(84㎡)	1,728,400	-142,012
				41(101㎡)	1,950,200	79,788
				43(108㎡)	2,002,600	132,188
				53(132㎡)	2,368,300	497,888
				64(162㎡)	2,805,100	934,688
				71(182㎡)	3,111,000	1,240,588
	45B,	2,030,000	1,973,160	25(59㎡)	1,307,300	-732,245

구 분	주택평형 (전용면적)	종전가액	권리가액	평형 (전용면적)	조합원 공급가	분담금
	45C, (36.9㎡) 46형 (37.7㎡)			30(74㎡)	1,564,700	-474,845
				35(84㎡)	1,728,400	-311,145
				41(101㎡)	1,950,200	-89,345
				43(108㎡)	2,002,600	-36,945
				53(132㎡)	2,368,300	328,755
				64(162㎡)	2,805,100	765,555
				71(182㎡)	3,111,000	1,071,455
	55A (47.4㎡), 55B (46.7㎡), 55C형 (45.9㎡)	2,420,000	2,352,240	25(59㎡)	1,307,300	-1,100,358
				30(74㎡)	1,564,700	-842,958
				35(84㎡)	1,728,400	-679,258
				41(101㎡)	1,950,200	-457,458
				43(108㎡)	2,002,600	-405,058
				53(132㎡)	2,368,300	-39,358
				64(162㎡)	2,805,100	397,442
				71(182㎡)	3,111,000	703,342

※ 조합원 분담금 =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금액 - 조합원의 권리가액

※ 상기 분담금 외 이주비 금융비용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개별부담이며, 동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은 미 반영되었음. 재건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인가 이후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께 통지될 예정임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78,919.9	100.0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22,581.7	12.6	
	도 로	9,935.4	5.5	
	녹 지	6,654.3	3.7	
	공 원	5,000.0	2.8	
	유치원	992.0	0.6	
획지	소 계	156,338.2	87.4	
	획 지1	105,639.8	5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50,698.4	2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78,919.9	-	178,919.9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28.4	증) 1,225.9	11,654.3	6.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491.5	감) 1,225.9	167,265.6	93.5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신정동 327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0.0	· 목동 13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65.5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66.0	· 목동 13단지 내 녹지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1.0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3.6	· 목동 13단지 내 도로 확폭으로 녹지 중 일부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도로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대로	3	149	25~28 (3)	보조간선도로	1,415 (514)	대 2-73	신정동 85-3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4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중로	2	274	18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5	15	국지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중로	2	275	18(3)	국지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76	15	국지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3)	국지도로	1,092 (505)	대 2-38	대 2-37	일반 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 ()는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4	중로 2-274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구역내 획 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5	중로 2-275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확폭 - B = 15m→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㉔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7-1	2,265.5	감) 2,265.5	-	서고시422호 (94.12.27)	
폐지	㉕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8-1	2,149.8	감) 2,149.8	-	서고시422호 (94.12.27)	
신설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	증) 5,000.0	5,000.0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제15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2,265.5㎡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㉕	제16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2,149.8㎡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B	공원	· 공원(신설) - 증) 5,000.0㎡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㉚	13단지 연변녹지	연결 녹지	신정동 328-2	6,013.1	증) 641.2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㉚	13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013.1㎡ → 6,654.3㎡ (증 641.2㎡)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㉞	13단지 유치원	유치원	양천구 신정동 328-3	992.0	-	992.0	서고시 422호 (94.12.27)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계		-	-	21,400㎡	
주민공동시설	계	$(500㎡ + 3,852세대 \times 2㎡) \times 1.25$	10,130.0㎡	20,700㎡	
	경로당	2,000세대 이상	1,495.4㎡	3,100㎡	
	어린이집	2,000세대 이상	1,495.4㎡	4,300㎡	
	작은도서관	2,000세대 이상	1,068.4㎡	1,600㎡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820.4㎡	1,200㎡	
	주민공동시설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500.0㎡	4,000㎡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	2,500㎡	
	어린이놀이터	$500㎡ + (3,852세대 \times 0.7㎡)$	3,196.4㎡	4,000㎡	
관리사무소		$10㎡ + (3,852세대 - 50) \times 0.05㎡$	200.1㎡	400㎡	
경비실		-	-	3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별표1)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178,919.9	획지1	105,639.8	양천구 신정동 327	37	-	-	37	-	-
			획지2	50,698.4	양천구 신정동 328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신설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경비사업	178,919.9	획지1	105,639.8	신정동 327	공동 주택	50이하	247.77 이하	300이하 (299.94)	156m (49층이하)	-
			획지2	50,698.4	신정동 328	공동 주택	50이하	247.77 이하	300이하 (299.98)	156m (49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3,852세대 · 국민주택규모(85㎡이하)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69.8%)								
			구분	세대수							
				소계		분양		임대			
			합 계		3,852	100.0%	3,284	85.3%	568	14.7%	
			60㎡이하		854	22.2%	365	9.5%	489	12.7%	
			60~85㎡이하		1,836	47.6%	1,757	45.6%	79	2.0%	
			85㎡초과		1,162	30.2%	1,162	30.2%	-	-	
심의완화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방재안전)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계획용적률 299.96%) (완화용적률 : 52.1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 이하) - 목동동로변,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건축한계선 지정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건축한계선(부대복리시설)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이격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 고층부벽면한계선 - 목동로 녹지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기타사항			· 전면공지 - 목동동로6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 녹지변, 소공원 건축한계선 후퇴부 : 6m - 목동로3길, 목동동로 : 4m · 공공보행통로(2개소) - 폭원 : 25m, 15m - 획지의 남·북 및 동·서를 연결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저층배치구간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중저층배치구간(15층 이하) -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목동로3길변,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현금·건축물 (환산부지)		
				기반시설	건축물 대지지분			
		178,919.9㎡	156,338.2㎡	25,069.7㎡	21,589.7㎡	2,444.2㎡	1,163.2㎡	11,441.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1,589.7㎡ + 2,444.2㎡ + 1,163.2㎡) - 11,441.7㎡ - 4,346.5㎡ = 9,408.9㎡ (구역대비 5.3%)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	A 기반시설 토지 : 21,589.7㎡ • 도로 9,935.8㎡, 녹지 : 6,654.3㎡, 공원 : 5,000.0㎡ B 건축물 대지지분 : 2,444.2㎡ •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대지지분 = 주거대지지분×(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대지면적×(주거면적÷전체면적)×(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156,338.2㎡×(790,245.26㎡÷799,965.26㎡)×(5,521.81㎡÷348,896.92㎡)							

구 분	산정내용
건축환산부지	• 공공임대주택 환산부지 : 1,163.2㎡ (59형 45세대, 74형 22세대, 84형 14세대) - 지상층 : 902.9㎡ = 건축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부지가액주3) = 59형(3,812.42㎡ × 2,065,152원/㎡ ÷ 17,296,624원) + 74형(2,275.43㎡ × 1,974,343원/㎡ ÷ 17,296,624원) + 84형(1,646.75㎡ × 1,974,343원/㎡ ÷ 17,296,624원) = 902.9㎡ - 지하층 : 260.3㎡ = 건축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2) ÷ 부지가액주3) = 4,908.77㎡ × 917,273원/㎡ ÷ 17,296,624원 = 260.3㎡ 주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59형, 74형, 84형(구분 면적별 5층이하~49층이하 평균가)의 부가세 제외 금액 주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지하층건축비의 부가세 제외 금액 주3) 부지가액 : 평균 공시지가 8,648,311.8원/㎡의 2배
기준용적률	• 210% 이하
허용용적률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a(토지) + 1.0 × a(건축물)) = 230% × (1 + 1.3 × 1 × 0.0536 + 1.0 × 0.0076) = 247.77% ⇒ 정비계획 용적률 247.77% 이하 ※ a(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8,245.7㎡ / 153,893.98㎡ = 0.0536 ※ a(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163.2㎡ / 153,893.98㎡ = 0.0076 ※ 가중치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 230% = 1
법적상한용적률	• 300.0% 이하 (건축계획 299.96%)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구 분		내 용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기준	주변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 a=1 이하	10.0%p
	산정식	- $210\% \times (7,515.0\text{m}^2 \div 156,338.2\text{m}^2) \times 1 = 10.1\%$ ※ a=1 적용	
열린 단지	기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 도면에 표시(준공 후에도 유지)	5.0%p
방재 안전	기준	화재·소방·피난안전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0%p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0%p

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악화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① ② -	◦ 장래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6개소) ◦ 사업지 주변 도로운영계획 - 목동동로4길 : B=15.0m → 18.0m - 목동동로6길 : B=15.0m → 18.0m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11』 개선안 반영 - 지구단위계획 도로운영계획안 반영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반영
진출입 동선	- -	◦ 차량진출입구 설치 (6개소) ◦ 차량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R=6.0m)
자전거 및 보행	- - - - -	◦ 사업지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B=4.0~6.0m) ◦ 보행등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사업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 (B=15.0m~25.0m) ◦ 사업지 주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B=1.5m~3.0m) ◦ 자전거보관소 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설치
주차설	- -	◦ 법정주차 : 5,008대 ◦ 주차수요 : 4,965대(2034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 : 7,769대 - 법정대비 155.1%, 수요대비 156.5% ◦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

구 분	지점	개선방안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량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 (6개소)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 이내에 갈산초, 은정초 위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건축계획 검토 시 갈산초, 은정초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배치 시 일조영향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등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겠음	-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획지	획지1	156,338.2	양천구 신정동 327	105,639.8	공동주택
	획지2		양천구 신정동 328	50,698.4	공동주택

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원	-	증)178,919.9	178,919.9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사업		정비계획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증감	계획	-
				2,280	증)1,572	3,852	

하.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300% 이하 (299.96%) ※건축심사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247.77% 이하 (247.77%)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299.96\% - 247.77\% = 52.19\%$			
	증가된 용적률의 50%	$52.19\% \times 50.0\% = 26.095\%$			
	의무 연면적	$156,338.2\text{m}^2(\text{대지면적}) \times 26.095\% = 40,796.46\text{m}^2 \text{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487	40,798.69
		59.99m ²	82.18m ²	444	36,487.07
		74.20m ²	100.27m ²	43	4,311.62
					비고
					>40,796.46m ² (의무)
					확지
					확지

■ 기부채납 주택 계획

기부채납 주택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m ²)	
				대지면적	연면적
59m ² 형	59.99m ²	82.18m ²	45	2,444.2m ²	12,643.37m ² (환산부지면적 : 1,163.2m ²)
74m ² 형	74.20m ²	100.27m ²	22		
84m ² 형	84.99m ²	114.08m ²	14		

거.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비오톱유형평가도 2,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3등급 및 평가제외등급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안양천 및 인근 공원녹지와 도로로인해 단절된 상태	계획지구 내 녹지계획을 수립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공공시설, 공원 및 공동주택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표고 6.98~4.71m, 평균 경사도 0.12°의 평탄지형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공공주택용지 내 조경녹지 계획	생태면적률 32.13%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높은 4층 이상 주거지 및 일부 공원 등 조경수 목식재지로 온도가 높은 편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 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세로환경을 조성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주변으로 양천근린공원, 갈산, 안양천 등 위치	-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 목동동로, 목동로와 연계한 공공 보행통로 계획 - 계획지구 내 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상부 녹지공간 계획 및 확보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최고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승인한도 준수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폭 필요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22	전파장애	전파장애 영향 저감	-	해당 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지구단위계획 결정) 참고

IV.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4.12.1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용적률계획 : 기준 210%, 허용 230%, 상한 247.48%, 법적상한 300% •순부담면적 : 9,281.5㎡ •세대수 : 3,811세대(임대주택 570세대) ※ 법적상한임대 489세대, 기부채납임대 81세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 향후 일반시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할 것	•용적률계획 : 기준 210%, 허용 230%, 상한 247.77%, 법적상한 300% •순부담면적 : 9,408.9㎡ •세대수 : 3,852세대(임대주택 568세대) ※ 법적상한임대 487세대, 기부채납임대 81세대 ※ 지상부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용적률 수치 조정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래 단서조항을 달고 지역권 설정을 등기에 명시토록 하겠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반영
조건사항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공원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구간 및 전면공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시행지침 포함) 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공원의 위치를 준수하여 계획하고, 건축물 배치구간 및 전면공지 조성 계획을 준수하겠음	반영
	•경관녹지는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결녹지로 변경 검토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녹지 세분용도를 연결녹지로 변경함	반영
권고사항	•향후 단지별 녹지시설 유형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보행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녹지 세분용도를 연결녹지로 변경함	반영
	•공원의 기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향후 통합심의 시 공원 기능이 제고 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V. 열람장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6) 및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8)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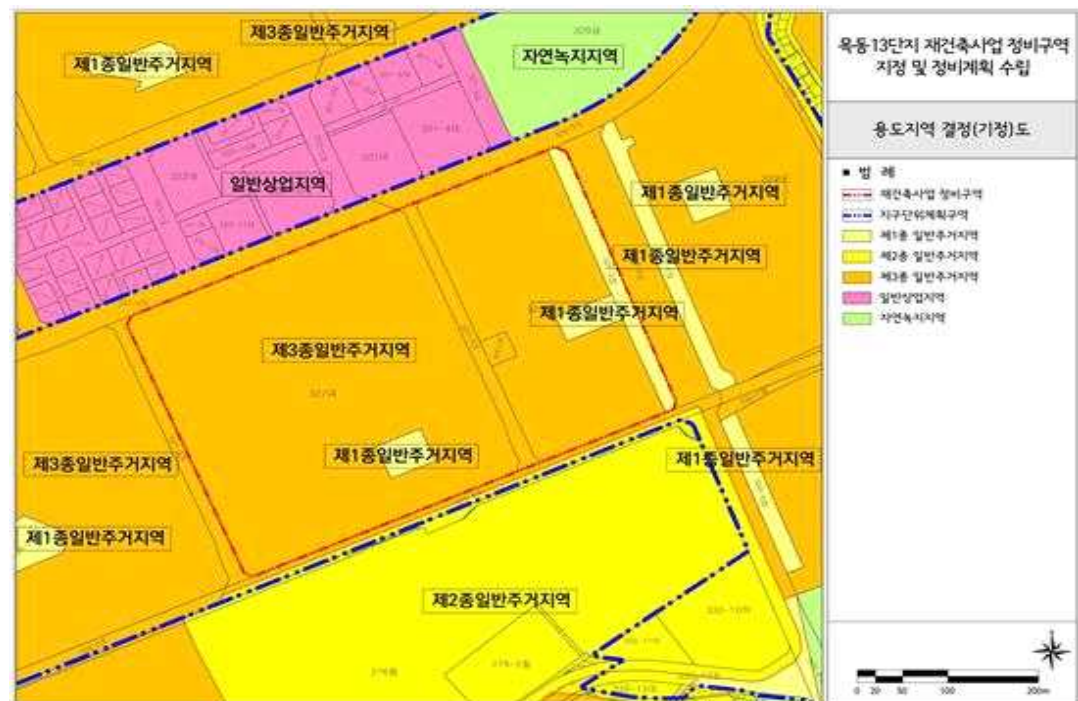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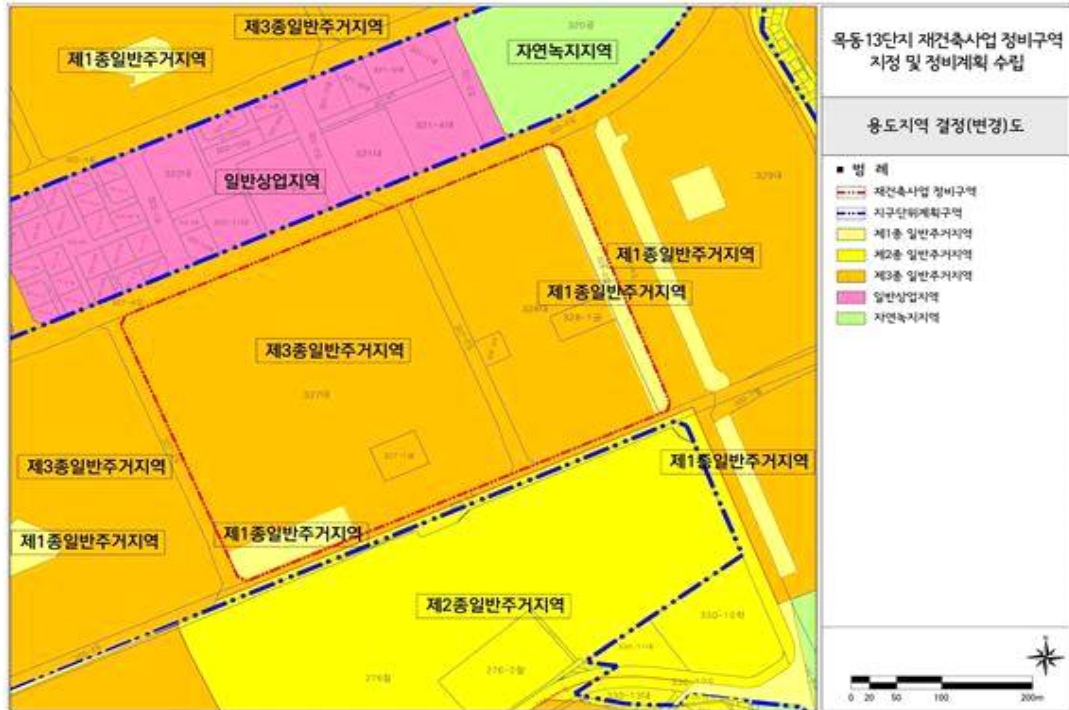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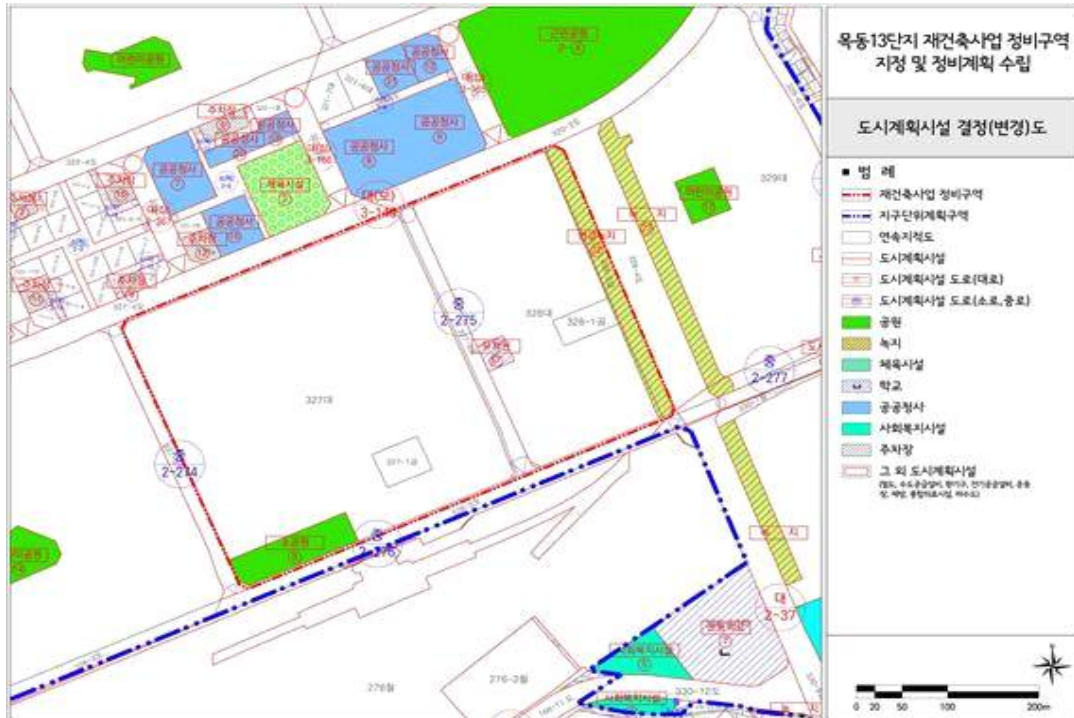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붙임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13 세부지침도(기정)



■ 특별계획구역13 세부지침도(변경)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3
세부지침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회복지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특별계획구역	저층부 건축지정선	
도시계획시설선	건축한계선	
획지선	건축한계선(무대복리시설)	
택지	고층부 벽면한계선	
유치원(획지)	전면공지	
계획도로	공공보행통로	
공원	차량출입불허구간	
녹지	저층 배치구간(7층)	
학교	중저층 배치구간(15층)	



<붙임2>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3호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목동1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2024.12.16.)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1,097.4	증)7,226.6	4,378,324.0	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4,371,097.4	증)7,226.6	4,378,324.0	· 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371,097.4	증) 7,226.6	4,378,324.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3,171,522.3	증) 7,226.6	3,178,748.9	7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905.2	증) 3,913.3	265,818.5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054.1	증) 3,313.3	2,071,367.4	47.3	-
중심 지역	소 계	568,384.8	-	568,384.8	13.0	-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
공업 지역	소 계	73,561.2	-	73,561.2	1.7	-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
녹지 지역	소 계	557,629.1	-	557,629.1	12.7	-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신정동 314-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730.1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2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53.1	· 목동 8단지 내 녹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4.5	· 목동 8단지 내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1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18.7	· 목동 8단지 내 녹지 및 어린이공원 계획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87.4	· 목동 12단지 내 소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00.0	· 목동 13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7-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65.5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6.0	· 목동 13단지 내 녹지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81.0	· 목동 13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신정동 328-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6	· 목동 13단지 내 도로 확폭으로 녹지 중 일부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89	979,394	21	7,280	195,101	40	25,015	266,923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4	9,566	196,577	2	1,208	15,490	19	8,036	176,980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07	57,396	996,079	20	7,216	194,403	40	25,015	277,832	47	25,165	523,844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9,579	1	1,823	61,137	5	14,332	65,619	31	24,138	512,823
중로	24	9,566	207,021	2	1,208	15,490	19	8,036	187,424	3	322	4,107
소로	45	5,787	63,008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3	705	5,0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광로	1	78	10.8~1 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2	73	3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교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기정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철도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B	21~2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329-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1	15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5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 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확폭 - 30m → 33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대로 3-148	대로 3-148	· 도로 확폭 - B = 25m→25~28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 내 도로 확폭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확폭 - 15m → 16.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1.5m
중로 2-274	중로 2-274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5	중로 2-275	· 도로 확폭 - B = 15m→18m · 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확폭 - B = 15m→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3m
소로 1-10	-	· 도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3-A	·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폭원 5m), 대로 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라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

■ 공원 총괄표(기정)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1	169,712.1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5	48,598.4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개소	면적(㎡)
합계	20	179,486.5
근린공원	5	91,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2	44,937.8
소공원	2	13,435.0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서고시422호 (94.12.27)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3-2	2,985.4	-	2,985.4	서고시422호 (94.12.27)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4-1	6,517.0	-	6,517.0	서고시422호 (94.12.27)	4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2-1	3,963.8	-	3,963.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3-1	3,815.8	-	3,815.8	서고시422호 (94.12.27)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25-1	2,375.1	-	2,375.1	서고시422호 (94.12.27)	7단지
폐지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감)3,730.1	-	서고시422호 (94.12.27)	8단지
신설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	증)7,884.5	7,884.5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3-2	1,738.6	-	1,738.6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2-2	3,500.0	-	3,500.0	서고시422호 (94.12.27)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1-1	3,148.2	-	3,148.2	서고시422호 (94.12.27)	10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㉑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	2,498.5	서고시422호 (94.12.27)	11단지
폐지	㉒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감)3,399.7	-	서고시422호 (94.12.27)	12단지
신설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	증)8,435.0	8,435.0	-	12단지
폐지	㉓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7-1	2,265.5	감)2,265.5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폐지	㉔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8-1	2,149.8	감)2,149.8	-	서고시422호 (94.12.27)	13단지
신설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	증)5,000.0	5,000.0	-	13단지
기정	근-①	신타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10-7	16,409.3	-	16,40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7,000.0	-	7,000.0	서고시 제2025-117호 (25.3.6)	14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제9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3,730.1㎡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㉑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공원(신설) - 증)7,884.5㎡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㉒	제14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3,399.7㎡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A	공원	·공원(신설) - 증)8,435.0㎡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㉓	제15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2,265.5㎡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㉔	제16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감)2,149.8㎡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B	공원	·공원(신설) - 증) 5,000.0㎡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부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6,7, 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987.7	-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⑩	목동 927번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⑬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314-2, 3	12,760.9	감)4,154.4	8,606.5	서고시 422호 (94.12.27)	8단지 서측,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⑮	9,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 12,13,14,15,16,1 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㉑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감) 2,347.9	-	서고시 422호 (94.12.27)	-
변경	㉒	13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328-2	6,013.1	증) 641.2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636.1	-	6,636.1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4,629.9	-	4,62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㉘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2,812.3	-	2,812.3	서고 제2024-401호 (24.08.16)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㉓	8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12,760.9㎡ → 8,606.5㎡ (감 4,154.4㎡)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㉑	12단지 연변녹지	· 녹지(폐지) - 감) 2,347.9㎡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㉒	13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013.1㎡ → 6,654.3㎡ (증 641.2㎡) · 시설의 세분 변경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선형, 면적 및 시설 세분 변경

-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A1	96,186.0	변경없음
	A2	177,564.6	A2	177,564.6	변경없음
	A3	171,688.4	A3	171,688.4	변경없음
	A4	163,149.1	A4	163,149.1	변경없음
	A5	122,825.3	A5	122,825.3	변경없음
	A6	80,923.2	A6	80,923.2	변경없음
	A7	117,450.6	A7	117,450.6	변경없음
	A8	181,713.1	A8	181,713.1	변경없음
	A9	146,916.7	A9	146,916.7	변경없음
	A10	104,961.0	A10	104,961.0	변경없음
	A11	135,726.0	A11	135,726.0	변경없음
	A12	40,339.4	A12	40,339.4	변경없음
	A13	65,872.3	A13	65,872.3	변경없음
	A14	89,260.9	A14	89,260.9	변경없음
	A15	105,520.4	A15	105,520.4	변경없음
	A16	115,397.0	A16	115,397.0	변경없음
	A17	148,024.4	A17	148,024.4	변경없음
	A18	40,343.7	A18	40,343.7	변경없음
	A19	80,011.8	A19	80,011.8	변경없음
	A20	79,831.2	A20	79,831.2	변경없음
	A21	127,339.5	A21	123,669.8	목동12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2	114,140.1	A22	110,639.8	목동13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A23	59,420.0	A23	58,344.7	
	A24	3,878.3	A24	3,878.3	변경없음
	A25	76,081.8	A25	76,081.8	변경없음
	A26	94,128.7	A26	94,128.7	변경없음
	A27	135,005.9	A27	135,005.9	변경없음
	A28	17,593.8	A28	17,593.8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B1	12,816.8	변경없음
	B2	28,040.7	
	B3	21,071.8	
	B4	26,305.8	
	B5	29,619.3	
	B6	45,602.7	
	B7	33,246.0	
	B8	24,367.7	
	B9	49,207.0	
	B10	26,840.5	
	B11	22,945.9	
	B12	21,602.5	
	B13	16,835.0	
		23,863.0	
	B14	27,385.5	
	B15	29,559.5	
	B16	33,797.9	
	B17	22,220.7	
	B18	20,561.9	
	B19	18,044.4	
	B20	21,106.3	

2) 획지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변경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변경	A21-①	A21	신정동 326	114,234.8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신설	A21-②	A21	신정동 326	1,000.0	특별계획구역12	유치원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2-①	A22	신정동 327	105,639.8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변경	A23-①	A23	신정동 328	50,698.4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일원	69,445.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일원	36,512.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A26	신정동 331	41,680.4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③	A26	신정동 331	2,000.0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사회복지시설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084.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14-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② 획지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획지 신설
	· A22-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3-① 획지 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및 지번 오기 정정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허용 및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전층	비고
불허용도	공동 사항	A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동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사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전충	비고
불허 용도	공통 사항	A	· 해당 제 2·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
	신정동 326	C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 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 중 기숙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 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신정동 326	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21	불허용도	신정동 326	「허용용도 외 불허」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신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신설	

■ 지정 및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분		적용대상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유치원 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2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정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14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옹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1.0×α건축물+0.7×α현금)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 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법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법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정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8, 12, 13,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2단지 유치원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4. 12.)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sim 1.0 \times \alpha \text{건축물} + 0.7 \times \alpha \text{현금})$
-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0 \sim 1.2) \times \alpha \text{건축물})$ 이내] 적용
-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3) 높이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8, 13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3층 이하	12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치원 용지	-	5층 이하	12단지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I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I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결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결가로
	II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결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I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VII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12단지유치원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 및 형태·색채 등 계획 : 변경없음

3) 대지 안의 공지 계획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 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 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 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 4단지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 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 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5,141.5	-	225,141.5	목동 7단지
변경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599.0	증) 243.3	88,842.3	목동 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 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 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 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 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 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 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특별계획구역1~7, 9~11, 1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88,599.0㎡			· 88,842.3㎡			증) 243.3㎡
획지면적	· 67,615.9㎡ (76.3%)			· 70,493.4㎡ (79.3%)			-
기반시설면적	· 20,983.1㎡ (23.7%)	근린공원	10,762.0㎡ (12.2%)	· 18,348.9㎡ (20.7%)	어린이공원	7,884.5㎡ (8.9%)	-
		녹지	8,606.5㎡ (9.7%)		연결녹지	8,606.5㎡ (9.7%)	-
		도로	1,614.6㎡ (1.8%)		도로	1,857.9㎡ (2.1%)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근린공원 신설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구역내 3m 확보) · 녹지 (폭원 20m) 면적 축소 · 어린이공원 신설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 입체보행교(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폭원 5m - 입체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로2-37 및 8단지 연변 녹지와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소로3-A)는 추후 목동 9단지와의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지 간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 의 용도밀 도	용도	불허용 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지정용 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최고높이 : 180m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배 치	저층부 건축 지정선 (2층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 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 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 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연결녹지 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와 연계하여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폭 15m의 보 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 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 도록 함	-
교통처 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좌동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따른 목동서로 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변경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동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 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구 간 설정	· 목동서로변 · 목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목동서로변 · 목동로8길변 일부 구간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목동로8길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저층배치구간 및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12 - 목동12단지

구 분				계 획 지 점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6일대		좌동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7,339.5㎡		좌동		-	
획지면적				· 114,653.0㎡ (90.0%)		· 115,234.8㎡ (90.5%)	획지1 (공동주택)	114,234.8㎡	-
							획지2 (유치원)	1,000.0㎡	
기반시설면적				· 12,686.5㎡ (10%)	소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9,016.8㎡ (7.1%)	소공원	8,435.0㎡ (6.6%)	-
							도로	3,669.7㎡ (2.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8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 주차장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16.5m(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18m(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신설 (주차장 중복결정 삭제)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의 용도, 밀도	용도	불허용도 A	획지1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획지2	-		·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나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지정용도 a	획지1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용도· 밀도	건폐율	획지1	· 50% 이하	· 50% 이하	-
		획지2	-	· 50% 이하	-
	용적률	획지1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획지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높이	획지1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145m이하(43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획지2	-	· 최고높이 : 5층 이하	-
배치	저층부건축 지정선 (2층 이하)	획지1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2	-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대지 내 공지	전면 공지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공공보행 통로	획지1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교통 처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동선	획지1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 는 구간은 보행우 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 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등	-
	단지내 보행 동선	획지1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 (권장)	좌등	-
배치 구간 설정	커뮤 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등	-
기타 사항	경관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좌등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주택의 규모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형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획지1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변(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복합 개발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복합화 비율은 중심지 위계 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

- ※ 1) 총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특별계획구역13 - 목동13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7 일대	좌동	-
특별계획 구역 면적	· 178,919.9㎡	좌동	-
획지면적	· 151,950.5㎡(84.9%) - 획지1 101,252.1㎡(56.6%) - 획지2 50,698.4㎡(28.3%)	· 156,338.2㎡(87.4%) - 획지1 105,639.8㎡(59.0%) - 획지2 50,698.4㎡(28.4%)	-
기반시설 면적	· 26,969.4㎡(15.1%) - 유치원 992.0㎡(0.6%) - 사회복지시설 2,443.0㎡(1.4%) - 소공원 6,944.3㎡(3.9%) - 녹지 6,654.3㎡(3.7%) - 도로 9,935.8㎡(5.6%)	· 22,581.7㎡ (12.6%) - 유치원 992.0㎡(0.6%) - 소공원 5,000.0㎡(2.8%) - 녹지 6,654.3㎡(3.7%) - 도로 9,935.4㎡(5.5%)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좌동	-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용도· 밀도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용도 지정 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 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 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 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300%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156m 이하(49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	-
	부대 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공동주택부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 사회복지시설부지 - 목동동로4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	-
	공공 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25m,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기타 사항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종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복합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좌동	-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5) 커뮤니티활성화배치구간에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건축지정선 지침에 따름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㉔	특별계획구역1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6일대	127,339.5	-	127,339.5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27,339.5	-	127,339.5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47.6	증) 2,687.4	8,435.0	6.6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1,591.9	감) 2,687.4	118,904.5	93.4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양천구 목동 326-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8,435.0 (증 2,687.4)	· 목동 12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8,904.5 (감 2,687.4)	· 목동 12단지 내 소공원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2	73	3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확폭 - 30m → 33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2	중로 2-272	· 단지 내 도로 확폭(1.5m) - 15m → 16.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1.5m
중로 2-274	중로 2-274	· 단지 내 도로 확폭(1.5m) - 15m → 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15m → 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2)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㉔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감) 3,399.7	-	서고시422호 (94.12.27)	-
신설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	증) 8,435.0	8,435.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제14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3,399.7㎡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A	공원	• 공원(신설) - 증) 8,435.0㎡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㉕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감) 2,347.9	-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㉕	12단지 연변녹지	• 녹지(폐지) - 감) 2,347.9㎡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21	127,339.5	A21	123,669.8	목동12단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변경

2) 획지계획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변경	A21-①	A21		114,234.8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신설	A21-②	A21		1,000.0	특별계획구역12	유치원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21-① 획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21-② 획지 신설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설치를 위한 획지 신설

나.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 용도 밀도	용도	불허 용도 A	획지1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획지2	· 허용용도 외 불허	좌동	-
		허용용 도나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좌동	-
		지정 용도 a	획지1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지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 시설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획지1	· 50% 이하	좌동	-
	획지2	· 50% 이하	좌동	-

2)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획지1	기준	210% 이하	좌동	-
		허용	230% 이하	좌동	
		상한	250% 이하	정비계획 249.92%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좌동	
	획지2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좌동	-
		허용			
		상한			
		법적상한			

3) 높이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층수)	획지1	• 최고높이 : 145m 이하(43층 이하)	좌동	-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목 동로3길변 폭 6m) - 아파트 : 7층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이하	좌동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0m/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좌동	
	획지2	• 최고높이 : 5층 이하	좌동	-

4) 배치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저층부건축 지정선 (2층 이하)	획지1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 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 로부터 4m	좌동	-
	건축 한계선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 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획지2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

5) 대지 내 공지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획지1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
	공공보 행통로	획지1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 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 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 역권 설정	좌동	-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 처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동선	획지1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틀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내 보행 동선	획지1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7) 배치구간 설정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구간 설정	커뮤 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 구간	획지1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동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타 사항	경관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최등	-
	주택의 규모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총 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종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최등	-
	자전거 도로	획지1	· 자전거 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변(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최등	-
	복합 개발	획지1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복합화 비율은 중심지 위계 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용도지역 상향시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최등	-

Ⅲ.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26일대	-	증) 127,339.5	127,339.5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 추정비례율 : 104.88% ⇒ (4,563,022,002천원 - 1,720,897,756천원) ÷ 2,709,976,000천원 × 100% ≒ 104.88%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4년 12월 기준) 및 최근 1년(2024년 01월 ~12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시세조회 하향평균에 중점을 두어 개략적으로 추정 - 아파트외(근린생활시설 등)는 목동12단지아파트 내 상가 등의 최근 거래사례를 조사한 후 위치별 · 층별 · 면적별 효용 비율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 공동주택 소유자 = 26,477억원 - 상가 등 소유자 = 623억원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전용 59㎡	1,261,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104.88%)
	전용 74㎡	1,502,900천원	
	전용 84㎡	1,634,000천원	
	전용 99㎡	1,880,500천원	
	전용 109㎡	2,066,700천원	
	전용 114㎡	2,120,600천원	
	전용 129㎡	2,295,200천원	
	전용 142㎡	2,469,100천원	
	근린생활시설 1층	1,799,400천원	
			추정 분담금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2,709,976,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하향평균시세(2024년 12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저층 아파트	65.17	51.90	4	-	1,170,000	1,170,000	4,680,000
	70.51	56.76	210	1,285,000	1,170,000	1,227,500	257,775,000
	75.19	60.00	16	1,385,000	1,170,000	1,277,500	20,440,000
	80.31	64.65	38	1,465,000	1,450,000	1,457,500	55,385,000
	90.37	72.75	152	1,540,000	1,450,000	1,495,000	227,240,000
고층 아파트	63.03	49.14	4	1,100,000	1,170,000	1,135,000	4,540,000
	68.38	53.46	236	1,265,000	1,170,000	1,217,500	287,330,000
	82.88	66.78	20	1,465,000	1,450,000	1,457,500	29,150,000
	88.99	71.64	1,180	1,535,000	1,450,000	1,492,500	1,761,150,000
아파트 소계			1,860	-	-	-	2,647,690,000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하향평균시세(2024년 12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상가 A동	층	전용평균(㎡)	호수	-	-	종전자산(호평균)	종전자산총액
	-1	113.00	2	-	-	1,391,000	2,782,000
	1	23.69	13	-	-	897,000	11,661,000
	2	40.73	8	-	-	824,880	6,599,040
	3	84.00	2	-	-	1,186,500	2,373,000
상가 B동	-1	142.00	1	-	-	1,597,000	1,597,000
	1	210.50	2	-	-	5,988,500	11,977,000
	2	40.73	8	-	-	784,630	6,277,040
	3	84.00	2	-	-	1,167,000	2,334,000
복지시설	1층~2층	289.70	2	-	-	8,343,000	16,686,000
아파트 외 소계			40	-	-	-	62,286,080
종전자산 총계			1,898	-	-	-	2,709,976,000

※ 상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 총 수입 산출 : 4,563,022,002천원

구분		공급세대 (세대)	공급면적 (㎡)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 (천원)	분양수입 (천원)	비고	
공공주택	조합원분양	-	82.55	50,500	1,261,000	-	-	
		-	103.07	48,200	1,502,900	-	-	
		1,077	117.67	45,900	1,634,000	1,759,818,000	-	
		348	138.18	44,990	1,880,500	654,414,000	-	
		233	151.86	44,990	2,066,700	481,541,100	-	
		118	159.07	44,070	2,120,600	250,230,800	-	
		42	179.65	42,230	2,295,200	96,398,400	-	
		42	197.56	41,320	2,469,100	103,702,200	-	
		총 1,860	-	-	-	3,346,104,500	-	
	일반분양	139	82.55	58,715	1,466,170	203,797,630	-	
		141	103.07	56,047	1,747,450	246,390,450	-	
		303	117.67	53,378	1,900,020	575,706,060	-	
		총 583	-	-	-	1,025,894,140	-	
	공공주택	매각	306	82.55	-	133,039	40,710,000	-
			21	103.07	-	166,069	3,487,400	-
			10	117.67	-	189,190	1,891,900	-
			총 337	-	-	-	46,089,300	-
		기부채납	25	82.55	-	-	-	-
			5	117.67	-	-	-	-
			총 102	-	-	-	-	-
		소계	총 2,810	-	-	-	4,418,087,940	-
	근린생활시설 등		-	8,518.40	-	-	144,934,062	-
	총 수입		-	-	-	-	4,563,022,002	-

※ 일반분양 분양가는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수준,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여 일반분양가 평균을 55,000천원/3.3㎡으로 추정하며, 주택형별 격차율은 인근 신축아파트 격차를 참작하여 적용

※ 조합원 분양가는 주택형별 일반분양가의 86%를 조합원분양가로 적용

※ 근린생활시설 분양가는 인근지역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 총 지출(사업비) 산출 : 1,720,897,756천원

항 목	금 액(천원)	포함 내용
공사비	1,494,862,711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비(8,000천원/3.3㎡,) 건축물철거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부분 매입부가세
보상비	-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대상자 추정
관리비	3,777,900	추진위원회,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등
설계비	13,115,303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정비가반시설 설계, 기타 설계용역관련비용 등
감리비	27,376,330	건축, 전기, 소방 등
수수료등 기타사업비	80,323,672	안전진단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경계명시분할확정총량비, 감정평가수수료, 기장, 세무회계, 외부감사, 세무조정, 이주관리 및 명도업무, 채권매입비, 분양보증수수료, 광고선전비, 민원처리비 등
각종부(분)담금	13,542,5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및 공사비, 지역난방/도시가스 부담금
법인세	1,100,000	추정법인세 등
예비비	66,250,700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의 예상치 못하여 발생한 제비용
항목별 사업비계	1,700,349,116	-
대여금이자	20,548,640	연 5.00%, 24개월 대여 기간 추정
중도금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이주비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총합계	1,720,897,756	-

※ 상기 추산액은 금회 정비계획(안)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층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저층 아파트	51.90	1,170,000	104.88%	1,227,096	59	1,261,000	33,904	추가분담
					74	1,502,900	275,804	추가분담
					84	1,634,000	406,904	추가분담
					99	1,880,500	653,404	추가분담
					109	2,066,700	839,604	추가분담
					114	2,120,600	893,504	추가분담
					129	2,295,200	1,068,104	추가분담
					142	2,469,100	1,242,004	추가분담
	56.76	1,227,500	104.88%	1,287,402	59	1,261,000	-26,402	환급
					74	1,502,900	215,498	추가분담
					84	1,634,000	346,598	추가분담
					99	1,880,500	593,098	추가분담
					109	2,066,700	779,298	추가분담
					114	2,120,600	833,198	추가분담
					129	2,295,200	1,007,798	추가분담
					142	2,469,100	1,181,698	추가분담
	60.00	1,277,500	104.88%	1,339,842	59	1,261,000	-78,842	환급
					74	1,502,900	163,058	추가분담
					84	1,634,000	294,158	추가분담
					99	1,880,500	540,658	추가분담
					109	2,066,700	726,858	추가분담
					114	2,120,600	780,758	추가분담
					129	2,295,200	955,358	추가분담
					142	2,469,100	1,129,258	추가분담
	64.65	1,457,500	104.88%	1,528,626	59	1,261,000	-267,626	환급
					74	1,502,900	-25,726	환급
					84	1,634,000	105,374	추가분담
					99	1,880,500	351,874	추가분담
					109	2,066,700	538,074	추가분담
					114	2,120,600	591,974	추가분담
					129	2,295,200	766,574	추가분담
					142	2,469,100	940,474	추가분담
	72.75	1,495,000	104.88%	1,567,956	59	1,261,000	-306,956	환급
					74	1,502,900	-65,056	환급
					84	1,634,000	66,044	추가분담
					99	1,880,500	312,544	추가분담
					109	2,066,700	498,744	추가분담
					114	2,120,600	552,644	추가분담
					129	2,295,200	727,244	추가분담
					142	2,469,100	901,144	추가분담

구분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층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고층 아파트	49.14	1,135,000	104.88%	1,190,388	59	1,261,000	70,612	추가분담
					74	1,502,900	312,512	추가분담
					84	1,634,000	443,612	추가분담
					99	1,880,500	690,112	추가분담
					109	2,066,700	876,312	추가분담
					114	2,120,600	930,212	추가분담
					129	2,295,200	1,104,812	추가분담
					142	2,469,100	1,278,712	추가분담
	53.46	1,217,500	104.88%	1,276,914	59	1,261,000	-15,914	환급
					74	1,502,900	225,986	추가분담
					84	1,634,000	357,086	추가분담
					99	1,880,500	603,586	추가분담
					109	2,066,700	789,786	추가분담
					114	2,120,600	843,686	추가분담
					129	2,295,200	1,018,286	추가분담
					142	2,469,100	1,192,186	추가분담
	66.78	1,457,500	104.88%	1,528,626	59	1,261,000	-267,626	환급
					74	1,502,900	-25,726	환급
					84	1,634,000	105,374	추가분담
					99	1,880,500	351,874	추가분담
					109	2,066,700	538,074	추가분담
					114	2,120,600	591,974	추가분담
					129	2,295,200	766,574	추가분담
					142	2,469,100	940,474	추가분담
	71.64	1,492,500	104.88%	1,565,334	59	1,261,000	-304,334	환급
					74	1,502,900	-62,434	환급
					84	1,634,000	68,666	추가분담
					99	1,880,500	315,166	추가분담
					109	2,066,700	501,366	추가분담
					114	2,120,600	555,266	추가분담
					129	2,295,200	729,866	추가분담
					142	2,469,100	903,766	추가분담
상가A동	지층	1,391,000	104.88%	1,458,881	지층	1,510,800	51,919	추가분담
	1층	897,000		940,774	1층	791,900	-148,874	환급
	2층	824,880		865,134	2층	748,700	-116,434	환급
	3층	1,186,500		1,244,401	2층	1,544,300	299,899	추가분담
상가B동	지층	1,597,000		1,674,934	지층	1,898,600	223,666	추가분담
	1층	5,988,500		6,280,739	1층	7,036,100	755,361	추가분담
	2층	784,630		822,920	2층	748,700	-74,220	환급
	3층	1,167,000		1,223,950	2층	1,544,300	320,350	추가분담
복지시설		16,686,000		17,500,277	-	18,946,100	1,445,823	추가분담

- ※ 상가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 상가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 상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가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27,339.5	100.0	-
획 지	소 계	115,234.8	90.5	-
	획지 1	114,234.8	89.7	공동주택 용지
	획지 2	1,000.0	0.8	유치원 용지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2,104.7	9.5	-
	도 로	3,669.7	2.9	-
	공 원	8,435.0	6.6	소공원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합 계	127,339.5	-	127,339.5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47.6	증) 2,687.4	8,435.0	6.6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1,591.9	감) 2,687.4	118,904.5	93.4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양천구 목동 326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35.0 (증 2,687.4)	· 단지 내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326-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904.5 (감 2,687.4)	· 공동주택 획지(대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변경	대로	2	73	3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확폭 - 30m → 33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대로 3-149	대로 3-149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기·종점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 기·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2	중로 2-272	· 단지 내 도로 확폭(1.5m) - 15m → 16.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1.5m
중로 2-274	중로 2-274	· 단지 내 도로 확폭(1.5m) - 15m→18m · 종점 변경	·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획지1 1.5m · 종점 오기 정정
중로 2-276	중로 2-276	· 단지 내 도로 확폭(3m) - 15m → 18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인구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 증가로 기반시설 도로 확폭 - 목동1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3m

2)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㉔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감) 3,399.7	-	서고시422호 (94.12.27)	-
신설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	증) 8,435.0	8,435.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제14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 감) 3,399.7㎡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A	공원	• 공원(신설) - 증) 8,435.0㎡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㉕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감) 2,347.9	-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㉕	12단지 연변녹지	• 녹지(폐지) - 감) 2,347.9㎡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계		-	-	11,020	-
주민공동시설	계	$[500\text{㎡} + (\text{세대수} \times 2\text{㎡})] \times 1.25$	7,650.0 이상	10,480	-
	경로당	$\frac{[2,000\text{세대 이상}]}{725\text{㎡} + (\text{세대수} - 2,000\text{세대}) \times 0.2\text{㎡}}$	887.0 이상	900	지상 1층
	어린이집	$\frac{[2,000\text{세대 이상}]}{725\text{㎡} + (\text{세대수} - 2,000\text{세대}) \times 0.2\text{㎡}}$	887.0 이상	900	지상 1층
	작은도서관	$\frac{[2,000\text{세대 이상}]}{298\text{㎡} + (\text{세대수} - 2,000\text{세대}) \times 0.1\text{㎡}}$	379.0 이상	400	지상 1층
	주민공동시설	-	-	5,000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	-	-	600	지상 (옥외)
	어린이놀이터	$[1,500\text{세대 이상}] 500\text{㎡} + \text{세대수} \times 0.7$	2,467.0 이상	2,600	지상 (옥외)
	다함께돌봄센터	66㎡ 이상	66.0 이상	80	지상 1층
관리사무소		$10\text{㎡} + (\text{세대수} - 50) \times 0.05 \text{ 이상}(50\text{세대 이상}) (100\text{㎡이내})$	100 이내	350	지상 1층
경비실		-	-	190	지상 1층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00\text{㎡} + 2,810\text{세대} \times 2) \times 1.25 = 7,650.0\text{㎡}$ 이상 < 10,480.0㎡ 계획

※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통합심의(협의 등)를 통해 세부용도 확정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27,339.5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26일대	30	-	-	30	-	공동주택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준	상한	법적 상한	
신규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27,339.5	A21-①	114,234.8	신정동 326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10%	249.92% 이하	299.99% 이하	145m 이하 (43층)
			A21-②	1,000.0		유치원부지	50%	관련법규에 따름			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2,810세대 ■ 전체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세대수(공동주택세대)		비율				
			합 계		2,810세대(367세대)		100.0%				
			85㎡이하	45㎡초과~60㎡이하	470세대(331세대)		16.7%				
				60㎡초과~80㎡이하	162세대(21세대)		5.8%				
				80㎡초과~85㎡이하	1,395세대(15세대)		49.6%				
				소 계	2027세대(367세대)		72.1%				
			85㎡초과		783세대		27.9%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 ●재건축소형주택(85㎡이하) 건 : 초과용적률 50% 이상								
			심의완화 사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 지정선	획지1 (공동주택)	●목동동로: 획지선으로부터 4m ●목동로3길: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획지2 (유치원)	●건축한계선 -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4m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건축지정선 후퇴부(4m)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변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 보행 통로	획지1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차량 진출 입구 불허 구간	획지1 (공동주택)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구역 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도로	공원	환산부지면적 (건축물)			
	토지지분①	환산부지②							
	127,339.5	114,234.8㎡	13,419.0㎡	3,669.7㎡	8,435.0㎡	885.2㎡	429.1㎡	659.3㎡	5,088.3㎡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7,671.4㎡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3,419.1㎡ - 659.3㎡ - 5,088.3㎡ = 7,671.4㎡ (순부담률6.3%)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사업면적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7,671.4㎡ ÷ (127,339.5㎡ - 659.3㎡ - 5,088.3㎡) = 6.3%								
공공시설 설치 (공동주택)	①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건축면적 ÷ 전제면적 × 주택용지면적 = 885.2㎡ 59㎡형 = (3,303.0㎡) ÷ (547,519.7㎡ × 114,234.8㎡) = 689.1㎡ 84㎡형 = (939.8㎡) ÷ (547,519.7㎡ × 114,234.8㎡) = 196.1㎡ ②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면적 × 건축비) ÷ 부지가액 = 429.1㎡ ※ 부지가액(원)=평균공시지가(원)×2 59㎡형 = 267.0㎡(지상) + 69.6㎡(지하) =336.6㎡ - 지상 = (지상 연면적(㎡) × 지상 건축비(원)) ÷ 부지가액(원) = (2,081.0㎡ × 2,065,151.8원) ÷ 16,094,000원 = 267.0㎡ - 지하 = (지하 연면적(㎡) × 지하 건축비(원)) ÷ 부지가액(원) = (1,222.0㎡ × 917,272.7원) ÷ 16,094,000원 = 69.6㎡ 84㎡형 = 72.8㎡(지상) + 19.7㎡(지하) = 92.5㎡ - 지상 = (지상 연면적(㎡) × 지상 건축비(원)) ÷ 부지가액(원) = (593.3㎡ × 1,974,343.6원) ÷ 16,094,000원 = 72.8㎡ - 지하 = (지하 연면적(㎡) × 지하 건축비(원)) ÷ 부지가액(원) = (346.5㎡ × 917,272.7원) ÷ 16,094,000원 = 19.7㎡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인센티브(최대 20.0%) = 210% + 20%(공공보행통로10%, 방재안전 5%, 열린단지5%) = 230%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1.0 × β))) = 230.00% × (1 + (1.3 × 1.0 × 0.0638) + (1.0 × 0.0037)) = 249.92%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00% ÷ 230.00% = 1.0 α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획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토지면적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면적 = (12,989.9㎡ - 5,747.6㎡) / 113,349.6㎡ = 7,242.3㎡ / 113,349.6 = 0.0638 β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획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획지면적 = (429.2㎡) / 113,349.6㎡ = 0.0037								
법적 상한용적률	●299.99% 이하(공동주택(법적상한) 337세대 건설에 따른용적률 완화 적용)								

■ 허용용적률 계획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공공보행통로	· 단지 내 2개의 공공보행통로조성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α=1이하) = 210% × (13,074.5㎡ / 114,234.8㎡) × 1 = 24.0%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p 이내	10.0%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조성(지형도면고시) · 담장 미설치구간 - 목동동로변, 목동로3길 변, 목동동로2길 변 및 목동동로4길 변 - 공공보행통로시 · 종점 · 그 외 - 소공원과 단지 연접부	5%p	5%
방재안전	·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설치 시 ※ 추후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5%
합 계	최대 20%p 이내		총 20% 적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면적 확보	-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해당사항 없음	
	화재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개선방안 반영
	-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3개소)
진출입동선	㉠	• 목동동로(대로 2-73호선) 영향저감을 위하여 진출입구 위치 사업지 서측(목동동로2길) 및 동측 이면도로(목동동로4길)상 분산 설치 및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3개소)
	-	• 진출입구 및 사업지 인접 각각부 회전반경 추가 확보 - 회전반경 : R=6.0m 이상 확보
	-	• 학원 및 유치원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Drop-zone 설치(3개소)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	• 단기간 정류장 간격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추가설치안 반영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반영 : 12단지(2개소 추가)
	-	• 보행자 이용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8개소)
	㉢	• 사업지측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사업지 북측(목동동로) : B=4.0m, L=445.0m - 사업지 서측(목동동로2길) : B=6.0m, L=387.0m - 사업지 남측(목동로3길) : B=4.0m, L=216.0m - 사업지 동측(목동동로4길) : B=6.0m, L=151.0m
	㉣	• 사업지 주변 일반 보행자 편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동서간 B=15.0m, 남북간 B=25.0m)
	-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 반영(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 사업지 서측(목동동로2길), 사업지 남측(목동로3길), 사업지동측(목동동로4길) : 자전거도로 1.5m(보도높이형), 식수대(분리대) 1.2m설치 - 사업지 북측(목동동로) 자전거도로 1.5m~3.0m(보도높이형), 식수대(분리대) 1.2m설치
	-	•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0%이상 설치
	-	• 자전거 보관소 주변 CCTV 및 공기주입기 설치
	-	• 법정주차대수 : 3,485대(공동주택 3,437대, 비주거시설 48대) • 주차수요(2030년) : 3,535대(공동주택 3,481대, 비주거시설 54대) • 계획주차대수 : 5,070대(공동주택 5,018대, 비주거시설 52대) - 법정대비 : 145.5% - 수요대비 : 143.4%
주차시설	-	• 장애인주차는 법정주차대수의 3.0% 이상 설치
	-	• 확장형주차는 계획주차대수의 30.0% 이상 설치
	-	• 가족배려주차는 계획주차대수의 10.0% 이상 설치(확장형 50%이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계획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	• 횡단보도 구간에 점자 블럭 횡단보도 턱낮추기 시공
교통 안전 및 기 타	-	• 진출입구부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
	-	• 시거불량 지점 반사경 설치

차.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계획지구내 조경수목 외 녹지는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름 평가제 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
생태면적률	20%이상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20%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계획지구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고효율기 자재 사용 등 계획	-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도로 계획	· 서측, 남측, 동측 방면 폭 1.5m(보도높이형) 설치 · 북측 방면 폭 1.5~3.0m(보도높이형) 설치	-
	자전거보관소	○	·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
일조	수인한도 만족	○	· 대상지: 일반상업지역 · 대상지 인근: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 으로 지정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A21	소 계		121,591.9	감) 6,357.1	115,234.8	-	-
	A21-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6일대	121,591.9	감) 7,357.1	114,234.8	공동주택용지	-
	A21-②		-	증) 1,000.0	1,000.0	유치원 용지	-

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목동12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원	-	증)127,339.5	127,339.5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가칭)목동1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현황	증감	계획	-
			1,860세대	증) 950세대	2,810세대	

거.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공급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신설	획지1	127,339.5	소계	30세대	-		4,242.7㎡
			전용59㎡	25세대	59.95㎡	82.55㎡	3,303.0㎡
			전용84㎡	5세대	84.97㎡	117.67㎡	939.7㎡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정비계획용적률		●249.92%			
법적상한용적률		●299.99%			
국민주택규모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9.99% - 249.92% = 50.07%			
	증가된 용적률의 50%	●50.07% × 0.5 = 25.035%			
	의무 연면적	●114,234.8㎡ × 25.035% = 28,598.68㎡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5㎡	82.55㎡	306세대	25,260.30㎡

구분	내용			
	74.97㎡	103.07㎡	21세대	2,164.47㎡
	84.97㎡	117.67㎡	10세대	1,176.70㎡
	∴ 28,601.47㎡ > 28,598.68㎡(의무면적)			

IV.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 24.12.16.) 심의결과 : 수정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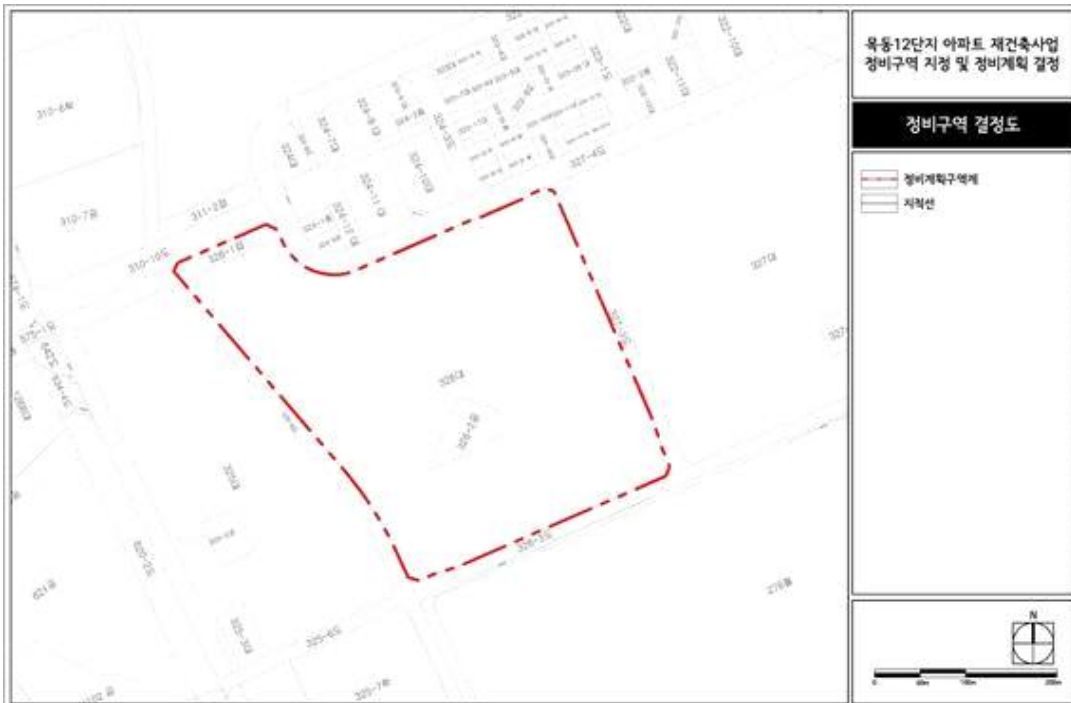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 향후 일반시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할 것	○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 2개소로 조성 계획하였고, 향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래 단서조항을 달고 지역권 설정을 등기에 명시토록 하겠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반영
2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공원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구간 및 전면공지 조성 등에 관한 계획 (시행지침 포함) 유지	○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준수하여 공원을 남동측에 계획하였고, 건축물 배치구간(저층배치구간, 중저층배치구간 등) 및 전면공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3	○ 향후 단지별 녹지시설 유형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 단지 내 녹지시설은 계획되어있지 않으므로, 추후 녹지시설 계획 시 단지별 녹지시설 유형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하겠음.	반영
4	○ 공원의 기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한 공원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 공원조성과, 양천구 공원녹지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V. 열람장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286) 및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8)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동1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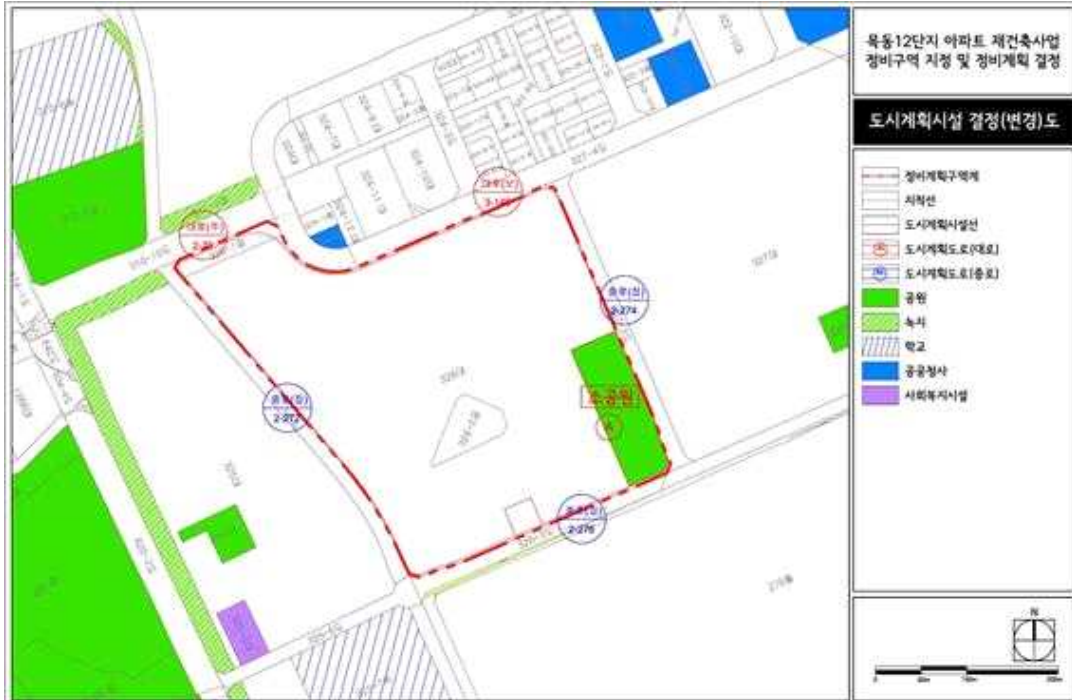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6)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붙임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12 세부지침도(기정)



2) 특별계획구역12 세부지침도(변경)



3)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6호(' 23.3.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6호(' 24.9.2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건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제32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없음	광로	3	13	70~73	주간선 도로	3,630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광장86	-	-	국토부고시 제198호 (1971.4.7.)	지하도로 중복결정구간 변경없음
기정	대로	1	-	37.6~ 70.8	주간선 도로	2,887.4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청담동 139-28	-	-	서울시고시 제2023-66호 (' 23.03.02.)	도로 및 하천 중복결정, 환기구통로 입체적결정
변경	대로	1	-	37.6~ 70.8	주간선 도로	2,887.4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청담동 139-28	-	-		도로 및 하천 중복결정, 남단수직구 변경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삼성동 185-3)	암사동 암사광장 (잠실동1)	자동차 전용 도로	-	국토부고시 제198호 (1971.4.7.)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삼성동 185-3)	암사동 암사광장 (잠실동1)	자동차 전용 도로	-		대로1-(지하)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3	광로3-13	O 대로1- 지하도로와 중복결정사항 변경없음(지하도로 중복결정) O B=70~73m, L=3,630m → B=70~73m, L=3,630m	O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하도로 중복결정사항 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	대로1-	O 남단수직구 위치 변경 O 중복결정사항 일부 변경 → 도로, 하천(한강) O B=37.6~70.8m, L=2,887.4m → B=37.6~70.8m, L=2,887.4m	O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당초 종점부 수직구에서 남단수직구로 위치변경
중로1-136	중로1-136	O 대로1- 지하도로와 중복결정 O B=20~25m, L=15,910m → B=20~25m, L=15,910m	O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남단수직구 변경에 따른 지하도로 중복결정사항 일부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입체적 결정범위					비고
		연장(m)	폭원(m)	기점	종점	높이	
변경 없음	지하 도로	2,887.4	37.6~ 70.8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청담동 139~28	평균해수면 기준이하 최심도 -68.10m부터 평균해수면 기준이상 최고점 +26.74m사이	환기구1개소, 공기정화설비 1개소 포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학여울역 교차로~영동대교 남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대로	1	-	37.6~ 70.8	주간선 도로	2,887.4	84,203.9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청담동 139~28	-	서울시고시 제2024-456호 (' 24.09.26.)	
변경	대로	1	-	37.6~ 70.8	주간선 도로	2,887.4	85,400.2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청담동 139~28	-		

4) 변경 사유서

○ 수직구(남단) 위치 변경 및 중복결정사항 일부 변경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9.7.31.까지

- 7)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8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2-6438-2151)
- 9)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고시도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상정면적㎡	비고
		당초	변경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관리 종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합 계	10필지	20필지			479,911.5				119.0	85,281.2	53,490.0							
강남구 대치동 소 계	7필지	7필지			179,798.8					18,158.1	47,728.0							
1	대치동	995	995	도	97,930.2					17,627.9	46,195.0	서울특별시	대우					
2	대치동	1012-82	1012-82	도	21,341.8							서울특별시	대우					
3	대치동	1012-40	1012-40	도	11,493.2					749.0		서울특별시	대우					
4	대치동	1012-110	1012-110	유	136.0			3.0			3.0	서울특별시	대우					
5	대치동	1012-120	1012-120	도	2,254.2			436.0			4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우					
6	대치동	1012-77	1012-77	도	2,790.4			110.0			110.0	서울특별시	대우					
7	대치동	1011	1011	도	43,853.0			530.2		530.2	2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우					
강남구 삼성동 소 계	3필지	3필지			142,410.3					43,469.3								
1	삼성동	172-66	172-66	도	43,711.9			1,031.3			1,031.3	서울특별시	대우					
2	삼성동	111-8	111-8	도	94,806.0			42,054.8			42,054.8	서울특별시	대우					
3	삼성동	111-185	111-185	도	3,892.4			383.2			383.2	서울특별시	대우					
강남구 청담동 소 계	6필지	10필지			157,702.4				119.0	23,653.8	5,762.0							
1	청담동	77-76	77-76	도	24,307.1			382.9			382.9	서울특별시	대우					
2	청담동	77-4	77-4	도	52,810.4			17,755.9			17,755.9	서울특별시	대우					
3	청담동	139-28	139-28	도	14,026.2			3,682.1		1,432.0	1,432.0	서울특별시	대우					
4	청담동	138	138	제	25,263.0			589.1			124.0	서울특별시	대우					
5	청담동	107-1	107-1	잡	8,005.0				119.0	805.0	3,051.0	서울특별시	대우					
6	청담동	107	107	잡	963.6						361.0	서울특별시	대우					
7	청담동		340-2	도	9,515.0					8.0		환경부	대우					신규편입
8	청담동		343-2	도	5,239.0					3.0		환경부	대우					신규편입
9	청담동		139-25	도	4,184.5						20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우					신규편입
10	청담동		139-13	도	13,388.6						44.0	서울특별시	대우					신규편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6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4호(2020.4.16.)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4호(202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6호(2020.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8호(202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4호(2021.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4호(2021.12.16.)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4호(2022.7.7.)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8호(2022.8.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7호(2022.9.22.)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3호(202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9호(2023.4.6.)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32호(2024.5.9.)로 변경 고시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 대표자 : 최 욱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36길 46 리더스캐슬 201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대처
 - 도심 접근성 증대로 지역 개발 촉진 및 1, 2, 4~7호선,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 구 간 : 왕십리역(2, 5호선, 국철, 분당선)~제기동역(1호선)~고려대역(6호선)~미아사거리역(4호선)~월계역(경원선)~하계역(7호선)~상계역(4호선)
 - 사업규모
 - 연 장 : 13.4km (정거장 16개소, 환기구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0,097.7억원(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변경 : 착공일로부터 76개월(2021. 7. 15. ~ 2027. 11. 11.)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7. 소요 토지 확보 및 이용 계획(변경없음)

○ 소요 토지 확보 : 보상 관련 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

○ 소요 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9. 변경사유

○ 인·허가 기관 요구, 주무관청 인정, 불가항력 사유, 법령 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 금회 변경 사항을 제외한 기 고시 사항은 변경 없음.

10. 실시계획 변경 관련 서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02-966-817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36길 46 리더스캐슬 201호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 취지(변경없음)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철도(변경없음)

(1) 본선(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성동구 행당동 192-40번지 일원 (2, 5호선 왕십리역)	노원구 상계동 169-34번지 일원 (4호선 상계역)	응두역 (2호선) 제기동역 (1호선) 고려대역 (6호선) 미아사거리역 (4호선)	13,410	139,980.7	2020.4.16. (서울특별시 제2020-154호)	•철도 일부중복 〈2호선 응두역[응두동 47-1번지], 6호선 고려대역 [제기동 136-11번지 일원], 4호선 미아사거리역[미아동 40-6번지 일원], 1호선 본선[제기동 65번지, 월계동 259-1번지], 6호선 본선 [중암동 29-18번지 일원], 4호선 본선 [미아동 42-199 번지 일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월계역 (1호선) 하계역 (7호선) 상계역 (4호선)				원], 7호선 하계역 [하계동 273-5번지] •공원 일부중복 〈공원[하월곡동 230-1번지], 공원 [장위동 산3-104번지], 북서울 꿈의 숲 공원[반동 산28-8번지 일원], 월계 근린공원[월계동 산106-6번지], 샛갈봉 근린공원[중계동 356번지]〉 •녹지 일부중복 〈경관녹지[용두동 791-2번지], 완충녹지 [하계동 256-2번지]〉 •공공공지 일부중복 〈공공공지[제기동 728-3번지]〉 •도로 일부중복 〈고산자로[행당동 192-40번지 일원], 왕산로 [용두동 47-1번지 일원], 제기로 [제기동 856번지], 중앙로[종암동 12-33번지 일원], 도봉로 [미아동 40-6번지 일원], 월계로 [월계동 539-20번지 일원], 한글비석로[중계동 391번지 일원]) •광장 일부중복 〈교통광장 [월계동 313번지 일원], 광장 [하계동 312-11번지 일원]〉 •하천 일부중복 〈청계천[마장동 610-10번지 일원], 정릉천[제기동 122-388번지 일원], 월곡천[하월곡동 104-134번지 일원], 우이천[월계동 862번지 일원], 중랑천[월계동 235-10번지 일원], 당현천[상계동 173-19번지 일원]〉 •자동차검사시설 일부중복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하계동 252번지]〉

※ 본선 면적은 정거장, 차량기지 중복면적을 제외함

● 입체적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철도	길음동 34-6번지 일대	길이	6.9~22.8m	-	6.9~22.8m	2022.3.10. (서울시 제2022-111호)	
				폭	2.7~28.1m	-	2.7~28.1m		
				높이 (해발고도)	22.46~31.10m	-	22.46~31.10m		
				면적	375.8㎡	-	375.8㎡		

(2) 정거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6,128.6	-	46,128.6		
기정	101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성동구 행당동 192-40번지 일원	5,263.2	-	5,263.2	2020.4.16. (서울특별시 제2020-154호)	왕십리역[행당동 192-3번지], 공공청사 <성동구청> [행당동 7번지], 교통광장 [행당동 192-3번지], 고산자로 [고산동 417번지 일원] 중복결정
기정	102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성동구 마장동 474-28번지 일원	2,178.9	-	2,178.9		고산자로[마장동 474-28번지], 청계천로 10나길[마장동 450-65번지] 중복결정
기정	103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동대문구 용두동 47-1번지 일원	2,392.1	-	2,392.1		제기역[제기동 65번지], 고산자로 [용두동 47-1번지], 고산자로34번길 [용두동 47-7번지], 왕산로 [용두동 689-1번지] 중복결정
기정	104	철도	도시철도 (104정거장)	동대문구 제기동 136-11번지 일원	3,522.0	-	3,522.0		고려대역[제기동 136-11번지 일원], 고산 자로[제기동 136-207번지] 중복결정
기정	105	철도	도시철도 (105정거장)	성북구 종암동 12-23번지 일원	2,268.0	-	2,268.0		종암로[종암동 12-23번지 일원], 종암로 9길 [종암동 45-215번지] 중복결정
기정	106	철도	도시철도 (106정거장)	성북구 종암동 3-70번지 일원	2,652.3	-	2,652.3		종암로 [종암동 3-70번지 일원], 정릉천 [종암동 3-1288번지] 중복결정
기정	107	철도	도시철도 (107정거장)	성북구 하월곡동 200번지 일원	2,729.2	-	2,729.2		종암로[하월곡동 200번지 일원], 광장[하월곡동 216번지 일원], 동소문로[하월곡동 216-1번지] 중복결정
기정	108	철도	도시철도 (108정거장)	성북구 하월곡동 산1-1번지 일원	2,403.8	-	2,403.8		월계로 [하월곡동 98-7번지 일원] 중복결정
기정	109	철도	도시철도 (109정거장)	성북구 장위동 310-22번지 일원	3,055.5	-	3,055.5		월계로[반동 97-1번지 일원], 돌곶이로[장위동 319-3번지], 북서울 꿈의숲 공원[반동 95-7번지 일원], 공원 [장위동 319-2번지] 중복결정
기정	110	철도	도시철도 (110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860-7번지 일원	2,383.2	-	2,383.2		월계로[월계동 860-7번지 일원], 우이천로 [월계동 860-16번지], 월계로 44길[월계동 937번지], 경관녹지 [월계동 865-7번지] 중복결정
기정	111	철도	도시철도 (111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313번지 일원	5,734.5	-	5,734.5	2020.4.16. (서울특별시 제2020-154호)	월계역[월계동 263-6번지], 월계로[월계동 313번지 일원], 월계로 55길[월계동 320-10 번지], 매봉어린이공원 [월계동 320-6번지], 월계건강관리센터 [월계동 321-4번지], 원충녹지 [월계동 321-6번지] 중복결정
기정	112	철도	도시철도 (112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284-2번지 일원	2,460.5	-	2,460.5		하계역[하계동 273-5번지 일원], 한글비석로[하계동 284-2번지], 동일로[하계동 273-5번지]중복결정
기정	113	철도	도시철도 (113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266번지 일원	1,986.8	-	1,986.8		한글비석로[하계동 266번지] 중복결정
기정	114	철도	도시철도 (114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391번지 일원	2,262.1	-	2,262.1		한글비석로[중계동 391번지] 중복결정
기정	115	철도	도시철도 (115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371번지 일원	758.2	-	758.2		한글비석로[중계동 391번지], 덕릉로 76길[중계동 371번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6	철도	도시철도 (116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606-3번지 일원	4,078.3	-	4,078.3		한글비석로[중계동 606-3번지 일원], 한글비석로19길 [중계동 157-60번지 일원], 한글비석로20길 [중계동 157-45번지 일원], 한글비석로22길 [상계동 173-6번지], 덕릉로83길 [중계동 606-1번지] 중복결정

(3) 차량기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노원구 중계동 368-7번지 일원	-			20,200.5	2020.1.30. (서울특별시 제2020-41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중계동 368-6번지 일원], 완충녹지 [중계동 369-11번지], 대로2-74 [한글비석로 - 중계동 391번지], 소로1류 [중계동 368-7번지] 중복결정

※ 차량기지 면적은 정거장, 본선 중복면적을 제외함

나) 도로(변경없음)

구분	위 치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1	국지 도로	55	대로2-74 중계동 391	중계동 368	일반 도로		2020.1.30. (서울특별시 제2020-41호)	•철도 중복 (동북선 차량기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7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고 시 명: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번지 1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 재난예방(관리) 및 정비
4. 고시일자: 2025. 03. 13.
5. 지정대상지의 소재 및 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붙임1】 과 같음
6. 지정대상지 지형(구역)도면: 【붙임2】 와 같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3】 과 같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지방재과 (☎02-2133-2182),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3783-59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토지 조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계				12,219	560			
2025-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신5-85	임야	12,219	56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붙임 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5.7.20.>

번호: 2025년도 제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보기>
[Red Hatched Box]: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

※ 위 그림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임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임	12,219.0	560.0

400mm×500mm[백상지 80g/㎡(제활용용)]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8호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이하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원	-	증) 41,515	41,51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41,515.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433.0	15.6	
	도 로	2,791.0	6.7	
	공 원	3,642.0	8.9	주차장과 중복결정
	공공청사/문화시설	-	-	획지1 내 입체결정
	공공임대상가	-	-	획지1
획지	소 계	35,082.0	84.4	
	획 지1	35,082.0	84.4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1,515	-	41,515	10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119	감) 19,627	492	1.19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55	감) 15,455	5,500	13.2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8,500	18,500	44.56	
	준주거지역	-	증) 16,582	16,582	39.94	
준공업지역		441	-	441	1.06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가리봉동 778-5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제2종일반	3,009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부분(도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	가리봉동 87-171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제3종일반	15,967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G밸리 배후지로의 성장을 위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	가리봉동 25-1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2,533	
-	가리봉동 25-101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준주거	651	•역세권 입지를 고려한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	가리봉동 89-91번지 일대	제2종일반	준주거	15,931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103.14% → (8,781.5억 - 6,100.1 억) ÷ 2,599.7억 x 100 = 103.14% - 총수입 추정: 8,781.5억 - 총지출 추정: 6,100.1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2,599.7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2023년) x 보정률(1.87)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소유자: 토지가액+건물가액 - 토지=토지면적 x 개별공시지가(2023년) x 보정률(1.74) - 건물=건물면적 x 건물 재조달 원가 x 잔존년수 ÷ 내용년수 ※ 건물의 경우 원가법에 따르되, 건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관찰감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함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 (천원)</th><th>추정권리가액 (b)</th><th>추정분담금 (a-b)</th></tr><tr><td>전용39㎡형 (공급면적:54.66㎡)</td><td>482,197</td><td rowspan="6">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3.14%)</td><td rowspan="6">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분담/-:환급)</td></tr><tr><td>전59㎡형 (공급면적:81.46㎡)</td><td>749,615</td></tr><tr><td>전용74㎡형 (공급면적:102.23㎡)</td><td>867,097</td></tr><tr><td>전용84㎡형 (공급면적:115.45㎡)</td><td>944,474</td></tr><tr><td>전용98㎡형 (공급면적:134.62㎡)</td><td>1,031,158</td></tr><tr><td>전용104㎡형 (공급면적:147.27㎡)</td><td>1,311,149</td></tr></table>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 수준으로 결정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 (천원)		추정권리가액 (b)	추정분담금 (a-b)	전용39㎡형 (공급면적:54.66㎡)	482,197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3.14%)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분담/-:환급)	전59㎡형 (공급면적:81.46㎡)	749,615	전용74㎡형 (공급면적:102.23㎡)	867,097	전용84㎡형 (공급면적:115.45㎡)	944,474	전용98㎡형 (공급면적:134.62㎡)	1,031,158	전용104㎡형 (공급면적:147.27㎡)	1,311,149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 (천원)		추정권리가액 (b)	추정분담금 (a-b)																		
전용39㎡형 (공급면적:54.66㎡)	482,197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3.14%)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분담/-:환급)																		
전59㎡형 (공급면적:81.46㎡)	749,615																				
전용74㎡형 (공급면적:102.23㎡)	867,097																				
전용84㎡형 (공급면적:115.45㎡)	944,474																				
전용98㎡형 (공급면적:134.62㎡)	1,031,158																				
전용104㎡형 (공급면적:147.27㎡)	1,311,149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중후 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120	주 간선	35,096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1969. 8. 7 (건고 503)	
변경	광로	3	19	40~120	주 간선	35,096 (219)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1969. 8. 7 (건고 503)	부체도로 폭원확장
기정	중로	1	58	20	간선	2,205	구로동 대2-16	구로동 광3-19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 198)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21	가리봉동 30-25	가리봉동 30-17	일반 도로		1996.01.17 (구고 2)	
기정	소로	3	5	4	국지	101	가리봉동 778-5	가리봉동 774-4	일반 도로		2002.02.25 (구고 16)	
변경	소로	2	1	8	국지	235 (235)	가리봉동 30-25	가리봉동 25-294	일반 도로		1996.01.17 (구고 2)	노선통합,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	6	국지	91	가리봉동 84-2	가리봉동 121-31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440)	
변경	소로	2	2	8	국지	104 (104)	가리봉동 84-2	가리봉동 121-31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440)	폭원확장 노선연장
폐지	소로	3	4	6	국지	230	가리봉동 26-4	가리봉동 25-106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 440)	

※ ()는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9	광로3-19	•부체도로폭원 확장 - B = 6m → 8m - L = 219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남부순환로 부체도로(남부순환로105길) 폭원 확장
소로2-127 소로3-5	소로2-1	•노선 통합 및 선형변경 - B = 4 ~ 8m → 8m - L = 235m	•영일초등학교와 남구로역을 연결하고, 주변 보행 및 자동차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기존 도로 두 개소를 하나로 병합하여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확장
소로3-	소로2-2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B = 6m → 8m - L = 91m → 104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폭원 확장
소로3-4	-	•도로 폐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구역 내 도로 폐지

나.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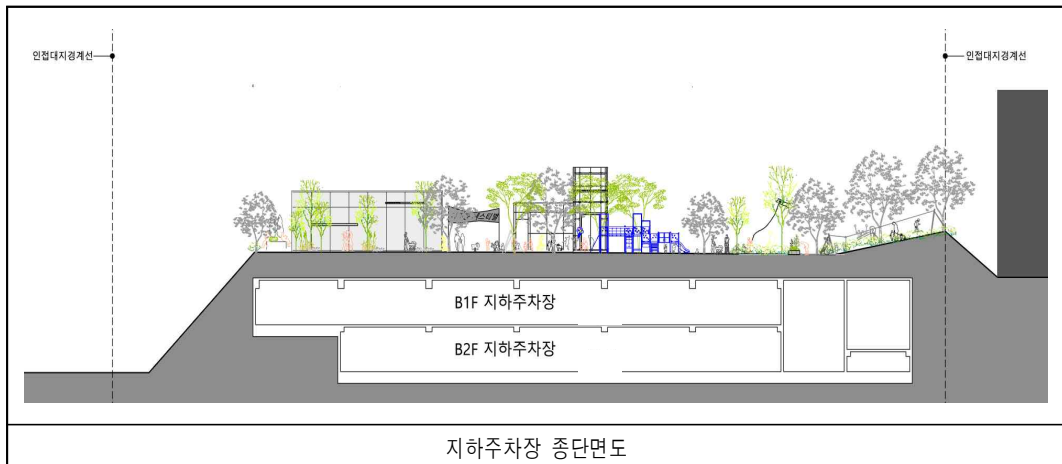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가리봉동 23-3	-	증)2,156	2,156	-	공원 하부 중복결정 (지하1,2층,연면적2,100㎡)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2,156㎡ - 주차대수 : 50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대체 및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연면적 : 2,100㎡, 도시재생대체시설 950㎡ 포함)

■ 주차장 예시



다. 철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도봉동	온수동	-	40.5	-	1993. 3. 18 (서고-221)	

라.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가리봉동 23-3 일대	-	증)2,156	2,156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2	공원	가로공원	가리봉동 88-3 일대	-	증)1,486	1,486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가리봉동 23-3 일대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156㎡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2	공원	가로공원	가리봉동 88-3 일대	•가로공원 신설 - 면적 : 1,486㎡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가로공원 신설

마. 하수도

1)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	하수도	가리봉동 597-3	가리봉동 30-3	4	26	1996.01.17 (구고 2)	-

바. 공공청사/문화시설 입체 결정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1	공공청사1	가리봉동 88-4 일대	-	증)500.0	500.0	-	-
신설	2	공공 청사2	공공청사2	가리봉동 88-4 일대	-	증)1,000.0	1,000.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1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면적 : 500㎡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기존 주민편의시설(모아래마을활력소)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2	공공청사2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면적 : 1,000㎡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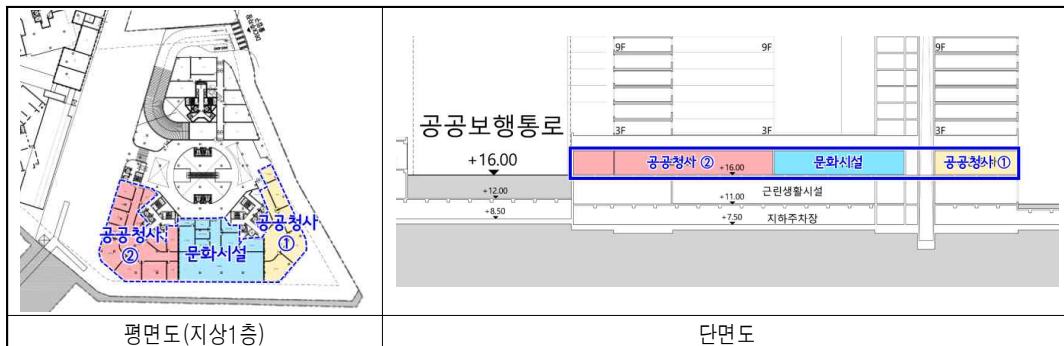
2)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문화 시설	문화시설	가리봉동 88-4 일대	-	증)1,000.0	1,000.0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면적 : 1,000㎡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 분	용 도	건축물 기부채납	비 고
건축물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상가 신설 -연면적 : 725㎡ -대지지분 : 197.9㎡ -토지환산면적 : 207.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 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 - ㎡당 공사비 : 2,319천원(부가세 포함)
도로 부속시설	남부순환도로변 보행육교 개선 설치	•보도육교 공사비 : 3,524.6백만원 (면적 : 250㎡, 승강기2대) - 토지환산면적 : 477.7㎡	(부가세 제외 금액임)

※보행육교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설계비,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의향에 따라 연장 설치 가능함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계획면적 (㎡)
			법정		
			기 준	면적(㎡)	
합계		-	-	-	17,780.99
주민 공동 시설	소개	-	-	-	4,046.88
	경로당	획지	1,000세대 이상	171.40 이상	258.00
	어린이놀이터	획지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349.80 이상	1,688.00
	어린이집	획지	1,000세대 이상	367.65 이상	552.00
	주민운동시설	획지	-	-	706.00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전용면적 최소 66㎡이상	92.40 이상	110.88
	작은도서관	획지	1,000세대 이상	100.00 이상	250.00
	돌봄시설(무상임대)	획지	-	-	482.00
공공임대상가		획지	(구로구 기부채납)	-	725.00
근린생활시설		획지	-	-	11,181.11
부대 시설	소개	-	-	-	1,828.00
	관리사무실	획지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	68.20	300.00
	주민공동시설	획지	-	-	1,478.00
	경비실	획지	-	-	50.00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1,515	가리봉동 87-177 번지 일대	244	-	-	244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용도 지역 구분	건폐율 (%)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법적 상한		
신설	가리봉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41,515	획지 1	35,082	가리봉동 87-177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평균	50.00	273.7	347.15	120m이하 (39층이하)	
							제3종 일반	50.00	262.1	299.90		
							준 주거	50.00	286.8	399.8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주택공급계획 : 1,214세대											
	구분		세대수		구분	건립규모	임대주택					
			세대수(세대)	비율(%)								
	계		1,214		100.00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926	139	109	30	
	60㎡이하		552		45.46							
	60~85㎡이하		605		49.83							
	85㎡초과		57		4.71							
	구성비 (%)		100.00		15.0		11.8		3.2			
	임대주택 구성비(%)		-		100.00		78.4		21.6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 계획 95.30%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계획 세대수의 15.0%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기준 : 임대30%이상 또는 전체5%이상]▶계획 78.4%, 11.8%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288세대) 제외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 초과용적률의 50%이상]▶계획 50.05%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				
273.7%		347.15%		73.45%		36.725%		12,897.323㎡ (12,883.86㎡)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완화 20.0% (40㎡이하 10.0%, 50~60㎡이하 10%)											
•허용용적률(29.6%) : 공공보행통로7.5%, 열린단지5%, 층간소음해소5%, 돌봄시설2.5%												
사업성 보정계수 1.48(9.6%)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를 완화 : 5% 이상 (계획 9.78%)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동거리 완화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												
•임대주택 건설(도정법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사업대상지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6m											
•도시철도 통과구간 상부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12m)												
기타 사항												

*남구로역 지하철출입구는 향후 사업시행자 의함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개선 설치 가능함

나. 용적률 계획

1)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1,405.0

18,500.0

3,102.9

535.6

210.8

1,571.5

지속가능발전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3,102.9㎡ + 535.6㎡ - 210.8㎡ - 1,571.5㎡ = 1,856.2㎡(8.67%)
용도지역 상향면적 대비 10.03%

신설
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부지
(토지)
면적

•토지이용 : 도로 749.0㎡, 공원 : 2,156.0㎡
•공공임대상가 토지지분 : 197.9㎡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표준건축비(원/㎡) X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1,150.0 / 7,378,000 = 328.5㎡

표준건축비	2,319,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
시설연면적	1,150.0㎡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공공임대상가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X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725.0 / 7,378,000 = 207.1㎡

표준건축비	2,319,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
시설연면적	725.0㎡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 환산부지면적 산정시 표준건축비는 부가세 제외하여 산정

기준용적률

•210% : 190% + 20.0% (기준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239.6% : 공공보행통로7.5%, 열린단지5%, 층간소음해소5%, 돌봄시설2.5%
사업성 보정계수 1.48(9.6%)

정비계획
(상향)
용적률

•262.1%=(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사업성보정계수)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 토지)+(허용용적률x0.7xα 건축물)
=(190%+20%+20%+9.6%)+(210%x1.3x0.924x0.07215)
(+210%x0.7x0.02926)

•α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 토지 : 0.07215 = 1,320.6 / 18,302.1(18,500.0-197.9)
- α 건축물 : 0.02926 = 535.6 / 18,302.1(18,500.0-197.9)

법적
상향용적률

•299.90%이하

2) 준주거지역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환산 (㎡)	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0,110.0	16,582.0	4,210.5	1,191.9	1,223.2	861.7
기타도시계획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 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4,210.5㎡ + 1,191.9㎡ - 1,223.2㎡ - 861.7㎡ = 3,317.5㎡(16.5%) 용도지역 상향면적 대비 20.00%					
	신설 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부지 (토지) 면적	•토지이용 : 도로 2,042.0㎡, 공원 1,486.0㎡ •건축물 토지지분 : 주민편의시설 136.5㎡, 보건지소 273㎡, 도서관 273㎡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주민편의시설 환산부지 면적=표준건축비(원/㎡)X시설 연면적(㎡)/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500 / 7,378,000 = 142.8㎡				
			표준건축비	2,319,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		
			시설연면적	500㎡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보건지소 환산부지 면적=표준건축비(원/㎡)X시설 연면적(㎡)/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1,000 / 7,378,000 = 285.7㎡					
		표준건축비	2,319,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			
			시설연면적	1,000㎡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도서관 환산부지 면적=표준건축비(원/㎡)X시설 연면적(㎡)/부지가액(원/㎡) = 2,319,000 x 10/11 x 1,000 / 7,378,000 = 285.7㎡							
표준건축비	2,319,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건축비					
	시설연면적	1,000㎡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보행육교 환산부지 면적=표준건축비(원/㎡)X시설 연면적(㎡)/부지가액(원/㎡) = 3,877,050,000 x 10/11 x 7,378,000 = 477.7㎡							
표준건축비	14,352,000원/㎡	▷서울시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보행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방안 기준					
	시설면적	250㎡ / 승강기2대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7,378,000원/㎡	▷구역내 평균공시지가(3,689,000원/㎡ X 2)				
※ 환산부지면적 산정시 표준건축비는 부가세 제외하여 산정							
기준용적률	•210% : 190% + 20.0% (기준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239.6% : 공공보행통로7.5%, 열린단지5%, 층간소음해소5%, 돌봄시설2.5% 사업성 보정계수 1.48(9.6%)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286.8%=(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사업성보정계수)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허용용적률x0.7xα건축물) =(190%+20%+20%+9.6%)+(210%x1.3x0.994x0.13368) +(210%x0.7x0.07496) •α=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토지 : 0.13368 = 2,125.6 / 15,899.5(16,582.0-682.5) - α건축물 : 0.07496 = 1,191.9 / 15,899.5(16,582.0-682.5)						
법적 상한용적률	•399.87%이하						

3) 가중치 산출근거

구분		현행 용도지역	계획 용도지역	면적 (㎡)	무상 양도(㎡)	순부담 (A)(㎡)	허용 용적률(B)	A x B	토지 가중치
계		-	-	7,313.40	3,867.2	3,446.2	-	7,001.36	-
제3종	소 계	-	-	3,102.9	1,782.3	1,320.6	194.07%	2,562.94	0.924
	도로 공원	제2종(7층)	제3종 일반	2,733.0	1,681.4	1,051.6	190.0%	1,998.04	
		제2종일반		172.0	100.9	71.1	210.0%	149.31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	제3종 일반	197.9	-	197.9	210.0%	415.59	
준주거	소 계	-	-	4,210.5	2,084.9	2,125.6	208.81%	4,438.42	0.994
	도로 공원	제2종(7층)	준주거	938.0	811.3	126.7	190.0%	240.73	
		제2종일반		2,149.0	832.6	1,316.4	210.0%	2,764.44	
		준공업		441.0	441.0	-	-	-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	준주거	682.50	-	682.50	210.00%	1,433.25	

4) 기준용적률 완화

항 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소형 주택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54.707\text{㎡}(39\text{㎡ 공급}) \times 65\text{세대} / 35,082\text{㎡}(\text{대지}) = 10.0\%$	최대 10%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81.527\text{㎡}(59\text{㎡ 공급}) \times 44\text{세대} / 35,082\text{㎡}(\text{대지}) = 10.0\%$	최대 10%

5)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 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alpha = 1$이하 - 적용 제3종일반 : $190.0\% \times (735.0 / 18,500.0) \times 1 = 7.5\%$ 준 주 거 : $190.0\% \times (659.0 / 16,582.0) \times 1 = 7.5\%$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 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적용 :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 5.0%	5%p 이내
층간소음해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기준 : 1등급 5%, 2등급 3% - 적용 : 1등급 5%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Xα * $\alpha = 1$이하 - 적용 : $190.0\% \times (482 / 3,660.0) \times 0.1 = 2.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1.0~2.0) - 적용 : $5,861,129 / 3,971,428 = 1.475 \approx 1.48$ (9.6%)	1.0~2.0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규모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 임대 30%이상 또는 전체의 5%이상 •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비율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제외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총 세대수	926	-	전체 세대수(1,214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288세대) 제외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139	100.0	전체 세대수(법제54조적용제외)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법제54조의1항적용제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926 \times 15\% = 138.9 \leq 139$ 세대
40㎡ 이하	109	78.4	임대주택의 30% 이상 ($139 \times 30\% = 41.7 \leq 112$ 세대) 총 세대수의 5% 이상 ($926 \times 5\% = 46.3 \leq 112$ 세대)
40㎡ 이상	30	21.6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규모

구 분		계 획			
계획기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비율 : 초과용적률의 50%이상			
부지면적		35,082.00㎡			
정비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		347.15%			
정비계획 용적률		273.7%			
확보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347.15\% - 273.7\% = 73.45\%$			
	증가된 용적률의 50%	$73.45\% \times 50\% = 36.725\%$			
	의무면적	$35,082.00\text{㎡} \times 36.725\% = 12,883.86\text{㎡}$ 이상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면적		전용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	81.527㎡	99세대	8,071.173㎡
		74㎡	102.212㎡	28세대	2,861.936㎡
		84㎡	115.542㎡	17세대	1,964.214㎡
		계		144세대	12,897.323㎡
		→ 12,897.323㎡ > 12,883.86㎡			

※ 공공주택 및 소형·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화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	
	산사태	• 해당없음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가.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현존식생도 : 시가지지역 ·비오톱유형 : 주거지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도 : 5등급 ·녹지공간 확충 필요	·공원조성, 조정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비오톱 공간 조성
	나.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음 ·서측 안양천과 동측 도림천 생태공원과의 생태 적 가교환경 형성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조정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 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생 활 환경	토 지 환 경	다. 토지 이용	○	·서남권 생활권, 가산대림광역 중심, 구로디지털단지 주거 생활권에 해당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주거환경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공원) 확보 등 생활권 발전 목표에 부합
		라.토양	○	·구로구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사업대상지 내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점이 없음 ·공사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	·공사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
		마.지형· 지질	○	·표고차 17.6m ·평균 경사도 4.42° ·공사시 부지조성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사토가 발생함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 변동 등 물리적 변화 최소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 처리
	물 환 경	바.물순환 (수리·수문)	○	·강우수의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 어려움 ·녹지조성, 투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물순환공 간 확보 필요	·효율적인 물순환을 위해 계획지구 내 생태면적을 31.19%를 확보함
	기 후 대 기 환 경	사.바람, 열	○	·풍속평균 2.4m/s ·33층의 고층 건축물을 계획함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를 계획함
		아.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공사시: 먼지저감 대책 실행 ·운영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정화수종 선택)
	기 타	자.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 및 생활폐기물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 해체 노력 ·운영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제고
		차.소음· 진동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80미터 이내 영향권)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차음성능 우수한 창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
		카.경관	○	·중고층 건물배치로 돌출경관리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스카이라인 이 완화된 것으로 예상됨	·서측의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연출, 대상지 외곽 조정 식재계획을 통해 가로녹지를 상향
		타.휴식 및 여가 공간	○	·관내 공원 108개소 ·인근 공원 분포 저조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
		파.보행 친화공간	○	·정비되지 않은 골목길 조성으로 원활한 통행 어려움	·계획지구 내 가로·세로 보행통로 조성하여 효율 적인 보행동선 확보
		하.일조 장애	○	·일조영향예측결과 계획지구 북측의 주거시설에 일조침해 발생	·영일초등학교에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계획 수립 ·일조침해세대 보상방안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 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가칭)	604세대 (현황:610세대, 계획:1,214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영일초등학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200m 이내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사업시기 및 예방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착공 ~ 공사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범죄예방시설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원	-	증) 41,515	41,5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1,515	-	41,515	10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119	감) 19,627	492	1.19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55	감) 15,455	5,500	13.2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8,500	18,500	44.56	
	준주거지역	-	증) 16,582	16,582	39.94	
준공업지역		441	-	441	1.06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가리봉동 778-5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제2종일반	3,009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부분(도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	가리봉동 87-171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제3종일반	15,967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G밸리 배후지로의 성장을 위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	가리봉동 25-1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2,533	
-	가리봉동 25-101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	준주거	651	•역세권 입지를 고려한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	가리봉동 89-91번지 일대	제2종일반	준주거	15,931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120	주 간선	35,096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1969. 8. 7 (건고 503)	
변경	광로	3	19	40~120	주 간선	35,096 (219)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1969. 8. 7 (건고 503)	부체도로 폭원확장
기정	중로	1	58	20	간선	2,205	구로동 대2-16	구로동 광3-19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 198)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21	가리봉동 30-25	가리봉동 30-17	일반 도로		1996.01.17 (구고 2)	
기정	소로	3	5	4	국지	101	가리봉동 778-5	가리봉동 774-4	일반 도로		2002.02.25 (구고 16)	
변경	소로	2	1	8	국지	235 (235)	가리봉동 30-25	가리봉동 25-294	일반 도로		1996.01.17 (구고 2)	노선통합,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	6	국지	91	가리봉동 84-2	가리봉동 121-31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440)	
변경	소로	2	2	8	국지	104 (104)	가리봉동 84-2	가리봉동 121-31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440)	폭원확장 노선연장
폐지	소로	3	4	6	국지	230	가리봉동 26-4	가리봉동 25-106	일반 도로		1979.10.15 (서고 440)	

※ ()는 구역 내 연장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9	광로3-19	- 부체도로폭원 확장 - B = 6m → 8m - L = 219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남부순환로 부체도로(남부순환로105길) 폭원 확장
소로2-127 소로3-5	소로2-1	- 노선 통합 및 선형변경 - B = 4 ~ 8m → 8m - L = 235m	영일초등학교와 남구로역을 연결하고, 주변 보행 및 자동차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기존 도로 두 개소를 하나로 병합하여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확장
소로3-	소로2-2	-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B = 6m → 8m - L = 91m → 104m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 폭원 확장
소로3-4	-	도로 폐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구역 내 도로 폐지

나.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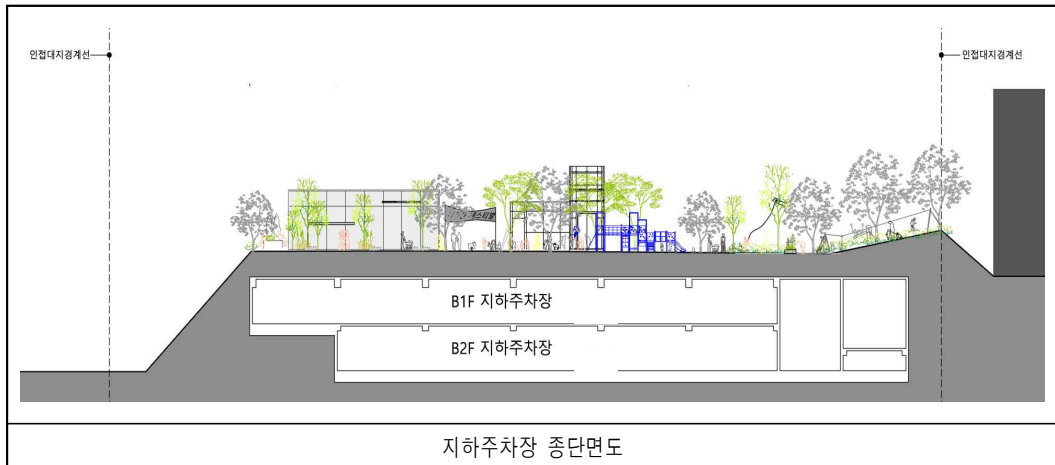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가리봉동 23-3	-	증)2,156	2,156	-	공원 하부 중복결정 (지하1,2층,면면적2,100㎡)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2,156㎡ - 주차대수 : 50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대체 및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면면적 : 2,100㎡, 도시재생대체시설 950㎡ 포함) •공원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예시



다. 철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도봉동	온수동	-	40.5	-	1993. 3. 18 (서고-221)	

라.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가리봉동 23-3 일대	-	증)2,156	2,156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2	공원	가로공원	가리봉동 88-3 일대	-	증)1,486	1,486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가리봉동 23-3 일대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156㎡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2	공원	가로공원	가리봉동 88-3 일대	•가로공원 신설 -면적 : 1,486㎡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가로공원 신설

마. 하수도

1)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	하수도	가리봉동 597-3	가리봉동 30-3	4	26	1996.01.17 (구고 2)	-

바. 공공청사/문화시설 입체 결정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1	공공청사1	가리봉동 88-4 일대	-	증)500.0	500.0	-	-
신설	2	공공 청사2	공공청사2	가리봉동 88-4 일대	-	증)1,000.0	1,000.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1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연면적 : 500㎡ -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기존 주민편의시설(모아래마을활력소)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2	공공청사2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연면적 : 1,000㎡ -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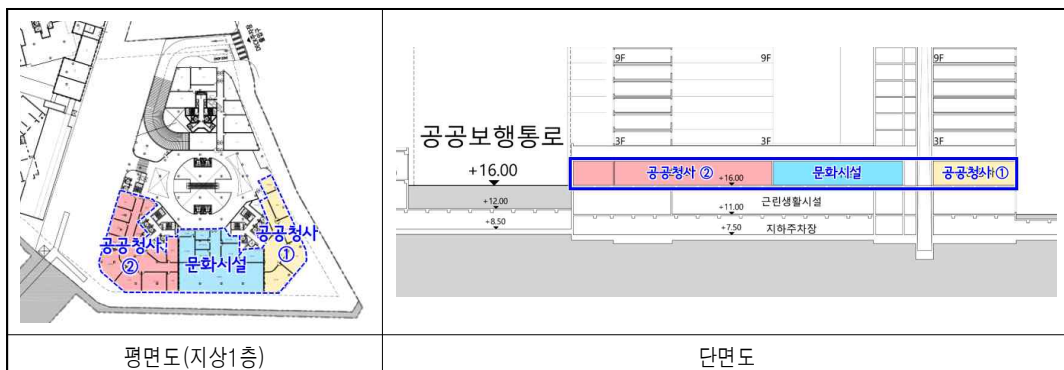
2)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문화 시설	문화시설	가리봉동 88-4 일대	-	증)1,000.0	1,000.0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연면적 : 1,000㎡ - 층수 : 지상1층, 지하2층	구로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 설	획지1	35,082	가리봉동 87-177	35,08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면적(㎡)	주용도	비 고
신 설	획지1	35,0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비고 (개발가능 용적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00%	239.60%	262.1%	299.90%	- (300.00%)
		준주거지역	210.00%	239.60%	286.8%	399.87%	- (400.00%)

※용도지역별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은 전체 획지에 적용

기준용적률 완화

항 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소형 주택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54.707\text{㎡}(39\text{㎡ 공급}) \times 65\text{세대} / 35,082\text{㎡}(\text{대지}) = 10.0\%$	최대 10%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81.527\text{㎡}(59\text{㎡ 공급}) \times 44\text{세대} / 35,082\text{㎡}(\text{대지}) = 10.0\%$	최대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 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alpha=1$이하 - 적용 : 제3종일반 : 190.0% X (735.0 / 18,500.0) X 1 = 7.5% - 준 주 거 : 190.0% X (659.0 / 16,582.0) X 1 = 7.5%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 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적용 :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 5.0%	5%p 이내
충간소음해소	▶ 바닥(중량)충격을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기준 : 1등급 5%, 2등급 3% - 적용 : 1등급 5%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Xα * $\alpha=1$이하 - 적용 : 190.0% X (482 / 3,660.0) X 0.1 = 2.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1.0~2.0) - 적용 : 5,861,129 / 3,971,428 = 1.475 $\approx$ 1.48 (9.6%)	1.0~2.0

다) 높이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 이	비 고
신 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0m이하 (39층 이하)	•초등학교 일조를 고려한 주동 배치 (대상지 북서측)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신 설	건축한계선	획지1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6m :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 보도육교 및 지하철 연결통로는 설치 가능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	•연도형 상가 조성을 통한 열린단지 조성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입체감 있고 다채로운 매스계획과 입면디자인 특화 등 입면의 다양성 제고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주동 입면계획 등 통해 주거유형의 다양성 확보
저층부 외관	근린 생활시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2)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공동주택	•G밸리(가산)와 남구로역을 연결하는 통영축 계획 - 도시철도 통과구간, 고층-중저층 주거등 사이 구간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계획 •북서측 주동은 영일초등학교 일조를 고려하여 계획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보도+녹지 가능) - 단, 보도육교 및 지하철 연결통로는 설치 가능
공공 보행통로	지하철 통과 구간 상부	•폭 12m 이상(가로공원 포함) 도시철도 통과 구간 상부에 조성(지역권 등기 설정) (지하철과 연결되는 출입구 설치 가능)

2)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돌봄시설	공동주택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면적 : 482㎡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가.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현존식생도 : 시가지지역 ·비오톱유형 : 주거지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도 : 5등급 ·녹지공간 확충 필요	·공원조성, 조경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비오톱 공간 조성
	나.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음 ·서측 안양천과 동측 도림천 생태공원과의 생태 적 가교환경 형성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 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생 활 환 경	토 지 환 경	다. 토지 이용	○	·서남권 생활권, 가산대림광역 중심, 구로디지털단지 주거 생활권에 해당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주거환경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공원) 확보 등 생활권 발전 목표에 부합
		라.토양	○	·구로구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사업대상지 내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점이 없음 ·공사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	·공사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
		마.지형· 지질	○	·표고차 17.6m ·평균 경사도 4.42° ·공사시 부지조성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사토가 발생함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 변동 등 물리적 변화 최소화 ·토석정비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 처리
	물 환 경	바.물순환 (수리·수문)	○	·강우수의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 어려움 ·녹지조성, 투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물순환공 간 확보 필요	·효율적인 물순환을 위해 계획지구 내 생태면적률 31.19%를 확보함
	기 후 대 기 환 경	사.바람, 열	○	·풍속평균 2.4m/s ·33층의 고층 건축물을 계획함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를 계획함
		아.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공사시: 먼지저감 대책 실행 ·운영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정화수종 선택)
	기 타	자.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 및 생활폐기물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 해체 노력 ·운영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제고
		차.소음· 진동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80미터 이내 영향권)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차음성능 우수한 차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
		카.경관	○	·중고층 건물배치로 돌출경관리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스카이라인 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서측의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연출, 대상지 외곽 조경 식재계획을 통해 가로녹시를 상향
		타.휴식 및 여가 공간	○	·관내 공원 108개소 ·인근 공원 분포 저조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
		파.보행 친화공간	○	·정비되지 않은 골목길 조성으로 원활한 통행 어려움	·계획지구 내 가로·세로 보행통로 조성하여 효율 적인 보행동선 확보
		하.일조 장애	○	·일조영향예측결과 계획지구 북측의 주거시설에 일조침해 발생	·영일초등학교에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계획 수립 ·일조침해세대 보상방안 수립

III. 2024년 제9차('24. 09. 11.)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 결과	심 의 의 건	조 치 계 획																														
제9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가결 요청사항 -구 역 계 : 41,515㎡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5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00㎡, 준주거지역 16,582㎡, 준공업지역 963㎡,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92㎡ -용 적 륜 <table><tr><th>구 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법적상한</th></tr><tr><td>제3종 일반</td><td>190%</td><td>200%</td><td>222.26% 이하</td><td>246.34% 이하</td></tr><tr><td>준주거</td><td>190%</td><td>200%</td><td>299.90% 이하</td><td>399.87% 이하</td></tr></table> ※ 허용 : 공공보행통로 7.5%, 열린단지 5%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 9.78% -공공기여 : 5,545.7㎡ (제3종:1,926.6㎡, 준주거:3,619.1㎡) ※ 도로, 공원(2개소), 공공청사,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높이계획 : 120m 이하 -세대수 : 전체 1,214세대 (임대 357세대 포함) ※ 임대 : 재개발의무 108세대(7,576.5㎡), 국민임대 249세대(19,929.0㎡)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제3종 일반	190%	200%	222.26% 이하	246.34% 이하	준주거	190%	200%	299.90% 이하	399.87% 이하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으며, 24년 9월 26일 변경된 2030 도 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을 체계를 반영하여 변경 하였음 -구 역 계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없음) -용 적 륜 <table><tr><th>구 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법적상한</th></tr><tr><td>제3종 일반</td><td>210%</td><td>239.6%</td><td>262.1% 이하</td><td>299.90% 이하</td></tr><tr><td>준주거</td><td>210%</td><td>239.6%</td><td>286.8% 이하</td><td>399.87% 이하</td></tr></table> ※ 기준 : 40㎡이하 10%, 50~60㎡이하 10% ※ 허용 : 공공보행통로 7.5%, 열린단지 5%, 층간소음 5%, 돌봄시설 2.5%, 사업성 보정계수 1.48(9.6%)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변경없음) -공공기여 : 5,173.7㎡ (제3종:1,856.2㎡, 준주거:3,317.5㎡) (공사비 기준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면적 감소) ※ 도로, 공원(2개소), 공공청사,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높이계획 (변경없음) -세대수 : 전체 1,214세대 (임대 283세대 포함) ※ 임대 : 재개발의무 139세대(8,408.8㎡), 국민임대 144세대(12,897.3㎡)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제3종 일반	210%	239.6%	262.1% 이하	299.90% 이하	준주거	210%	239.6%	286.8% 이하	399.87% 이하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제3종 일반	190%	200%	222.26% 이하	246.34% 이하																													
준주거	190%	200%	299.90% 이하	399.87% 이하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제3종 일반	210%	239.6%	262.1% 이하	299.90% 이하																													
준주거	210%	239.6%	286.8% 이하	399.87% 이하																													
	○조건사항 -공영주차장과 중복결정 계획한 '어린이공원' 및 '가로공원' 은 주관부서에서 공원특성, 대지조성계획 및 보행자차량동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의 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 또는 포괄적 개념으로 열어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에 연결하여 적정 가로경관 형성이 중요한 지역인 바, 건축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 남측 타워동의 매스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을 검토할 것(건 축위원회 심의 전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것) -상기한 건축배치계획 등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통행축을 계획하 고, 향후에도 담보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상 명기할 것 -공공임대상가의 위치는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획지내 근생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남구로역 연결부로 조정 검토할 것 -남구로역 지하철역출입구는 획지내로 이설하여 구로동로변 보도 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공공청사 계획은 장래의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여 세부용도를 특 정하지 않을 것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공원 유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부 서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원 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 겠음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남측 타워동 매스 규모 조정 등 검토 하겠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치겠음 ○상기 건축배치계획 등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통행축을 계획 하고, 향후에도 담보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상 명기하겠음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배치계획 등 조정과 연계하여 남구 로역 연결부로 조정 하겠음 ○서울교통공사 사선협의(' 23.09.14) 의견(출입구 공원에 위치, 출 입구 폭 확장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시 검토 조치하겠음 ○공공청사 계획은 장래의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시설 의 세부용도는 특정하지 않겠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청 사 계획을 확정하겠음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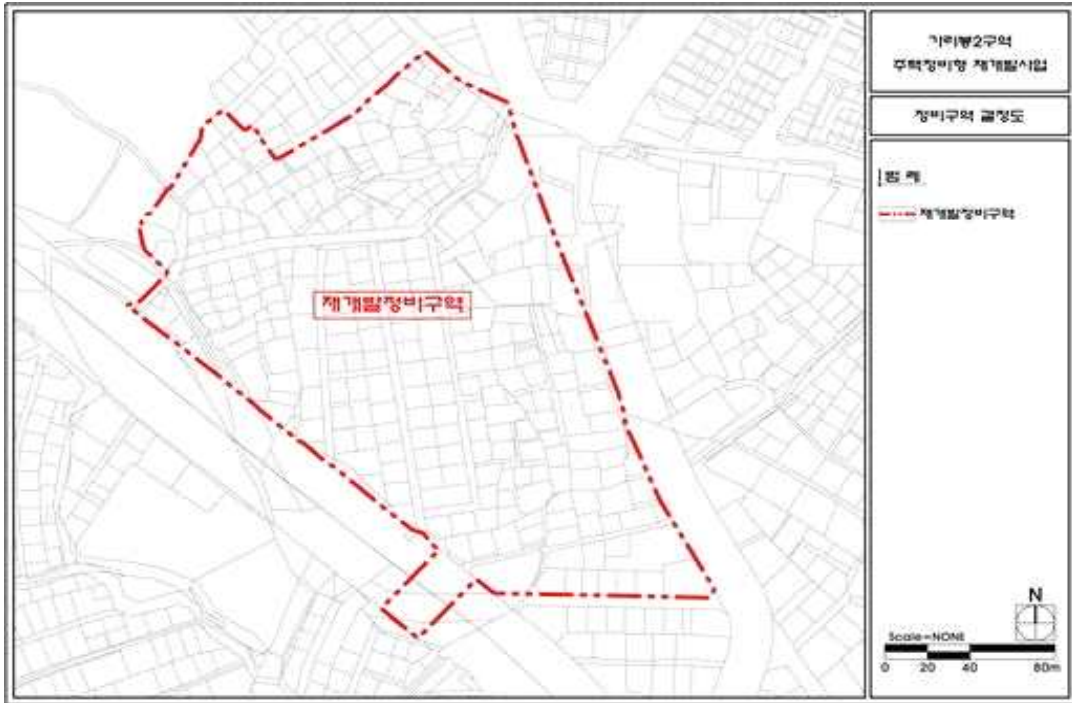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0),
구로구 도시개발과(☎02-860-2962)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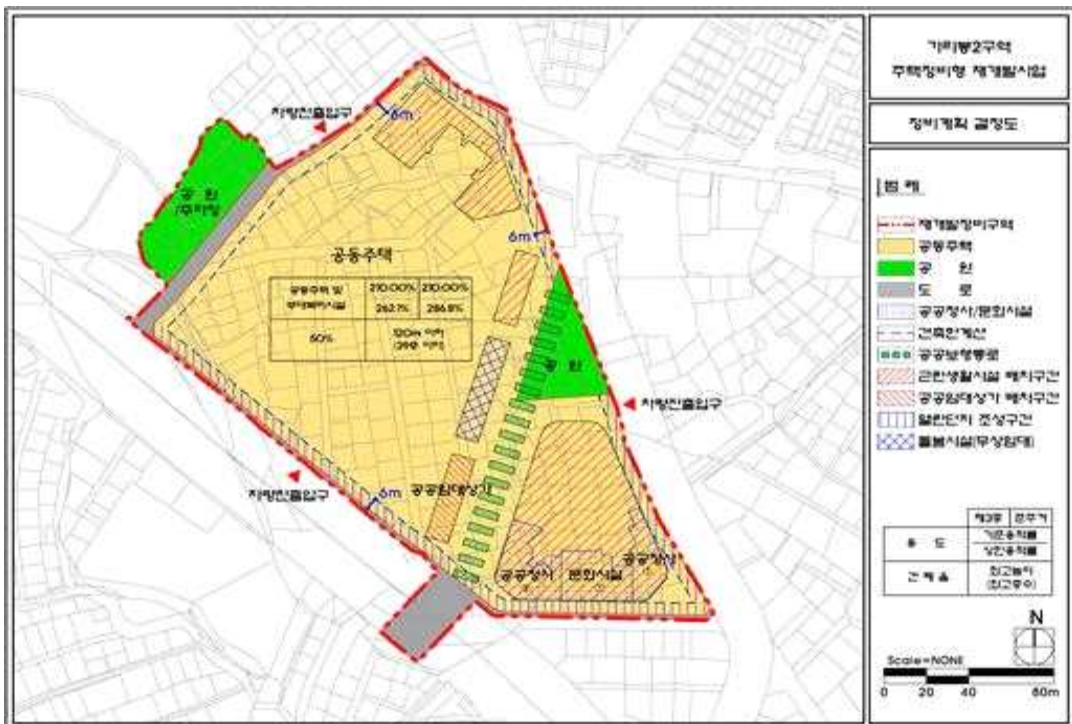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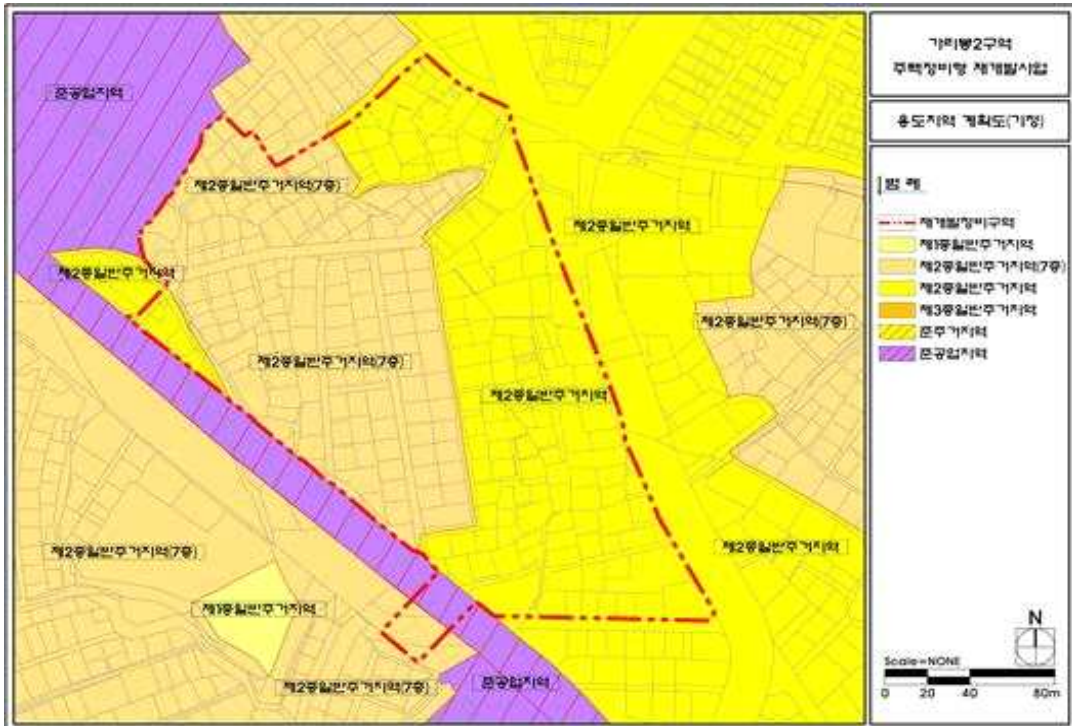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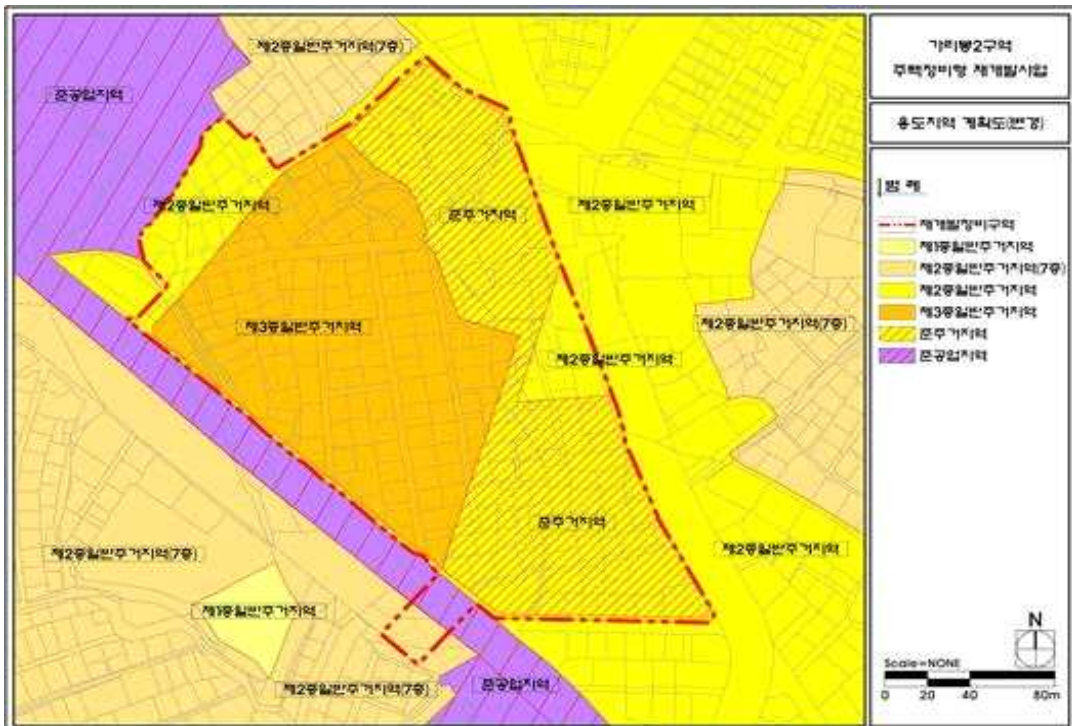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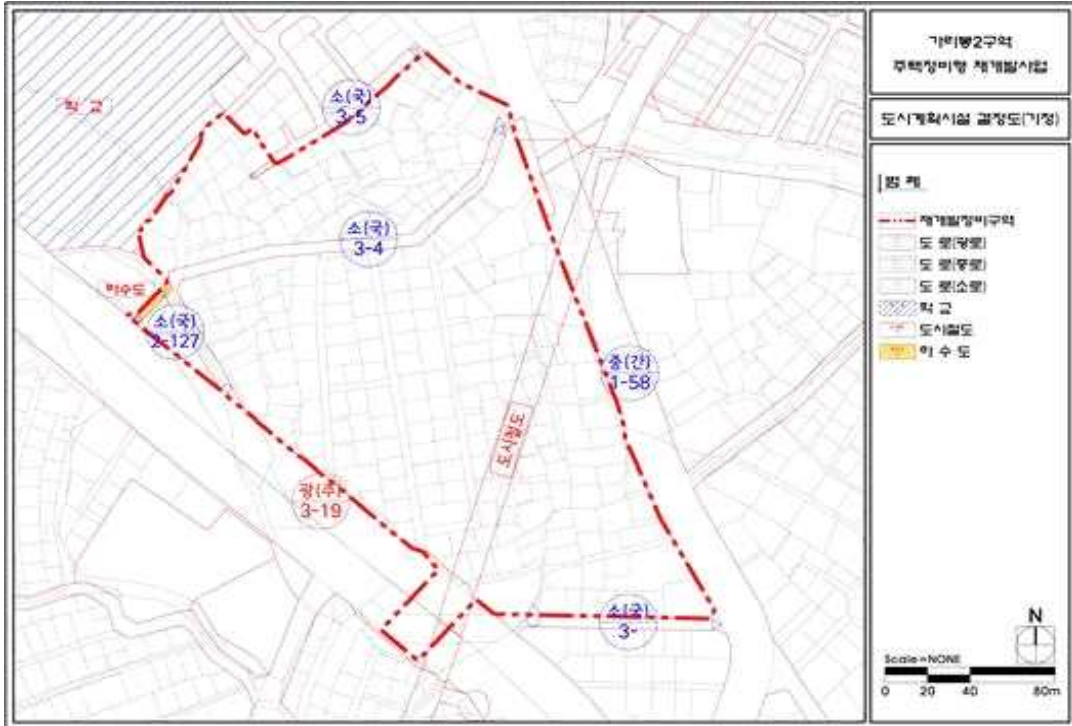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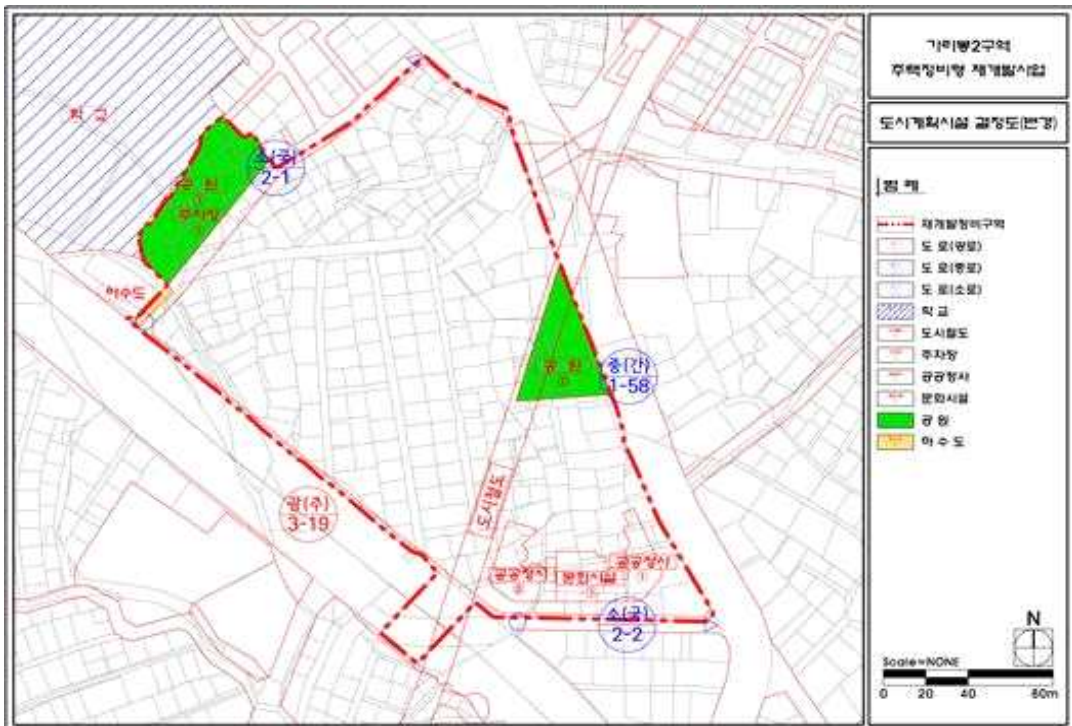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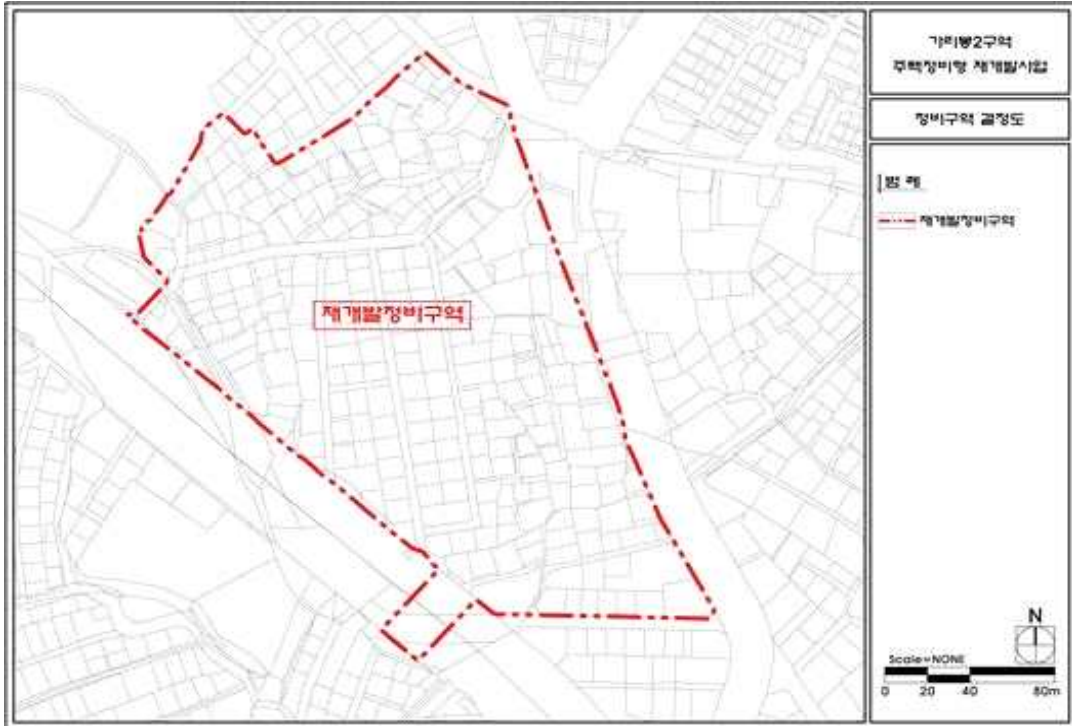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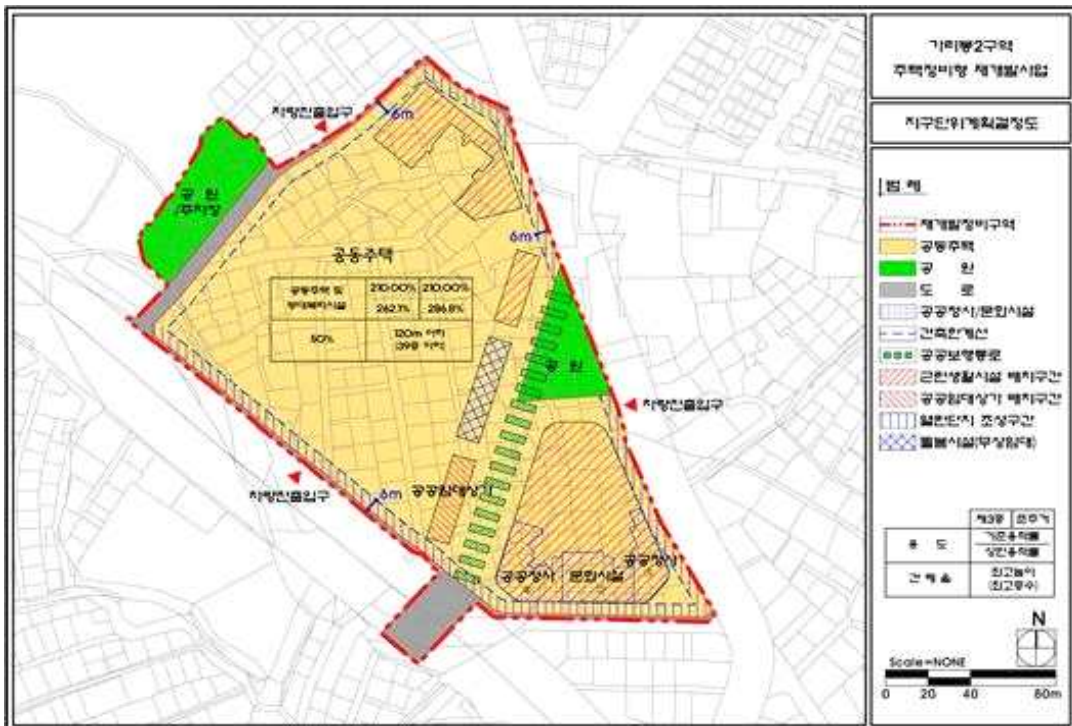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9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고시 철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2024.10.17.)호로 고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사정변경(판결)으로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가. 구역명칭 : 길음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	10,470	인접지역 포함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가. 명칭 :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

4. 철회내용 및 사유

가. 철회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철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2024.10.17.)호]

나. 철회사유 :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사정변경(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실효고시 철회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대한 사항

가.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2020.09.24.)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0호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호(2020.9.24.)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 길음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5. 3. 6.)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I.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등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 (㎡)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일	비고
기정	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	10,470.0	2020. 9. 24.	

나.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 1) 명 칭 :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36-12, 3층

다. 실효 유예기간 : 2023. 9. 25. ~ 2025. 9. 24. (2년)

- 사유 : 건축, 교통 및 소방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신청 준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이행에 절대적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를 승인함

II.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2호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6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문화유산 등록 내용

- 등록 종목 및 번호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제21호
- 등록 명칭 : 청파동 주택(靑坡洞 住宅)
- 등록 대상 : 건물 1동, 토지 1필지, 면적 161㎡

소재지	지번	지적(단위:㎡)	등록(단위:㎡)	소유자
용산구 청파동3가	114-7번지	541.8	161.0	이00, 신00
	총계	총 1필지	161.0	

○ 등록 사유

- 1930년 청엽정 3정목 114번지(현재 청파동3가 114-7)에 건축주인 야마자키 카츠사부로(山崎勝三郎)의 의뢰로 도편수 오자사 시게사부로(小笹茂三郎)가 건축한 문화주택이다. 1920~30년대 용산 청파동1가, 후암동, 갈월동 일대는 문화주택지로 개발이 이뤄졌는데, 본 건물이 들어선 곳은 대규모 개발지는 아니지만 서북쪽 구릉을 등지고 동남향의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본 건물은 남쪽에 넓은 마당을 두고 북쪽에 배치되어 있다. 일본 근대기의 전형적인 중북도형 평면 구조로 복도를 기준으로 주요 실(室)과 부속실이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서양식 응접실과 조선식 온돌방이 더해진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 재료는 목조를 기반으로 하되 벽돌과 돌, 콘크리트 등을 혼합하여 벽을 쌓고 지붕은 트러스로 처리하였다. 내부 마감 및 창호는 각 실(室)의 위계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원형이 잘 남아 있다.
- 본 건물은 1930년에 지어진 전형적인 문화주택으로 한국과 일본, 서양의 세 가지 주거문화가 절충되어 나타났던 당시 주택 모습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의 건축 구조 및 재료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데, 구조와 재료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던 당시의 기술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 등록문화유산 등록 도면 : 첨부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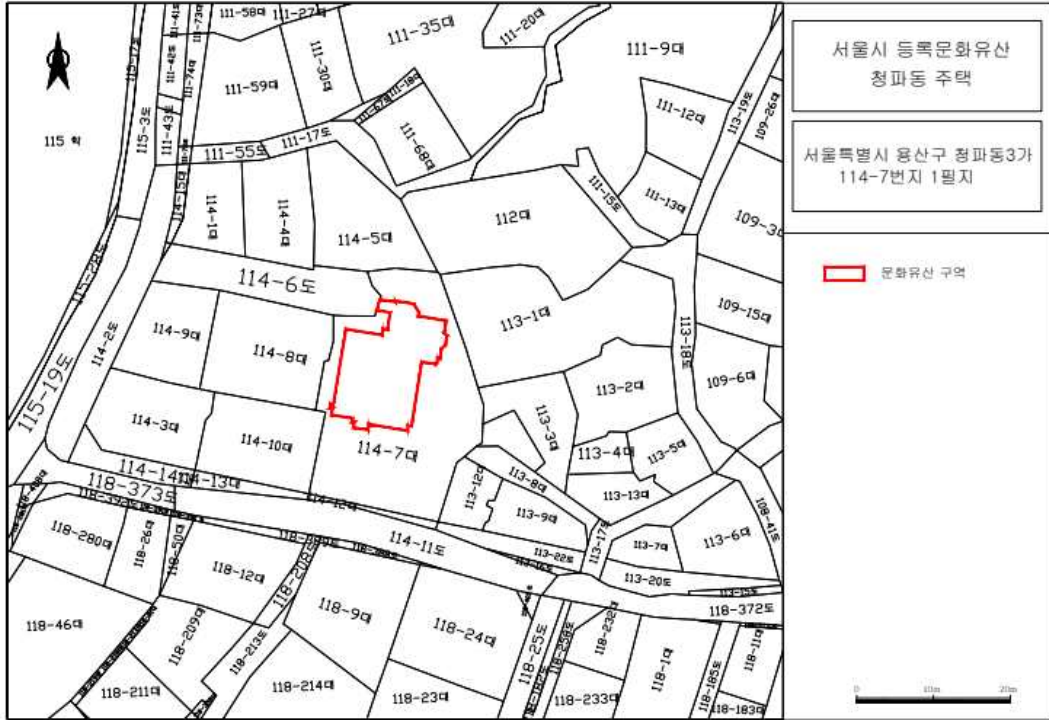
2. 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근현대유산법 제43조(준용규정)·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0조(시 등록문화유산의 관리)·제61조(시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제62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제64조(준용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유산보존과(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청파동 주택〉 등록 도면



○ 등록 대상 : 건물 1동, 토지 1필지, 면적 161㎡

소재지	지번	지적(단위:㎡)	등록(단위:㎡)	소유자
용산구 청파동3가	114-7번지	541.8	161.0	이00, 신00
	총계	총 1필지	16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2호(2009.6.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2.1.14.일자로 조합 설립인가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조합설립인가일	일몰기한	비 고
당 초	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16,237	2009.6.25	2022.1.14	2025.1.13.	2년 연장
변 경						2027.1.13.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7),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4호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7호(2013. 7. 11.)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0호(2021. 7. 2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3-75호(2023.06.08.)로 경미한 변경 지정(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포함)된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정비 유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원	45,884.1	-	45,884.1	일반 정비형	-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1가 64번지 일원	27,878.3	-	27,878.3	소단위 관리형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2가 30-1번지 일원	41,680.2	-	41,680.2	일반 정비형	
	문래동2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84번지 일원	35,716.0	-	35,716.0	소단위 관리형	
	문래동2·3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33번지 일원	34,226.4	-	34,226.4	소단위 관리형	

가.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	구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2,538.3	2,147.4	307.1	-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문래동1가 49번지 일원	3,429.0	2,900.9	528.1	-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	구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제11지구					
변경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1지구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6,543.4	5,245.3	1,298.1	-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8·11지구 통합에 따른 면적 변경	- 대상지는 저층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저층불량 건축물에 대해 적정 규모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기능 재편을 위하여 8지구와 11지구를 통합하여 적정 규모 및 형태의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고자 함	-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5,385	-	185,385	100.0	-
준공업지역	164,439	-	164,439	88.7	-
일반상업지역	20,801	-	20,801	11.2	-
자연녹지지역	145	-	145	0.1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도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48.3	증) 1,495.1	6,543.4	100.0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통합하는 8·11지구 부담면적 반영
정비기반 시설 등	소개	-	증) 1,298.1	1,298.1	19.8	
	도로	-	증) 874.7	874.7	13.4	
	공원	-	증) 423.4	423.4	6.4	
획지	소개	5,048.3	증) 197.0	5,245.3	80.2	
	8지구	2,147.4	감) 2,147.4	-	-	
	11지구	2,900.9	감) 2,900.9	-	-	
	8·11지구	-	증) 5,245.3	5,245.3	80.2	

※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B	6~8	국지도 로	일반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변경	소로	1	A	6~10 (10)	국지도 로	일반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폐지	소로	2	987	8	-	일반도로	77	문래동1가 49	문래동1가 5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8	8	-	일반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1	988	10	-	일반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0	8	-	일반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2	990	8~10 (10)	-	일반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5	6	-	일반도로	200	문래동1가 86	문래동1가 97-7	-	서고420호 (21.7.29)	-

※ ()는 대상지 내 해당하는 사항임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B	소로1-A	●폭원 : 6~8m → 6~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규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소로2-987	-	●도로폐지	●획지통합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988	소로1-B	●폭원 : 8m → 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규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소로2-990	소로1-C	●폭원 : 8m → 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규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가.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순부담률 : 15.4% 이상
-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등 필수기반시설 우선 확보 후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유도

※ 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구분	시행 지구	시행 면적 (㎡)	획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 시설면적(㎡)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순부담 면적(㎡)	순부담률 (%)	비고
									기반시설 등	
기정	일반정비 지구	8	2,538.3	2,147.4	307.1	-	-	390.9	15.4	-
		11	3,429.0	2,900.9	414.8	-	-	528.1	15.4	-
변경	제8·11	6,543.4	5,245.3	1,298.1	583.4	87.2	416.0	1,043.5	16.6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면적)

※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원칙

1) 문래동1가B, 2가B, 2·3가B 등 소단위관리형은 순부담 제외

2) 일반정비형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개별사업지구의 사업시행시 지구의 인접도로 확보 → 공원 확보 → 건축물/현금 기부채납의 우선순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단, 사업시행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원칙' 조정 가능

※ 기반시설 면적은 CAD 상 구역면적으로 추후 사업시행 시 측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구분	시행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제8·11	●도로폐지에 따른 시행면적, 획지면적 증가 ●기부채납계획 반영에 따른 기반시설(순부담) 면적 증가	●8, 11지구 통합에 따른 도로 폐지 및 획지 편입 ●기부채납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면적 반영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변경없음)

8.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정비계획 변경은 II에서 다룸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1) 건폐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정비계획 변경은 II에서 다룸

2) 용적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정비계획 변경은 II에서 다룸

3)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변경)

■ 일반정비구역(기정)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등	- 친환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준용 및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적용 ※ 신재생에너지비율은 에너지총량을 줄인만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성능 대체비율에 따라 완화 가능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50%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등 권장용도 설치 시	정률 부여	권장용도 비율에 비례	최대5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등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2	최대20%
	안전·방재	방재관련 시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재생형 정비사업부문)」의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정률 부여	30%	최대30%
	임대산업 및 기존 산업보호	임대산업공간	- 임대산업시설 설치 제공시 ※ 민간소유의 시설로 자치구와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정률 부여	0.2	최대50%
		제조업 특화형공간	- 기계·금속 등 지역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공간 조성 시 ※ 기계금속 등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양되는 공간 - 제조업 수용을 위한 층고 및 하중, 화물용E/V, 호이스트 설치 등		0.2	

- 주) 1. 일반상업지역은 친환경 및 도시경제활성화부문의 최대적용량을 각각 100% 적용
 2.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일반정비구역(변경)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원회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일반 산업	준공업
계획 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확보 시	•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정량 부여	50%	최대 100%	최대 50%
			• 지구별 개방형녹지 20%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1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정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최대 25%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전기차충전소 설치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 ¹ /2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부여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시설 도입 시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 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임대산업 및 기존 산업보호	임대 산업공간	• 임대산업시설 설치 제공시※ 민간소유의 시설로 자치구와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정률 부여	0.2	최대 50%	
		제조업 특화형공간	• 기계·금속 등 지역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공간 조성 시 ※ 기계금속 등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양되는 공간		0.2		

주) 1.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소단위관리형구역(변경없음)

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변경없음)

4) 최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없음)
10.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정비구역(사업시행지구)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일반정비형구역(기정)

구역명	지구명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래동1가A	1	문래동1가 96-4 일대	2,072.9	평균 2,115.6㎡
	2	문래동1가 72-10 일대	2,014.0	
	3	문래동1가 71-15 일대	861.3	
	4	문래동1가 92 일대	2,261.8	
	5	문래동1가 74 일대	2,214.0	
	6	문래동1가 70-1 일대	1,115.6	
	7	문래동1가 57-5 일대	2,405.9	
	8	문래동1가 55 일대	2,147.4	
	9	문래동1가 37-13 일대	1,956.9	
	10	문래동1가 60-2 일대	3,320.8	
	11	문래동1가 49 일대	2,900.9	

나. 일반정비형구역(변경)

구역명	지구명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래동1가A	1	문래동1가 96-4 일대	2,072.9	평균 2,115.6㎡
	2	문래동1가 72-10 일대	2,014.0	
	3	문래동1가 71-15 일대	861.3	
	4	문래동1가 92 일대	2,261.8	
	5	문래동1가 74 일대	2,214.0	
	6	문래동1가 70-1 일대	1,115.6	
	7	문래동1가 57-5 일대	2,405.9	
	8·11	문래동1가 55 일대	5,245.3	
	9	문래동1가 37-13 일대	1,956.9	
	10	문래동1가 60-2 일대	3,320.8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다. 소단위관리형구역(변경없음)

1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8.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2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없음
2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없음
22. 구역 내 옛길, 옛물길,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2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해당없음
24.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II.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지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2,538.3	2,147.4	307.1	-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지구	영등포구 문래동1가 49번지 일원	3,429.0	2,900.9	528.1	-
변경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1지구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6,543.4	5,245.3	1,298.1	-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543.4	-	6,543.4	100.0	-
일반상업지역	1,594.6	-	1,594.6	24.4	-
준공업지역	4,948.8	-	4,948.8	75.6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48.3	증) 1,495.1	6,543.4	100.0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통합하는 8·11지구 부담면적 반영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증) 1,298.1	1,298.1	19.8	
	도로	증) 874.7	874.7	13.4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	증) 423.4	423.4	6.4	
획지	소계	5,048.3	증) 197.0	5,245.3	80.2	
	8지구	2,147.4	감) 2,147.4	-	-	
	11지구	2,900.9	감) 2,900.9	-	-	
	8·11지구	-	증) 5,245.3	5,245.3	80.2	

※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B	6~8	국지도로	일반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변경	소로	1	A	6~10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폐지	소로	2	987	8	-	일반도로	77	문래동1가 49	문래동1가 5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8	8	-	일반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1	988	10	-	일반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0	8	-	일반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2	990	8~10 (10)	-	일반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5	6	-	일반도로	200	문래동1가 86	문래동1가 97-7	-	서고420호 (21.7.29)	-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 ()는 대상지 내 해당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B	소로1-A	●폭원 : 6~8m → 6~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구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소로2-987	-	●도로폐지	●획지통합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988	소로1-B	●폭원 : 8m → 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구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소로2-990	소로1-C	●폭원 : 8m → 10m	●획지통합에 따라 획지구모를 감안하여 도로 확폭

※ ()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

2) 공간시설(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원	소공원	문래동1가 110-6번지 일원	1,194.3 (423.4)	-	1,194.3 (423.4)	서고420호 (21.7.29)	-

※ ()대상지 내 해당하는 면적임

나. 정비기반시설치(부담) 계획(변경)

구분	시행 지구	시행 면적 (㎡)	획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 시설면적(㎡)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순부담 면적(㎡)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등	
기정	8	2,538.3	2,147.4	307.1	-	-	-	390.9	15.4	-
	11	3,429.0	2,900.9	414.8	-	-	-	528.1	15.4	-
변경	8·11	6,543.4	5,245.3	1,298.1	583.4	87.2	416.0	1,043.5	16.6	-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래동1가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구분	시행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8·11	•시행면적 변경 [2,538.3㎡ → 6,543.4㎡, 증)4,005.1㎡] •시행지구면적 변경 [2,147.4㎡ → 5,245.3㎡, 증)3,097.9㎡]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307.1㎡ → 1,298.1㎡, 증)991㎡]	•8, 11지구 통합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현금 기부 채납 계획 반영

6.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구역명	지구명	납부금액(원)	현금납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현금납부에 따른 높이 완화량(m)	비고
신설	문래동1가A	제8·11	3,636,256,000	42.7	-	개별공시지가 평균 : 4,370,500원/㎡ ※ 2024년1월 공시지가

※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용적률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부지가액산정 : 개별 공시지가×부지가액 가중치(2배)

※ 현금기부채납금액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정비계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제8·11지구	30	-	-	30	-	제8·11지구 통합

9.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문래동1가 A구역	2,147.4	8지구	2,147.4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	60 이하	일반상업: 600/800/α 준공업: 300/400/α	60~80 이하	-
	문래동1가 A구역	2,900.9	11지구	2,900.9	문래동1가 49번지 일원					
변경	문래동1가 A구역	6,543.4	제8·11지구	5,245.3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산업 시설	60 이하	일반상업: 600/740/904 준공업: 300/390/660	80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변경)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 ① + ② + ③ = 904%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140% 적용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칙의 부사항 1/2이상 초과설치시	정량 부여	20%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 식기반산업 시설 도입 시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른 정률부여 0.4		10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2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40% 적용	

③ 상한용적률 : 164% 완화

구분	내용
친환경	●법적용적률의 최대 15% = 740% × 15% = 111.00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	●허용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740% × [1 + (103.85 - 0) / 1,446.0] = 793.14

●준공업지역 용적률 : ① + ② + ③ = 66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 90% 적용

구분	구역 구분		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획 유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 의무사항 1/2이상 초과설치시	정량 부여	20%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 시설 도입시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5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 치시	정량 부여	20%	2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0% 적용		
		③ 상한용적률 : 270% 완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시행면적	①	6,543.4㎡						-	
	획지면적	②	3,799.3㎡						-	
	계획공공용지	③	1,298.1㎡						도로,공원	
	현금기부채납	④	416.0㎡						-	
	기존공공용지	⑤	670.6㎡						-	
	순부담 면적	⑥	①1,298.1 + 416.0- 670.6 = 1,043.5㎡						③+④-⑤	
가중치	⑦	•가중치 = 기반시설 평균용적률 ÷ 대지평균용적률 = 494.73% ÷ 390% = 1.26853						-		
		•기반시설 평균용적률 : 494.73%=[(일반상업지역 도로 148.6㎡ ×800%)+(준공업지역내 도로 55.5㎡ × 400%)+(준공업지역내 공원 423.4㎡)] ÷ 627.5㎡ (정비기반시설 면적 합계)								
		•대지 평균용적률 : 390%								
	토지 α	⑧	⑥27.5 (정비기반시설 면적 합계) ÷ 3,799.3 = 0.16516						(③-⑤)÷②	
	현금 α	⑨	④416.0(현금기부채납 환산면적) ÷ 3,799.3 = 0.10949						④÷②	
	기반시설 제공		③90×(1+1.3×1.26853×0.16516+1.0×0.10949) = 148.92%						390×(1+1.3 ×⑦×⑧+ 1.0×⑨)	
	친환경		•법적용적률의 최대15% = 390% × 15% = 58.5%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		•허용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390% × [1+(635.90-0)/3,799.3] = 65.2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건축한계선 : 대로1-45호변 3m / 소로1-A호, 소로1-B호, 소로1-C호변 2m								
	변경	•건축한계선 : 대로1-45호, 소로1-A호, 소로1-B호, 소로1-C호변 3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공개공지 : 대로1-45호 및 소로1-C호 변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에 해당하는 공개공지 면적 확보								
교통처리계획		•통행체계 - 경인로 변 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사업지 인접도로(폭10m) : 양방통행 * 사업지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10.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신설)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1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천원)	비 고
총금액	287,381,500	추정 평가액 (타지구 평가사례참작)
대지비	130,590,525	자금운용계획서 기준 토지, 건물 비율배분하여 적용
공사비	151,280,345	자금운용계획서 기준 토지, 건물 비율배분하여 적용
대지조성비	5,510,630	철거공사비, 명도보상비용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136,101,155	대지비+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54,767,506	2023년 공시지가를 필지별로 가중치 적용하여 추정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75,823,019	분양예정 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등의추산액
비용부담액(C)	156,790,975	공사비+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287,381,500	A+B+C

나.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

구 분		종전토지등의추산액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 (B)	비용부담액 (C)	분담금 추산액 (A+B+C)	분담률 (%)
		금액(A)	비율(%)				
합 계		54,767,506	100.00	75,823,019	156,790,975	287,381,500	100.00
토지등 소유자	문래동1가 52-2	4,182,874	7.64	5,790,991	-	9,973,865	3.47
	53-1	3,273,680	5.98	4,532,255	-	7,805,935	2.72
	54-4	2,333,948	4.26	3,231,240	-	5,565,187	1.94
	54-5	4,481,680	8.18	6,204,674	-	10,686,354	3.72
	55	4,345,391	7.93	6,015,989	-	10,361,380	3.61
	56-1	1,441,154	2.63	1,995,209	-	3,436,362	1.20
	56-2	2,958,705	5.40	4,096,187	-	7,054,893	2.45

구 분		종전토지등의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B)	비용부담액 (C)	분담금 추산액 (A+B+C)	분담률 (%)
		금액 (A)	비율(%)				
	56-3	2,311,751	4.22	3,200,510	-	5,512,261	1.92
	56-4	1,471,675	2.69	2,037,464	-	3,509,138	1.22
	56-5	1,635,896	2.99	2,264,820	-	3,900,716	1.36
	110-8	671,069	1.23	929,063	-	1,600,132	0.56
	48	2,513,996	4.59	3,480,508	-	5,994,504	2.09
	49	9,795,570	17.89	13,561,503	-	23,357,073	8.13
	50	1,308,446	2.39	1,811,481	-	3,119,927	1.09
	50-1	395,569	0.72	547,646	-	943,215	0.33
	50-2	624,539	1.14	864,645	-	1,489,184	0.52
	50-3	625,865	1.14	866,480	-	1,492,345	0.52
	50-4	965,993	1.76	1,337,372	-	2,303,365	0.80
	50-5	1,010,073	1.84	1,398,399	-	2,408,472	0.84
	50-6	704,022	1.29	974,686	-	1,678,708	0.58
	50-7	933,484	1.70	1,292,364	-	2,225,847	0.77
	51	1,793,199	3.27	2,482,599	-	4,275,798	1.49
	51-1	1,573,002	2.87	2,177,747	-	3,750,749	1.31
	51-2	1,603,496	2.93	2,219,965	-	3,823,461	1.33
	110-4	972,648	1.78	1,346,585	-	2,319,233	0.81
	110-5	390,393	0.71	540,481	-	930,874	0.32
	110-7	449,388	0.82	622,156	-	1,071,544	0.37
사업시행자		-	-	-	156,790,975	156,790,975	54.56

12.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없음

1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 및 대규모 건축물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시에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환경보전	- 공사 시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 수거는 영등포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재난방지	- 사업시행 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 사업시행 시 관할소방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소화전 설치	-

1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내 남동측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해 있음 (정비구역내 남동측 약200m 거리에 영등포 초등학교 위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불허 - 공사 시 가설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	-

1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① ②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결보고서(최종)(2011.3)」 개선 내용 반영 - 경인로 차로운영계획 반영 - 도림로 문래공원 사거리 기하구조 개선 : 좌회전차로 설치
진출입 동선	③	- 사업지 내부 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경인로, 도림로 - 사업지 내부도로(소로 2류 양방통행, 소로 3류 일방통행) 운영
대중교통 및 보행	③	- 중로 2-999(B=15m) 양측보도 설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설치 - 사업지 내부 건축한계선 제시 - 건축한계선을 이용 보행공간 확보
주차시설		- 공공주차장 신설(1개소) -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94.8㎡ - 법정주차 2,134대, 주차수요 2,714대(2033년, 원단위법) - 개별필지 개발시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에 맞는 주차면 설치

※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19.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기본방향에 따름 -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지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21.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래1~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문래동1~3가 일대	184,317.9	-	184,317.9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4,317.9	-	184,317.9	100.0	-
준공업지역	163,371.9	-	163,371.9	88.6	-
일반상업지역	20,801.0	-	20,801.0	11.3	-
자연녹지지역	145.0	-	145.0	0.1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5	35~54 (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750 (506)	문래동 광장	오류동 광장	-	-	-
기정	대로	1	53	35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1,550 (-)	문래동 광장	신길동 광장	-	서고19호 (86.1.13)	-
기정	대로	2	B	25~36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804 (181)	문래동2가 2-1	문래동4가 9-11	-	-	-
기정	중로	2	E	15	집산도로	일반 도로	138	문래동1가 57-3	문래동1가 64-2	-	-	-
기정	중로	1	E	14~20	집산도로	일반 도로	622 (135)	문래동2가 24-1	문래동4가 28-11	-	-	-
기정	중로	2	C	15	집산도로	일반 도로	185	문래동3가 59-1	문래동3가 55-1	-	-	-
기정	소로	2	C	8	집산도로	일반 도로	253 (-)	문래동3가 55-1	문래동3가 59-1	-	-	-
기정	중로	3	D	12~14	집산도로	일반 도로	65 (-)	문래동2가 36-15	문래동2가 53-1	-	-	-
기정	소로	2	B	6~8	국지도로	일반 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변경	소로	1	B	6~10 (10)	국지도로	일반 도로	132	문래동1가 47-3	문래동1가 39-1	-	-	-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일반 도로	86	문래동1가 39-1	문래동1가 39-1	-	-	-
기정	중로	2	999	15	-	일반 도로	230	문래동2가 58-6	문래동2가 56-16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1	8	-	일반 도로	44	문래동2가 7-5	문래동2가 21-5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2	8	-	일반 도로	190	문래동2가 4-1	문래동2가 20-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3	8	-	일반 도로	81	문래동2가 4-3	문래동2가 10-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4	8	-	일반 도로	39	문래동2가 27	문래동2가 29-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5	8	-	일반 도로	220	문래동2가 24-3	문래동2가 36-6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6	8	-	일반 도로	135	문래동2가 28	문래동2가 36-6	-	서고420호 (21.7.29)	-
폐지	소로	2	987	8	-	일반 도로	77	문래동1가 49	문래동1가 5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8	8	-	일반 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1	988	10	-	일반 도로	74	문래동1가 51-2	문래동1가 57-5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89	8	-	일반 도로	89	문래동1가 59-1	문래동1가 60-2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0	8	-	일반 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변경	소로	2	990	8~10 (10)	-	일반 도로	175	문래동1가 42-1	문래동1가 6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1	8	-	일반 도로	39	문래동1가 71-4	문래동1가 71-1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2	8	-	일반 도로	62	문래동1가 70-1	문래동1가 72-1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3	8	-	일반도로	80	문래동1가 74	문래동1가 76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4	8	-	일반도로	62	문래동1가 76	문래동1가 96-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5	8	-	일반도로	82	문래동1가 91	문래동1가 97-2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6	8	-	일반도로	207	문래동1가 70-1	문래동1가 97-3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7	8	-	일반도로	40	문래동2가 58-1	문래동2가 60-7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2	998	8	-	일반도로	191	문래동2가 17-1	문래동2가 46-8	-	서고420호 (21.7.29)	-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75	8	-	일반도로	40	문래동2가 56-2	문래동2가 56-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76	6	-	일반도로	95	문래동2가 41-2	문래동2가 42-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77	6	-	일반도로	30	문래동2가 19-1	문래동2가 19-6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78	6	-	일반도로	90	문래동1가 62	문래동1가 64-6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79	6	-	일반도로	70	문래동1가 84	문래동1가 83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0	6	-	일반도로	91	문래동2가 15-9	문래동2가 47-7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1	6	-	일반도로	85	문래동2가 48-6	문래동2가 49-18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2	6	-	일반도로	83	문래동2가 41-1	문래동2가 23-1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3	6	-	일반도로	52	문래동1가 43	문래동1가 42-2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4	6	-	일반도로	66	문래동1가 85-4	문래동1가 77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5	6	-	일반도로	200	문래동1가 86	문래동1가 97-7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6	6	-	일반도로	170	문래동2가 13-5	문래동2가 14-102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7	6	-	일반도로	60	문래동1가 86	문래동1가 88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8	6	-	일반 도로	92	문래동2가 11-8	문래동2가 13-5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89	6	-	일반 도로	93	문래동2가 14-47	문래동2가 14-84	-	서고420호 (21.7.29)	-
기정	소로	3	990	4~6	-	일반 도로	394	문래동1가 43-4	문래동1가 94-2	-	서고420호 (21.7.29)	-

※ 폭 원(), 연 장()은 문래동1가A, 문래동1가B, 문래동2가A, 문래동2가B, 문래동2·3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임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2) 철도결정조서 (변경없음)

3) 주차장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4.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지구명	시설명	면적(㎡)	순부담률
신설	문래동1가A	제8·11	도로	874.7	16.6% (구역 평균 순부담 15.4%이상)
			공원	423.4	
			현금	416.0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일반정비형구역(변경)

구역명	지구명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래동1가A	1	문래동1가 96-4 일대	2,072.9	평균 2,115.6㎡
	2	문래동1가 72-10 일대	2,014.0	
	3	문래동1가 71-15 일대	861.3	
	4	문래동1가 92 일대	2,261.8	
	5	문래동1가 74 일대	2,214.0	
	6	문래동1가 70-1 일대	1,115.6	
	7	문래동1가 57-5 일대	2,405.9	
	8·11	문래동1가 55 일대	5,245.3	
	9	문래동1가 37-13 일대	1,956.9	
	10	문래동1가 60-2 일대	3,320.8	

※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외 변경없음

2) 소단위관형구역(변경없음)

6.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8·11지구	-	-
변경	제8·11지구	• 산업시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8·11지구	• 60%이하	-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8지구, 제11지구	a	-
변경	제8·11지구	• 일반상업지역 : 904%, 준공업지역 : 660%	-

• 허용용적률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원화량 또는 계수	적용량(%)	
						일반상업	준공업
계획 유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정의부사항 1/2이상 초과설치시	정량 부여	20%	20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 시설 도입 시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100	5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정량 부여	20%	20	2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40	90

•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구분	내용
친환경	•법적용적률의 최대 15% = 740% × 15% = 111.00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	•허용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의무면적)/대지면 적] = 740% × [1+(103.85-0)/1,446.0] = 793.14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64% 완화

- 준공업지역

구분	내용
사업시행면적	6,543.4㎡
확지면적	3,799.3㎡
계획공공용지	1,298.1㎡
현금기부채납	416.0㎡
기존공공용지	670.6㎡
순부담 면적	•1,298.1 + 416.0 - 670.6 = 1,043.5㎡
가중치	•가중치 = 기반시설 평균용적률 ÷ 대지평균용적률 = 494.73% ÷ 390% = 1.26853 •기반시설 평균용적률 : 494.73% = [(일반상업지역 도로 148.6㎡ × 800%) + (준공업지역내 도로 55.5㎡ × 400%) + (준공업지역내 공원 423.4㎡)] ÷ 627.5㎡ (정비기반시설 면적 합계) •대지 평균용적률 : 390%
토지 a	•627.5 (정비기반시설 면적 합계) ÷ 3,799.3 = 0.16516
현금 a	•416.0(현금기부채납 환산면적) ÷ 3,799.3 = 0.10949
기반시설 제공	•390 × (1 + 1.3 × 1.26853 × 0.16516 + 1.0 × 0.10949) = 148.92%
친환경	•법적용적률의 최대15% = 390% × 15% = 58.5%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	•허용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390% × [1+(635.90-0)/3,799.3] = 65.257%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270% 완화

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변경)

■ 일반정비구역(기정)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등	- 친환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준용 및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적용 ※ 신재생에너지비용은 에너지총량을 줄인만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상 성능 대체비용에 따라 완화 가능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50%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등 권장용도 설치시	정률 부여	권장용도 비율에 비례	최대5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등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 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2	최대20%
	안전·방재	방재관련 시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재생형 정비사업부문)」의 재생관리 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정률 부여	30%	최대30%
	임대산업 및 기존산업보호	임대산업공간 제조업 특화형공간	- 임대산업시설 설치 제공시 ※ 민간소유의 시설로 자치구와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 기계·금속 등 지역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공간 조성 시 ※ 기계금속 등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양되는 공간 - 제조업 수용을 위한 층고 및 하중, 화물용E/V, 호이스트 설치 등	정률 부여	0.2 0.2	최대50%

주) 1. 일반상업지역은 친환경 및 도시경제활성화부문의 최대적용량을 각각 100% 적용

2.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일반정비구역(변경)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일반 상업	준공업
계획 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확보 시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정량 부여	50%	최대 100%	최대 50%
			- 지구별 개방형녹지 20%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1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정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최대 25%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일반 상업	준공업
		전기차충전소 설치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무사항%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부여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시설 도입 시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 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문화 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4	최대 100%	최대 5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임대산업 및 기존 산업보호	임대 산업공간	• 임대산업시설 설치 제공시※ 민간소유의 시설로 자치구와 소유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정률 부여	0.2	최대 50%	
		제조업 특화형공간	• 기계·금속 등 지역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공간 조성 시 ※ 기계금속 등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양되는 공간		0.2		

주) 1.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소단위관리형구역(변경없음)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변경없음)

마. 최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

1) 건축물 배치에 관한계획

가)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3m		●경인로 및 도림로 남측변 (도림로 북측변은 소규모 필지 일대 문래창작촌 입지특성 고려하여 2m 적용)
	기정	2m	●4m이상 도로변
	변경		●4m이상 도로변 (문래동1가A 제8·11지구 통합개발을 고려하여 3m 적용)
벽면한계선	5m		●경인로변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II. 2024년 제12차(2024. 12. 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심의결과	의견사항	비고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향후 건축심의를 위한 구체적향후 건축심의를 위한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 면밀 검토 - 차량진출입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폭원, 길이 축소 및 구배 등 조정 - 차량진출입구 위치,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남측 부출입구 위치 개선 - 지하2층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여 쉼터 확대 및 위치 조정	-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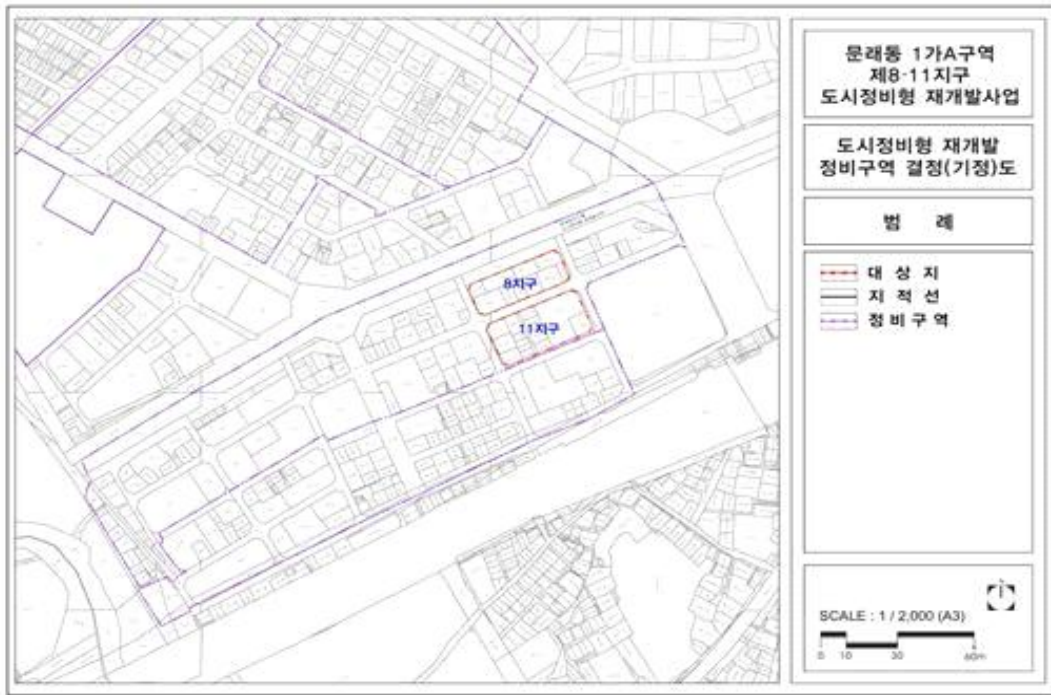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02-2133-4926)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805)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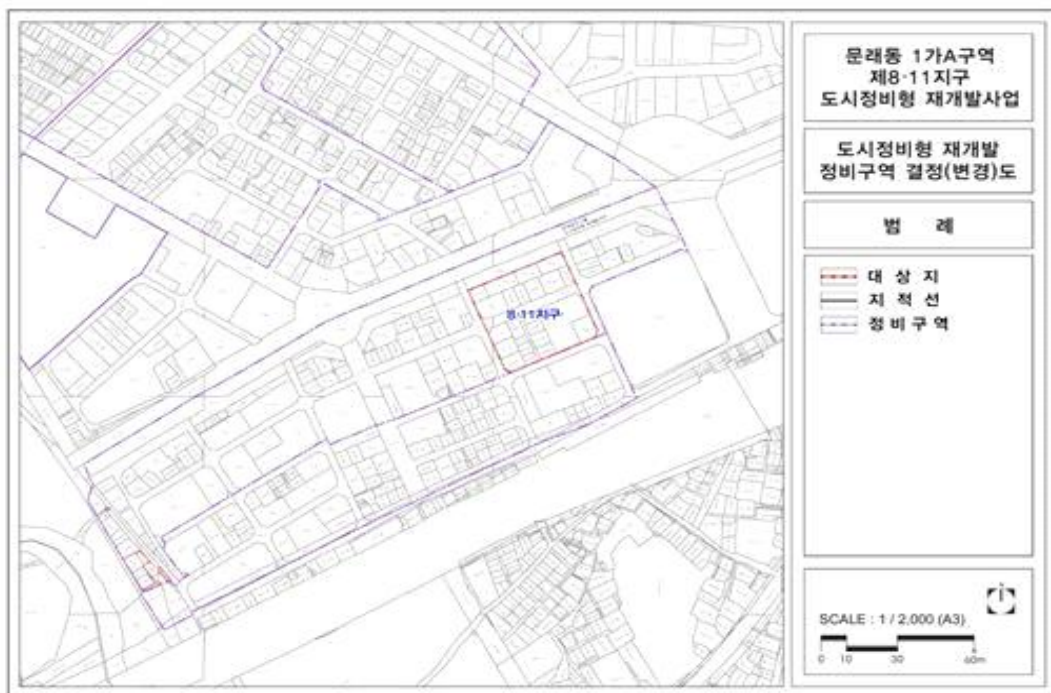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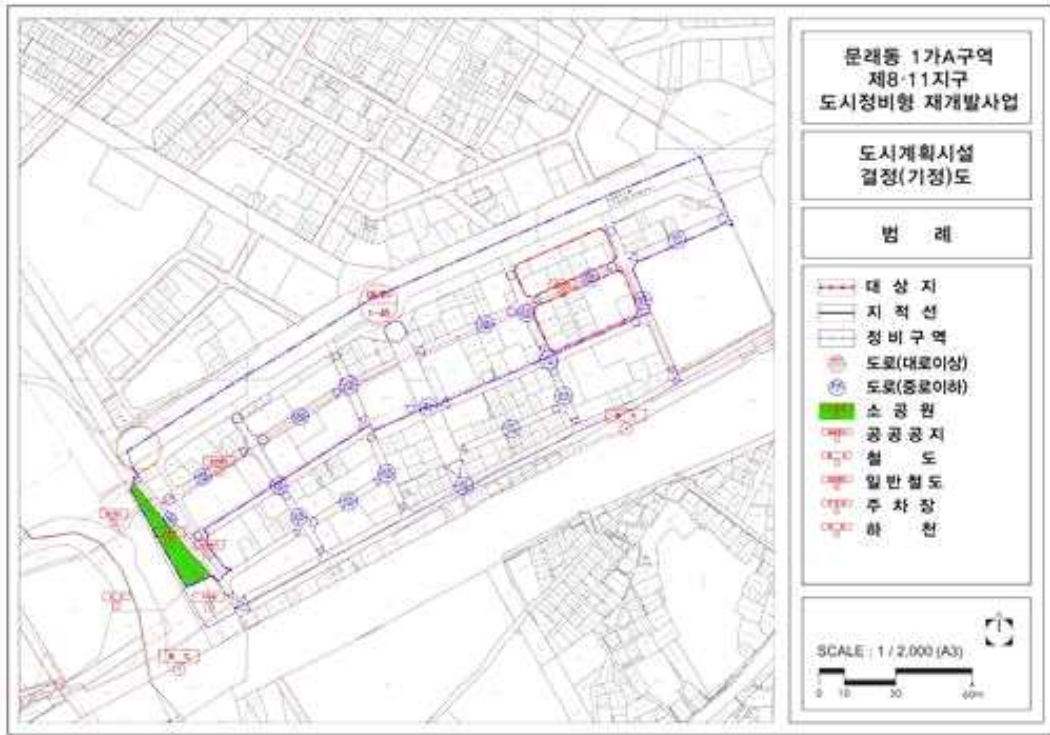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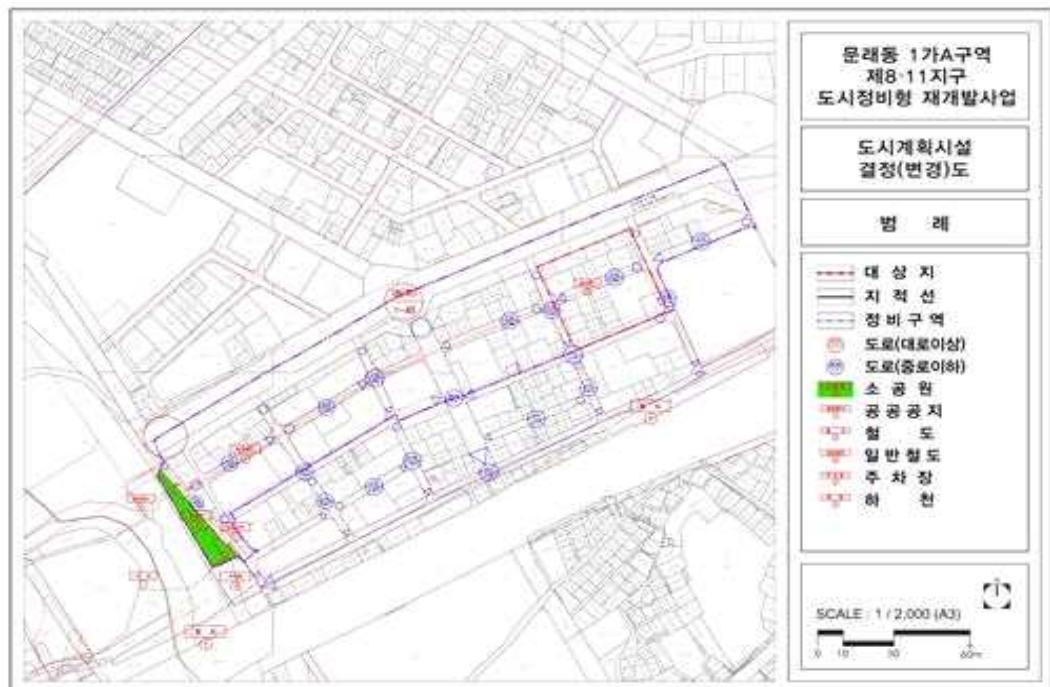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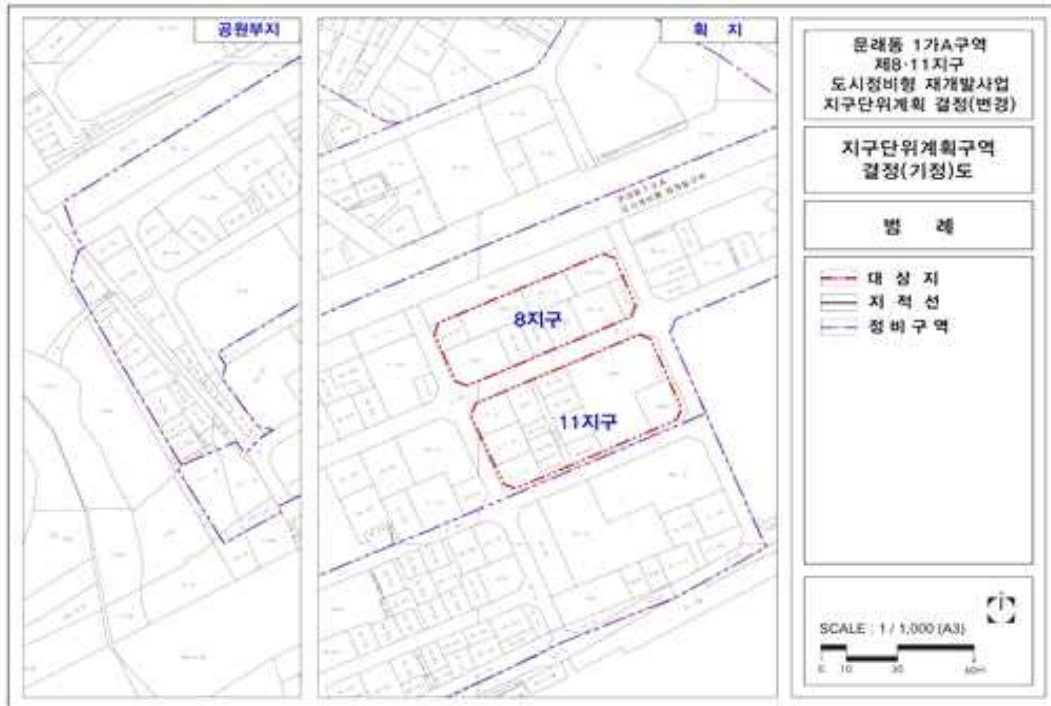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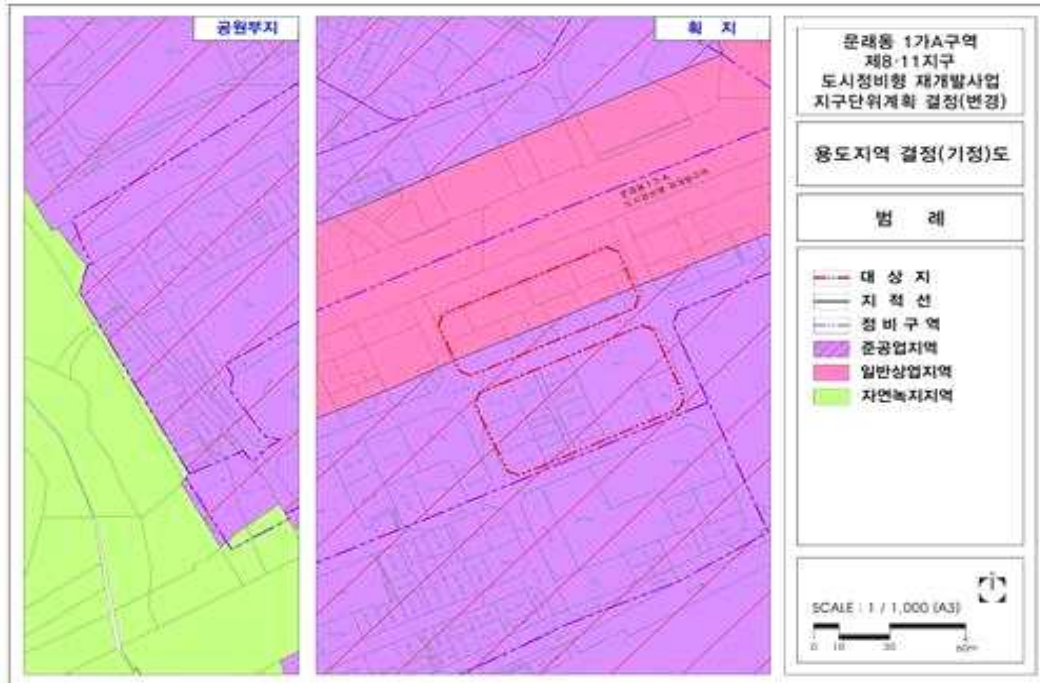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공원부지**

확 지

문래동 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확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 대 상 지
 - 지 적 선
 - 정 비 구 역
 - 건축한계선(3m)
 - 건축한계선(2m)
 - 1층 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8지구

면적(㎡)	8,000~10,000
용도(㎡)	300~400

11지구

면적(㎡)	10,000~12,000
용도(㎡)	400~500

SCALE : 1 / 1,000 (A3)

- 공원부지

획 지

8-11지구

면적(㎡) 10,000.000 면적(㎡) 10,000.000	지적사항 공공용지(국유)
80% 80%	80% 80%

8-11지구

대 상 지
지 책 선
장 비 구 역
획 지
획 지 선
건축한계선
1층 벽면한계선
공개공지

SCALE : 1 / 1,000 (ASB)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5호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
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18,654.0㎡	전체 : 111동 노후·불량 : 92동(82.8%)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	증) 18,654.0	18,654.0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 사유
-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천연동 89-16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18,654.0㎡	·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8,654.0	100.0	-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15,447.0	82.8	-
		A-1	사업가능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82.8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352.0	7.3	-
		-	도 로	1,352.0	7.3	-
		-	입체결정도로	(558.0)	-	합계면적 미포함
	시행구역 외	B-1	자율정비구역	1,855.0	9.9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 도로 결정 조서(안)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61	천연동 81-2	천연동 80-53	일반도로	-	입체결정
신설	소로	3	1	6	99	옥천동 126-126	옥천동 126-15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	6	91	옥천동 126-155	옥천동 110-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	6	54	천연동 80-15	천연동 80-22	일반도로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입체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2-1	일반 도로	천연동 81-2	길이	-	61m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558㎡ 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8m	
				높이	-	지표면 -1.2m~지상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계획(안)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소로 2-1	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 확폭 및 입체결정	대상지 일대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및 입체결정
-	소로 3-1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 · 시종점 부여	대상지 일대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	소로 3-2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 · 시종점 부여	대상지 일대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	소로 3-3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 · 시종점 부여	대상지 일대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2) 공동이용시설

- 계획세대수별 주택법 의무시설과 생활권 부족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

구분	설치기준	비 고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내

※ 설치기준 :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수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독립문로변	- 독립문로변 교통흐름 및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진출입구간	독립문로8길, 신설도로	- 독립문로8길변, 소로2-1에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
입체결정도로	소로 2-1	- 소로 2-1은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공공보행통로	서측경계부	- 독립문로8길과 안산도시자연공원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폭 6m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15,447.0	198	352	-	-	-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198	352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 대지의 조경(제42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 지하층(제53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 대지의 조경(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8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
자율정비구역	1,855.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가능 구역	A-1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정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자 정 비 구 역	B-1	건폐율	60% 이하				자율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용적률	용도지역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 용도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가능 구역	유 형	• 공동주택 용지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시행구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가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시행구역 전체	- 독립문로, 독립문로8길변 가로의 1/2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공동이용 시설	시행구역 전체	- 커뮤니티가로(소로 2-1, 소로 3-2)변 공동이용시설 배치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공공보행 통로	서촉경계부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보행연결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합 계		-	506	125		임대주택 24.7%
A-1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천연동 89-16 일대	506	125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안)	변경후		
합 계	18,654.0	-	18,654.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562.1	감) 16,707.1	1,855.0	9.9	-
제3종일반주거지역	91.9	증) 16,707.1	16,799.0	90.1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5,447.0	15,447.0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A-1	-	증) 15,447.0	15,447.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내용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근린생활시설 등(50조), 유치원(52조)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배제 및 완화)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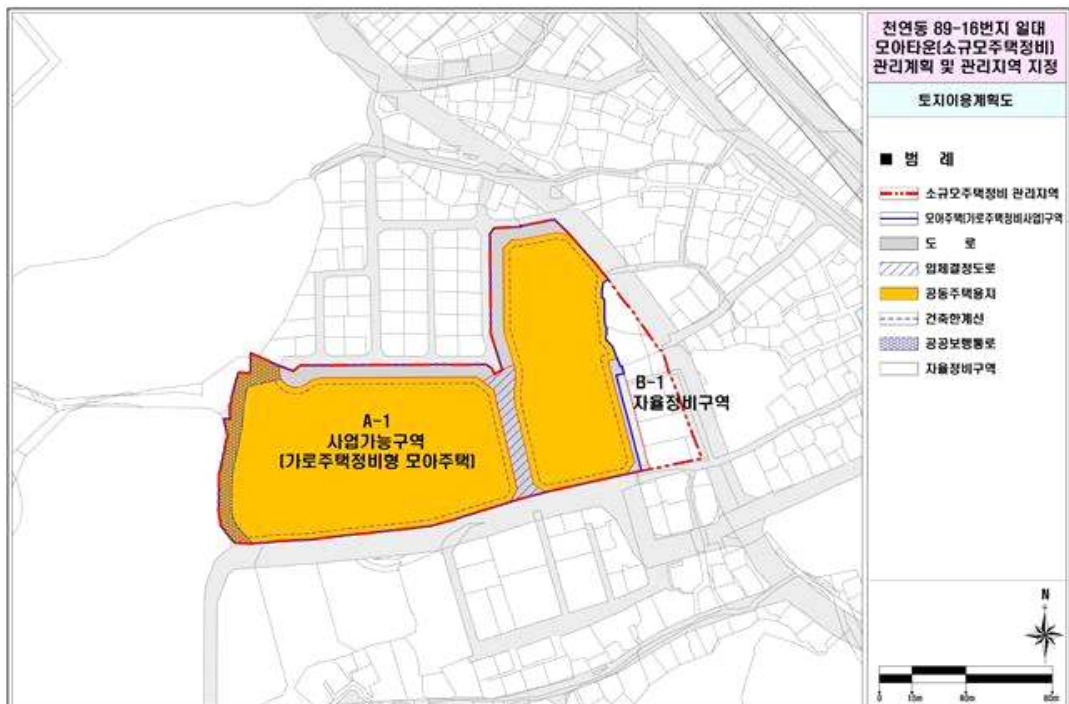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 및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02-330-8106)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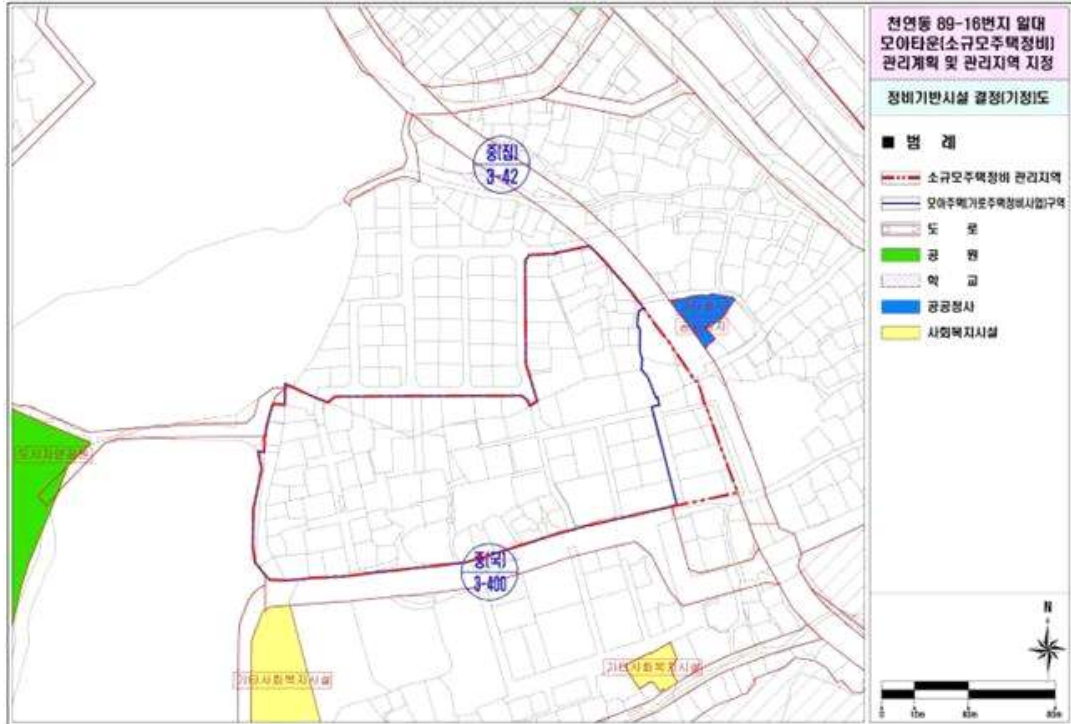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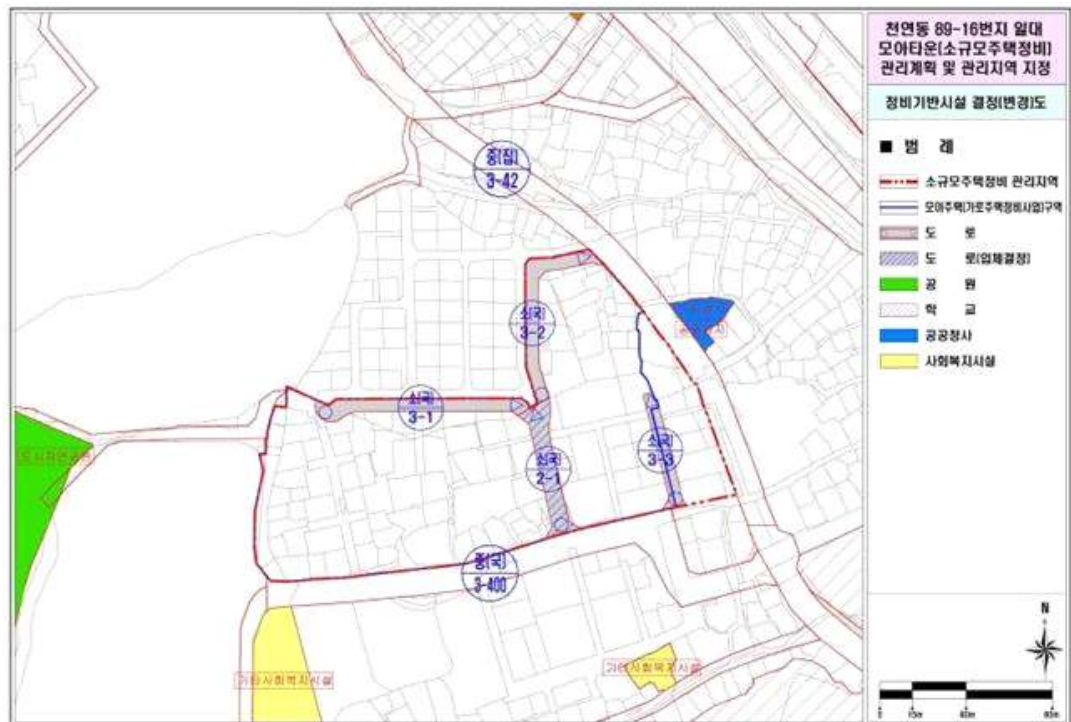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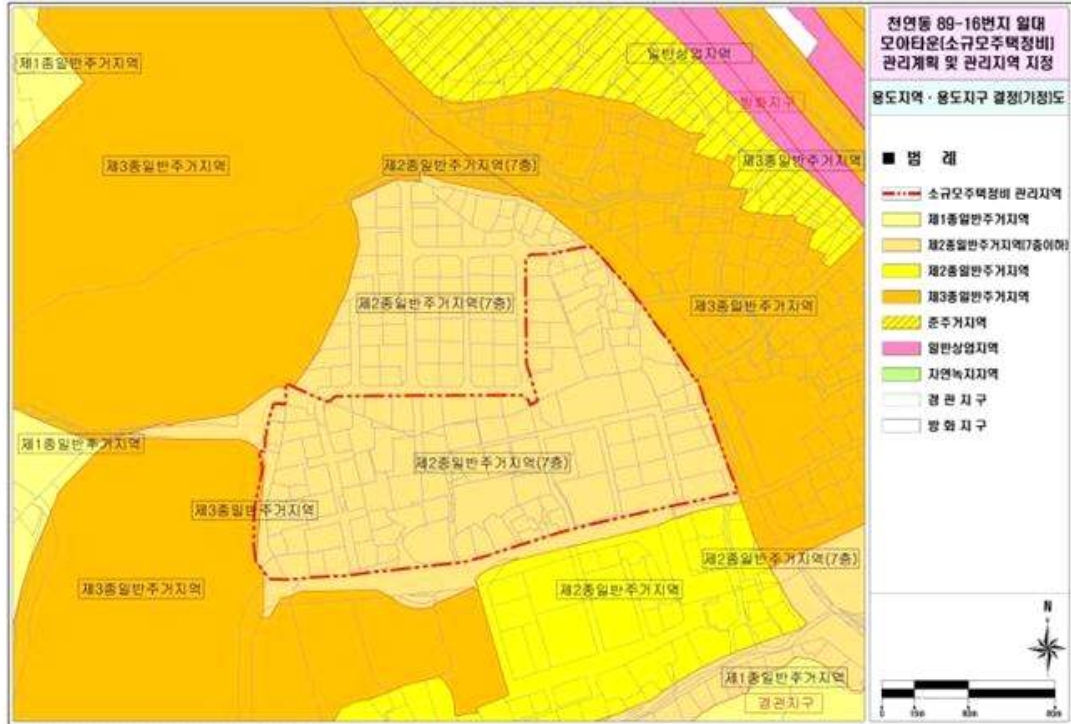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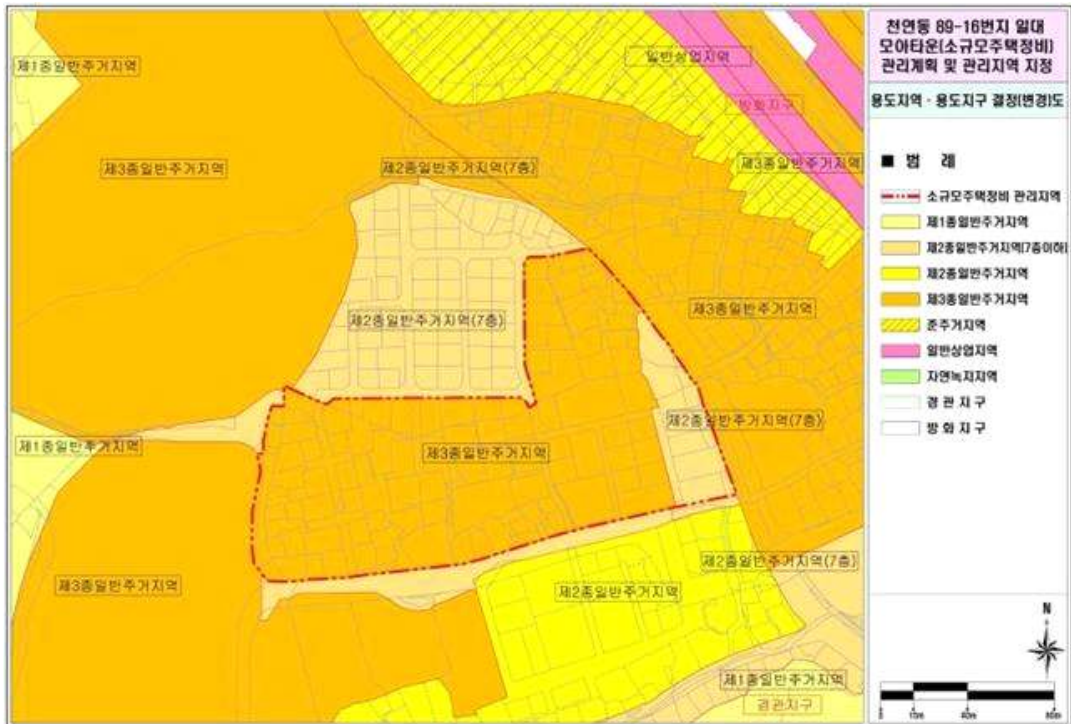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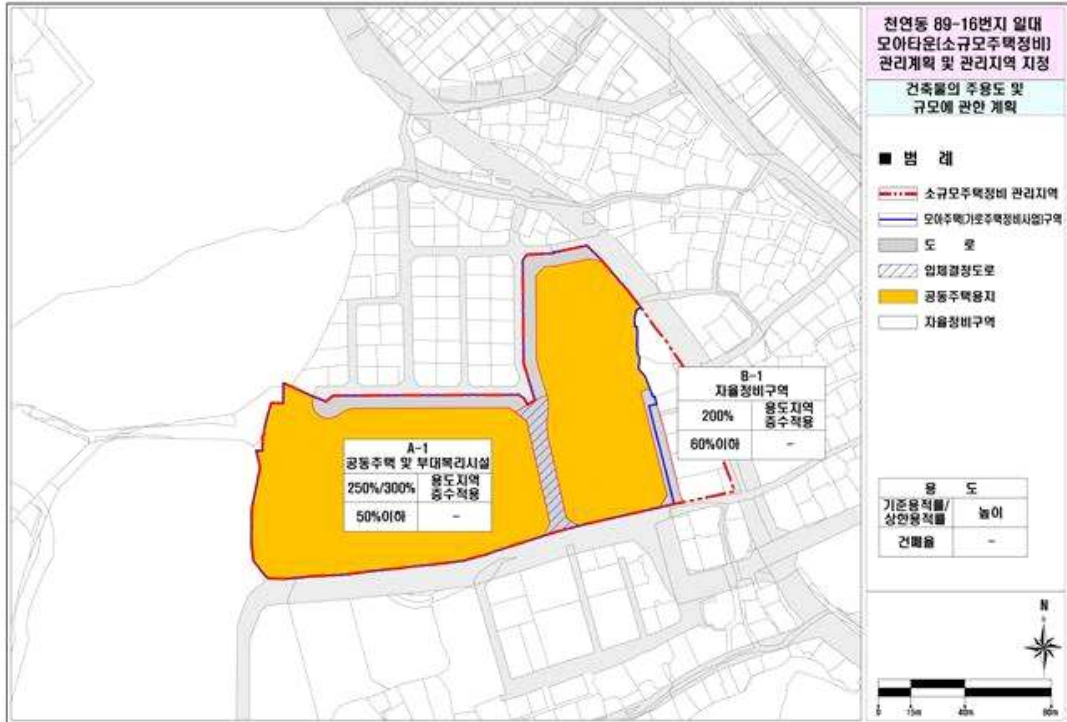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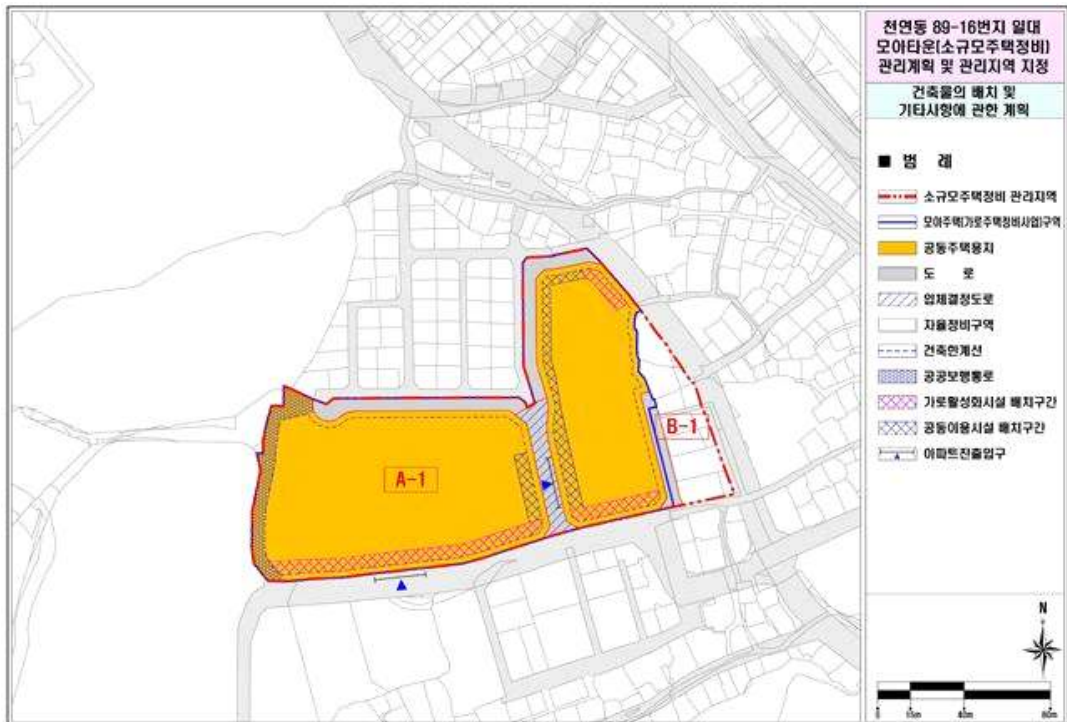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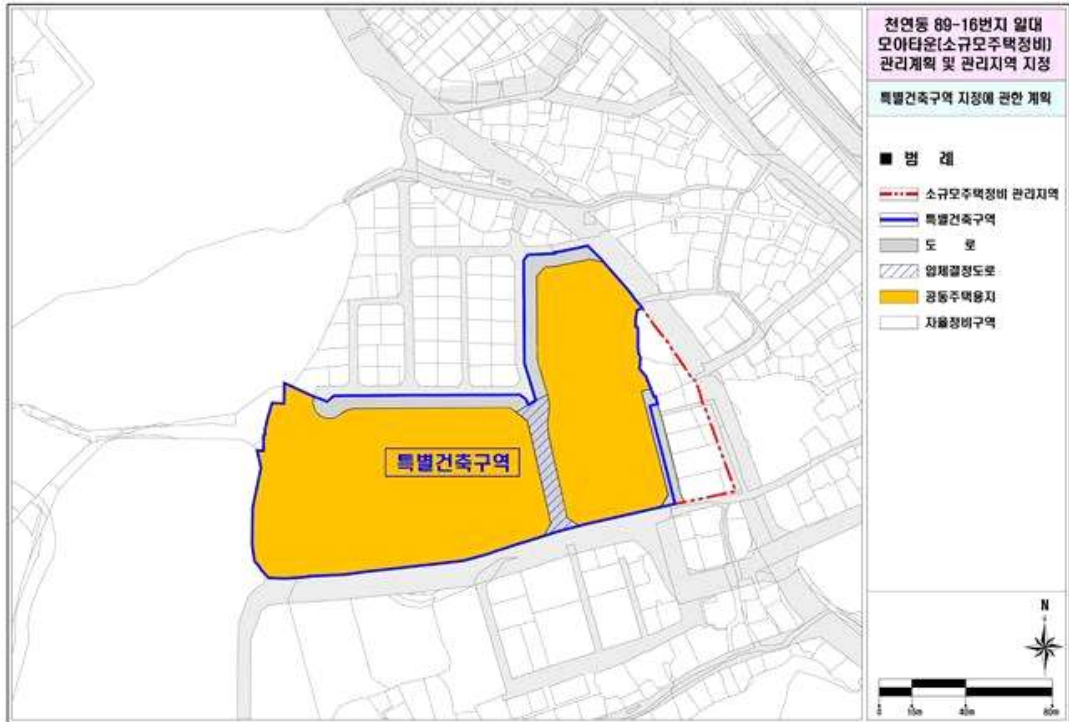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6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내 압구정2구역 신현대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2024.11.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1.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압구정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836,456.5	-	836,456.5	1976.8.21. (건고 131호)

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836,456.5	100.0	836,456.5	100.0	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거 용지	소계	733,621.5	87.7	718,695.7	85.9	감) 14,925.8
	주택용지	733,621.5	87.7	718,695.7	85.9	감) 14,925.8
중심 시설 용지	소계	18,900.1	2.3	18,900.1	2.3	변경없음
	주구중심	12,264.2	1.5	12,264.2	1.5	
	분구중심	6,635.9	0.8	6,635.9	0.8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83,934.9	10.0	98,860.7	11.8	증) 14,925.8
	학교용지	14,135.6	1.7	14,135.6	1.7	변경없음
	공원용지	19,539.0	2.3	19,726.0	2.3	증) 187.0
	도로용지	50,260.3	6.0	62,739.7	7.5	증) 12,479.4
	공공청사	-	-	480.0	0.1	증) 480.0
	공공공지	-	-	1,145.8	0.1	증) 1,145.8
	연결녹지	-	-	633.6	0.1	증) 633.6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254,042.2	100.0	254,042.2	100.0	변경없음
주거 용지	소계	229,999.7	90.5	215,073.9	84.7	감) 14,925.8
	주택용지	229,999.7	90.5	215,073.9	84.7	감) 14,925.8
중심 시설 용지	소계	3,899.1	1.5	3,899.1	1.5	변경없음
	주구중심	3,899.1	1.5	3,899.1	1.5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20,143.4	8.0	35,069.2	13.8	증) 14,925.8
	공원용지	6,800.0	2.7	6,987.0	2.8	증) 187.0
	도로용지	13,343.4	5.3	25,822.8	10.1	증) 12,479.4
	공공청사	-	-	480.0	0.2	증) 480.0
	공공공지	-	-	1,145.8	0.5	증) 1,145.8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연결녹지	-	-	633.6	0.2	증) 633.6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36,456.5	-	836,456.5	100.0	변경없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20,834.3	감) 1,230.7	19,603.6	2.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	29,110.0	3.4	변경없음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0,569.8	-	40,569.8	4.7	변경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942.4	증) 597.1	748,898.8	87.4	-
자연녹지지역	-	증) 633.6	633.6	2.2	-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C~청담사거리	50,016 (15,479.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

※ () 안은 아파트지구 내 면적임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금회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819)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	건고 제503호 (1969.08.27.)	-
변경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819)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536)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540)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		중복결정 : 유수지①, 대로3-A, 소로 1-A
기정	중로	1	2	23.5	국지 도로	31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 2-109	일반 도로	-		중복결정 : 유수지①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4	19	국지 도로	125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 1-2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2	3	12	국지 도로	159	중로 1-4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4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0 일대	지하 도로	-	-	중복결정 : 중로2-109, 연결녹지①
신설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104)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	-	주1)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 연장 내 ()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수치임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3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역을 인센티브를 확정 할 것.(설치비용은 압구정 3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2-28	대로 2-28	• 도로 선형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구역 내 선형 변경
중로 2-109	중로 2-109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1~29.5m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단지로 접근하는 주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23.5m→16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B) : 21m→19m • 연장(L) : 122m→12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5m→12m	
-	소로 1-A	• 지하도로 신설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로 3-A	도로	압구정동 378-1 일대	길이	-	증)64m	64m(280m)	중복결정 : 중로1-136,중로2-289, 중로2-109,연결녹지①, 하천①
				폭	-	증)10m	10m(10~30m)	
				높이	-	해발 17.0~28.0m	해발 17.0~28.0m (해발 13.0~28.0m)	
				수평투영면적	-	증)674.4㎡	674.4㎡(4,709.6㎡)	

※ () 안은 도시계획시설(대로3-A)의 전체 길이, 폭, 높이, 수평투영면적임

※ 대로3-A(입체보행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청과 입체보행교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

※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연장(L) : 64m - 폭원(B) : 10m - 높이 : 해발 17.0m~28.0m - 수평투영면적 : 674.4㎡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26,169.0 (3,446.3)	감)1,944.7	24,224.3 (3,359.7)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 ()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수치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감) 1,944.7㎡ - 녹지 세분 변경 - 완충녹지→연결녹지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 및 녹지 세분 변경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압구정동 433-1 일원	-	증)1,145.8	1,145.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45.8㎡	- 보행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 단기 : 공원 복측 3차선 확보해 운영 - 장기 : 향후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 시 서측 우회 도로로 사용

4)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	증)480.0	480.0	-	서울시 귀속

■ 건축범위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 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50%	250%	5층이하	서울시 귀속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480.0㎡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공공청사를 계획하였으며, 추후 공공청사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청사 세부용도 결정

마.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바. 지구중심의 건축계획(변경없음)

사.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계	172,586.5	증) 20,324.0	192,910.5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8,217.7	감) 1,230.7	6,987.0	3.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4,368.8	증) 2,956.4	167,325.2	86.8	-
	자연녹지지역	-	증) 18,598.3	18,598.3	9.6	-

■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용도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변경 - 감) 1,230.7㎡	-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별 용도지역 정합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획지 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변경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변경 - 증) 2,956.4㎡	
	자연녹지지역	- 면적 변경 - 증) 18,598.3㎡	

2. 용도지구 결정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구	아파트지구	836,456.5 (172,586.5)	-	836,456.5 (172,586.5)	-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50,016.0 (3,179.9)	-	50,016.0 (3,179.9)	-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Ⅲ.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72,586.5	증)20,324.0	192,910.5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a)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61.11% $= (9,241,642,489\text{천원} - 2,955,651,457\text{천원}) / 10,286,272,000\text{천원} \times 100\% = 61.11\%$ - 총 수입 추정 : 9,241,642,489천원 - 총 지출 추정 : 2,955,651,457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10,286,272,000천원																																																																																																																																																																					
	아파트 종전자산 [2024.06.03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아파트 구분</th><th>주택형 (전용(공급))</th><th>세대수</th><th>대지권 (㎡)</th><th>공급면적 (㎡)</th><th>평균 추정가액 (천원)</th><th>총 추정가액 (천원)</th></tr> </thead> <tbody> <tr><td>신현대 9차</td><td>108.88㎡ (35평형)</td><td>192</td><td>62.8605</td><td>116.54</td><td>4,050,000</td><td>777,600,000</td></tr> <tr><td>신현대 9차</td><td>109.24㎡ (35평형)</td><td>96</td><td>62.8605</td><td>116.94</td><td>4,050,000</td><td>388,800,000</td></tr> <tr><td>신현대 9차</td><td>111.38㎡ (36평형)</td><td>144</td><td>62.8605</td><td>119.26</td><td>4,050,000</td><td>583,200,000</td></tr> <tr><td>신현대 9차</td><td>152.28㎡ (50평형)</td><td>96</td><td>88.2529</td><td>164.96</td><td>5,800,000</td><td>556,800,000</td></tr> <tr><td>신현대 9차</td><td>152.39㎡ (50평형)</td><td>72</td><td>88.2529</td><td>165.09</td><td>5,800,000</td><td>417,600,000</td></tr> <tr><td>신현대 11차</td><td>108.36㎡ (36평형)</td><td>52</td><td>62.3637</td><td>119.37</td><td>4,050,000</td><td>210,600,000</td></tr> <tr><td>신현대 11차</td><td>115.23㎡ (38평형)</td><td>65</td><td>62.3637</td><td>126.98</td><td>4,050,000</td><td>263,250,000</td></tr> <tr><td>신현대 11차</td><td>170.81㎡ (57평형)</td><td>52</td><td>95.1901</td><td>188.25</td><td>6,100,000</td><td>317,200,000</td></tr> <tr><td>신현대 11차</td><td>171.43㎡ (57평형)</td><td>78</td><td>95.1901</td><td>188.94</td><td>6,100,000</td><td>475,8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83.41㎡ (61평형)</td><td>312</td><td>101.9438</td><td>202.05</td><td>6,725,000</td><td>2,098,2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07.16㎡ (35평형)</td><td>104</td><td>60.1553</td><td>114.08</td><td>4,050,000</td><td>421,2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08.30㎡ (35평형)</td><td>8</td><td>60.1553</td><td>115.4</td><td>4,050,000</td><td>32,4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08.31㎡ (35평형)</td><td>37</td><td>60.1553</td><td>115.41</td><td>4,050,000</td><td>149,85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08.32㎡ (35평형)</td><td>3</td><td>60.1553</td><td>115.42</td><td>4,050,000</td><td>12,15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09.29㎡ (35평형)</td><td>3</td><td>60.1553</td><td>116.39</td><td>4,050,000</td><td>12,15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10.82㎡ (36평형)</td><td>108</td><td>60.1553</td><td>118.10</td><td>4,050,000</td><td>437,4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12.05㎡ (36평형)</td><td>8</td><td>60.1553</td><td>119.33</td><td>4,050,000</td><td>32,4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21.18㎡ (39평형)</td><td>47</td><td>66.9421</td><td>128.28</td><td>4,450,000</td><td>209,15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21.98㎡ (39평형)</td><td>1</td><td>60.1553</td><td>129.08</td><td>4,450,000</td><td>4,45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22.27㎡ (39평형)</td><td>4</td><td>66.9421</td><td>129.37</td><td>4,450,000</td><td>17,8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55.52㎡ (51평형)</td><td>207</td><td>86.7801</td><td>167.48</td><td>5,800,000</td><td>1,200,600,000</td></tr> <tr><td>신현대 12차</td><td>155.53㎡ (51평형)</td><td>1</td><td>86.7801</td><td>167.49</td><td>5,800,000</td><td>5,800,000</td></tr> </tbody> </table>						아파트 구분	주택형 (전용(공급))	세대수	대지권 (㎡)	공급면적 (㎡)	평균 추정가액 (천원)	총 추정가액 (천원)	신현대 9차	108.88㎡ (35평형)	192	62.8605	116.54	4,050,000	777,600,000	신현대 9차	109.24㎡ (35평형)	96	62.8605	116.94	4,050,000	388,800,000	신현대 9차	111.38㎡ (36평형)	144	62.8605	119.26	4,050,000	583,200,000	신현대 9차	152.28㎡ (50평형)	96	88.2529	164.96	5,800,000	556,800,000	신현대 9차	152.39㎡ (50평형)	72	88.2529	165.09	5,800,000	417,600,000	신현대 11차	108.36㎡ (36평형)	52	62.3637	119.37	4,050,000	210,600,000	신현대 11차	115.23㎡ (38평형)	65	62.3637	126.98	4,050,000	263,250,000	신현대 11차	170.81㎡ (57평형)	52	95.1901	188.25	6,100,000	317,200,000	신현대 11차	171.43㎡ (57평형)	78	95.1901	188.94	6,100,000	475,800,000	신현대 12차	183.41㎡ (61평형)	312	101.9438	202.05	6,725,000	2,098,200,000	신현대 12차	107.16㎡ (35평형)	104	60.1553	114.08	4,050,000	421,200,000	신현대 12차	108.30㎡ (35평형)	8	60.1553	115.4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08.31㎡ (35평형)	37	60.1553	115.41	4,050,000	149,850,000	신현대 12차	108.32㎡ (35평형)	3	60.1553	115.42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09.29㎡ (35평형)	3	60.1553	116.39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10.82㎡ (36평형)	108	60.1553	118.10	4,050,000	437,400,000	신현대 12차	112.05㎡ (36평형)	8	60.1553	119.33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21.18㎡ (39평형)	47	66.9421	128.28	4,450,000	209,150,000	신현대 12차	121.98㎡ (39평형)	1	60.1553	129.08	4,450,000	4,450,000	신현대 12차	122.27㎡ (39평형)	4	66.9421	129.37	4,450,000	17,800,000	신현대 12차	155.52㎡ (51평형)	207	86.7801	167.48	5,800,000	1,200,600,000	신현대 12차	155.53㎡ (51평형)	1	86.7801	167.49	5,800,000
아파트 구분	주택형 (전용(공급))	세대수	대지권 (㎡)	공급면적 (㎡)	평균 추정가액 (천원)	총 추정가액 (천원)																																																																																																																																																																
신현대 9차	108.88㎡ (35평형)	192	62.8605	116.54	4,050,000	777,600,000																																																																																																																																																																
신현대 9차	109.24㎡ (35평형)	96	62.8605	116.94	4,050,000	388,800,000																																																																																																																																																																
신현대 9차	111.38㎡ (36평형)	144	62.8605	119.26	4,050,000	583,200,000																																																																																																																																																																
신현대 9차	152.28㎡ (50평형)	96	88.2529	164.96	5,800,000	556,800,000																																																																																																																																																																
신현대 9차	152.39㎡ (50평형)	72	88.2529	165.09	5,800,000	417,600,000																																																																																																																																																																
신현대 11차	108.36㎡ (36평형)	52	62.3637	119.37	4,050,000	210,600,000																																																																																																																																																																
신현대 11차	115.23㎡ (38평형)	65	62.3637	126.98	4,050,000	263,250,000																																																																																																																																																																
신현대 11차	170.81㎡ (57평형)	52	95.1901	188.25	6,100,000	317,200,000																																																																																																																																																																
신현대 11차	171.43㎡ (57평형)	78	95.1901	188.94	6,100,000	475,800,000																																																																																																																																																																
신현대 12차	183.41㎡ (61평형)	312	101.9438	202.05	6,725,000	2,098,200,000																																																																																																																																																																
신현대 12차	107.16㎡ (35평형)	104	60.1553	114.08	4,050,000	421,200,000																																																																																																																																																																
신현대 12차	108.30㎡ (35평형)	8	60.1553	115.4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08.31㎡ (35평형)	37	60.1553	115.41	4,050,000	149,850,000																																																																																																																																																																
신현대 12차	108.32㎡ (35평형)	3	60.1553	115.42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09.29㎡ (35평형)	3	60.1553	116.39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10.82㎡ (36평형)	108	60.1553	118.10	4,050,000	437,400,000																																																																																																																																																																
신현대 12차	112.05㎡ (36평형)	8	60.1553	119.33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21.18㎡ (39평형)	47	66.9421	128.28	4,450,000	209,150,000																																																																																																																																																																
신현대 12차	121.98㎡ (39평형)	1	60.1553	129.08	4,450,000	4,450,000																																																																																																																																																																
신현대 12차	122.27㎡ (39평형)	4	66.9421	129.37	4,450,000	17,800,000																																																																																																																																																																
신현대 12차	155.52㎡ (51평형)	207	86.7801	167.48	5,800,000	1,200,600,000																																																																																																																																																																
신현대 12차	155.53㎡ (51평형)	1	86.7801	167.49	5,800,000	5,800,000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92,910.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1,225.1	26.6	-
	도 로	24,014.0	12.6	
	연결녹지	15,243.3	7.9	
	입체보행교	3,355.0	1.7	
	공공공지	1,145.8	0.6	
	공원	6,987.0	3.6	
	공공청사	480.0	0.2	
공동주택용지	소 계	141,685.4	73.4	-
	획지1	141,685.4	73.4	

나. 도시·군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15)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중복결정 : 대로 3-A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23)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중복결정 : 대로 3-A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70)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	건고 제503호 (1969.08.27.)	-
변경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70)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606)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610)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		중복결정 : 유수지①, 대로3-A, 소로 1-A
기정	중로	1	2	23.5	국지 도로	31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 2-109	일반 도로	-		중복결정 : 유수지①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4	19	국지 도로	125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 1-2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2	3	12	국지 도로	159	중로 1-4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0 일대	지하 도로	-	-	중복결정 : 중로2-109, 연결녹지①
신설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	-	주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 연장 내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 중로 2-289(올림픽대로)는 도시계획시설 선형 미등재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3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 할 것.(설치비용은 압구정 3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36	중로 1-136	• 대로 3-A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대로 3-A)계획에 따른 중복결정
중로 2-289	중로 2-289	• 대로 3-A 중복결정	
대로 2-28	대로 2-28	• 도로 선형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구역 내 선형 변경
중로 2-109	중로 2-109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1~29.5m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단지로 접근하는 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23.5m→16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B) : 21m→19m • 연장(L) : 122m→12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5m→12m	
-	소로 1-A	• 지하도로 신설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로 3-A	도로	압구정동 378-1 일대	길이	-	증)64m	64m(280m)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폭	-	증)10m	10m(10~30m)	
				높이	-	해발 17.0~28.0m	해발 17.0~28.0m (해발 13.0~28.0m)	
				수평투영면적	-	증)674.4㎡	674.4㎡(4,709.6㎡)	

※ () 안은 도시계획시설(대로3-A)의 전체 길이, 폭, 높이, 수평투영면적임

※ 대로3-A(입체보행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청과 입체보행교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

※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연장(L) : 64m - 폭원(B) : 10m - 높이 : 해발 17.0m~28.0m - 수평투영면적 : 674.4㎡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

2)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2 일원	6,987.0	-	6,987.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 유수지①

3)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26,169.0 (720.6)	감)1,944.7	24,224.3 (15,243.3)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감) 1,944.7㎡ - 녹지 세분 변경 - 완충녹지→연결녹지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 및 녹지 세분 변경

4)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압구정동 433-1 일원	-	증)1,145.8	1,145.8	-	-

※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45.8㎡	- 보행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 단기 : 공원 복측 3차선 확보해 운영 - 장기 : 향후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 시 서측 우회 도로로 사용

5)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	증1480.0	480.0	-	서울시 귀속

■ 건축범위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 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50%	250%	5층이하	서울시 귀속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480.0㎡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공공청사를 계획하였으며, 추후 공공청사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청사 세부용도 결정

6) 방재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유수시설	압구정동 422 신사공원 일원	6,732.2	-	6,732.2	서고 제2013-315호 (2013.09.26.)	중복결정 : 공원①, 중로2-109, 중로1-2, 연결녹지①
기정	①	하천	하천시설	압구정동 378-1 일원	(865.7)	-	(865.7)	-	중복결정 : 대로3-A

※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관리사무실	획지	-	증)470.56	470.56	10㎡+(2,571세대-50세대) x0.05㎡=136.05㎡이상
"	경비실/MDF실/방재실	"	-	증)188.28	188.28	-
"	기계,전기실	"	-	증)10,655.96	10,655.96	-
"	지하주차장	"	-	증)226,398.92	226,398.92	-
"	근린생활시설	"	-	증)5,670.38	5,670.38	지상 : 2,200.00㎡ 지하 : 3,470.38㎡
"	소 계	"	-	증)33,312.62	33,312.62	1,000세대 이상 : (500㎡+ 2,571세대x2㎡)x1.25 = 7,052.50㎡
"	경로당	"	-	증)870.17	870.17	725+(2,571-2,000)x0.2 = 839.20㎡
"	어린이놀이터	"	-	증)2,588.36	2,588.36	500+2,571세대x0.7 =2,299.70㎡이상
"	어린이집	"	-	증)1,201.20	1,201.20	725+(2,571-2,000)x0.2 = 839.20㎡
"	주민운동시설	"	-	증)1,200.00	1,200.00	-
"	작은도서관	"	-	증)890.24	890.24	298+(2,571-2,000)x0.1=355.10㎡
"	다함께돌봄센터	"	-	증)538.12	538.12	전용면적 66㎡ 이상
"	기타주민공동시설	"	-	증)26,024.53	26,024.53	-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구역	192,910.5	획지	141,685.4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31	-	-	31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신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구역	192,910.5	획지	141,685.4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62.81% 이하	299.99% 이하	25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총세대수	분양	임대	비율	
					59㎡	321	-	321	12.5%	
					84㎡	536	536	-	20.8%	
					96㎡	137	137	-	5.3%	
					106㎡	211	211	-	8.2%	
					116㎡	243	243	-	9.5%	
					128㎡	333	333	-	13.0%	
					140㎡	160	160	-	6.2%	
					152㎡	225	225	-	8.8%	
					165㎡	141	141	-	5.5%	
					183㎡	114	114	-	4.4%	
					204㎡	114	114	-	4.4%	
					222㎡	30	30	-	1.2%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table><tr><th>구분</th><th>총세대수</th><th>분양</th><th>임대</th><th>비율</th></tr><tr><td>300㎡</td><td>6</td><td>6</td><td>-</td><td>0.2%</td></tr><tr><td>계</td><td>2,571</td><td>2,250</td><td>321</td><td>100.0%</td></tr></table>								구분	총세대수	분양	임대	비율	300㎡	6	6	-	0.2%	계	2,571	2,250	321	100.0%
구분	총세대수	분양	임대	비율																					
300㎡	6	6	-	0.2%																					
계	2,571	2,250	321	100.0%																					
심의완화사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99%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측 현대고변, 광역통경축(논현로)변 : 10m - 압구정로, 한강변 연결부 : 6m - 이면부 : 3~5m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내부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 8m 계획 - 대상지 내부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 : 8m 계획 - 통경축 - 단지 내 중앙을 통과하는 남·북방향 보행통경축 : 30m 계획 - 가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배치구간 계획(정비계획 결정도 참고)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A+B)	획지면적(㎡) (A)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소계	토지면적 (B)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192,910.5	141,685.4	52,713.4	51,225.1	1,488.3	35,976.0	500.8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소계(A+B)	•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A+B) : 51,225.1㎡ + 1,488.3㎡ = 52,713.4㎡ ⇒ (순부담) 52,713.4㎡ - 35,976.0㎡ - 500.8㎡ = 16,236.6㎡(10.4%)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공공시설 토지면적 (A)	• 도로 : 24,014.0㎡ • 연결녹지 : 15,243.3㎡ • 도로(입체보행교) : 3,355.0㎡ • 공공공지 : 1,145.8㎡ • 공원 : 6,987.0㎡ • 공공청사 : 480.0㎡ ⇒ 합계(A) : 51,225.1㎡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B)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 (입체보행교) = 9,966,000원 x 6,494.0㎡ / 23,878,886.2원 x 2.0 = 1,355.1㎡ - (공공청사) = 3,644,545.5원 x 740.0㎡ / 23,878,886.2원 x 2.0 = 56.5㎡ - (지하차도) = 3,665,781,500원 / 23,878,886.2원 x 2.0 = 76.7㎡ ⇒ 합계(B) : 1,355.1㎡ + 56.5㎡ + 76.7㎡ = 1,488.3㎡ ※ 공공청사 공사비 : 2022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공공업무사무소 500~1500㎡) 적용 ※ 입체보행교 공사비 : 망원초록길 조성사업비의 약 1.2배 적용 ※ 지하차도 공사비 :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지하차도 왕복 4차로 단위공사비x65~75% (압구정 3구역과 1/2씩 부담)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허용용적률 20% 상응하는 계획 유도 포함)						
	구분						인센티브
	공공보행 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사업시행인가 시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승인					6.6%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5%

구 분	산정내용		
	구분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α ※ $\alpha=0.10$ 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BF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3%
	충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을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3%
	합계		22.6% >20%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 α (토지) + 0.7× α (건축물)) = 230% × (1 + 1.3 × 0.1041 + 0.7 × 0.0105) = 262.81% ※ α (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4,748.3㎡ / 141,685.4 = 0.1041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488.3㎡ / 141,685.4 = 0.0105		
법적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		

바.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구분	지점	개 선 대 책					
사업 지구의 외부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18.1』 내용 반영					
	-	『압구정지구(2~5구역) 신속통합기획, 2023.7.11.』 내용 반영					
	-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신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구 분	도로명	차로운영계획	폭 원	비 고	
	㉠	북측	논현로189길	왕복 3차로	20.0m	일부구간 지하차도	
	㉡	서측	신설도로	왕복 3차로	16.0m	서측 현대고 인접도로	
	㉢	남측	압구정로	왕복 8차로	35.0m	사업지측 set-back(B=5.0m)	
	㉣	공원 북측	신설도로	왕복 3차로	12.0m	압구정로변 공원 인접도로	
	㉤	공원 서측	신설도로	왕복 5차로	19.0m	압구정로변 공원 인접도로	
㉞	장기안(현대백화점 및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시) 제시						
㉟	서측 신설도로 북측 상단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지구의 내부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구 분	접속도로	진출입구 운영			
	㉑	북측	논현로189길	3지 교차로			
	㉒	서측	신설도로	3지 교차로			
	㉓	동측	논현로	진입만 가능			
	㉔	공원 서측	신설도로 접속부	3지 교차로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00% 이상 확보					
	-	사업지 주변도로상 보도,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	도로명	보 도		보행로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자전거도로
				사업지측	맞은편		
	㉕	북측	논현로189길	2.25m	2.25m	-	1.5m
	㉖	서측	신설도로	-	2.5m	2.5m	1.5m
	㉗	남측	압구정로	2.5m	4.5m	-	1.5m
	㉘	공원 북측	신설도로	-	2.0m	3.0m	-
	㉙	공원 서측	신설도로	-	2.0m	3.0m	-
	㉚	북측 한강변 연결 입체 보행교 설치					
	㉛	사업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 - 동서측 B=8.0m, 남북측 B=8.0m					

※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구분	지점	개 선 대 책
주차	-	• 계획주차대수 : 5,234대(100% 자주식) - 공동주택 5,212대, 근린생활시설 22대 - 법정주차대수(4,565대)의 114.65% 확보 - 주차수요(4,038대)의 129.62%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면 법정주차대수의 3.00% 이상 확보 - 확장형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0.00% 이상 확보 - 경형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10.00% 이하 확보 - 가족배려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10.00% 이상 확보 - 가족배려(확장형)주차면 가족배려주차면의 50.00% 이상 확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00% 이상 확보
	-	• 주차램프 및 주차장출입구 전면 차량경고등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
	-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되는 보도와 횡단보도는 턱낮춤 시공 및 점자유도블럭 설치

※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이내 대상지 남서측 학교 3개소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신구초등학교)	- 대상지 내 일부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 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 대상지 내 절대보호구역 : 5,854.0㎡ - 대상지 내 상대보호구역 : 82,55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자.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31	27	4	31	31	-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 계		1,924	-	-	-	1,924	1,924	-	-
85㎡ 초과	소 계	-	-	-	-	-	-	-	-
	85㎡~135㎡	-	-	-	-	872	872	-	-
	135㎡~150㎡	-	-	-	-	-	-	-	-
150㎡ 초과	소 계	-	-	-	-	740	740	-	-
	150㎡~185㎡	-	-	-	-	532	532	-	-
	185㎡~200㎡	-	-	-	-	208	208	-	-
200㎡ 초과	소 계	-	-	-	-	312	312	-	-
	200㎡ 초과	-	-	-	-	312	312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합 계	2,571	2,250	321	-
60㎡미만	321	-	321	-
60㎡~85㎡미만	536	536	-	-
85㎡~120㎡미만	591	591	-	-
120㎡~150㎡미만	493	493	-	-
150㎡~200㎡미만	480	480	-	-
200㎡ 이상	150	150	-	-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주택규모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결정됨

카.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 임시 보안등 설치

- 시행계획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관계 법령에 따름
-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사각지대 파악
-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 공사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을 파악 검토
- 보안등 체계를 도면화하여 상시 관리
-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2)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관제시스템 설치

- 정비구역 내 범죄 발생 가능 예상지역 파악
- 주요 거리 및 공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도면을 비치
-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실의 관측상황을 지속적으로 순찰요원과 공유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업무 협조
-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3) 정비구역 내 전문 순찰요원 투입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한 전문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 공사 발생에 따라 요원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 경찰서/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조 및 능동적인 대처법 연구
- 정비구역 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세대 표시 및 중점 관리
- 관리공가는 일 1회 이상, 방치공가는 일 5회 이상 순찰 및 점검
- 방법순찰일지 작성, 주·야간 교대 시 합동순찰 일 2회 이상 실시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획지1	141,685.4	압구정동 434 일대	141,685.4	공동주택

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총 동수(임대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획지1	141,685.4	14(6)	321세대	전용 59㎡	26,377.65㎡

구분	주요내용	비고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
정비계획용적률	• 262.81%	-
소형주택 공급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개발가능용적률}) \times 50\%$ $= (299.99\% - 262.81\%) \times 50\%$ $= 37.18\% \times 50\% = 18.59\% \text{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text{대지면적} \times 18.59\%$ $= 141,685.44\text{㎡} \times 18.59\%$ $= 26,339.33\text{㎡} \text{ 이상}$	-
소형주택 건설계획	• 국민주택규모 주택규모 - 공급 82.14㎡(전용 59.95㎡) : 321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 26,339.33\text{㎡} < 26,377.65\text{㎡}$	-
확보방법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	-

거.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너.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평가도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 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도로 및 공원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11.39m~21.07m, 평균 경사도 0.85°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8.12%	-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및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65층 이하로 계획,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층수 배치 - 측벽의 노출이 많은 조망으로 특화계획 마련하여 한강변의 다채로운 경관 형성 유도	-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부족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높이 65층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해당 사항 없음	-	-
22	전파장애	전파장애 영향 저감	-	해당 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수형, 재활용 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수반하겠음
-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서측 근린공원 및 대상지 내 연결녹지로 이식하도록 하겠음

러.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

■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1,924	5,406	2,571	5,914	-
60㎡ 이하	-	-	321	739	-
60㎡ ~ 85㎡	-	-	536	1,233	-
85㎡ 초과	1,924	5,406	1,714	3,942	-

※ 계획 인구수는 세대당 2.30인 적용 (2021 강남통계연보)

머.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1,164,364.5 (172,586.5)	증) 3,355.0	1,167,719.5 (192,910.5)	-

※ ()은 압구정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면적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명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164,364.5 (172,586.5)	증) 3,355.0	1,167,719.5 (192,910.5)	2023.07.11.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역계 일부 변경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64,364.5	증) 3,355.0	1,167,719.5	100.0	
주거 지역	소계	1,099,784.6	증) 1,724.2	1,101,508.8	94.3	
	제1종일반주거지역	43,833.5	감) 1,230.7	42,602.8	3.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1,844.1	-	181,844.1	15.6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09.6	-	29,709.6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44,397.4	증) 2,954.9	847,352.3	72.6	
녹지 지역	소계	64,579.9	증) 1,630.8	66,210.7	5.7	
	자연녹지지역	64,579.9	증) 1,630.8	66,210.7	5.7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43,833.5	감) 1,230.7	42,602.8	2023.07.11.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 구역②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증가 -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별 용도지역 정합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844,397.4	증) 2,954.9	847,352.3	
	자연녹지지역	64,579.9	증) 1,630.8	66,210.7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 제1976-131호 (1971.8.21.)	압구정지구
기정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 청담사거리	50,016 (41,35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4.17.)	압구정로

※ ()은 지구단위구역 내 해당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7.)	-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15)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7.)	중복결정: 대로 3-A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 제635호 (1983.11.25.)	-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23)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 제635호 (1983.11.25.)	중복결정: 대로 3-A
기정	광로	2	18	40 (41~43)	주간선 도로	6,500 (369)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 도로	건고 제46호 (1976.4.7.)	-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557)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건고 제503호 (1969.8.27.)	특별계획구역② 내 선형 변경
변경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557)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 도로	6,717 (402)	압구정동	포이동 (광로27)	일반 도로	건고 제503호 (1969.8.27.)	-
기정	대로	2	63	30~65 (52)	주간선 도로	4,100 (584)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일반 도로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 2-28)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철도②,③
기정	중로	1	2	23.5	국지 도로	31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 2-109	일반 도로		중복결정 : 유수지①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1	4	19	국지 도로	125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6	23.5	국지 도로	486	대로 2-28	압구정 369-1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28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1	18.5	국지 도로	143	대로 2-28	압구정 408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 1-2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2	3	12	국지 도로	159	중로 1-4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 도로	42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828)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서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832)	신사동	영등교	일반 도로		중복결정: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기정	중로	2	15	15	국지 도로	50	중로 2-109	압구정 414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5	12~15	국지 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 1-6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246	중로 1-6	중로 2-8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00	중로 1-10	압구정 484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363	중로 1-10	대로 3-71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81	대로 2-28	중로 3-11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13	12	국지 도로	141	대로 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14	10~12	국지 도로	207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 제517호 (2023.11.23.)	-
신설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0 일대	지하 도로	-	중복결정 : 중로2-109, 연결녹지①
신설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	주1)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 연장 내 ()는 지구단위구역 내 해당 사항임

※ 중로 2-289(올림픽대로)는 도시계획시설 선형 미등재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3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 할 것.(설치비용은 압구정 3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1-136	중로 1-136	• 대로 3-A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대로 3-A)계획에 따른 중복결정
중로 2-289	중로 2-289	• 대로 3-A 중복결정	
대로 2-28	대로 2-28	• 도로 선형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② 내 선형 변경
중로 2-109	중로 2-109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1~29.5m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단지로 접근하는 주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② 내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23.5m→16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B) : 21m→19m - 연장(L) : 122m→125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5m→12m	
-	소로 1-A	• 지하도로 신설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로 3-A	도로	압구정동 378-1 일대	길이	-	증)64m	64m(280m)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폭	-	증)10m	10m(10~30m)	
				높이	-	해발 17.0~28.0m	해발 17.0~28.0m (해발 13.0~28.0m)	
				수평투영면적	-	증)674.4㎡	674.4㎡(4,709.6㎡)	

※ () 안은 도시계획시설(대로3-A)의 전체 길이, 폭, 높이, 수평투영면적임

※ 대로3-A(입체보행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청과 입체보행교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

※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연장(L) : 64m - 폭원(B) : 10m - 높이 : 해발 17.0m~28.0m - 수평투영면적 : 674.4㎡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압구정동 428	13,381.0	-	13,381.0	-	중복결정 : 공원②(지상)

3) 철도

■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원	5,800.0 (2,506.0)	서고 287호 (1981.7.30.)	중복결정: 대로 2-63 대로 2-30
기정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0 (2,489.0)	건고 87호 (2005.4.16.)	중복결정: 대로 3-7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1.18.)	중복결정 : 대로3-71

※ ()의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26,169.0	감)1,944.7	24,224.3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유수지①, 교통광장①, 대로3-A, 소로1-A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5,696.0	-	5,696.0	-	-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97, 498	14,180.0	-	14,180.0	-	-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505, 506, 507, 147	13,260.0	-	13,260.0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감) 1,944.7㎡ - 녹지 세분 변경 - 완충녹지→연결녹지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 및 녹지 세분 변경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2 일원	6,987.0	-	6,987.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유수지①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8 일원	13,381.0	-	13,381.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주차장①
기정	⑥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397 일원	4,400.0	-	4,400.0	서고 제504호 (1983.01.25.)	-
기정	⑦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510 일원	5,030.0	-	5,030.0	서고 제1994-1호 (1994.01.08.)	-

3) 광장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157호	교통광장	한남대교남단 (한강둔치일원)	216,218.0 (8,376.0)	서고 제1997-200호 (1997.06.17)	중복결정 : 녹지① (중복면적: 2,348㎡)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	압구정동 490 일원	693.0	-	693.0	서고 제517호 (2023.11.23.)	-
신설	②	공공공지	-	압구정동 433-1 일원	-	증)1,145.8	1,145.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45.8㎡	- 보행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 단기 : 공원 복측 3차선 확보해 운영 - 장기 : 향후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 시 서측 우회 도로로 사용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교	신사 중교	압구정동 410	15,000.0	-	15,000.0	서고 제256호 (1981.07.07.)	-
기정	②	학교	고교	현대 고교	압구정동 423, 424, 425	18,500.0	-	18,500.0	서고 제162호 (1978.04.17)	-
기정	③	학교	초교	압구정 초교	압구정동 469	14,135.6	-	14,135.6	서고 (1975.12.08)	-
기정	④	학교	중교	압구정 중교	압구정동 471	15,000.0	-	15,000.0	서고 (1991.12.31)	-
기정	⑤	학교	고교	압구정 고교	압구정동 470	17,422.0	-	17,422.0	서고 (1991.12.31)	-
기정	⑥	학교	초교	청담 초교	청담동 142	14,774.0	-	14,774.0	서고 (1991.12.31)	-
기정	⑦	학교	중교	청담 중교	청담동 143	14,754.0	-	14,754.0	서고 (1991.12.31)	-
기정	⑧	학교	고교	청담 고교	청담동 514, 526	13,884.0	-	13,884.0	서고 (1991.12.31)	-
기정	⑨	학교	-	-	압구정동 423, 424	14,999.8	-	14,999.8	서고 (1991.12.31)	-

2)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공연장 및 도서관	압구정동 414 일원	3,000.0	-	3,000.0	서고 제517호 (2023.11.23.)	-

3)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	증)480.0	480.0	-	서울시 귀속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480.0㎡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공공청사를 계획하였으며, 추후 공공청사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청사 세부용도 결정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유수 시설	압구정동 422 신사공원 일원	6,732.2	-	6,732.2	서고 제2013-315호 (2013.09.26.)	중복결정 : 공원①, 종로2-109, 종로1-2, 연결녹지①
기정	①	하천	하천 시설	압구정동 378-1 일원	(865.7)	-	(865.7)	-	중복결정 : 대로3-A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가구	-	6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10개소
계획단위	특별계획구역	- 정비사업 추진단지(추진위원회 승인 ~ 준공전) - 미추진 단지 중 부지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9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적으로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도입이 필요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주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구역	-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과소필지)	-
	공동개발(권장)	- 기 건축된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 ※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연접된 필지간 통합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이상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함 -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개발,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시 RA-3코드 기준 적용 가능 - 연접된 아파트단지와외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공동개발을 권장함	기존 개발잔여지

나. 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압구정동 414일원	93,576.5	-	93,576.5	특별계획구역 1
B	압구정동 434일원	216,458.2	증)2,392.0	218,850.2	특별계획구역 2,7
C	압구정동 369-1일원	82,445.6	-	82,445.6	특별계획구역 3
D	압구정동 447일원	100,258.8	-	100,258.8	-
E	압구정동 458일원	123,404.2	-	123,404.2	-
F	압구정동 464일원	58,295.4	-	58,295.4	-
G	압구정동 481일원	79,661.3	-	79,661.3	특별계획구역 4
H	압구정동 490일원	93,518.8	-	93,518.8	특별계획구역 4,5,8
I	압구정동 513일원	75,781.7	-	75,781.7	특별계획구역 6,8,9
J	압구정동 143일원	29,526.1	-	29,526.1	-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	- 가구 면적 변경 - 면적 : 216,458.2㎡ → 218,850.2㎡ (증 2,392.0㎡)	확지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다.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A1		압구정동 414일원	60,580.0	-	60,580.0	특별계획구역 1 (미성1차,2차APT)
	A2		압구정동 408일원	5,982.8	-	5,982.8	
B	B1	B1	압구정동 434일원	120,837.3	증)8,728.1	141,685.4	특별계획구역 2 (현대9,11,12차APT)
	B2		압구정동 426일원	12,120.0			
	B3		압구정동 429일원	10,473.1	-	10,473.1	특별계획구역 7 (현대백화점)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C	C1		압구정동 369-1일원	76,750.0	-	76,750.0	특별계획구역 3 (현대1,2,3,4,5,6,7,10,13,14차APT ,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D	D1		압구정동 447일원	97,526.4	-	97,526.4	
E	E1		압구정동 455일원	96,148.0	-	96,148.0	
	E2		압구정동 458일원	10,035.6	-	10,035.6	
F	F1		압구정동 465일원	26,201.6	-	26,201.6	
G	G1		압구정동 481일원	76,661.3	-	76,661.3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3,4,6차APT)
H	H1		압구정동 489일원	8,556.4	-	8,556.4	
	H2		압구정동 490일원	55,395.0	-	55,395.0	특별계획구역 5 (한양1,2차APT)
	H3		압구정동 489일원	7,725.9	-	7,725.9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3,4,6차APT)
	H4		압구정동 494일원	10,203.4	-	10,203.4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	I1		압구정동 513일원	41,590.0	-	41,590.0	특별계획구역 6 (한양5,7,8차APT)
	I2		압구정동 515 일원	8,549.8	-	8,549.8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3		압구정동 518일원	2,986.1	-	2,986.1	특별계획구역 9 (기아자동차)
	I4		압구정동 521일원	1,579.6	-	1,579.6	기존 개발잔여지
J	-		-	-	-	-	-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기반시설은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B1	B1	120,837.3	증)8,728.1	141,685.4	•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B2		12,120.0			

4.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권장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저층부(1~2층)	비고
권장 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	-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나. 허용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RA-3, RA-(3)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비고
불허 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A-3, RA-(3)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RG-3, CG-3
	C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CG-3

구분	도면 표시	전 총	비고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라. 용도완화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비주거시설로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완화
- 현 건축물 용도의 특성(대규모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운영 중)을 고려 건축물 용도완화

구분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계획수립	비고
용도 완화	-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너비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	- 용도완화계획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완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규모로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면적제한 완화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5.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건폐율	코드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RA-3, RA-(3)
		RG-3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3종일반 주거지역	170%이하	170%이하	3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법정상상한용적률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RA-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 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코드 RA-3을 적용	RG-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CG-3

-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름
- ※ 용도지역 상향부지는 재건축 추진 시 용도지역 상황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확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 본 지구단위계획 차기 재정비 시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아파트지구 외의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예정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총 20%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시(市)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1	우수디자인	15%p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p
3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6%p	3%p

구 분		적용기준				
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p		
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20% 이하 15% 초과	15% 이하 10% 초과		
		3%p	2%p	1%p		
6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7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0.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10%p 이내
8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9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 a ※ a=0.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10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11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12	지역기반시설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 a ※a=0.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서울시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13	지역특화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p 이내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코드구분
	기준	최고		
재건축단지 (아파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A-3, RA-(3)
기존 개발잔여지	-	5층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G-3
기존 중심시설	-	5층 이하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6.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선	건축 한계선	올림픽대로 (한강변 굴곡부)		• 올림픽대로 경계선 등으로부터 20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광역 통경축	강남대로 (한남대교)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논현로 (동호대교)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언주로 (성수대교)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지구 통경축	압구정로 11길,39길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선릉로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압구정로~ 한강 연계도로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압구정로 61길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5m		
		압구정로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획지4(압구정동 520~524)는 획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		
		한강변 연결부 (중로2-109, 완충녹지)		• 도로·녹지경계선 등으로부터 6m		
		이면부	• 도로·공원경계선 등으로부터 1~3m	• 도로·공원경계선 등으로부터 1~5m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벽면 한계선	강남대로, 논현로, 연주로, 압구정로 61길	- 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대지경계로부터 폭 3m 구간) - 한강변 굴곡부에 계획된 건축한계선 20m 구간 내 10m는 방음식재구간으로 조성 - 압구정로변으로 계획된 건축한계선 6m 구간에 대하여 대지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4m)과 조정공간으로 조성 - 조정공간 내에는 가로수, 벤치 등을 일체형으로 조화롭게 조성하여 가로정원으로 계획, 단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 불허 - 가로활성화특화구간 내 전면공지는 가로형 조정으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공공 보행 통로	공동주택용지	- 폭 6m 이상 및 24시간 개방 - 공공보행통로 주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커뮤니티가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근린 광장 (권장)	공동주택용지	단지 중심부 보행동선이 교차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 근린광장 등 주민휴게시설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에 해당하는 도로변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은 공원 및 녹지시설 확보시 해당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한계선	이면부	도로·공원경계선 등으로부터 1~3m → 1~5m	특별계획구역② 내 도로(중로 1~4)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변경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RA-(3)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단지 내부 배치는 터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층~20층 이하)로 배치하고, 주변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범위 결정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정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부대 및 복리시설	RA-3, RA-(3)	-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
	특화구간	수변부건축물 디자인 특화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한강변 조망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수변주거로서 상징성을 나타낼수 있는 주동배치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등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배치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생시설 등 배치 - 저층부(2층 이하)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 논현로변 특화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가로활성화 도모(권장) - 압구정로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유도(권장)	신설
		중저층 배치구간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위압적 경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저층 배치(권장)	신설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특화구간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와 만나는 접점부에 수변 커뮤니티시설(개방형) 조성 (개방형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상부 주동계획 불허)	신설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으로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주동계획	신설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건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배치 및 형태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신설	2023.07.11.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치구간 및 특화구간 신설
	중저층 배치구간	신설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신설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신설	

－ 이 하 여 백 －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압구정동 414일원	86,671.8	-	86,671.8	미성1차,2차APT
변경	특별계획구역 2	압구정동 434일원	189,555.5	증)3,355.0	192,910.5	현대9,11,1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3	압구정동 369-1일원	397,815.7	-	397,815.7	현대1,2,3,4,5,6,7,10,13,14차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기정	특별계획구역 4	압구정동 481일원	118,859.6	-	118,859.6	현대8차, 한양3,4,6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5	압구정동 490일원	78,989.6	-	78,989.6	한양1,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압구정동 513일원	60,179.6	-	60,179.6	한양5,7,8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7	압구정동 429일원	10,473.1	-	10,473.1	현대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8	압구정동 494일원	20,362.9	-	20,362.9	갤러리아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9	압구정동 518일원	2,986.2	-	2,986.2	기아자동차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2	189,555.5	증)3,355.0	192,910.5	2023.07.11.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한강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역계 일부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압구정동 434일원	현대9,11,12차 APT
구역면적			• 189,555.5㎡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 향후 정비계획 결정 시 아파트지구 폐지	
획지계획			• 획지 B1, B2	
공공시설 등 계획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도로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도로 설치 • 공원 및 녹지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설치 - 연접한 중로1-2 정형화에 따라 기정 공원① 규모 및 형태 변경 - 연접한 중로2-109 정형화에 기정 녹지① 규모 및 형태 변경 •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결정(변경 및 신설)하고 합리적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지침도에 따름
용도 계획	불허 용도	획지 B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B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본 지구단위계획 “③-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나.불허용도’
	허용 용도	획지 B1	•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표 계속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계획	권장 용도	획지 B2	전층	저층부(1~2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	
밀도 계획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획지 B1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본 지구단위계획 “③-3.-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 준수		
		획지 B2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획지 B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지침도에 따름
		획지 B2	5층 이하 -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B1	-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2) 10m, 한강변 연결부(중로2-109) 6m, 이면부(이면도로) 3m - 벽면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광역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벽면 후퇴 (11층이상부터 적용)		지침도에 따름
		획지 B2	- 건축한계선 - 압구정로 6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2) 10m, 이면부 (이면도로) 1~3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근린광장(권장) : 본 지구단위계획 “③-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수변부건축물디자인 특화구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 본 지구단위계획 “③-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지침도에 따름
	기타 외관요소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③-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 표 계속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지침에도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지역여건, 상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획지B2 주거용도 허용여부 및 비율 결정 - 기존 중심시설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서울시 정비지원 신속통합기획(서울특별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 우선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용도완화 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획지B2 내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이 하 여 백 -

■ 특별계획구역 2(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압구정동 434일원	현대9,11,12차 APT	
구역면적		• 192,910.5㎡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	
획지계획		• 획지(B1) : 141,685.4㎡	-	
기반시설계획		• 도로 : 24,014.0㎡ • 연결녹지 : 15,243.3㎡ • 입체보행교 : 3,355.0㎡ • 공공공지 : 1,145.8㎡ • 공원 : 6,987.0㎡ • 공공청사 : 480.0㎡	지침도에 따름	
공공시설 등 계획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순부담 : 16,236.6㎡(10.4%)	-	
용도 계획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00% 이하(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상한용적률 : 262.81%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	-	
	높이	• 250m 이하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압구정 전체를 순환하는 보행동선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공공 보행 통로		•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 폭 8m •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 : 폭 8m
교통 처리 계획	차량 출입구	• 대상지 서측(중로1-2) : 1개소 • 대상지 북측(논현로189길) : 1개소 • 압구정로변 공원 서측(중로1-4) : 1개소 • 논현로변 : 1개소(진입만 허용)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침도에 따름	지침도에 따름	

〈 표 계속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특화 배치 구간	수변디자인 특화구간	• 한강변(중로1~109)은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보이드/필로티 공간 조성, 플로팅 매스 등 다채로운 수변 경관계획	지침도에 따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 노현로변 특화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가로활성화 도모(권장) • 압구정로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권장)	
		중저층 배치구간	• 대상지 서측 현대고등학교 도로변(중로1~2)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위압적 경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저층 배치(권장)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 동호대교변의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주동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창의적인 랜드마크 디자인 형태의 고층 타워형 주동 배치	
	통경축		• 압구정로변 공원 서측 도로(중로1~4)에서 단지 내 중앙을 지나 한강변으로 보행통경축을 확보(30m)하여 압구정로에서 개방된 시야 확보	
기타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기존 중심시설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서울시 정비지원 신속통합기획(서울특별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 우선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 3(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4(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5(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6(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7(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8(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9(변경없음)

8.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원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택 (RA-3, RA-(3))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급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도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RA-3, RA-(3))	- 학교·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 차량진출입을 허용하며, 신축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지침 적용

9.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의 입안) 제4항 제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정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수정가결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수정사항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987.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7,325.2㎡ - 자연녹지지역 : 18,598.3㎡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987.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7,325.2㎡ - 자연녹지지역 : 18,598.3㎡	반영
	•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 230% - 상한용적률 : 262.81%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 230% - 상한용적률 : 262.81%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반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6.6% - 열린단지 5% - 돌봄시설 5% - 층간소음 해소 3% - BF인증 3%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6.6% - 열린단지 5% - 돌봄시설 5% - 층간소음 해소 3% - BF인증 3% = 총계 : 22.6%(20% 적용)	반영
	• 높이계획 : 250m 이하 ※ 조건사항 반영	• 높이계획은 250m 이하로 변경하였음.	반영
	• 순부담 : 16,236.6㎡	• 순부담 : 16,236.6㎡	반영
	• 세대수 : 2,606세대 (임대주택(법적상한) 321세대)	• 세대수 : 2,571세대 (임대주택(법적상한) 321세대) ※ 조건사항 반영에 따른 세대수 변경	반영
	• 압구정로변에서 접근하는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 방향과 일치되도록 조정	• 압구정로변에서 접근하는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방향과 일치되도록 북측방향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공공청사(파출소)는 공공청사(서울시 귀속)으로 변경	• 공공청사는 서울시 귀속으로 변경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 50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 동 허용을 조건으로 높이계획을 250미터 이하로 결정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미터 이하로 할 것	• 50층 이상은 2개 동 계획(65층)하였으며 최고높이는 250미터 이하로 결정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음.	반영
	• 한강변 첫 주동은 높은 층수 건물과 분리하여 20층 이하로 계획할 것	• 한강변 첫 주동은 분리하여 20층 이하로 계획하였음.	반영

구 분	수정가결의견	반영계획	비고
	공원 및 현대백화점 복측 도로계획은 유지 할 것	공원 및 현대백화점 복측 도로계획은 유지하였음.	반영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높이 및 배치 계획 조정 시, 건축위원회 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전 본위원회 보고 할 것	건축위원회 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전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V. 관계도면 : 불임참조

-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관련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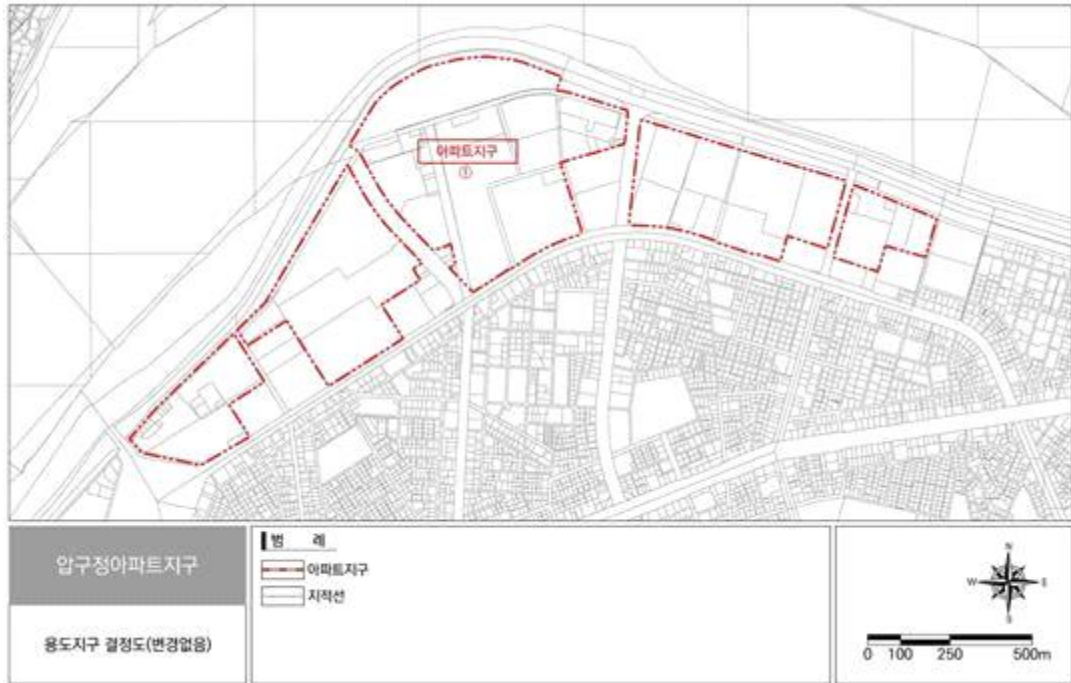
VI.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II. 열람장소

-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0000)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6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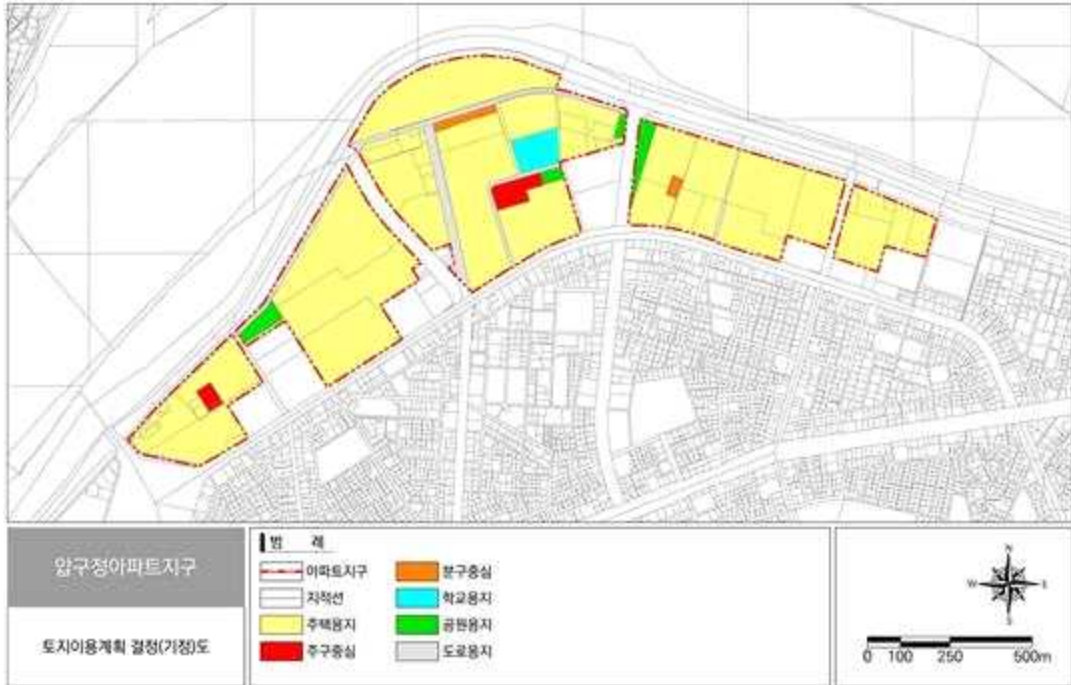
[붙임]

■ 압구정 아파트지구 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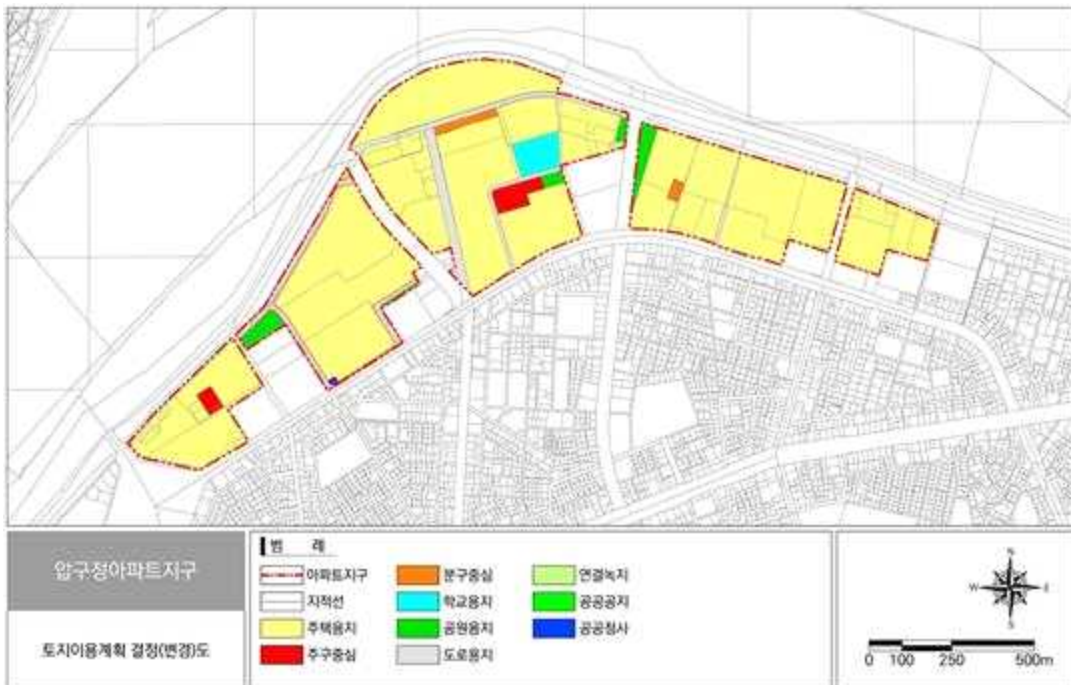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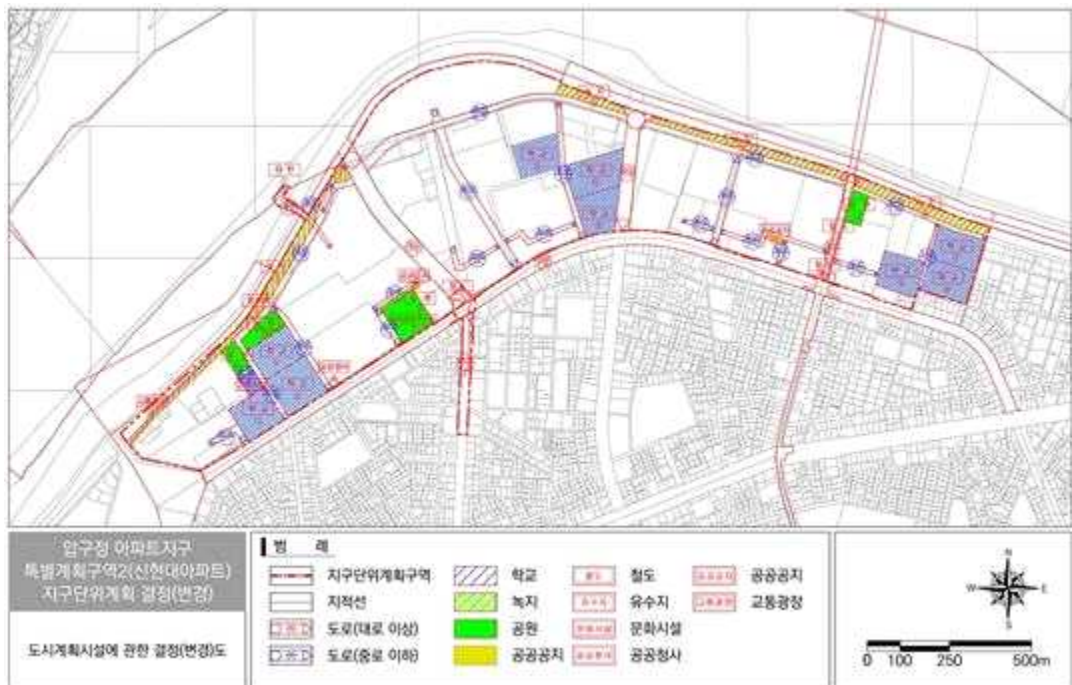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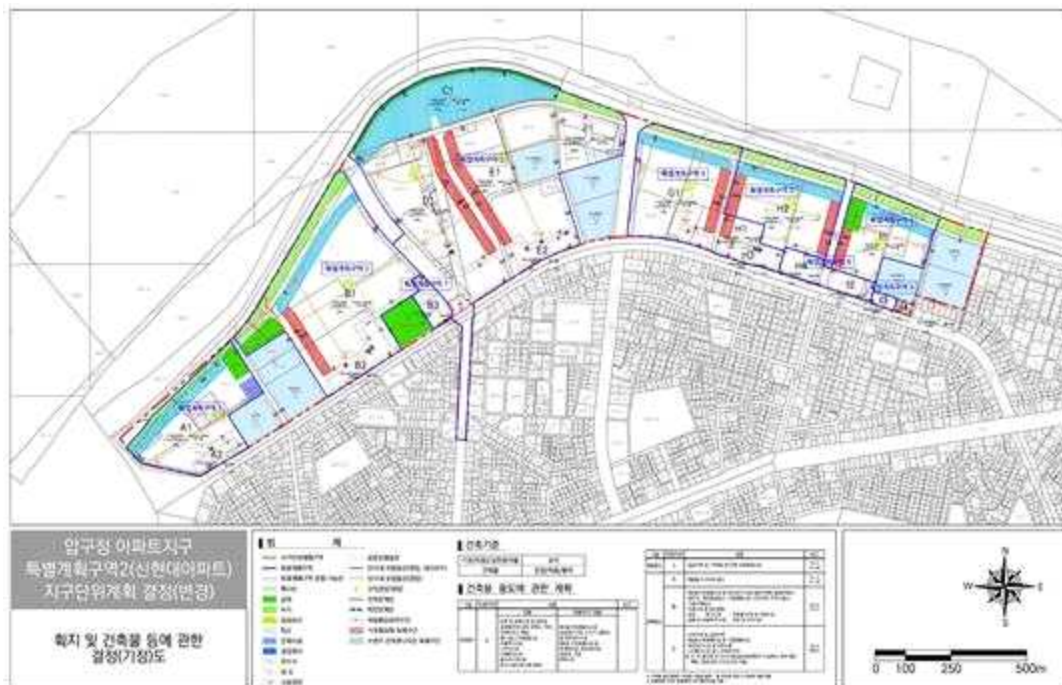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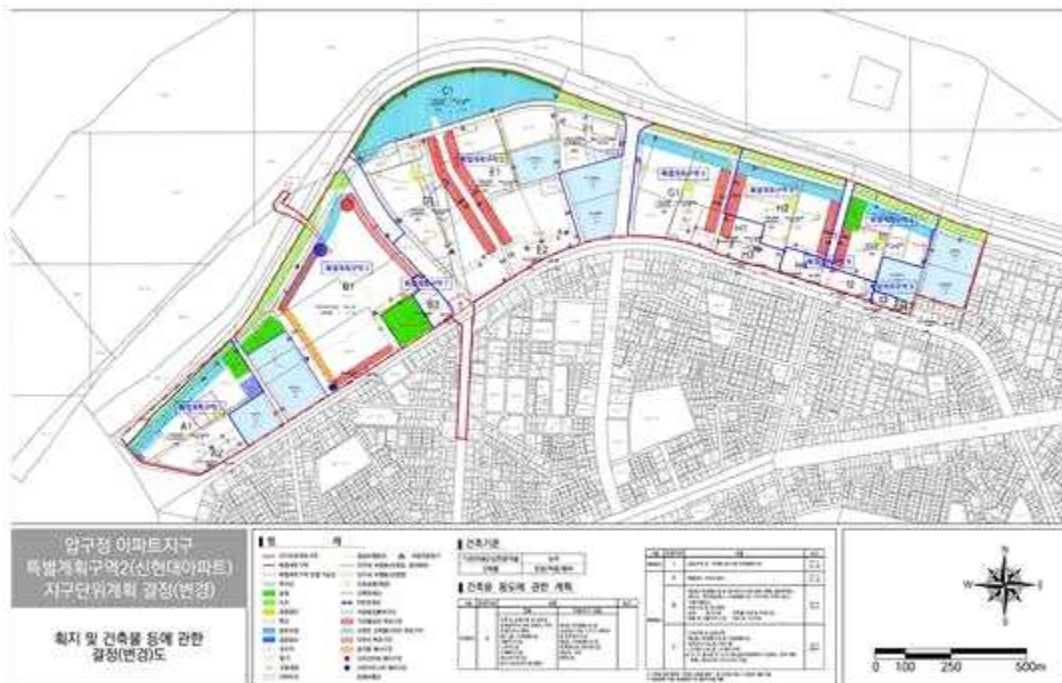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89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미래한강본부 발주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가양대교복단외 2개소 승강기 구조물 리모델링공사

나.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다. 시 공 자 : 신명탑건설(주)

라. 사업개요

1) 위 치 : 가양대교복단, 성수대교남단, 당산철교남단

2) 공사개요 : 기존승강기 구조물 일부 철거후 승강기 리모델링(3개소)

3) 공사기간 : 2025. 3. ~ 2025. 12.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참조

4) 도 급 비 : 금588,783,000원 (부가세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금21,450,000원 (부가세포함)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및 시기 (총6회)

정기안전점검 대상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가설 구조물 (가양복단, 성수 남단, 당산철교남 단)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 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가설구조물등 -비계 작업등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구조물 사용말기단계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건축’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 분야 등록 업체

나. 결정방법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서식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재무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90점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3.13.(목) 09:00 ~ 2025. 3. 19.(수) 13: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다.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서식2]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3]
-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재무)평가서 1부 [서식4]

※ 수행능력평가(재무)평가서 점수를 수기로 적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할 것.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5]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21,450,000원 × 87.745% = 18,821,302원, 100원단위

절삭 후 최종가격제안 최저가 = 18,821,000원

“최종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7) 서약서 1부 [서식6]

6. 개찰일시 : 2025. 3. 19.(수) 13:00 (직접방문이 원칙이며 미 방문시 심사제외, 개찰일시는 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시 통보드림)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3. 20.(화) 10:00 ~ 17:00

나. 열람방법 :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재무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이균휴 주무관(02-3780-06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 1]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m ²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 금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m²)]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²)]

[서식 2]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용 역 명	실적 금액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비 고
1				
2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 재무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수수료 없음

[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 참조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사업수행능력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2억원 미 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소계						/90점
합 계						/100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6.신용정보업자 현황”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2.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3.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됨
4.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제시된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으로 발주자가 직접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 참가자는 개찰일시 때 본부에 방문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들 중 4개씩 복원추출로 직접 추첨을 하고,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정해짐.
(단,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 선정될 경우, 재추첨을 통해 4개가 될 때까지 다시 선정한다.)
5.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90점	서식2 세부평가기준 참조
합 계	100점	

6.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밸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서식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	원정)
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종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귀하

[서식 6]

서 약 서

□ 사 업 명 : 가양대교북단외 2개소 승강기 구조물 리모델링공사

본인이 상기 '가양대교북단외 2개소 승강기 구조물 리모델링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신용)평가 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3)」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별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01호

서울공예박물관 자료구입공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료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구입대상 자료

주제번호	세 부 내 용
1 (근대)	○ 개항 이후 광복 이전까지 제작된 근대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대한제국기 황실·귀족의 공예품 및 관련 자료 (관립공업전습소, 한성미술품제작소,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조선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근대공예 작품 및 등 제작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사진·엽서 자료) - 근대 공예품이 판매되었던 백화점·상점 관련 자료 또는 실제 판매 공예품 (화선·미쓰코시·히라타 백화점 등 또는 화선·동화·해시·부전·유신·신행상회 등) -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개최한 박람회(시카고·파리만국박람회 등) 및 전람회(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 조선미술전람회 등)에 출품된 공예 작품 및 관련 자료 ○ (광복 80주년 기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공예가의 작품 및 제작 관련 자료 - 말총공예 정인호(鄭寅琥, 1869~1945), 자수 장선희(張善禧, 1893~1970) 등
2 (전승)	○ 전통공예의 기술이나 예술적 특성을 계승한 전승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나전, 옷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대표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3 (현대)	○ 1950년대 이후의 현대공예 혹은 동시대 공예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해방 이후 국내 전람회(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수출공예품전시회 등)에 출품된 공예 작품 및 관련 자료 -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공예 1·2세대 작가의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 서울시 유리자공예상 등 국내외 공모전·비엔날레·공예트렌드페어 수상작 및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전시에 참여하여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예작가의 작품 및 그 제작 관련 자료
4 (전시)	○ 3D 프린팅,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공예의 제작방식을 확장하는 작품 - 과학기술과 공예의 융복합 협업 및 적정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예 재료, 소재, 기술의 연구 성과물, 작품(전시수상, 이력 등 우대) 등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작가 등
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 매도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나.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

제3조(매도신청)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다. 최종선정 후 계약 시 계약자명과 매도신청자명, 통장명이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매도신청 접수 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까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중 택일

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우편번호 03061)

② 방문시간 : 09:30~11:30, 13:00~16:00(토,일,공휴일 제외)

③ 우편접수 시 ‘자료매도신청서 재증’ 명기, 우편물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 사용
나.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첨부하여 jmin7819@seoul.go.kr로 송부

다. 매도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 ①, ②, ③번 서식을 작성 후, 자료사진과 함께 제출

① 자료매도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매도신청자 정보를 정
확히 기입한 후 하단에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 서명란에는 매도신청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② 매도신청자료명세서(소정양식) 1부
 - 명세서 서식에 따라 매도신청자료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자료의 명칭, 시대,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출처, 내용, 수량, 매도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용란에는 형태상의 특징(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특기사항, 보존상태 등)과 제작자, 작품이력, 각종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③ 소장 내력서(소정양식) 1부
- ④ 자료사진(파일)
 - 매도신청자료를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이미지 파일을 제출합니다.
 - 반드시 매도신청자료 1점당 4매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매도신청자료명세서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 파일 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합니다.
 - 파일형식 : JPG, PNG(1매당 용량 5MB 이하)

나. 현대공예 분야: ① ~ ④번 서식을 작성 후, ⑤ ~ ⑧번과 함께 제출 ※ 작가 본인이 매도신청하는 경우

- ① 자료매도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매도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하단에 매도신청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 서명란에는 매도신청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② 매도신청자료명세서(소정양식) 1부
 - 명세서 서식에 따라 매도신청자료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자료의 명칭, 시대,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출처, 내용, 수량, 매도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용란에는 형태상의 특징(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특기사항, 보존상태 등)과 제작자, 작품이력, 각종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 이메일접수 시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 ③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④ 작가이력서(소정양식) 1부
- ⑤ 자료사진(파일)
 - 매도신청자료를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이미지 파일을 제출합니다.
 - 반드시 매도신청자료 1점당 4매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매도신청자료명세서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 파일 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합니다.
 - 파일형식 : JPG, PNG(1매당 용량 5MB 이하)

⑥ 수상이력 증빙자료 1부

－ 수상을 증빙할 수 있는 상장, 증빙서류, 도록, 사진 등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⑦ 진품보증서 1부

－ 작품명, 작품정보(제작연도, 재료, 크기 등), 작가날인 등을 포함한 자유양식을 제출합니다.

⑧ 작품매도경력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작가이력서에 기재한 작품매도경력 중 주요 매도경력(2~3건)의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 발행기관 소정양식 제출, 매도가격 및 작품기본정보 반드시 포함)

6. 실물접수 : 서류심사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한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실물 접수함

가. 실물접수 시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 :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 자료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 1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실물접수는 실물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공개구입의 절차 중 하나이며, 구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 실물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반환을 통보하게 되며, 매도신청자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직접 되찾아가야 합니다. 반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7. 자료구입 가격 : 자료평가위원회 평가금액에 의함

8. 구입 결정

가. 자료평가위원회 및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입대상을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불법취득(도난문화재) 여부를 검증합니다.

※ 현대공예 분야는 작품 특징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시: 작가 본인 작품)

다. 검증된 자료에 한해 평가금액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9. 매도신청 후 구입 관련 절차

가.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심의(서류심사) → 실물접수 →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심의(실물평가) →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인터넷 공개) →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최종심의) → 자료 구입 계약

나. 매도신청 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종 계약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다. 심의결과 및 상세일정은 개별 안내합니다.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소유권 이전 및 저작권 사용 관련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구입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울공예박물관으로 귀속되며, 서울공예박물관은 해당 자료를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료가 매도자 본인의 작품인 경우 ‘공예(작)품 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 매도신청 시 제출한 서류(신청서, 명세서, 사진)의 정보가 사실에 위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서울공예박물관 매도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자료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세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02-6450-7054)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공통]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매도신청자료 목록					
연번	명칭	수량(점)	매도신청액(원)	비고	
계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매도를 신청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소장 내력서

1. 연번 및 명칭: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작 성 일 :

[서식 4-현대공예 분야] ※ 본 서식은 매도신청자료 1점당 1매 작성

작 품 설 명 서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연도		매도희망가격 (단위: 원)	
재료 및 기법		규 격 (단위: cm)	높이(H) x 폭(W) x 깊이(D)
비고(에디션)			
작품 출처	☐ 작가본인 ☐ 구입 ☐ 증여 ☐ 전속작가 ☐ 기타 ()	상 태	☐ 양호 ☐ 보통 ☐ 손상 내용 :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작품 이미지 삽입 (이미지삽입 또는 사진부착)			
〈 작품 설명 〉 ※ 해당 작품에 대한 작가노트 작성 권장 그 외 전시 도록, 잡지 등에 실린 글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기재			
본 작품의 전시 이력	※ 전시관명-전시명-위치(전시기간) 순으로 작성 예시) ○○미술관, <초대전>, 서울(1980.3.24. ~ 3.29.)		

[서식 5-현대공예 분야]

작 가 이 력 서

작 가 명		호 (※해당시 기재)		생몰연도	성별	국 적
(국문)	(영문)	(한글)	(한자)			

※ 아래 사항은 해당 사항만 기재 바랍니다.

1. 학력

예시) 2004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졸업

2. 개인전 (최근연도 순, 주요 전시이력 기재)

예시) 2016 전시명, ○○미술관, 바젤, 스위스

3. 단체전, 기획전, 경력 (최근연도 순, 주요 전시이력 기재)

예시) 2016 전시명, ○○미술관, 바젤, 스위스

4. 작품매도 경력 (연도, 매도처, 매도작품명(제작연도), 작품규격(cm), 재료 및 기법, 매도금액)

예시) 2014 서울시립미술관, <작품명>(제작연도), 규격cm, 흑단, 느티나무, 총2점, 10,000,000원(일천만원)

※ 국공립미술관, 갤러리 등 주요 매도경력 위주로 기재 (증빙자료 별도 제출)

5.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기관)

예시) 2016년, 32회 ○○비엔날레 “금속 부분 1등 상”

6. 기타 (주요박물관, 미술관 작품소장 등)

예시) 2017년 기증,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명〉(제작연도), 규격cm, 재질 등

※ 기재 내용 초과시 이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7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3.~2025.3.27.(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의견제출기간 : 2025.3.13.~2025.4.11.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5.4.11.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 ~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명명	과세연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처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독촉	124864-****	가* 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0	10-297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7	해회문(창경궁로, 진입)
2	독촉	110111-*****	(*)다*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1	40-151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독촉	720926-*****	양*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2	41-7800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독촉	134111-*****	반*산업(*)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3	10-8986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9	경화궁(세문안로)
5	독촉	391105-*****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4	30-5641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3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	독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5	25-822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0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독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6	95-882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	독촉	161511-*****	주*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0	94-150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4	대한통운(동일로2길)
9	독촉	651002-*****	장*병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1	80-819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독촉	161511-*****	주*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2	94-150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남산1호터널(쌍안대로)
11	독촉	124864-****	가* 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3	10-297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	독촉	600710-*****	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4	54-624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7	한양도성박물관(올곡로)
13	독촉	830508-*****	홍*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6	05-5611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지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명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독촉	12464-****	(*) 에*엘에스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7	71*559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5	독촉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8	95*982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6	독촉	660328-*****	김*호	충청남도 부여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9	92*481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3	남산1 호터널(삼원대로)
17	독촉	591119-*****	이*표	충청남도 당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8	83*7817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31	남산3 호터널(녹사평대로)
18	독촉	560109-*****	송*훈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23	경기*9노70 9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8-13	남산2 호터널 복측(녹사평대로58길)
19	독촉	690225-*****	유*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5	43*7328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로, 진입)
20	독촉	110111-*****	브*리언트프로젝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0	82*393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4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1	독촉	660409-*****	김*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2	70*1538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회현역(외계로)
22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3	04*682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홍익가문(종로, 진입)
23	독촉	780718-*****	손*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4	39*7675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남산1 호터널(삼원대로)
24	독촉	620803-*****	송*연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6	52*269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9	반안트리(장충대로, 진입)
25	독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7	25*822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1	서직터널 복측(시직로, 진입)
26	독촉	391105-*****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8	30*5641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1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독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종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9	01*4449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시작터널 북측(시작로, 진입)
28	독촉	571017-*****	박*우	충청남도 태안군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0	78*9230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남산3호터널(남문대로)
29	독촉	680726-*****	김*정	울산광역시 남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1	39*204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30	독촉	110111-*****	(*)비*비오로	서울시 서초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2	85*6682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미장로)
31	독촉	110111-*****	중*멤버스 주*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3	56*6755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반얀트리(장충대로, 진입)
32	독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4	95*882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지로, 진입)
33	독촉	680417-*****	위*석	경기도 고양시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5	92*390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운동주문학과(창의문로)
34	독촉	402814-****	(*)오*르	전북특별자치 도 진안군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6	01*5233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한양도성박물관(올곡로)
35	독촉	110111-*****	중*멤버스 주*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7	56*6755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반얀트리(장충대로, 진입)
36	독촉	671010-*****	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8	04*682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5	홍익지문(종로, 진입)
37	독촉	761208-*****	하*이	대구광역시 북구	[특별]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5	89*8147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건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3. 인터넷 https://oksign.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8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3.~2025.3.27.
5. 공고내용
 -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5.4.30.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명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물건명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530505-*****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07	92*4270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부과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08	04*6820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6	홍인기문(종로, 진입)
3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09	01*444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13	01*444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5	부과	651014-*****	박*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0	70*5888	1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7	화현역(터계로)
6	부과	560117-*****	오*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5	서울*8로5617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터계로, 진입)
7	부과	670110-*****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19	80*7783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6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8	부과	610620-*****	조*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2	05*4266	1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9	부과	110111-*****	주*안*아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0	서울*2로3120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0	부과	120111-*****	주*회사 우*마트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1	91*6333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0	남산1호터널(쌍암대로)
11	부과	600920-*****	전*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9	80*3134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6	홍인지문(정계천로, 진입)
12	부과	110111-*****	(*) 우*테크놀로지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6	37*991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5	화현역(터계로)
13	부과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8	04*6820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10-01	홍인기문(종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명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물건명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부과	580920-*****	김*배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9	07*3869	2025-01-08	2025-02-28	2024-10-30	경화공(세문인로)
15	부과	740414-*****	송*석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44	01*1940	2025-01-08	2025-02-28	2024-11-08	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	부과	700507-*****	권*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48	48*7741	2025-01-08	2025-02-28	2024-11-19	해호문(청경공로, 진입)
17	부과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49	80*6811	2025-01-08	2025-02-28	2024-11-29	흥인지문(종로, 진입)
18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4	01*4449	2025-01-08	2025-02-28	2024-09-23	회현역(회계로)
19	부과	391105-*****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5	30*5641	2025-01-08	2025-02-28	2024-09-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회계로, 진입)
20	부과	110111-*****	(*)기*이앤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28	01*7564	2025-01-08	2025-02-28	2024-09-2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1	부과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02	80*4509	2025-01-08	2025-02-28	2024-09-0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2	부과	680417-*****	위*석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1	92*3904	2025-01-08	2025-02-28	2024-09-27	운동주문학관(창의문로)
23	부과	110111-*****	(*)에*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32	83*6331	2025-01-08	2025-02-28	2024-09-27	남산2호터널 복측(녹사평대로58길)
24	부과	770928-*****	배*주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03	24*7696	2025-01-08	2025-02-28	2024-09-0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	부과	800315-*****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10	서울*847194	2025-01-08	2025-02-28	2024-09-09	서직터널 복측(시지로, 진입)
26	부과	110111-*****	(*)에*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5-01	수시분	000011	83*6331	2025-01-08	2025-02-28	2024-09-0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명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물건명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부과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7	80*450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9	남산3호터널(누사령대로)
28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4	01*444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2	정화궁(세문안로)
29	부과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4	80*450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2	회현역(퇴계로)
30	부과	761127-*****	한*희	충청남도 충청남도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5	95*9824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4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1	부과	110111-*****	(*) 우*태크놀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6	37*9919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2	부과	670808-*****	김*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8	04*1354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3	부과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3	85*6682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34	부과	110111-*****	(*)비*비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7	85*6682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35	부과	660524-*****	편*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1	78*7391	1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0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6	부과	120111-*****	주*회사 우*마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2	91*6333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1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7	부과	110111-*****	(*)한*창소년교육 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5	56*8831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3	삼정공원(삼정로)
38	부과	110111-*****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6	89*7051	200,000	2025-01-08	2025-02-28	2024-09-1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연락처	
위반차량	차량번호		차 종		
	소 유 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 태 료 처 분	처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납부번호 (부과일자)	(년 월 일)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처분사유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	※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9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1.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2.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3. ~ 2025.3.27.
5. 공고내용
 -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25.3.31.
 -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처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독촉	124864-****	가* 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0	10*297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7	해화문(청경공로, 진입)
2	독촉	110111-*****	(*)다*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1	40*151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독촉	720926-*****	양*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2	41*7800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독촉	134111-*****	반*산업(*)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3	10*8986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9	경희궁(세문안로)
5	독촉	391105-*****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4	30*5641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3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	독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5	25*822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0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독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6	95*882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	독촉	161511-*****	주*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0	94*150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4	대한통운(통일로2길)
9	독촉	651002-*****	장*병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1	80*819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독촉	161511-*****	주*회사 애*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2	94*150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	독촉	124864-****	가* 디앤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3	10*297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5	승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	독촉	600710-*****	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4	54*624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7	한양도성박물관(올곡로)
13	독촉	830508-*****	홍*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6	05*5611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처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납속일	단속장소
14	독촉	124864-****	(*) 에*엘에스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7	71*559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5	독촉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8	95*982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6	독촉	680328-*****	김*호	충청남도 부여군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9	92*481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7	독촉	591119-*****	이*표	충청남도 당진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18	83*7817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7-3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8	독촉	560109-*****	송*훈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23	경기*9노709 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8-13	남산2호터널 복측(녹사평대로58길)
19	독촉	690225-*****	유*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85	43*7328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0	독촉	110111-*****	브*리언트프로 젝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0	82*393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4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1	독촉	660409-*****	김*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2	70*1538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회현역(퇴계로)
22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3	04*682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흥인가문(종로, 진입)
23	독촉	780718-*****	손*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4	39*7675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4	독촉	620803-*****	송*연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6	52*2699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9	반안트리(장충대로, 진입)
25	독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7	25*8223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1	사직터널 복측(사직로, 진입)
26	독촉	391105-*****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노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8	30*5641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1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처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독촉	680610-*****	함*욱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9	01*4449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8	독촉	571017-*****	박*우	충청남도 태안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0	78*9230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남산3호터널(남영대로)
29	독촉	680726-*****	김*정	울산광역시 남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1	39*2046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2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30	독촉	110111-*****	(*)비*비오로	서울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2	85*6682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미장로)
31	독촉	110111-*****	중*멤버스 주*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3	56*6755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반얀트리(장충대로, 진입)
32	독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4	95*8822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33	독촉	680417-*****	위*석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5	92*3904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운동주문학과(청의문로)
34	독촉	402814-****	(*)오*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6	01*5233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한양도성박물관(울국로)
35	독촉	110111-*****	중*멤버스 주*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7	56*6755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4	반얀트리(장충대로, 진입)
36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608	04*6820	2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25	흥인저문(종로, 진입)
37	독촉	761208-*****	하*이	대구광역시 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10	수시분	000595	89*8147	100,000	2024-10-08	2025-02-28	2024-06-1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38호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시 총괄

- ◇ 202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법정 최저적립액 228,373백만원 보다 많은 288,016백만원(기준액 대비 128.1%)을 확보하였습니다.
- ◇ 2024년 집행액은 403,702백만원으로 2023년도 집행액 242,952백만원 보다 160,75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세부적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을 비롯하여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폭염·한파대책 지원 등 재난예방·대응(386,281백만원), 한강공원 침수피해복구, 우기철 발생 포트홀 긴급 복구 및 장마기간 산림피해 발생지 긴급복구 등 응급복구(17,323백만원), 재난예방·대응·원인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88백만원) 및 기타 기금관리비(10백만원)를 총 403,70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②/①×100)
210,192백만원	288,016백만원	126.1%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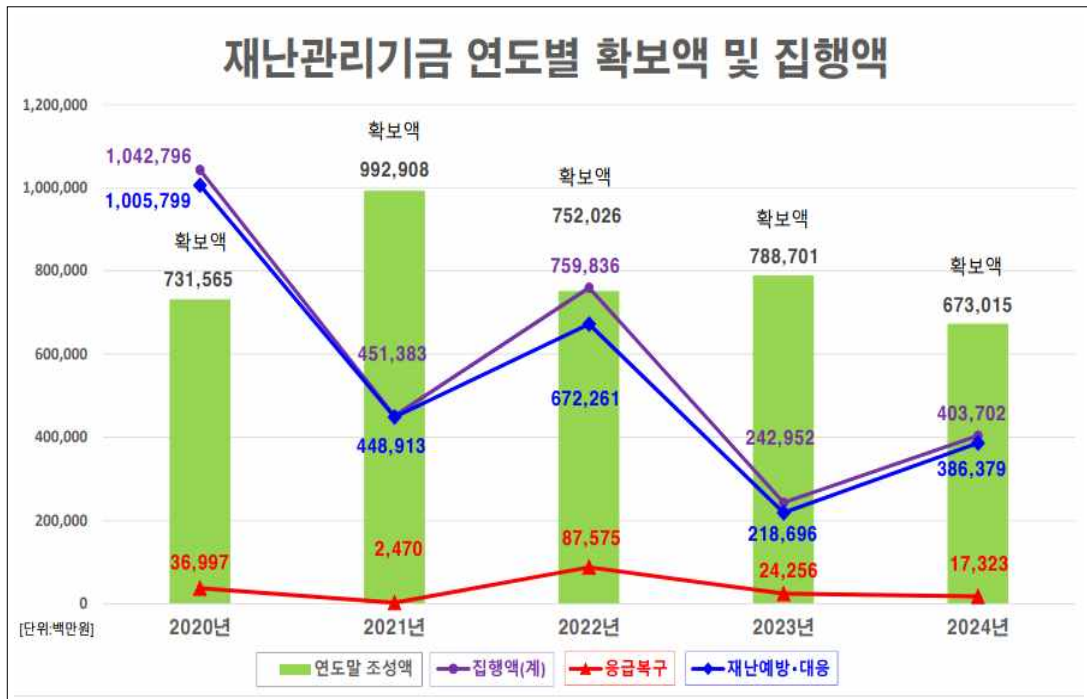
누적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②/①×100)
2,501,673백만원	3,509,473백만원	140.3%

2)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확보액(당해연도)*		731,565	992,908	752,026	788,701	673,015
집행액	합계	1,042,796	451,383	759,836	242,952	403,702
	재난의 예방대비연구 등	1,005,799	448,913	672,261	218,696	386,379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36,997	2,470	87,575	24,256	17,323

* 확보액(당해연도) : 출납정리기한 기준 재난관리기금 금고 잔액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관리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집중 지원
-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이후 선제적 예방사업을 통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른 응급복구비용은 점차 감소 추세임
- 2024년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으로 재난예방·대응 분야 집행액 증가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서울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성민 주무관, ☎ 02-2133-803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을 위반한 업체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고지서 교부(송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1항(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동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동법 제5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위반사항	비고
세잔디자인	박*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1315호, 1316호	737-44-004**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 임대사업 영위	과태료 280만원
케이에이치테크	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7층 714호(가산동)	203-60-618**		

5.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실 산업입지과(☎02-2133-85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4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2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103	'25. 03. 04.	주식회사 디파인미디어 김지아 (110111-7471214)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제오비 607호 (마곡동)
2	204104	'25. 03. 04.	스톡 주식회사 이정호 (110111-9054290)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85, 제2층 206호 (당산동3가)
3	204105	'25. 03. 04.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이승춘 (110111-513394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아이티타워 101호, 104호 (구로동)
4	204102	'25. 02. 26.	주식회사 더블유앤이케이 장정훈 (110111-381338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씨동 1303호 (가산동)
5	204101	'25. 02. 26.	(주)제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 허준 (110111-311450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56, 센츄리2차오피스텔 1104호 (서초동)
6	204100	'25. 02. 21.	주식회사 신성지앤이 최호용 (110111-2267460)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30, 디지털엠피아 409호 (가산동)
7	204099	'25. 02. 21.	코리아디지털 주식회사 전영일 (110111-1443805)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원타워2차 804호 (구로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8	204098	'25. 02. 19.	주식회사 다비오 박주흠 (110111-480599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마포티타운 8층 (공덕동)
9	204097	'25. 02. 14.	주식회사 인빌트 정용석 (110111-8536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피런스빌딩 4층 401호 (서초동)
10	204096	'25. 02. 10.	주식회사 스코넥엔터테인먼트 황대실 (110111-249964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 조선내화빌딩 9층 (역삼동)
11	204095	'25. 02. 10.	주식회사 메타데이터 양원호 (110111-8268561)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 기광빌딩 3층 (봉천동)
12	204094	'25. 02. 04.	주식회사 경농 이용진, 이병만 (110111-008939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 28, 동오빌딩 (서초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4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2월)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인	203870	남부솔루션 주식회사 추호철 206111-0000916	전남 나주시 양곡면 혁신산단로 160	'25. 02. 05.	분할 합병
	양수인	-	주식회사 디메타 강병관 110111-699865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39, 동해빌딩 2층 (대치동)		
2	양도인	203877	주식회사 베이스캠프지 박형준 110111-299468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5 (논현동, 캠프지)	'25. 02. 06.	양도 (분할)
	양수인	-	주식회사 에임투자 임민수 110111-9145792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5, SK테크노빌딩 603호 (성수동1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5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 및 최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박○석 등 739명
4.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 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압류예고 안내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채납자(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합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독촉)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	343조67**	박*석	경기도 성남시	2024-09-02 14: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	04우38**	(*)이*트	경기도 성남시	2024-09-02 18: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	04우38**	(*)이*트	경기도 성남시	2024-09-02 18: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	10머18**	정*범	경기도 용인시	2024-09-02 19: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	22겨56**	이*로	서울특별시	2024-09-02 19: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	80머65**	김*근	경기도 과천시	2024-09-12 08: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	85오57**	강*훈	경기도 하남시	2024-09-12 08: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	32구06**	권*진	경기도 안양시	2024-09-12 09: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	81부13**	유*영	서울특별시	2024-09-12 11:35	연신내역교차로~박석고개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0	146무64**	이*규	충청남도 당진시	2024-09-12 13:1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	50오13**	김*일	경기도 양주시	2024-09-12 14:52	구파발사거리~은평뉴타운10단지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12	97구93**	손*기	경기도 여주시	2024-09-12 15: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	110머40**	고*리	서울특별시	2024-09-12 17:2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4	60서46**	원*약*(*)	서울특별시	2024-09-02 20:43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5	12다67**	김*례	경기도 광주시	2024-09-03 01:4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켄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16	31두82**	한*도	인천광역시	2024-09-03 05: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7	243주90**	김*정	서울특별시	2024-09-03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	156호25**	박*구	서울특별시	2024-09-03 08: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9	서울32바46**	임*완	서울특별시	2024-09-03 08:4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0	04우38**	(*)이*트	경기도 성남시	2024-09-03 09:4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1	83두82**	장*식	경기도 파주시	2024-09-12 17:3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2	84수69**	김*욱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	130호77**	윤*	서울특별시	2024-09-12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4	175허55**	김*성	경기도 고양시	2024-09-12 17:4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5	45겨30**	배*호	경기도 군포시	2024-09-12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6	109마49**	홍*재	서울특별시	2024-09-12 19: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27	194하27**	송*윤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8	170나55**	조*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9-24 16:31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9	38로29**	김*남	서울특별시	2024-09-24 17:31	관악로 봉천중앙시장	전용차로 위반	52700
30	240다66**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24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1	163누83**	황*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4 18: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2	159도32**	김*연	서울특별시	2024-09-24 18: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3	19루54**	서*형	부산광역시	2024-09-24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4	134소33**	전*규	경기도 화성시	2024-09-03 10:4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5	80보90**	주*희*일*종*주*	경기도 파주시	2024-09-03 15:44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6	105라29**	김*숙	경상북도 포항시	2024-09-03 17: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	60노05**	어*진	부산광역시	2024-09-03 17:4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8	175보35**	고*훈	경기도 과천시	2024-09-03 1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9	서울31바38**	여*권	서울특별시	2024-09-03 18:3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0	356너92**	이*정	경기도 파주시	2024-09-03 18: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1	37도03**	어*자	서울특별시	2024-09-03 18: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42	32주79**	박*수	서울특별시	2024-09-03 1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43	97여06**	서*경	경기도 광주시	2024-09-13 08:4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	196호55**	김*경	경기도 성남시	2024-09-13 12: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	48로42**	최*용	서울특별시	2024-09-25 07: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6	83소31**	강*구	경기도 수원시	2024-09-25 08:0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7	139모32**	주*희*웨*	경기도 양주시	2024-09-25 08:3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48	14여12**	송*호	서울특별시	2024-09-25 08:3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49	36우72**	이*승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25 10: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	133하22**	오*관	전라남도 진도군	2024-09-25 14: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1	21보17**	최*영	서울특별시	2024-09-25 14: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2	43허03**	(*)*상*육	서울특별시	2024-05-03 14:15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3	165허98**	금*건*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4-05-16 20: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4	69거41**	주*회*삼*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2 15:49	마포대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5	서울강남나20**	이*철	서울특별시	2024-07-01 19:08	반포3동주민센터~잠원현대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42160
56	23두62**	송*호	경기도 평택시	2024-07-11 10:48	여의도공원앞교차로~마포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7	135도80**	곽*미	서울특별시	2024-07-12 20:29	한남IC~양재IC	전용차로 위반	52700
58	251도14**	(*)*앤*이*로*	서울특별시	2024-07-16 1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9	149하65**	글*리*스*퍼*처* *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6 19:4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0	140호39**	(*)*이*스*퍼*이* *	서울특별시	2024-07-17 14:02	경부 서초IC~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1	31두74**	김*수	서울특별시	2024-07-19 10:20	길동사거리~생태공원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2	156부28**	석*홍	서울특별시	2024-07-19 17: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3	101호18**	김*훈	서울특별시	2024-07-19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	03보24**	주*회*오*컴*인	서울특별시	2024-07-20 13:55	통일로 타이어뱅크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5	167호27**	우*준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22 1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6	175호33**	N*투*증*	서울특별시	2024-07-23 18:1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	145하54**	박*찬	서울특별시	2024-07-24 18: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68	172하82**	주*회*라*프*루* *즈	서울특별시	2024-07-24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26 09: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	28머08**	(*)*선*지*어*	경상남도 거제시	2024-07-26 11:1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71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26 12: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	140호39**	(*)*이*스*퍼*이* *	서울특별시	2024-07-26 13: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3	140호39**	(*)*이*스*퍼*이* *	서울특별시	2024-07-26 13: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4	128도72**	(*)*결*동*회*법 *	경기도 화성시	2024-07-26 17:4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5	196하74**	탁*철	경기도 성남시	2024-07-26 17:56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76	26도08**	김*희	경기도 김포시	2024-09-03 20: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7	57두34**	홍*영	서울특별시	2024-09-04 08:12	이대역~신촌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78	82더98**	한*구	서울특별시	2024-09-04 08: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9	20누14**	주*회*퍼*트*	서울특별시	2024-09-13 17:1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0	153수82**	심*연	서울특별시	2024-09-13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1	23도40**	강*화	서울특별시	2024-09-13 17: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2	980어77**	조*래	서울특별시	2024-09-13 18:1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3240
83	67러38**	강*라	서울특별시	2024-09-13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	196호94**	김*민	서울특별시	2024-09-13 19: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5	23주80**	신*국	서울특별시	2024-09-13 1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	09고53**	이*연	인천광역시	2024-09-13 1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87	53거56**	장*은	서울특별시	2024-09-25 17:13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8	313고63**	박*진	서울특별시	2024-09-25 17:20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9	121더24**	국*의힘대전광역시당 시당	대전광역시	2024-09-25 17:5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0	221머49**	이*규	서울특별시	2024-09-25 1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1	61무62**	임*철	경기도 화성시	2024-09-25 18: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2	11구72**	C*U*U*N*A*B* T*R*E*E	서울특별시	2024-09-25 19:12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3	14부40**	B*R*I*L*B*I*N *L*E*	경기도 평택시	2024-09-25 20: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4	63머96**	백*균	인천광역시	2024-09-25 21: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95	149조27**	지*욱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6 07:5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6	169호45**	다*전*	경기도 군포시	2024-07-27 04:4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7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27 09: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8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7-27 11: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9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7-28 11: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0	125호91**	김*래	서울특별시	2024-07-28 13: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1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2024-07-28 13:41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02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28 17:4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3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7-29 10: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4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7-29 10: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5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7-29 1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6	10하03**	허*수	서울특별시	2024-07-29 13:1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107	172허82**	김*아	부산광역시	2024-07-29 15: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08	156허25**	서*희	서울특별시	2024-07-29 18: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09	14소51**	염*금	경기도 고양시	2024-07-29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10	134마75**	임*현	서울특별시	2024-07-30 0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11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7-30 09:4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2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7-30 09:4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3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7-30 10: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14	115라53**	주*희*드*독*심 *양*터	서울특별시	2024-07-30 18: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5	115라53**	주*희*드*독*심 *양*터	서울특별시	2024-07-30 18:3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6	130호49**	주*희*드*독*심 *양*터	서울특별시	2024-07-30 2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17	167호25**	장*원	경기도 화성시	2024-07-30 21:4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118	서울89자49**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31 13:07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119	141허11**	주*희*지*에*엠	서울특별시	2024-07-31 14: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31 20:4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1	57라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8-01 12:4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22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01 15: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23	161호49**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8-01 15: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4	49호30**	주*희*하*스*엘	서울특별시	2024-08-01 16:09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25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8-01 17: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6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8-01 17: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7	57라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8-01 17:4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28	93머37**	주*희*푸*인*정	경기도 하남시	2024-08-02 09:26	상봉삼거리~동일로지하차도	전용차로 위반	52700
129	29하40**	이*준	경기도 성남시	2024-08-02 11:4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0	156호74**	이*운	경상남도 거제시	2024-08-02 15: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31	249버61**	Q*A*W*J*N	서울특별시	2024-08-02 17:31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132	397보27**	김*기	대구광역시	2024-08-02 19: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33	817구42**	주*희*에*에*컴*니	경상남도 창원시	2024-08-03 07:4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134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03 15: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5	69주21**	홍*석	부산광역시	2024-08-04 16:4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136	서울38아86**	하*원	서울특별시	2024-08-04 19:4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37	27여69**	김*자	경기도 포천시	2024-08-02 18: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38	109우28**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4 17:4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139	49소01**	김*규	서울특별시	2024-09-04 18:1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40	56고15**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4-09-04 18: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41	116허73**	주*희*듀*렌*카	서울특별시	2024-09-04 18: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42	52보62**	김*숙	경기도 고양시	2024-09-04 19: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43	274부83**	이*목	서울특별시	2024-09-04 19: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44	208라14**	김*현	서울특별시	2024-09-13 19: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45	34거07**	정*해	서울특별시	2024-09-13 19:4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46	13두31**	윤*근	서울특별시	2024-09-13 20: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47	225두80**	박*진	경기도 부천시	2024-09-14 14: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48	282오37**	김*훈	경기도 평택시	2024-09-14 16:20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49	02우53**	T*W*S*N*T*M* T*Y*O*A*	경기도 평택시	2024-09-14 16:5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50	12마44**	최*석	서울특별시	2024-09-26 09: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51	68더60**	김*식	경기도 성남시	2024-09-26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52	220부12**	정*락	서울특별시	2024-09-26 18: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53	81주44**	노*희	서울특별시	2024-08-05 06:47	잠실대교남단교차로~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154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8-05 07: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55	27마76**	L*B*Q*A*	충청남도 천안시	2024-08-05 07:2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56	243주90**	김*정	서울특별시	2024-08-05 0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57	251소67**	이*로	충청남도 천안시	2024-08-05 0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58	842고50**	홍*길	경기도 성남시	2024-08-05 09:03	송파대로SK주유소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159	27마94**	(*)*광*력*사	충청북도 증평군	2024-08-05 09:2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60	27두25**	M*N*Z*E*	충청남도 천안시	2024-08-05 10: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61	08우80**	신*코*래*션*식 *사	경기도 화성시	2024-08-05 14:0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62	57려32**	김*욱	경기도 부천시	2024-08-05 15: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전용차로 위반	52700
163	193허14**	이*환	울산광역시	2024-08-05 16: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64	서울종로자42**	윤*엽	서울특별시	2024-08-05 17:23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 위반	42160
165	08두09**	농*화*법*주*회 *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8-05 18: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66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2024-08-05 18: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67	156하83**	강*관	경기도 양주시	2024-08-05 23: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68	223하99**	신*철	서울특별시	2024-08-06 07:5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69	310우69**	박*연	서울특별시	2024-08-06 0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70	07서49**	박*선	인천광역시	2024-08-06 08: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71	서울31사51**	황*택	서울특별시	2024-08-06 13:23	YBM빌딩	전용차로 위반	52700
172	67려44**	주*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8-06 14: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73	81두10**	김*우	경기도 시흥시	2024-08-06 14: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74	141노27**	김*애	서울특별시	2024-08-06 15:15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4-1	전용차로 위반	52700
175	05두08**	P*A*T*E*G*C	경기도 포천시	2024-08-06 17:4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76	13수52**	명*현	서울특별시	2024-08-06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77	104허31**	김*동	경상북도 안동시	2024-08-06 18:24	합정역~양화대교북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78	31로50**	이*열	서울특별시	2024-08-06 18:38	문성초교~독산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79	15오52**	(*)*스*이*	인천광역시	2024-08-06 19: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0	22주36**	이*영	서울특별시	2024-08-06 19:3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181	35도19**	윤*숙	서울특별시	2024-08-06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82	80보61**	박*진	서울특별시	2024-08-06 20: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3	82루80**	김*종	서울특별시	2024-08-07 09: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4	220호25**	주*희*메*흠*	경기도 성남시	2024-08-07 0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5	71고93**	박*주	서울특별시	2024-08-07 09: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186	75하10**	(*)*이*이*트*	경상남도 양산시	2024-08-07 11: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63240
187	221호52**	주*희*유*농*	광주광역시	2024-08-07 14:5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188	169머81**	권*기	서울특별시	2024-08-07 1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89	266라12**	반*범	경기도 부천시	2024-08-07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90	327수64**	박*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20: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91	경기92자33**	김*봉	경기도 양주시	2024-09-05 08:0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92	90로48**	최*선	서울특별시	2024-09-05 08: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93	20여13**	주*희*탄*뮤*게*선	서울특별시	2024-09-05 09: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4	55보11**	김*주	서울특별시	2024-09-05 11: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5	257가88**	유*숙	서울특별시	2024-09-05 13:0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6	257가88**	유*숙	서울특별시	2024-09-05 13: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7	42오55**	서*리	서울특별시	2024-09-05 14: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98	58보41**	지*송	경기도 김포시	2024-09-14 21: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99	51구23**	이*열	서울특별시	2024-09-14 22:3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00	32주85**	송*영	경상남도 통영시	2024-09-14 22: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01	서울강북파93**	박*아	서울특별시	2024-09-14 23:57	동묘앞역~신설동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2160
202	서울32자60**	고*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5 00: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03	39누46**	김*희	서울특별시	2024-09-26 19: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04	28누63**	고*영	서울특별시	2024-09-26 20:0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05	24로55**	전*준	경기도 수원시	2024-09-26 20: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06	60여01**	강*용	인천광역시	2024-09-26 21:5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207	114다99**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7 08: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08	서울14라51**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7 09: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3240
209	22모50**	이*진	서울특별시	2024-09-27 09:28	종합운동장역~삼성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210	181수98**	소*영	서울특별시	2024-09-27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11	84구53**	김*식	경기도 양주시	2024-09-27 09:59	올림픽공원교차로~송파구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12	245도63**	홍*기	경기도 광주시	2024-08-07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13	25모17**	김*수	서울특별시	2024-08-07 17:3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14	800보93**	주*회*백*아*앤 *	경기도 하남시	2024-08-07 17: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215	19가02**	주*회*삼*테*블 *3*7*B*E*0*,*1 *,*	서울특별시	2024-08-07 19: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16	65구25**	하*호	충청남도 당진시	2024-08-07 20: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17	40머44**	더*컴*식*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8-07 20: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218	89모45**	정*민	경기도 성남시	2024-08-07 20: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19	126호17**	박*혜	서울특별시	2024-08-07 20: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20	65라66**	(*)*여*시*	서울특별시	2024-08-08 07: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21	49모82**	이*구	부산광역시	2024-08-08 09:16	광장사거리~천호대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22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08 09: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23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08 09: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24	48저07**	주*회*위*즈*브	서울특별시	2024-08-08 11: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225	49우16**	주*회*웨*브*퍼*	서울특별시	2024-08-08 12: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26	57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8-08 12:45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27	35주04**	윤*숙	경기도 고양시	2024-08-08 12:5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28	경기86이32**	이*식	경기도 안산시	2024-08-08 13:2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29	20가48**	전*일	경기도 파주시	2024-08-08 13:5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30	20가48**	전*일	경기도 파주시	2024-08-08 13: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31	15무26**	이*철	서울특별시	2024-08-08 15:05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32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08 17:0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33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08 17: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34	16주33**	T*R*A*E*D*N* B*L*A*	서울특별시	2024-08-08 17: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5	52리12**	박*석	인천광역시	2024-08-08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36	38무35**	박*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08 17: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7	94리14**	주*회*서*	경기도 고양시	2024-08-08 18: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238	02다34**	주*회*폴*치	경기도 성남시	2024-08-08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9	38머54**	최*균	서울특별시	2024-08-08 18: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40	서울81배27**	이*훈	서울특별시	2024-08-08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41	20두81**	주*회*아*프	서울특별시	2024-08-08 18: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42	86우64**	조*례	서울특별시	2024-08-08 19: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3	128하44**	오*근	광주광역시	2024-08-08 19: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4	83마63**	이*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09 07:5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245	82도38**	김*민	경기도 광주시	2024-08-09 08:3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46	81너19**	농*회*법*주*회*지*	경기도 화성시	2024-08-09 0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47	59부25**	W*N*W*N*Z*N*	서울특별시	2024-08-09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48	241우93**	김*민	서울특별시	2024-08-09 09:4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49	120루92**	유*화*미*솔*선	서울특별시	2024-08-09 13: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50	92누13**	김*홍	경기도 김포시	2024-08-09 15: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1	163버53**	민*희	인천광역시	2024-08-09 17:05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휘문교교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52	08두09**	농*화*법*주*회 *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8-09 17:2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3	302두54**	금*숙	경기도 군포시	2024-09-05 16:3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54	302두54**	금*숙	경기도 군포시	2024-09-05 16: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55	51하18**	임*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5 18: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56	66너70**	유*철	전라남도 여수시	2024-09-05 18: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7	143호58**	(*)*엔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5 20: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8	239도63**	신*주	경기도 광명시	2024-09-05 20: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9	17고23**	이*석	서울특별시	2024-09-15 00:5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0	26나60**	안*철	서울특별시	2024-09-15 13: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61	16수57**	차*윤	경기도 성남시	2024-09-15 21:0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2	31러06**	남*희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22: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3	138로45**	라*덕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23: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4	60겨72**	나*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5 23: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5	386오78**	박*수	대전광역시	2024-09-27 11:5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66	02고88**	전*철	서울특별시	2024-09-27 17:15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267	369소89**	장*규	충청남도 공주시	2024-09-27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8	825무31**	황*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4-08-09 1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9	서울서대문차47**	S*L*M*V*B*B* K*R	서울특별시	2024-08-09 18:15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 위반	42160
270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8-09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71	104하55**	주*회*삼*아*앤*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09 18: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72	233수98**	백*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09 19:2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73	서울38아44**	이*신	서울특별시	2024-08-09 20: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74	171너69**	주*회*진*스*디*	인천광역시	2024-08-10 04: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275	58누86**	안*정	서울특별시	2024-08-10 09: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276	22로29**	신*범	경상남도 창원시	2024-08-10 13:38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77	서울38아62**	나*근	서울특별시	2024-08-10 15:5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278	91저07**	윤*중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10 17:48	제기동역~경동시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79	02우53**	T*W*S*N*T*M* T*Y*O*A*	경기도 평택시	2024-08-10 17: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0	02우53**	T*W*S*N*T*M* T*Y*O*A*	경기도 평택시	2024-08-10 17: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1	49도82**	이*구	부산광역시	2024-08-11 10: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2	84여71**	김*범	경상남도 사천시	2024-08-11 12:1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3	84여71**	김*범	경상남도 사천시	2024-08-11 12:2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4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11 13: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5	23수93**	(*)*오*란*크*러*	서울특별시	2024-08-11 13: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6	72부53**	김*호	경기도 하남시	2024-08-11 15: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3240
287	193하76**	염*안	부산광역시	2024-08-11 16:3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8	193하76**	염*안	부산광역시	2024-08-11 16: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11 17: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0	115하98**	주*회*알*렌*카	충청북도 괴산군	2024-08-11 20:11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91	67가41**	안*욱	경기도 용인시	2024-08-11 23: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92	278무94**	김*용	인천광역시	2024-08-12 06: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93	57루37**	김*진	서울특별시	2024-08-12 07:4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94	825러15**	목*리*델*시*타 *보*수*점	경기도 수원시	2024-08-12 07: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295	81보48**	이*전	서울특별시	2024-08-12 0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96	235나87**	주*회*덕*마*	서울특별시	2024-08-12 08:3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97	91다35**	허*찬	경기도 부천시	2024-08-12 08:47	여의대로38	전용차로 위반	52700
298	53조66**	(*)*나*앤*	부산광역시	2024-08-12 09:27	아현교차로~충정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9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12 12: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12 12: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1	256노34**	최*관	서울특별시	2024-08-12 12:4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302	33조30**	이*구	서울특별시	2024-08-12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03	36가83**	권*우	충청북도 충주시	2024-08-12 17:3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4	36가83**	권*우	충청북도 충주시	2024-08-12 17:3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5	117수73**	강*국	서울특별시	2024-08-12 17: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306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8-12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07	68누59**	G*O*O*G*U*N	경기도 안산시	2024-08-12 18: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08	03노17**	김*환	서울특별시	2024-08-12 19:03	현충로 한강현대아파트 102동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309	68버75**	이*형	서울특별시	2024-08-12 1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10	193하79**	양*희	경기도 안양시	2024-08-12 1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11	21모32**	권*정	경기도 이천시	2024-09-06 08: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12	서울98사70**	이*무	서울특별시	2024-09-06 09: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313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4-09-06 10: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14	183저28**	조*연	서울특별시	2024-09-06 10: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15	38조72**	주*회*디*탈*탈 *△*	서울특별시	2024-09-06 12: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16	236소91**	김*솔	인천광역시	2024-09-06 14: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17	50거67**	김*태	경상북도 구미시	2024-09-06 15:5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18	18버97**	이*진	인천광역시	2024-09-16 20: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19	13로11**	박*규	경기도 파주시	2024-09-16 22: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0	12누77**	한*노	전라남도 순천시	2024-09-16 22: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1	15거52**	김*건	경기도 평택시	2024-09-16 22:4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2	125호42**	박*희	경기도 수원시	2024-09-16 23: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3	306나45**	신*철	서울특별시	2024-09-16 23:0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24	51수57**	K*U*A*B*E*Z* K*R*O*S*O*U* U*L*	경상북도 경산시	2024-09-16 23: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5	195하57**	김*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7 20: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26	59구22**	양*연	경기도 양주시	2024-09-28 05:0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327	396저76**	이*현	서울특별시	2024-09-28 07: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28	107다25**	(*)*승*함*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9-28 15: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9	134수82**	서*권	서울특별시	2024-09-28 20: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30	250저19**	신*태	서울특별시	2024-09-28 20:4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31	65로86**	임*근	경기도 부천시	2024-09-29 11:1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332	125하21**	(*)*명*술*단*함 *축*사*소	서울특별시	2024-08-12 19: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33	서울35바42**	김*철	서울특별시	2024-08-12 1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34	87마19**	김*호	경기도 성남시	2024-08-12 20:0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35	192허20**	주*회*건*인*내 *널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12 20:28	공릉동 삼육애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36	349누50**	주*회*스*비*코 *아	서울특별시	2024-08-12 20:5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37	65라66**	(*)*여*시*	서울특별시	2024-08-13 07:31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38	01우35**	김*갑	경기도 용인시	2024-08-13 07:48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39	141로77**	조*원	경기도 안양시	2024-08-13 08:54	북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40	81오43**	주*회*장*한*	경기도 하남시	2024-08-13 09: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41	20노82**	황*식	서울특별시	2024-08-13 0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42	157하28**	주*회*크*에*티 *애*창	서울특별시	2024-08-13 12: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43	238도88**	H*N*W*N*H*N *	서울특별시	2024-08-13 13: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44	238도88**	H*N*W*N*H*N *	서울특별시	2024-08-13 13: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45	210모81**	(*)*스*산*개*	부산광역시	2024-08-13 14:0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46	105하66**	곽*희	광주광역시	2024-08-13 15: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47	12거97**	민*홍	경기도 부천시	2024-08-13 17:2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48	132가98**	스*엔*니*링*식 *사	경기도 수원시	2024-08-13 17:4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49	224두48**	P*A*W*N*O*G	서울특별시	2024-08-13 1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50	116저61**	강*숙	경기도 김포시	2024-08-13 18:1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51	06마45**	이*희	서울특별시	2024-08-13 18: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52	129노60**	(*)*시*템*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13 18: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53	395저11**	리*투*션*시*지	서울특별시	2024-08-13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4	36노96**	R*M*N*N*A*A* A*	서울특별시	2024-08-13 18: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5	52버33**	이*주	인천광역시	2024-08-13 19: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6	110하89**	이*동	서울특별시	2024-08-13 19: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7	84모89**	윤*노	충청남도 서천군	2024-08-13 19:3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58	60머83**	신*심	서울특별시	2024-08-13 19:4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59	175호70**	성*식*점	울산광역시	2024-08-13 20: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60	315너27**	L*U*H*N*A*	인천광역시	2024-08-14 0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61	87무79**	장*희	인천광역시	2024-08-14 0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2	23노41**	주*회*제*앤*글 *벌	경기도 고양시	2024-08-14 0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63	181무47**	(*)*모*브	서울특별시	2024-08-14 11:29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64	006마62**	주*희*우*토*	경기도 용인시	2024-08-14 14: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63240
365	37루83**	송*수	서울특별시	2024-08-14 16:1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2700
366	224루60**	이*일	경기도 평택시	2024-08-14 16: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67	224루60**	이*일	경기도 평택시	2024-08-14 16: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68	224루60**	이*일	경기도 평택시	2024-08-14 16:2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69	42로80**	이*목	서울특별시	2024-08-14 1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70	230수39**	강*태	서울특별시	2024-08-14 17:20	봉천고개~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371	31보07**	서*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9-06 16: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2	31보07**	서*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9-06 16:3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3	31보07**	서*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9-06 16: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4	20호25**	최*호	서울특별시	2024-09-06 17: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75	12무94**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6 19:4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376	112머74**	김*신	경기도 양주시	2024-09-06 20:0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77	65주84**	김*아	대전광역시	2024-09-17 00:5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8	서울85자84**	박*금	서울특별시	2024-09-17 07:32	반동초등학교~해모로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79	서울85자84**	박*금	서울특별시	2024-09-18 07:20	반동초등학교~해모로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80	87거62**	김*화	경기도 포천시	2024-09-30 07:2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81	800노73**	이*순	서울특별시	2024-09-30 0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82	서울81배47**	정*현	서울특별시	2024-09-30 07:33	현릉로 염곡사거리 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83	74버42**	박*규	경기도 하남시	2024-09-30 07:38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염곡IC	전용차로 위반	63240
384	52서52**	윤*준	경기도 성남시	2024-09-30 09: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85	305가24**	김*열	경기도 과천시	2024-09-30 11:4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86	40서92**	권*영	서울특별시	2024-09-30 15: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87	820리76**	김*수	경기도 안산시	2024-09-30 15: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88	152호33**	예*게*비*주*	서울특별시	2024-08-14 17:3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89	161호49**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8-14 18: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0	64버33**	안*준	서울특별시	2024-08-14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91	55다76**	노*봉	부산광역시	2024-08-14 18: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92	234수23**	한*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8-14 18:4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93	194호78**	송*린	서울특별시	2024-08-14 19:29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394	82부54**	신*호	서울특별시	2024-08-14 19:52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95	57도33**	장*웅	대전광역시	2024-08-14 20: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6	67노21**	전*경	경기도 고양시	2024-08-14 20: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97	195호84**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4-08-15 12: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8	195호84**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4-08-15 12:1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9	161호49**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8-15 12: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00	161호49**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8-15 12: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01	145하44**	김*민	서울특별시	2024-08-16 0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02	59저04**	김*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8-16 08: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03	115더98**	김*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8-16 09: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404	161루35**	김*혜	인천광역시	2024-08-16 10:1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05	07고71**	주*비*드*치	서울특별시	2024-08-16 11: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06	134고56**	(*)*스*디*설*트	서울특별시	2024-08-16 14: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07	813고87**	김*우	경기도 안산시	2024-08-16 15:1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08	193호55**	장*성	서울특별시	2024-08-16 15: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09	26무08**	양*진	서울특별시	2024-08-16 15: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0	70가37**	김*자	경기도 고양시	2024-08-16 16:30	홍제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411	195호29**	농*회*법*나*와 *식*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8-16 16:4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12	195호29**	농*화*법*나*와 *식*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8-16 16: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3	21더71**	브*넥*트*스*주 *회*	서울특별시	2024-08-16 17:00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3-2	전용차로 위반	52700
414	06다91**	여*태	서울특별시	2024-08-16 17: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15	47수51**	(*)*엔*이*자*발	전라남도 무안군	2024-08-16 17: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6	47수51**	(*)*엔*이*자*발	전라남도 무안군	2024-08-16 17:3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7	126호51**	구*민	경기도 파주시	2024-08-16 1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418	26무08**	양*진	서울특별시	2024-08-16 18: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9	241우93**	김*민	서울특별시	2024-08-16 18: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20	241우93**	김*민	서울특별시	2024-08-16 18: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21	87모46**	김*완	서울특별시	2024-08-16 18: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22	64도49**	(*)*이*가	서울특별시	2024-08-16 18: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23	232모38**	새*토*보*(*)	서울특별시	2024-08-16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424	서울32바20**	송*진	서울특별시	2024-08-16 20: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25	28저41**	라*	서울특별시	2024-09-07 10:0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26	59라87**	안*미	서울특별시	2024-09-07 12: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7	105하70**	장*상	광주광역시	2024-09-08 16: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8	15고59**	정*철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9 0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29	31구93**	김*래	경기도 고양시	2024-09-18 16:31	은평뉴타운10단지~동산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430	55나91**	정*희	충청북도 보은군	2024-09-18 21: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1	55나91**	정*희	충청북도 보은군	2024-09-18 21:4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2	36로90**	임*용	경기도 용인시	2024-09-18 22: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3	36로90**	임*용	경기도 용인시	2024-09-18 22:1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4	35러47**	심*환	경기도 평택시	2024-09-18 22:2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5	17주14**	마*강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19 00: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36	224무62**	박*철	서울특별시	2024-09-19 08: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37	서울32바65**	조*현	서울특별시	2024-09-30 17:3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38	12노88**	최*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9-30 18:32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39	57고70**	최*현	경상남도 양산시	2024-09-30 18: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0	248도30**	이*택	경기도 수원시	2024-08-18 10:5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1	05로51**	전*원	경상남도 통영시	2024-08-18 12:1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2	193호69**	전*	충청북도 청주시	2024-08-18 18: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3	02호58**	심*규	울산광역시	2024-08-18 20: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44	248두62**	주*회*에*치*토 *	서울특별시	2024-08-19 07:2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45	340무62**	이*행	서울특별시	2024-08-19 08:2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46	85오56**	(*)*길*원	경기도 양주시	2024-08-19 09:1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447	181우94**	김*성	경기도 광주시	2024-08-19 0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8	32머24**	주*회*남*산*개 *	서울특별시	2024-08-19 10: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9	28거50**	설*환	서울특별시	2024-08-19 11:3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0	153라21**	주*회*지*에*티	서울특별시	2024-08-19 12:45	반포ic~잠원ic	전용차로 위반	52700
451	64고30**	강*혁	경상북도 칠곡군	2024-08-19 15:0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2	64고30**	강*혁	경상북도 칠곡군	2024-08-19 15:0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3	251라35**	(*)*들*드	서울특별시	2024-08-19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4	127가59**	(*)*스*림*리*(*) x*r*m*K*r*a*o *,*t*,*	서울특별시	2024-08-19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5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19 17: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6	161호49**	이*윤	경기도 평택시	2024-08-19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7	135로85**	N*D*I*R*I	인천광역시	2024-08-19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58	272버45**	최*우	세종특별자치시	2024-08-19 18: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9	75보24**	박*화	경기도 군포시	2024-08-19 18:22	구로디지털단지지역교차로~대림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460	19저88**	이*엽	경기도 부천시	2024-08-19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61	41마07**	(*)*스*자	서울특별시	2024-08-19 19:0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62	171호65**	한*애	서울특별시	2024-08-19 19:23	공릉동 26-35	전용차로 위반	52700
463	82여88**	강*모	서울특별시	2024-08-19 1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464	10도16**	조*원	서울특별시	2024-08-19 23:2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465	서울06너56**	김*용	서울특별시	2024-08-20 06:56	남태령역~사당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466	02부61**	주*희*매*규*	서울특별시	2024-08-20 07:2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67	192허45**	도*잉*코*아*주*	서울특별시	2024-08-20 08:33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68	87마99**	해*루*드*식*사	서울특별시	2024-08-20 1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69	96거07**	이*천	인천광역시	2024-08-20 10: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70	294노26**	C*E*E*G*U	경기도 안산시	2024-08-20 10: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71	48우84**	박*숙	서울특별시	2024-08-20 12:3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72	193허16**	식*안*정*원	서울특별시	2024-08-20 13:50	한남IC~잠원IC	전용차로 위반	52700
473	서울31사64**	유*봉	서울특별시	2024-08-20 15:46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74	113누42**	백*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0 1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75	37머17**	이*지	서울특별시	2024-08-20 18:1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76	51가88**	송*환	서울특별시	2024-08-20 18:2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7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8-20 18: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8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2024-08-20 19: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79	36우75**	정*용	경기도 고양시	2024-08-20 1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80	28고78**	조*영	경기도 김포시	2024-09-09 08:57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2700
481	117루26**	천*리	충청북도 충주시	2024-09-09 12: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82	014나98**	김*규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13:11	남현동 남태령교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63240
483	59여95**	C*R*S*E*E*O*Y*E*L	대구광역시	2024-09-09 13:2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4	59여95**	C*R*S*E*E*O*Y*E*L	대구광역시	2024-09-09 13:3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5	26로23**	신*정	서울특별시	2024-09-09 15: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86	192호42**	박*우	경기도 안양시	2024-09-09 15:5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7	192호42**	박*우	경기도 안양시	2024-09-09 15:5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8	349조67**	사*정민	경기도 시흥시	2024-09-09 16: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89	173도88**	안*봉	경기도 의왕시	2024-09-09 16:35	잠원동 현대캐피탈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90	22다34**	현*현	서울특별시	2024-09-19 11: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1	70나93**	최*규	서울특별시	2024-09-19 17:43	도봉보건소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3240
492	331무46**	이*일	서울특별시	2024-09-19 18: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3	131두15**	최*형	경상남도 진주시	2024-09-19 18:4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94	65주24**	홍*	서울특별시	2024-09-19 19:4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95	56부45**	권*진	서울특별시	2024-09-19 20:0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96	42도39**	유*영	울산광역시	2024-08-20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97	88오18**	이*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4-08-20 20: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498	41누52**	정*균	인천광역시	2024-08-21 00:3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499	경기81배24**	허*수	경기도 성남시	2024-08-21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0	351가24**	장*욱	경기도 화성시	2024-08-21 08:0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1	180터74**	이*희	서울특별시	2024-08-21 0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2	293러19**	주*희*하*제*리*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8-21 09:09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03	63모29**	박*난	경기도 용인시	2024-08-21 09: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4	65누28**	정*웅	경기도 안산시	2024-08-21 09: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05	140하25**	주*희*대*이*씨	경기도 시흥시	2024-08-21 09: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06	140오22**	K*M*U*L*N	경기도 안성시	2024-08-21 10: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7	140오22**	K*M*U*L*N	경기도 안성시	2024-08-21 10: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8	경기86자28**	노*문	경기도 부천시	2024-08-21 10: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509	67나91**	G*Y*P*V*H*K*R*K*	인천광역시	2024-08-21 15:1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0	272버45**	최*우	세종특별자치시	2024-08-21 16:1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11	220호35**	장*희	경기도 화성시	2024-08-21 17: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12	61소54**	이*창	충청북도 진천군	2024-08-21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13	93소99**	덕*건*주*회*	경기도 동두천시	2024-08-21 18:50	방학사거리~방학교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14	128호36**	방*배	인천광역시	2024-08-21 1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15	272버45**	최*우	세종특별자치시	2024-08-22 07: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6	272버45**	최*우	세종특별자치시	2024-08-22 07: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7	27오92**	박*한	서울특별시	2024-08-22 08:11	종로2가 보원빌딩	전용차로 위반	52700
518	823다25**	박*의	경기도 안양시	2024-08-22 08: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19	57러32**	김*욱	경기도 부천시	2024-08-22 09: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520	167도57**	주*회*삼*에*엠	경기도 화성시	2024-08-22 12: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21	서울06너56**	김*용	서울특별시	2024-08-22 13:35	사당IC~사당역	전용차로 위반	63240
522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8-22 16: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3	07호85**	정*원	경기도 성남시	2024-08-22 16:32	교보타워사거리~논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24	28더70**	박*규	경기도 이천시	2024-08-22 16: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25	185수66**	주*회*케*영*	서울특별시	2024-08-22 16:5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26	115주67**	유*회*제*비*지*에*	경기도 광주시	2024-08-22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27	11우36**	심*만	서울특별시	2024-08-22 17: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28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8-22 18: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9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8-22 18: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30	43오53**	남*희	경기도 고양시	2024-08-22 20: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1	92루72**	M*R*이*S*U*O	경상남도 거제시	2024-08-23 01: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532	95부36**	이*욱	충청남도 천안시	2024-08-23 07: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3	705호30**	신*진	서울특별시	2024-08-23 07:59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534	171호14**	김*길	인천광역시	2024-09-09 16: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5	09우14**	박*이	서울특별시	2024-09-09 17: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36	369라93**	강*이	서울특별시	2024-09-09 1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37	11주79**	오*준	서울특별시	2024-09-09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8	05도53**	민*미	서울특별시	2024-09-09 17: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39	386조67**	신*섭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9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40	07저33**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09 18: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41	245고22**	하*정	서울특별시	2024-09-09 20: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42	서울31아37**	김*승	경기도 성남시	2024-09-09 20:2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43	22수68**	이*구	서울특별시	2024-09-09 20: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44	31누25**	박*열	서울특별시	2024-09-09 21:5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545	320구94**	이*열	경기도 동두천시	2024-09-10 07:2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46	92도53**	정*영	서울특별시	2024-09-20 07: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47	106다16**	김*태	경기도 고양시	2024-08-23 08:38	도봉역사거리~신도봉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548	58로46**	람*파*(*)	서울특별시	2024-08-23 11: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49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8-23 12:1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50	338라28**	정*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8-23 13:35	연신내역~불광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551	381루25**	티*스*고*래*션 *식*사	서울특별시	2024-08-23 13: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52	305주25**	S*E*F*N*H*	서울특별시	2024-08-23 15: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용차로 위반	52700
553	52버02**	김*라	서울특별시	2024-08-23 16:16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54	84주28**	(*)*펠*터*셔*	서울특별시	2024-08-23 16: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55	84주28**	(*)*펠*터*셔*	서울특별시	2024-08-23 16: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56	140호39**	(*)*이*스*퍼*이 *	서울특별시	2024-08-23 17: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57	36부82**	이*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4-08-23 17:12	올림픽로 성내교~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558	55부27**	(*)*. *해*광	경상북도 포항시	2024-08-23 17:2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559	346주50**	(*)*큐*메*갈	대구광역시	2024-08-23 1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60	339라12**	김*열	경상북도 김천시	2024-08-23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61	224가32**	D*S*A*G*E*G	서울특별시	2024-08-23 18: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62	361나85**	최*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23 18:5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63	충북91자10**	최*순	서울특별시	2024-08-23 20: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64	109호21**	장*준	경기도 화성시	2024-08-23 21:0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565	37호73**	R*B*R*S*O*L	서울특별시	2024-08-24 10:4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66	175호19**	주*희*에*앤*블* *	경기도 시흥시	2024-08-24 12: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67	35라59**	유*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24 20:07	오현로 169주변	전용차로 위반	52700
568	178마59**	P*A*Y*N*Z*	서울특별시	2024-08-24 21:3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569	92라87**	김*유	서울특별시	2024-08-25 11:19	광성로 33주변	전용차로 위반	52700
570	04버67**	나*현	서울특별시	2024-08-26 07: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71	85라06**	주*희*블*크*퍼* *이*	서울특별시	2024-08-26 08: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72	40여56**	이*호	서울특별시	2024-09-10 08:59	삼육에코팜센터~담터지하차도	전용차로 위반	52700
573	315라84**	이*종	경기도 광명시	2024-09-10 11:0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2700
574	222하66**	김*훈	서울특별시	2024-09-10 11:3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75	08조86**	윤*준	경기도 고양시	2024-09-10 15: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76	171호14**	김*길	인천광역시	2024-09-10 16: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77	19조22**	안*희	경기도 광주시	2024-09-10 17: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78	03서14**	박*련	경기도 고양시	2024-09-20 18:11	신논현역~강남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579	391오78**	김*길	경상북도 구미시	2024-09-20 18: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80	33우28**	전*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0 19: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81	149허43**	김*영	서울특별시	2024-09-20 20: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582	서울38아56**	이*식	서울특별시	2024-08-26 12: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83	24루28**	김*일	서울특별시	2024-08-26 13: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84	316저92**	큰*나*엔*테*먼 *주*회*	인천광역시	2024-08-26 15: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전용차로 위반	52700
585	40오71**	최*복	서울특별시	2024-08-26 16:08	잠원동 현대웨이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586	101허45**	최*서	서울특별시	2024-08-26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87	10부89**	전*락	경기도 파주시	2024-08-26 19: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88	21마70**	정*환	서울특별시	2024-08-26 19:2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89	27조41**	김*민	인천광역시	2024-08-26 20: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90	서울31사21**	오*상	경기도 구리시	2024-08-27 07:09	현릉로 연곡사거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91	86더53**	김*주	경기도 고양시	2024-08-27 08:48	월계1교교차로~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92	77여46**	박*철	서울특별시	2024-08-27 15: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3240
593	서울85자59**	이*성	서울특별시	2024-08-27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94	51루84**	주*회*유*게*홀 *스	서울특별시	2024-08-27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95	06서07**	장*호	경기도 성남시	2024-08-27 17: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96	71머91**	J*N*I*H*U	서울특별시	2024-08-27 18: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597	15보57**	L*I*O*	충청북도 청주시	2024-08-27 18:4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98	15보57**	L*I*O*	충청북도 청주시	2024-08-27 18: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99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8-27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00	서울31사11**	장*선	서울특별시	2024-08-27 20:03	안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01	경기91아27**	김*진	경기도 성남시	2024-08-27 20:0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02	223누50**	유*희	서울특별시	2024-08-28 07:1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03	서울영등포카72**	표*구	서울특별시	2024-08-28 08:27	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2160
604	140하74**	조*범	경기도 성남시	2024-08-28 08:55	북정역~장지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05	82무60**	주*회*위*아*엔 *	경기도 성남시	2024-08-28 08:56	북정역~장지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06	66여81**	T*O*E*G*Y	경상북도 경주시	2024-08-28 10: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07	59버53**	김*형	경기도 수원시	2024-08-28 10: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08	194호60**	최*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8-28 11: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09	12가57**	심*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4-08-28 12: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10	381투25**	티*스*교*레*선 *식*사	서울특별시	2024-08-28 13: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11	62라41**	홍*신	경기도 고양시	2024-08-28 15:0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12	01하16**	l*j*n*e	경기도 수원시	2024-08-28 16:5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613	148수65**	안*녀	인천광역시	2024-08-28 17: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14	02머80**	김*철	충청남도 부여군	2024-08-28 18: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15	41서73**	최*열	서울특별시	2024-08-28 1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16	370다89**	(*)*친*	서울특별시	2024-08-28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17	05버09**	(*)*라*티*이	서울특별시	2024-08-28 1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18	27머86**	양*영	대전광역시	2024-09-10 18: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19	45버08**	노*호	서울특별시	2024-09-10 18: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0	101허45**	박*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09-10 19: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1	38투07**	조*표	경기도 수원시	2024-09-10 19: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22	50투32**	양*민	서울특별시	2024-09-10 20:3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3	123노61**	오*희	경기도 파주시	2024-09-21 07: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24	87수66**	방*성	서울특별시	2024-09-21 14: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29	전용차로 위반	52700
625	322로83**	최*희	서울특별시	2024-09-21 19:5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26	서울31바43**	이*동	경기도 양주시	2024-09-23 08: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7	38러85**	고*순	서울특별시	2024-09-23 08: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8	95라21**	김*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8-28 20:21	공릉동 삼육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29	47다23**	임*경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28 20:2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30	05주34**	김*경	광주광역시	2024-08-29 09: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31	162허46**	엄*성	서울특별시	2024-08-29 10: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32	14소33**	김*경	서울특별시	2024-08-29 11: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33	42두09**	J*N*H*X*E	인천광역시	2024-08-29 13: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34	161호49**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8-29 13: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35	334모14**	김*균	서울특별시	2024-08-29 14: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36	59조89**	육*수	서울특별시	2024-08-29 17:1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37	136노36**	L*C*U*G*A*G	충청남도 보령시	2024-08-29 17: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638	52루09**	김*후	경기도 과천시	2024-08-29 17:29	고척교~고척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39	서울38아44**	이*신	서울특별시	2024-08-29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0	49구65**	주*화*동*산*개*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9 17:5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켄노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641	10라08**	주*화*소*상*	서울특별시	2024-08-29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2	51여92**	박*희	서울특별시	2024-08-29 18: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3	18수14**	엔*이*리*(*)	부산광역시	2024-08-29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44	22마56**	박*용	경기도 고양시	2024-08-29 19:4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45	149허83**	홍*비	서울특별시	2024-08-29 20: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6	63소54**	한*규	경기도 부천시	2024-08-29 23:3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47	93오40**	주*화*흠*린*여	경기도 성남시	2024-08-30 07:34	매봉역교차로~양재전화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48	서울85자80**	남*복	서울특별시	2024-08-30 07:3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49	102호10**	김*주	부산광역시	2024-08-30 07: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0	278부91**	임*영	서울특별시	2024-08-30 0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51	57부33**	황*혁	서울특별시	2024-08-30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2	006나77**	김*국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30 09: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653	65겨18**	주*화*워*스*이	서울특별시	2024-08-30 11: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4	05모07**	지*식	경기도 안산시	2024-08-30 15: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55	07서38**	문*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9-11 10: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56	33로71**	김*애	경기도 구리시	2024-09-11 18:0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7	62구75**	정*림	서울특별시	2024-09-11 1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58	365수39**	김*수	경기도 파주시	2024-09-23 09:22	이대역~아현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659	327더23**	이*준	서울특별시	2024-09-23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60	269무86**	서*문	경기도 성남시	2024-09-23 15:1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661	820러76**	김*수	경기도 안산시	2024-09-23 16: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62	32무16**	김*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3 16: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63	89고06**	구*섭	경기도 김포시	2024-09-23 16:5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64	68두01**	조*우	경기도 용인시	2024-09-23 16:5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65	10머03**	박*만	인천광역시	2024-09-23 17: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66	05도07**	지*식	경기도 안산시	2024-08-30 15: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67	173호57**	서*호	경기도 성남시	2024-08-30 16: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68	80다38**	김*철	서울특별시	2024-08-30 16: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69	80다38**	김*철	서울특별시	2024-08-30 16: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0	181무22**	B*Y*R*A*K*A* M*A*M*R*A*	서울특별시	2024-08-30 17: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1	289소32**	주*회*더*시*시 *크	서울특별시	2024-08-30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2	07수06**	유*란	서울특별시	2024-08-30 17: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3	08두09**	농*회*법*주*회 *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8-30 1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4	11버16**	박*철	서울특별시	2024-08-30 19:0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75	40오71**	최*복	서울특별시	2024-08-30 19: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76	40부85**	신*명	인천광역시	2024-08-30 19: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77	05오96**	이*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30 1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78	32주79**	박*수	서울특별시	2024-08-30 20: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79	14보90**	왕*철	충청남도 아산시	2024-08-30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80	67보42**	김*희	서울특별시	2024-08-31 09:45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81	340수96**	한*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31 10:15	천호대로 시원누리내과부근	전용차로 위반	52700
682	서울80배93**	김*일	서울특별시	2024-08-31 11:4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2700
683	195호73**	김*희	부산광역시	2024-08-31 14: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4	179하38**	최*희	광주광역시	2024-08-31 15: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5	25오34**	주*희*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8-31 16:1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6	59버53**	김*형	경기도 수원시	2024-08-31 16:44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87	21루44**	박*연	경기도 하남시	2024-08-31 16:4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8	49수09**	윤*연	경기도 여주시	2024-08-31 17: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89	59러60**	이*종	서울특별시	2024-08-31 21:59	중화동 중량역 인근 메디퀀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690	845조72**	박*진	경기도 파주시	2024-09-01 07:4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691	35로06**	황*동	서울특별시	2024-09-11 18:2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92	25소70**	안*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1 19:0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693	서울31자55**	김*운	서울특별시	2024-09-11 19: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94	50수91**	황*권	경기도 성남시	2024-09-12 0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95	155하85**	권*희	인천광역시	2024-09-12 08:0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96	88더94**	이*석	서울특별시	2024-09-12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97	58구10**	박*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3 19:2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98	04버52**	김*애	서울특별시	2024-09-23 19:46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699	07도09**	이*원	서울특별시	2024-09-23 20: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00	115소50**	(*)*화*엔*	경기도 부천시	2024-09-23 20: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01	812서78**	손*익	경기도 성남시	2024-09-24 07:4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02	36하16**	조*훈	경기도 하남시	2024-09-24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03	378나85**	이*진	경기도 안산시	2024-09-24 08: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4	53오89**	이*열	경기도 용인시	2024-09-24 09: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705	23서36**	정*진	경기도 화성시	2024-09-24 11: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06	51오26**	주*회*금*건*주*관*	대전광역시	2024-09-24 11: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7	59우73**	박*란	인천광역시	2024-09-01 13:14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08	32소75**	K*A*I*B*E*Z*F *R*E*A*I*B*E* I*H	인천광역시	2024-09-01 14: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9	43러91**	G*U*N*Y*O*E* H*	경기도 안산시	2024-09-01 16: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0	45조91**	길*호	서울특별시	2024-09-01 18: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1	820머72**	서*식	서울특별시	2024-09-01 20: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2	53조24**	최*혁	서울특별시	2024-09-02 0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13	184버38**	이*복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2 08:4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14	서울86자49**	홍*희	서울특별시	2024-09-02 09:17	동부시장교차로~서울시체육회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15	27고29**	이*호	경기도 수원시	2024-09-02 09: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6	66라84**	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9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17	166부93**	한*숙	서울특별시	2024-09-25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18	169조84**	김*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7-11 18:51	한남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2700
719	105하43**	홍*주	인천광역시	2024-09-13 18:1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0	105하43**	홍*주	인천광역시	2024-09-13 18:1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1	59두88**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29 16: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2	경기39바41**	김*기	인천광역시	2024-08-06 16: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23	서울31사93**	함*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6 20: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24	124더50**	주*회*국*	충청남도 서산시	2024-08-09 19:5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25	325버85**	이*철	경기도 광주시	2024-08-10 15: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6	50소92**	김*서	서울특별시	2024-08-13 18: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27	282주82**	정*기	서울특별시	2024-09-06 19:54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728	32주32**	김*환	경상남도 거제시	2024-08-15 14:5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729	49버11**	황*수	서울특별시	2024-08-19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0	14다99**	김*철	충청북도 음성군	2024-09-09 15: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1	83마46**	양*명	경기도 포천시	2024-08-30 09:0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732	83마46**	양*명	경기도 포천시	2024-08-30 09: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3	01라20**	안*해	경상북도 문경시	2024-08-31 16:5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734	89소59**	정*균	인천광역시	2024-08-06 07:2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35	89소59**	정*균	인천광역시	2024-08-13 09: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36	82거54**	김*용	경기도 파주시	2024-09-06 20: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7	105버28**	M*J*A*	경기도 용인시	2024-09-07 16:2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38	105버28**	M*J*A*	경기도 용인시	2024-09-07 16: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39	04오08**	심*성	경기도 고양시	2024-08-14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5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임○빈 등 890명
 4.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수납기 (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검색창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팩스(02-2133-4904)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부과)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	57여27**	임*빈	서울특별시	2024-02-28 1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	서울종로자43**	김*수	서울특별시	2024-08-28 17:46	종로구청입구교차로~종각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3	105하68**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4-09-09 17: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	42라36**	R*C*S*A*R*E*U*H	경기도 평택시	2024-09-22 09: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	04보78**	H*N*Y*L*R*N*E*O*D	경기도 평택시	2024-09-22 17: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	05머19**	김*민	서울특별시	2024-09-26 09:04	내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	172다42**	M*T*L*U*A*O*Y	경기도 평택시	2024-10-05 15:5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	04루63**	F*N*E*,*W*N*O*Y*A *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12 11: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	04루63**	F*N*E*,*W*N*O*Y*A *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12 11:3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05루66**	C*N*O*R*A*M*T*H* W*L*J*H	경기도 평택시	2024-10-12 13: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123무15**	C*N*R*L*,*O*Y*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12 18: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64머27**	김*희	경기도 성남시	2024-10-16 11:23	경부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169오39**	F*L*O*,*P*I*N*O*I	경기도 평택시	2024-10-19 18: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169오39**	F*L*O*,*P*I*N*O*I	경기도 평택시	2024-10-19 18: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02우54**	D*V*S*A*O*A*E*N*N	경기도 평택시	2024-10-19 19: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94하66**	(*)*스*	충청북도 청주시	2024-10-24 0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53마31**	M*K*L*E*D*S*A*N	경기도 평택시	2024-10-26 10: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53마31**	M*K*L*E*D*S*A*N	경기도 평택시	2024-10-26 10: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2마71**	V*U*H*C*R*S*A*O*	경기도 평택시	2024-10-27 08:5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12마71**	V*U*H*C*R*S*A*O*	경기도 평택시	2024-10-27 09: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06도68**	등*수*기*주*회*	부산광역시	2024-10-28 13:42	말죽거리공원사거리~영동1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243나12**	최*영	서울특별시	2024-10-28 16:09	한남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3	332가32**	한*숙	인천광역시	2024-10-29 07:04	녹번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4	125호68**	(*)*이*엔*	서울특별시	2024-10-29 07:37	연희IC~모래내고개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66러49**	배*향	서울특별시	2024-10-30 08:16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156하44**	설*애*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4-10-30 14: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156하44**	설*애*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4-10-30 14: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49호24**	조*구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31 17: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105하68**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4-10-31 18: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162주26**	A*J*T*M*R*J*V*N*L* R*N*O	경기도 평택시	2024-11-02 14: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33너70**	E*P*N*Z*M*T*O*N*R* S	경기도 평택시	2024-11-02 20: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40하02**	김*영	서울특별시	2024-11-03 07:17	반동초등학교~해모로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242터15**	B*L*D*V*D*O*L*W*Y	경기도 평택시	2024-11-03 16: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242터15**	B*L*D*V*D*O*L*W*Y	경기도 평택시	2024-11-03 16: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154하42**	연*민	충청북도 청주시	2024-11-04 01: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04 12: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04 12:4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04 12: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49호24**	조*구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05 11:2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34호94**	윤*용	경기도 수원시	2024-11-05 20: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170하23**	주*희*에*투*컴*A*O*C *m*O*,*t*,*	서울특별시	2024-11-06 12: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152호33**	에*케*비*주*	서울특별시	2024-11-06 14:2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230하31**	주*희*삼*비*비*트*	서울특별시	2024-11-06 16: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190하39**	주*희*웅*매*지*트*름	서울특별시	2024-11-06 17:1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05누54**	주*희*엑*티*X*)	서울특별시	2024-11-06 18:0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6	163하16**	(*)스*파*지*택*	인천광역시	2024-11-07 07:04	김포공항교차로~김포공항입구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160허36**	(*)우*	서울특별시	2024-11-07 07:43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 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177허15**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07 20: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179허31**	양*준	경기도 하남시	2024-11-08 07:57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254조42**	청*씨*디*식*사	경기도 부천시	2024-11-08 15: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115러53**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11-08 18:1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251도14**	(*)*앤*이*로*	서울특별시	2024-11-08 18: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67호11**	최*욱	서울특별시	2024-11-08 19: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195호84**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4-11-09 08:1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153호99**	주*회*디*스*택*설	인천광역시	2024-11-09 13:2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224호69**	김*훈	서울특별시	2024-11-10 12:5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2024-11-10 13: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179허33**	김*태	서울특별시	2024-11-10 17:0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167허57**	정*식	서울특별시	2024-11-11 08:18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221호97**	강*우	서울특별시	2024-11-11 08: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49호24**	조*구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11 11: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196호22**	엘*이*발*식*사	경기도 안양시	2024-11-11 16:0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353러11**	(*)아*림*프*비	서울특별시	2024-11-11 19: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156하54**	김*연	경기도 양주시	2024-11-11 20: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251저11**	주*회*거*	서울특별시	2024-11-12 0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196허43**	가*드*김*면*	경기도 고양시	2024-11-12 08:25	올림픽공원교차로~송파구청교 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2 14: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8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2 14: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2 14: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254저68**	정*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12 17:5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251저11**	주*회*가*	서울특별시	2024-11-13 0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2	201러13**	(*)*무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13 09:3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3 10:2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4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3 1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100가89**	주*회*우*토*중*	경기도 화성시	2024-11-13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146하97**	L*D*N*C*N	서울특별시	2024-11-13 19: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230하36**	주*회*시*인	경기도 안양시	2024-11-14 17:2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230하36**	주*회*시*인	경기도 안양시	2024-11-14 17: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2024-11-14 17:49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140하35**	인*열	서울특별시	2024-11-14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172허91**	주*회*대*원*포*	경기도 고양시	2024-11-14 18:2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155하11**	윤*훈	서울특별시	2024-11-14 19: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360무94**	아*애*동*(*)	서울특별시	2024-11-14 20:1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126하18**	최*규	경기도 용인시	2024-11-14 21:0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서울서대문차50**	김*수	서울특별시	2024-11-15 12:23	종로1가교차로~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0000
86	126하74**	(*)*일*키*림*축*사*소	서울특별시	2024-11-15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222하45**	최*숙	경기도 성남시	2024-11-15 18: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38허07**	주*회*대*크*에*티*	서울특별시	2024-11-15 20: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08너06**	정*삼	서울특별시	2024-11-16 08:47	마포대교교차로~여의도환승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327노18**	(*)*이*뮤*레*즈	서울특별시	2024-11-16 10:4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327노18**	(*)*이*뮤*레*즈	서울특별시	2024-11-16 10: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2	327노18**	(*)이*규*래*즈	서울특별시	2024-11-16 10: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149호56**	박*수	전라남도 신안군	2024-11-16 13:2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175허61**	인*리*우*	충청남도 부여군	2024-11-16 15: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175허61**	인*리*우*	충청남도 부여군	2024-11-16 15:1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03서73**	주*희*플*토	서울특별시	2024-11-16 18:4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327노18**	(*)이*규*래*즈	서울특별시	2024-11-16 18: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8	327노18**	(*)이*규*래*즈	서울특별시	2024-11-16 18: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9	162소33**	이*	서울특별시	2024-11-16 20:2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169호16**	전*관	경기도 광주시	2024-11-17 10:1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서울31바90**	이*재	서울특별시	2024-11-17 16:2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01너93**	고*정	대전광역시	2024-11-18 07:1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89도03**	김*영	경기도 여주시	2024-11-18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39나09**	손*	경기도 수원시	2024-11-18 07:2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81무05**	이*상	경기도 광주시	2024-11-18 07: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36머44**	백*만	서울특별시	2024-11-18 08: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90소87**	김*한	서울특별시	2024-11-18 0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713더60**	주*희*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8 08:4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60000
109	232모38**	새*토*보*(*)	서울특별시	2024-11-18 08:5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179조19**	주*희*희*	서울특별시	2024-11-18 09: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122호76**	조*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18 09:45	공릉동 대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67주71**	주*희*일*자	서울특별시	2024-11-18 09: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08주39**	한*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18 09:49	공릉동 대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75오61**	(*)*릴*뉴*	서울특별시	2024-11-18 10: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115	75오61**	(*)*릴*뉴*	서울특별시	2024-11-18 10: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116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8 10:3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17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18 10: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158마74**	이*희	경기도 고양시	2024-11-18 10:59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46-6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187머16**	주*회*거*애*앤*	서울특별시	2024-11-18 11:2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05버88**	허*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1-18 12:2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05버88**	허*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1-18 12: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115리53**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11-18 13: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115리53**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11-18 13: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4	60나55**	한*자	서울특별시	2024-11-18 14:5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52무01**	주*회*알*애*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1-18 15: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6	52무01**	주*회*알*애*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1-18 15:2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358두21**	P*A*E*H*	서울특별시	2024-11-18 15: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28우05**	(*)*씨*리*	서울특별시	2024-11-18 16:06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2024-11-18 16:3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130	81루27**	주*회*태*글*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18 17:2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165하93**	김*수	서울특별시	2024-11-18 17:2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841도44**	(*)*자*화*목	경기도 용인시	2024-11-18 17: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241우93**	김*민	서울특별시	2024-11-18 18:1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87더47**	김*란	서울특별시	2024-11-18 18: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186주84**	윤*현	서울특별시	2024-11-18 18: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57보85**	박*진	경기도 군포시	2024-11-18 19: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337소24**	박*현	서울특별시	2024-11-18 19: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38	124고89**	박*철	서울특별시	2024-11-18 19:1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145하54**	주*회*서*자*	서울특별시	2024-11-18 19: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323오78**	Q*A*Y*N*	경기도 안산시	2024-11-18 19:2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64라53**	(*)*이*	서울특별시	2024-11-18 19: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175구87**	정*숙	서울특별시	2024-11-18 19: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713더60**	주*회*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8 20:1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144	222호81**	주*회*오*케*칼	경기도 포천시	2024-11-18 20: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193호91**	주*회*우*테*	서울특별시	2024-11-18 20:23	상계동 미술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101하92**	강*재	경기도 화성시	2024-11-18 20:5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서울31자25**	유*규	서울특별시	2024-11-19 00:4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58더90**	김*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19 07: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9	43두75**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19 07:2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713더60**	주*회*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9 08:4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60000
151	713더60**	주*회*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9 08:4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152	59두42**	김*준	대구광역시	2024-11-19 09:1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59두42**	김*준	대구광역시	2024-11-19 09:12	공릉동 삼육애교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인천06아58**	해*개*주*회*	인천광역시	2024-11-19 10:1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155	132호10**	조*태	경기도 고양시	2024-11-19 12:3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126호89**	주*회*국*보*	서울특별시	2024-11-19 14: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24수63**	최*자	인천광역시	2024-11-19 15: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95머86**	임*숙	경기도 평택시	2024-11-19 16:0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59	95두97**	주*회*지*	인천광역시	2024-11-19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11-19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46너93**	김*구	서울특별시	2024-11-19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158도72**	송*운	경기도 안양시	2024-11-19 18:0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175허46**	메*넷*엘*식*사	서울특별시	2024-11-19 18: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135로85**	N*D*I*R*I	인천광역시	2024-11-19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57조69**	송*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11-19 18:3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15노13**	강*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19 1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11-19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713더60**	주*회*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9 19: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60000
169	713더60**	주*회*우*클*관*개*	서울특별시	2024-11-19 19:4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170	41하06**	주*회*이*앤*씨	서울특별시	2024-11-19 20:2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62우41**	최*운	경기도 고양시	2024-11-19 23:3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264우28**	L*D*I*R*I	경기도 안산시	2024-11-20 07:1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62우64**	김*원	인천광역시	2024-11-20 08:0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271조42**	지*천*식*사	부산광역시	2024-11-20 0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274루50**	주*회*진*	경기도 양평군	2024-11-20 08: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6	274루50**	주*회*진*	경기도 양평군	2024-11-20 08:3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63모09**	이*영	서울특별시	2024-11-20 09:10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15노90**	주*회*동*주*	인천광역시	2024-11-20 10:3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15노90**	주*회*동*주*	인천광역시	2024-11-20 10: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80	24도70**	정*섭	경기도 화성시	2024-11-20 11:5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서울31사94**	김*원	서울특별시	2024-11-20 13: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125호82**	정*만	경기도 광주시	2024-11-20 14: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125호82**	정*만	경기도 광주시	2024-11-20 15: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125호82**	정*만	경기도 광주시	2024-11-20 15:3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58우62**	김*산	경기도 의왕시	2024-11-20 16: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12라05**	Y*S*E*E*A*G*E*L	서울특별시	2024-11-20 16:5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0 16: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0 16:5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서울32바98**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20 17: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319주74**	주*희*아*엔*엘	서울특별시	2024-11-20 17:1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159소33**	최*식	서울특별시	2024-11-20 17: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28도85**	정*철	서울특별시	2024-11-20 17:5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213노85**	염*성	서울특별시	2024-11-20 18: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205더41**	박*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11-20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138머82**	메*슨*패*언*식*샤	서울특별시	2024-11-20 18: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188소33**	김*순	서울특별시	2024-11-20 18:5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86주67**	최*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20 1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41무47**	주*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1-20 19: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152호96**	주*희*2*7*뮤*케*션*	서울특별시	2024-11-20 19: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205고73**	정*주	인천광역시	2024-11-20 22: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29누03**	한*주	서울특별시	2024-11-21 09: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서울31아21**	심*환	경기도 파주시	2024-11-21 09: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03	81보48**	이*전	서울특별시	2024-11-21 09:41	남태령고개~남태령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28보63**	김*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1 11: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28보63**	김*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1 11:3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28보63**	김*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1 11: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55부02**	와*에*피*씨*식*사	서울특별시	2024-11-21 12:16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25오34**	주*희*태*중*건*	경기도 오산시	2024-11-21 13: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25오34**	주*희*태*중*건*	경기도 오산시	2024-11-21 13: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153다41**	정*름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1 15: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25오34**	주*희*태*중*건*	경기도 오산시	2024-11-21 15: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25오34**	주*희*태*중*건*	경기도 오산시	2024-11-21 15: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296고38**	김*봉	서울특별시	2024-11-21 16: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105하68**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4-11-21 17: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192호57**	주*희*앤*우*	서울특별시	2024-11-21 17: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11-21 17: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62소05**	정*원	경기도 가평군	2024-11-21 17: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27서98**	김*진	서울특별시	2024-11-21 18:0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41머36**	김*한	서울특별시	2024-11-21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126너36**	한*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1 19:0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288가57**	유*희*제*애*산*개*	전라남도 나주시	2024-11-21 19: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서울31바95**	공*현	서울특별시	2024-11-21 19: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16라59**	M*H*S*Y*E*S*L*U	전라남도 영암군	2024-11-22 03:52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24	93거89**	주*회*오*이*레*	경기도 구리시	2024-11-22 07: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89마65**	이*남	서울특별시	2024-11-22 08:05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서울32자51**	임*원	서울특별시	2024-11-22 11:17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40두40**	V*T*지*U*N*G*A*	경기도 고양시	2024-11-22 12:4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192호38**	이*희	서울특별시	2024-11-22 15: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37노03**	문*원	서울특별시	2024-11-22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222호81**	주*회*오*케*칼	경기도 포천시	2024-11-22 17: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234구94**	최*수	경기도 양주시	2024-11-22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26노83**	서*영	인천광역시	2024-11-22 18: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35너06**	주*회*민*드*	서울특별시	2024-11-22 1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142소32**	조*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22 1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16려46**	주*회*진*개*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2 19:0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36	51도27**	이*일	서울특별시	2024-11-22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249누58**	주*회*국*국	경기도 파주시	2024-11-22 1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171보62**	W*N*B*N*A*	서울특별시	2024-11-22 19: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13거52**	(*)*라*	대전광역시	2024-11-22 1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349더15**	(*)*이*미*어	서울특별시	2024-11-22 20: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58무23**	김*은	경기도 하남시	2024-11-22 20: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814소26**	김*택	서울특별시	2024-11-22 20:1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153라14**	송*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2 20:18	공릉동 삼육애교편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139모72**	강*철	서울특별시	2024-11-22 20: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45	130호49**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11-22 20: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251서17**	권*만	경기도 파주시	2024-11-22 20: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34로45**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2 20: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29두89**	곽*숙	경상남도 밀양시	2024-11-23 01:45	북가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33모05**	전*덕	경기도 고양시	2024-11-23 08:4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75오61**	(*)*렬*뉴*	서울특별시	2024-11-23 10:3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51	75오61**	(*)*렬*뉴*	서울특별시	2024-11-23 10:3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52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3 10: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3 10:4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242노26**	전*영	서울특별시	2024-11-23 12:2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47여31**	윤*섭	경기도 양주시	2024-11-23 13:2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221하37**	이*복	경기도 부천시	2024-11-23 15: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221하37**	이*복	경기도 부천시	2024-11-23 15: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32루19**	유*회*유*	경기도 김포시	2024-11-23 15: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35수02**	(*)*스*앤*이*리*리*	경기도 화성시	2024-11-23 15:4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35수02**	(*)*스*앤*이*리*리*	경기도 화성시	2024-11-23 15:4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176구56**	C*A*P*R*S*E*H*N*O *	경기도 평택시	2024-11-23 15:4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35수02**	(*)*스*앤*이*리*리*	경기도 화성시	2024-11-23 15:4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378보60**	이*수	경기도 안산시	2024-11-23 15:5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75오61**	(*)*렬*뉴*	서울특별시	2024-11-23 17:2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65	194호74**	염*현	경기도 화성시	2024-11-23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194호74**	염*현	경기도 화성시	2024-11-23 17: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67	124어16**	주*회*이*플*닛	서울특별시	2024-11-23 17:4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33누44**	C*E*G*지*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1-23 18:1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11-23 19:0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386부42**	유*회*이*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4 15: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386부42**	유*회*이*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4 15: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334소15**	F*지*U*L*E*B*Z*R*M*K*R	경기도 이천시	2024-11-24 16: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325서98**	유*회*에*이*파*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24 17: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814소26**	김*택	서울특별시	2024-11-24 18:4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93오31**	안*현	서울특별시	2024-11-25 07: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서울31바33**	홍*종	서울특별시	2024-11-25 07:19	한신상가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35서69**	김*승	경기도 구리시	2024-11-25 09:1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261마73**	하*희	경기도 김포시	2024-11-25 09: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42머75**	디*릭*주*회*	서울특별시	2024-11-25 10:03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126호95**	(*)*스*원	경상북도 구미시	2024-11-25 10:0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126호95**	(*)*스*원	경상북도 구미시	2024-11-25 10: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75오61**	(*)*릴*뉴*	서울특별시	2024-11-25 10: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83	140너70**	박*라	경상북도 구미시	2024-11-25 10:3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140너70**	박*라	경상북도 구미시	2024-11-25 10: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11-25 14: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11-25 14:0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7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11-25 14: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04무95**	서*현	경기도 안산시	2024-11-25 15:0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04무95**	서*현	경기도 안산시	2024-11-25 15: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90	62너90**	주*회*화*	서울특별시	2024-11-25 15:47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257고55**	주*회*척*박*	서울특별시	2024-11-25 17:2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257고55**	주*회*척*박*	서울특별시	2024-11-25 17: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2024-11-25 1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94	174도39**	윤*호	경기도 군포시	2024-11-25 1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60루68**	S*L*N*A*D*V*A*Y*M	서울특별시	2024-11-25 18:26	월계동 월계주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96	278노67**	배*호	경기도 안양시	2024-11-25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59모20**	농*회*법*기*미*주*회*	인천광역시	2024-11-25 18: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8	101하19**	송*현	서울특별시	2024-11-25 19:16	월계동 월계주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28로06**	(*)*로*브*	서울특별시	2024-11-25 19:50	충정로사거리~아현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04오95**	이*경	인천광역시	2024-11-25 20:1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374우93**	박*호	경기도 파주시	2024-11-25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5 20:2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125호87**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11-25 20: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92저42**	박*욱	서울특별시	2024-11-25 20: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323머31**	(*)*일*영*설*	서울특별시	2024-11-25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227무94**	제*투*주*회*	서울특별시	2024-11-26 08: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66누69**	박*구	서울특별시	2024-11-26 09: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204수57**	최*식	서울특별시	2024-11-26 09:2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06러12**	김*서	서울특별시	2024-11-26 09: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28노28**	박*한	서울특별시	2024-11-26 09: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65러37**	전*진	서울특별시	2024-11-26 09: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383루74**	유*주	인천광역시	2024-11-26 11:43	남현동 남태령교개(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13	74도47**	정*현	경기도 부천시	2024-11-26 14:0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60000
314	87무70**	허*무	경기도 안성시	2024-11-26 14:3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05하31**	라*트*어*식*사	인천광역시	2024-11-26 15: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54너38**	김*자	부산광역시	2024-11-26 16: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서울32아34**	임*식	서울특별시	2024-11-26 16: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127가59**	(*)*스*림*리*(*)*r*m *K*f*a*O*,*t*. *	서울특별시	2024-11-26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73보92**	최*혁	서울특별시	2024-11-26 17:27	공릉동 대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320	48오16**	이*무	대구광역시	2024-11-26 17:2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172구39**	주*희*티*스*코*아	경기도 용인시	2024-11-26 18: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150도48**	한*희	경기도 수원시	2024-11-26 19: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3	58소32**	(*)*엘*트*스	경기도 고양시	2024-11-26 19: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332가24**	신*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26 19: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33무51**	주*희*본*국*리*	서울특별시	2024-11-26 19: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34호16**	식*사*부*경*지*	서울특별시	2024-11-26 19: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35조37**	김*욱	서울특별시	2024-11-26 20: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서울85자99**	손*희	서울특별시	2024-11-26 20:2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291누50**	정*진	경기도 고양시	2024-11-26 20: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382나69**	김*현	경기도 광주시	2024-11-26 20: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170조19**	주*희*위*파*너*	대구광역시	2024-11-26 20:5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83버78**	강*석	서울특별시	2024-11-27 0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339로83**	김*순	서울특별시	2024-11-27 08: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195호30**	김*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4-11-27 08:3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35	199하54**	정*나	서울특별시	2024-11-27 08:33	온수결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212보29**	노*표	경기도 고양시	2024-11-27 09:22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12-8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70수14**	김*용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7 09:4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338	294구46**	이*욱	서울특별시	2024-11-27 12: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154여23**	이*희	인천광역시	2024-11-27 13: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15오15**	조*희	서울특별시	2024-11-27 13: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96조70**	송*호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27 15:3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37다81**	N*M*S*U*T*N*O*A*M*D*	서울특별시	2024-11-27 15:4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33주50**	황*록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11-27 16:2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25저97**	이*희	서울특별시	2024-11-27 16:3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73너98**	조*석	서울특별시	2024-11-27 16:38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2	전용차로 위반	60000
346	경기78비73**	(*)*성*광	경기도 양평군	2024-11-27 16:44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1-6	전용차로 위반	60000
347	172호52**	C*O*T*K*H*N*	대전광역시	2024-11-27 16: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172호52**	C*O*T*K*H*N*	대전광역시	2024-11-27 16: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9	172호52**	C*O*T*K*H*N*	대전광역시	2024-11-27 16:4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100조18**	정*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4-11-27 18:1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134마62**	김*자	서울특별시	2024-11-27 18: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35루91**	조*호	광주광역시	2024-11-27 18:18	남현동 남태령교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3	서울98사80**	민*기	서울특별시	2024-11-28 08:0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354	05러70**	(*)*탄*터*인*트	서울특별시	2024-11-28 08: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130호38**	조*순	서울특별시	2024-11-28 0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56	230무37**	주*회*헬*게*코*아	인천광역시	2024-11-28 09: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66부73**	제*수	경기도 이천시	2024-11-28 09:4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173호59**	조*형	서울특별시	2024-11-28 11:0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28주52**	케*지*퍼*(*)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8 11: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36서17**	남*한	경기도 수원시	2024-11-28 16:3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61	367우69**	강*구	서울특별시	2024-11-28 16: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73보92**	최*혁	서울특별시	2024-11-28 17:26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363	67로27**	성*복	광주광역시	2024-11-28 17:4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19겨38**	제*와*엔*니*링*축*사*소*식*사	서울특별시	2024-11-28 18: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177호67**	주*회*라*글*벌	경기도 구리시	2024-11-28 19: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49부50**	조*영	서울특별시	2024-11-29 05:34	디지털단지입구교차로~시흥IC	전용차로 위반	50000
367	서울31비59**	권*봉	서울특별시	2024-11-29 07: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서울32아16**	이*곤	서울특별시	2024-11-29 07:27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서울38아44**	이*신	서울특별시	2024-11-29 08: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83라42**	정*방	서울특별시	2024-11-29 08: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115라54**	이*욱	인천광역시	2024-11-29 08: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61고60**	황*구	서울특별시	2024-11-29 09: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3	37마90**	임*덕	경기도 부천시	2024-11-29 10:4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4	167허58**	임*근	경기도 광명시	2024-11-29 12: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167허58**	임*근	경기도 광명시	2024-11-29 12: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114더57**	(*)*래*코*업	서울특별시	2024-11-29 12:5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170허38**	박*준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29 15: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8	170허38**	박*준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29 15:1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9	170허38**	박*준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29 15:1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80	86주84**	이*호	서울특별시	2024-11-29 17:2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333라35**	D*D*B*E*A* *R* *O* *H	경상남도 거제시	2024-11-29 18:3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2	333라35**	D*D*B*E*A* *R* *O* *H	경상남도 거제시	2024-11-29 18: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3	56부83**	(*)*브*지	서울특별시	2024-11-29 18: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84	14라25**	원*희	서울특별시	2024-11-29 19:0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50저83**	임*자	충청남도 논산시	2024-11-29 19: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86	40로31**	H*R* * *R*M* *E*C* A* *N	경기도 평택시	2024-11-29 19:4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7	86부33**	정*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4-11-29 19:5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17라72**	성*재	경기도 안산시	2024-11-29 20: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11너51**	송*림	서울특별시	2024-11-29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서울36바20**	장*석	서울특별시	2024-11-29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4-11-30 09:5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392	188다66**	살*무웨 담마끼띠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30 12: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11버40**	오*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1-30 12: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08오76**	지*준	서울특별시	2024-11-30 14: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08오76**	지*준	서울특별시	2024-11-30 14:2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45오25**	이*월	경기도 고양시	2024-11-30 16: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57루99**	김*희	서울특별시	2024-11-30 18: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98	40너33**	최*재	서울특별시	2024-11-30 23:3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99	서울38아31**	박*원	서울특별시	2024-12-01 04:3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85노72**	김*희	경기도 파주시	2024-12-01 07: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333우52**	이*승	경기도 화성시	2024-12-01 09:3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02	47두87**	박*선	경상북도 김천시	2024-12-01 11:0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3	18나91**	L*M*N*V*O*G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12-01 13: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4-12-01 17: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5	22모10**	김*겸	서울특별시	2024-12-01 17:5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05너41**	박*훈	서울특별시	2024-12-01 19:2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169가17**	이*원	대구광역시	2024-12-01 19: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8	207서51**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4-12-01 19: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133다41**	조*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2-01 20: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349로59**	한*엔*니*링*주*	충청남도 아산시	2024-12-01 20:46	여의대로2길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202가99**	김*숙	경기도 수원시	2024-12-01 20:47	여의대로2길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92가13**	박*섭	경기도 부천시	2024-12-02 05:0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160너61**	박*식	경기도 시흥시	2024-12-02 06:3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83우57**	하*조*주*회*	서울특별시	2024-12-02 07:2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156호20**	임*규	서울특별시	2024-12-02 07:28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인천30바98**	이*환	인천광역시	2024-12-02 09:1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161로76**	전*순	부산광역시	2024-12-02 09:4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161로76**	전*순	부산광역시	2024-12-02 0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52라23**	D*A*M*R*A*T*N*	경기도 평택시	2024-12-02 11: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32너83**	주*회*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2 11:0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46우01**	안*진	경기도 안양시	2024-12-02 12: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37고64**	정*호	경기도 고양시	2024-12-02 12:3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23	14루06**	D*U*A*H*U*N*	서울특별시	2024-12-02 12: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4	14루06**	D*U*A*H*U*N*	서울특별시	2024-12-02 12:5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25	14루06**	D*U*A*H*U*N*	서울특별시	2024-12-02 12:5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70두78**	(*)*티*어	서울특별시	2024-12-02 13:00	경희궁자이 4단지앞	전용차로 위반	60000
427	319어47**	김*한	서울특별시	2024-12-02 13: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57리32**	김*욱	경기도 부천시	2024-12-02 13: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429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4-12-02 15:3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0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4-12-02 15:3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173도96**	유*열	서울특별시	2024-12-02 16:23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37다05**	박*훈	경상남도 김해시	2024-12-02 16:4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37다05**	박*훈	경상남도 김해시	2024-12-02 16:5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4	51로02**	B*O*N*D*U*L*S	경기도 평택시	2024-12-02 16:5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51로02**	B*O*N*D*U*L*S	경기도 평택시	2024-12-02 16:5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58가54**	윤*애	서울특별시	2024-12-02 17: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172조61**	김*현	부산광역시	2024-12-02 18: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361부67**	최*정	경기도 고양시	2024-12-02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164노34**	이*중	경기도 오산시	2024-12-02 18: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60루68**	S*L*N*A*D*V*A*Y*M	서울특별시	2024-12-02 18: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41	396구29**	(*)*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12-02 1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42	20가61**	주*희*와*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2-02 1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43	12주83**	홍*진	서울특별시	2024-12-02 19: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4	24다81**	권*택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2 1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5	서울32040**	이*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2 19:5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46	101하13**	유*현	서울특별시	2024-12-02 20: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47	46노90**	양*모	경기도 용인시	2024-12-02 20:4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48	서울32자47**	신*원	서울특별시	2024-12-03 01: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49	62조79**	조*영	서울특별시	2024-12-03 0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0	291라45**	김*호	경기도 성남시	2024-12-03 0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1	47주22**	나*숙	경기도 고양시	2024-12-03 07:39	성산2교사거리~마포구청역사 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52	154수50**	김*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3 07:4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53	140여31**	유*석	경기도 성남시	2024-12-03 0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4	107부98**	김*철	서울특별시	2024-12-03 08: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5	93버28**	주*희*그*에*앤*스	경기도 하남시	2024-12-03 09: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56	90두44**	(*)*산*출*장	경기도 김포시	2024-12-03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57	28버86**	P*Y*Z*W*A*	경상북도 칠곡군	2024-12-03 09: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8	169허61**	임*준	경기도 평택시	2024-12-03 09:4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59	363서66**	이*연	경기도 성남시	2024-12-03 10:3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0	68노04**	손*기	서울특별시	2024-12-03 10: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1	68노04**	손*기	서울특별시	2024-12-03 10: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2	229나53**	김*숙	경기도 화성시	2024-12-03 10: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63	37다78**	멘*사*인*리*(*)	서울특별시	2024-12-03 12:1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64	239고55**	백*환	인천광역시	2024-12-03 15:3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65	37다78**	멘*사*인*리*(*)	서울특별시	2024-12-03 16: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66	149주43**	L*E*U*L*N*U*T*M*V *C*	인천광역시	2024-12-03 17:0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7	30부96**	최*미	경상북도 포항시	2024-12-03 17: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8	31저12**	주*희*그*일*스	서울특별시	2024-12-03 17: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69	86주87**	박*기	서울특별시	2024-12-03 17: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70	235오31**	W*N*T*N*R*N	서울특별시	2024-12-03 17: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71	396수31**	신*현	서울특별시	2024-12-03 17:4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2	경기98아20**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3 18: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473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12-03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4	43수38**	김*호	서울특별시	2024-12-03 19:0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75	83다37**	윤*식	서울특별시	2024-12-03 19:2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76	13더77**	김*숙	서울특별시	2024-12-03 19: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77	20가61**	주*희*와*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2-03 1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78	09보24**	주*희*토*공*	서울특별시	2024-12-03 20:0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79	03겨26**	김*환	인천광역시	2024-12-03 20: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80	01주32**	조*만	경기도 성남시	2024-12-04 08: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81	265노34**	서*혜	세종특별자치시	2024-12-04 09:26	고척교~고척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82	159하13**	정*준	서울특별시	2024-12-04 09: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83	01무87**	블*필*라*빛*퀵*유*회*	서울특별시	2024-12-04 10:25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84	96구71**	이*찬	인천광역시	2024-12-04 10: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85	347머88**	대*엔*프*이*(*)	서울특별시	2024-12-04 10: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86	서울32아23**	김*종	경기도 하남시	2024-12-04 11:2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87	25오34**	주*희*태*중*건*	경기도 오산시	2024-12-04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8	22로81**	박*하	울산광역시	2024-12-04 12:07	반포역~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89	10수27**	박*규	경상남도 창원시	2024-12-04 12: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90	43두16**	장*영	서울특별시	2024-12-04 13: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용차로 위반	50000
491	13소34**	조*래	부산광역시	2024-12-04 14:4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미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92	26서66**	장*동	서울특별시	2024-12-04 15:2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93	224소89**	장*래	서울특별시	2024-12-04 17: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94	14모88**	김*영	경기도 광주시	2024-12-04 17: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95	61거16**	주*희*만*	서울특별시	2024-12-04 17:5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96	26라48**	홍*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2-04 18:2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7	26라48**	홍*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2-04 18: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8	24주90**	주*희*알*텐	경기도 고양시	2024-12-04 18:29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99	서울31바34**	김*국	서울특별시	2024-12-04 18: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00	64가18**	정*원	서울특별시	2024-12-04 18:5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1	263가24**	변*민	서울특별시	2024-12-04 19:2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02	135모16**	이*희	서울특별시	2024-12-04 19: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3	73가12**	김*명	서울특별시	2024-12-04 1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504	96로50**	나*의집	경기도 수원시	2024-12-04 20:1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05	96로50**	나*의집	경기도 수원시	2024-12-04 20:1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06	96로50**	나*의집	경기도 수원시	2024-12-04 20:1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07	27라18**	김*민	경기도 고양시	2024-12-04 20: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08	41누72**	신*경	경상남도 창원시	2024-12-04 20: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9	63라95**	박*열	경기도 화성시	2024-12-04 20:3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0	11저47**	이*혁	인천광역시	2024-12-04 20: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11	51구31**	조*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04 20: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12	83우57**	하*조*주*희*	서울특별시	2024-12-05 06:4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13	342서33**	김*라	경기도 김포시	2024-12-05 06:4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4	80조90**	오*환	경기도 성남시	2024-12-05 07: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15	120라78**	이*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5 08:0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16	32보85**	주*희*이*테*	경기도 파주시	2024-12-05 08:40	운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17	서울89자66**	김*규	서울특별시	2024-12-05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18	54로06**	이*재	경기도 하남시	2024-12-05 09:0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19	203주43**	(*)*리*앤*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5 09: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0	109나78**	정*남	서울특별시	2024-12-05 0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21	243루76**	이*호	서울특별시	2024-12-05 09: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22	서울31아38**	신*식	서울특별시	2024-12-05 09:34	미아역~삼양입구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23	20나35**	조*호	서울특별시	2024-12-05 09:39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	전용차로 위반	50000
524	65오05**	허*훈	서울특별시	2024-12-05 09:4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5	34루27**	조*복	경상남도 밀양시	2024-12-05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6	82소94**	정*태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5 09: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7	02거05**	김*달	서울특별시	2024-12-05 09:54	공릉역~태릉입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28	299소97**	주*희*팀*	부산광역시	2024-12-05 09: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29	22너50**	손*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05 11: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0	서울32아33**	김*수	서울특별시	2024-12-05 11:59	연희IC~연세대학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31	69버84**	박*하	인천광역시	2024-12-05 12:3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32	36소50**	유*동	경기도 시흥시	2024-12-05 12:5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33	166무31**	주*희*우*록*앤*테*먼*	서울특별시	2024-12-05 14: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4	166무31**	주*희*우*록*앤*테*먼*	서울특별시	2024-12-05 14:2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5	166무31**	주*희*우*록*앤*테*먼*	서울특별시	2024-12-05 14: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36	51여07**	김*화	경기도 가평군	2024-12-05 14: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7	253보76**	주*희*히*홀*스	경상남도 창원시	2024-12-05 15:4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38	112루99**	손*현	서울특별시	2024-12-05 16: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9	53더16**	김*석	인천광역시	2024-12-05 17:0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40	31무08**	박*재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5 17:0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41	15거59**	방*환	경상북도 포항시	2024-12-05 17:1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42	28여18**	민*남	서울특별시	2024-12-05 17: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3	07노76**	조*이*주*희*	서울특별시	2024-12-05 17: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44	65부83**	김*섭	대구광역시	2024-12-05 17:3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5	193부43**	(*)*센*에*티*트*스	서울특별시	2024-12-05 17: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46	74모83**	사*법*서*장*인*립*활*원*회	서울특별시	2024-12-05 17:5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547	17모56**	임*식	경기도 구리시	2024-12-05 18: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48	51수77**	정*	서울특별시	2024-12-05 18:3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49	15여74**	최*재	서울특별시	2024-12-05 18:45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50	125마58**	주*희*알*글*벌	서울특별시	2024-12-05 18:50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51	서울89자20**	엄*순	서울특별시	2024-12-05 18: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52	826버38**	정*오	경기도 광주시	2024-12-05 19:2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53	33소02**	김*영	서울특별시	2024-12-05 19: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54	68오03**	이*철	서울특별시	2024-12-05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55	105누58**	박*호	전북특별자치도 원주군	2024-12-05 20:0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56	62서07**	이*만	인천광역시	2024-12-05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57	29수90**	최*준	서울특별시	2024-12-05 20: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58	246저60**	원*자	경기도 동두천시	2024-12-06 03: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559	57누58**	주*회*로*애*앤*스	경기도 김포시	2024-12-06 07:1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0	28로66**	강*근	경상북도 구미시	2024-12-06 0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61	33소05**	이*규	경기도 고양시	2024-12-06 08: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62	212보29**	노*표	경기도 고양시	2024-12-06 08:59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12-3	전용차로 위반	50000
563	33저59**	황*란	서울특별시	2024-12-06 09:0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4	57서78**	심*재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06 09:04	노원역~온수골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65	20우36**	김*경	충청남도 예산군	2024-12-06 09: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6	317소57**	유*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12-06 09:2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67	65라53**	홍*욱	경기도 시흥시	2024-12-06 09: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68	41버39**	정*례	경기도 성남시	2024-12-06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9	37거56**	전*훈	서울특별시	2024-12-06 09:5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0	75오61**	(*)*렬*뉴*	서울특별시	2024-12-06 10:3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571	75오61**	(*)*렬*뉴*	서울특별시	2024-12-06 10:3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572	68노04**	손*기	서울특별시	2024-12-06 10:4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3	68노04**	손*기	서울특별시	2024-12-06 10: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4	32노95**	T*N*C*,*N*O* *P*L* G*N*S* *	경기도 평택시	2024-12-06 13:1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5	32노95**	T*N*C*,*N*O* *P*L* G*N*S* *	경기도 평택시	2024-12-06 13:1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6	223허42**	허*훈	서울특별시	2024-12-06 14:04	서울 마포구 광성로 28 (신수동, 마포백산 이-솔렌스힐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77	35라50**	주*희*크*스*라*	서울특별시	2024-12-06 15:07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78	122저94**	(*)*이*아*엠	대전광역시	2024-12-06 15: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79	359로18**	강*희	경기도 부천시	2024-12-06 15:4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0	42루47**	(*)*월*듀	서울특별시	2024-12-06 15:5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81	06우91**	이*숙	경기도 화성시	2024-12-06 17:1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2	46모06**	이*춘	경기도 파주시	2024-12-06 1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83	59무88**	송*진	서울특별시	2024-12-06 17:2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84	38다72**	변*민	서울특별시	2024-12-06 17: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5	163소10**	(*)*원*지*어*	서울특별시	2024-12-06 17: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6	50주40**	이*준	경기도 고양시	2024-12-06 17:3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7	16마97**	(*)*열	경기도 안성시	2024-12-06 18: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8	16마97**	(*)*열	경기도 안성시	2024-12-06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9	16마97**	(*)*열	경기도 안성시	2024-12-06 18:0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90	72부51**	윤*환	충청북도 청주시	2024-12-06 18: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591	29모67**	김*광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6 18: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2	23버38**	원*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6 19: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3	11오75**	박*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6 19:2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4	74노72**	공*영	서울특별시	2024-12-06 19:3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595	52무39**	장*순	충청남도 홍성군	2024-12-06 19: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96	366버20**	배*현	서울특별시	2024-12-06 1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97	75오61**	(*)*열*뉴*	서울특별시	2024-12-06 19: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598	50다33**	방*지	서울특별시	2024-12-06 1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9	33도30**	김*숙	서울특별시	2024-12-06 19:5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00	52무39**	장*순	충청남도 홍성군	2024-12-06 20:0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01	210부53**	김*경	경기도 양평군	2024-12-06 20: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02	803우90**	최*민	인천광역시	2024-12-06 22:4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03	161보20**	이*천	경상북도 경산시	2024-12-07 13: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04	161보20**	이*천	경상북도 경산시	2024-12-07 13: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05	03고87**	(*)*엠*지	서울특별시	2024-12-07 14:1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06	62고77**	K*E*N*E*R*A*L*N	경기도 평택시	2024-12-07 15:4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07	경기52바40**	이*구	경기도 군포시	2024-12-07 17:3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08	209모80**	이*환	경기도 파주시	2024-12-07 17:55	중화동 종량역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609	06여77**	B*I*O*V*N	경기도 평택시	2024-12-07 20:0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0	06여77**	B*I*O*V*N	경기도 평택시	2024-12-07 20: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1	06여77**	B*I*O*V*N	경기도 평택시	2024-12-07 20:0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2	35머92**	전*호	서울특별시	2024-12-07 20:2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13	서울32자30**	정*수	인천광역시	2024-12-08 01:2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14	41머13**	최*준	경기도 수원시	2024-12-08 10: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5	75로62**	최*숙	경기도 광주시	2024-12-08 13:3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616	16마97**	(*)*엘	경기도 안성시	2024-12-08 17:5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7	16마97**	(*)*엘	경기도 안성시	2024-12-08 17: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8	16마97**	(*)*엘	경기도 안성시	2024-12-08 18:0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9	91라75**	강*현	경기도 구리시	2024-12-09 07:3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20	61로38**	정*영	경기도 평택시	2024-12-09 08:2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21	80도03**	최*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09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22	249나93**	황*찬	서울특별시	2024-12-09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23	378나85**	강*구	경기도 성남시	2024-12-09 10: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사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24	서울86바35**	로*로*택*주	서울특별시	2024-12-09 10:2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625	25주13**	주*희*돌*로*스	경기도 성남시	2024-12-09 10: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26	42다67**	윤*후	경기도 오산시	2024-12-09 10: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7	30조13**	A*이*A*E*A*A*이*L*H*L *	경기도 평택시	2024-12-09 15: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8	335버53**	김*원	경기도 김포시	2024-12-09 17: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29	22저66**	이*준	서울특별시	2024-12-09 1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30	58수08**	권*연	서울특별시	2024-12-09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31	108터22**	이*훈	서울특별시	2024-12-09 19: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2	17호28**	박*빈	서울특별시	2024-12-09 20: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33	49버11**	김*표	서울특별시	2024-12-10 08:04	아현교차로~애오개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634	66두41**	최*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0 08: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35	249나93**	황*찬	서울특별시	2024-12-10 09: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6	105노19**	김*남	서울특별시	2024-12-10 11:5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37	31조51**	와*에*치*이*주*	경기도 구리시	2024-12-10 13: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38	122소14**	박*수	서울특별시	2024-12-10 13: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사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9	179허32**	이*규	경기도 하남시	2024-12-10 14:3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0	179허32**	이*규	경기도 하남시	2024-12-10 14: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1	382다65**	서*원	경기도 용인시	2024-12-10 14:4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2	82루66**	이*현	경기도 김포시	2024-12-10 14:52	남현동 남대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43	73수47**	채*기	경기도 안산시	2024-12-10 17:3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644	221하76**	전*소	경기도 수원시	2024-12-10 18: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45	49여93**	강*근	경기도 김포시	2024-12-10 20: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6	67저20**	K*O*Y*U*G*	경기도 평택시	2024-12-11 08: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7	363서66**	이*연	경기도 성남시	2024-12-11 08: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8	363서66**	이*연	경기도 성남시	2024-12-11 08: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9	47하06**	최*혁	경기도 부천시	2024-12-11 09: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50	73수25**	J*N* *N*X*	경기도 안산시	2024-12-11 11:5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651	22보01**	이*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1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52	60여53**	강*태	대구광역시	2024-12-11 17: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53	249나93**	황*찬	서울특별시	2024-12-11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4	239다65**	황*진	서울특별시	2024-12-11 17: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55	81고51**	박*식	인천광역시	2024-12-11 18:1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56	40소44**	박*섭	경기도 안산시	2024-12-11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57	209가67**	박*호	경상북도 구미시	2024-12-11 18:3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58	54부94**	이*건	경기도 안양시	2024-12-11 19: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59	221우20**	이*	경기도 수원시	2024-12-11 1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0	165수81**	김*호	서울특별시	2024-12-11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61	170하52**	박*숙	경기도 부천시	2024-12-11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2	서울32아15**	정*연	서울특별시	2024-12-11 19: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3	229거39**	이*화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1 20:00	공릉동 삼육애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64	서울31사72**	김*겸	서울특별시	2024-12-11 22:0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65	53다34**	최*용	서울특별시	2024-12-12 08:3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66	서울31바47**	김*영	서울특별시	2024-12-12 09:0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67	162누42**	김*성	경기도 하남시	2024-12-12 09:1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68	841가25**	지*석	인천광역시	2024-12-12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9	115호60**	박*선	충청남도 홍성군	2024-12-12 17: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70	165호72**	김*철	서울특별시	2024-12-12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1	172허14**	이*희	서울특별시	2024-12-12 18: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72	55라05**	문*규	서울특별시	2024-12-12 19:45	공릉동 대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73	327저52**	오*욱	서울특별시	2024-12-12 20:1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74	17무54**	이*민	경기도 부천시	2024-12-12 20: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75	89주73**	홍*화	경기도 성남시	2024-12-13 07: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676	90라78**	김*균	경기도 용인시	2024-12-13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7	67더06**	송*진	서울특별시	2024-12-13 11:48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678	249나93**	황*찬	서울특별시	2024-12-13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9	242소49**	이*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3 18: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0	65마31**	천*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3 18: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81	22머92**	임*연	서울특별시	2024-12-13 19: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82	319조75**	김*연	서울특별시	2024-12-13 19:09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683	32거94**	김*영	서울특별시	2024-12-13 19: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4	140라55**	한*웅	서울특별시	2024-12-13 20: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5	28구85**	홍*표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13 21:2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686	146호11**	김*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4-12-14 07: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7	365부83**	R*H*E*J*C*R*S*O*H *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0:0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8	365부83**	R*H*E*J*C*R*S*O*H *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9	18노89**	이*기	전라남도 완도군	2024-12-14 10: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0	60루10**	M*E*A*T*Y*R*S*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1: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91	365부83**	R*H*E*J*C*R*S*O*H*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2: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2	37조63**	K*N*J*H*A*T*L*K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3:4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3	37조63**	K*N*J*H*A*T*L*K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3: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4	199저94**	이*를	서울특별시	2024-12-14 15: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695	171도81**	W*O*S*E*S*Z*K*E*	경기도 평택시	2024-12-14 17: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6	348수56**	이*희	경기도 용인시	2024-12-14 20:3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697	177하23**	(*)*7*퍼*	경기도 의왕시	2024-12-15 17: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8	18여53**	박*원	서울특별시	2024-12-15 17: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9	57도45**	정*진	경기도 시흥시	2024-12-15 21:4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0	269소16**	박*우	경기도 하남시	2024-12-16 07: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01	243나63**	김*엽	서울특별시	2024-12-16 08:1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2	06다68**	이*우	경기도 고양시	2024-12-16 08:23	개화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703	006마73**	박*환	경기도 광명시	2024-12-16 09:2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704	96오15**	류*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6 09:2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5	경기92바57**	박*재	경기도 광주시	2024-12-16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6	238무46**	김*영	경기도 하남시	2024-12-16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7	87다68**	안*훈	서울특별시	2024-12-16 11:28	여의대로2길	전용차로 위반	50000
708	91더19**	F*O*E*S*M*C*A*L*	경기도 평택시	2024-12-16 12: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09	91더19**	F*O*E*S*M*C*A*L*	경기도 평택시	2024-12-16 12:2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0	91더19**	F*O*E*S*M*C*A*L*	경기도 평택시	2024-12-16 12: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1	347도87**	김*영	서울특별시	2024-12-16 13: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2	91더19**	F*O*E*S*M*C*A*L*	경기도 평택시	2024-12-16 15: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3	91더19**	F*O*E*S*M*C*A*L*	경기도 평택시	2024-12-16 15: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14	87우15**	최*진	전라남도 목포시	2024-12-16 19: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15	66무67**	박*수	서울특별시	2024-12-16 19:3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716	292누41**	한*희	서울특별시	2024-12-16 20: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17	서울31비82**	이*수	경기도 부천시	2024-12-16 20:4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8	충남34사10**	이*휘	충청남도 아산시	2024-12-17 07:3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9	49부57**	신*근	경기도 시흥시	2024-12-17 07:5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720	33두81**	문*	경기도 광명시	2024-12-17 08: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21	56매72**	최*기	서울특별시	2024-12-17 09: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22	54라43**	주*진	경기도 수원시	2024-12-17 15: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23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4-12-17 17: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4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4-12-17 1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5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4-12-17 17: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6	274라85**	이*태	서울특별시	2024-12-17 1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27	서울32자61**	기*봉	서울특별시	2024-12-17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28	107나84**	조*환	대전광역시	2024-12-17 20:3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29	23라28**	강*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17 20: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30	경기99바51**	광*제*특*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4-12-18 09:35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731	78누37**	정*덕	경기도 의왕시	2024-12-18 11:5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32	363거15**	고*영	경기도 고양시	2024-12-18 12:1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33	66모87**	정*재	서울특별시	2024-12-18 14: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34	78누37**	정*덕	경기도 의왕시	2024-12-18 14:3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35	284두54**	김*형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8 17: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36	281우28**	서*혜	경기도 광주시	2024-12-18 17:51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0000
737	03가37**	박*	경기도 하남시	2024-12-18 17: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38	68가89**	전*욱	서울특별시	2024-12-18 18:02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 위반	50000
739	319너84**	정*훈	경상북도 고령군	2024-12-18 18: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40	46너57**	김*삼	서울특별시	2024-12-18 18: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41	서울32자17**	장*상	서울특별시	2024-12-18 1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42	144머65**	이*	서울특별시	2024-12-18 19: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743	320로67**	유*은	경기도 파주시	2024-12-19 0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44	248루58**	양*빈	경기도 시흥시	2024-12-19 09:2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45	175더17**	이*혁	경기도 화성시	2024-12-19 11:3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746	130주27**	홍*정	경기도 성남시	2024-12-19 11:3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47	11노63**	이*정	서울특별시	2024-12-19 11: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48	104허14**	이*규	경기도 하남시	2024-12-19 12: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49	81러76**	이*숙	서울특별시	2024-12-19 13:1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750	109모38**	남*이	경기도 부천시	2024-12-19 13:5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51	320보52**	송*호	경기도 평택시	2024-12-19 15:30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52	35여24**	김*현	서울특별시	2024-12-19 1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53	42서50**	김*	서울특별시	2024-12-19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54	90도53**	김*희	대전광역시	2024-12-19 18:0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55	51구46**	이*현	경기도 양주시	2024-12-19 1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756	서울31아54**	박*홍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19 20: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757	358여47**	안*기	서울특별시	2024-12-20 07: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58	300두37**	허*빈	서울특별시	2024-12-20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59	91루77**	김*수	경기도 의왕시	2024-12-20 0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60	63모29**	박*난	경기도 용인시	2024-12-20 1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1	209두88**	유*희	서울특별시	2024-12-20 10:38	염곡IC~청계산입구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62	11서28**	김*장	경기도 시흥시	2024-12-20 13: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3	11서28**	김*장	경기도 시흥시	2024-12-20 13: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4	134루91**	유*우	서울특별시	2024-12-20 13:5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65	49모75**	박*현	경기도 이천시	2024-12-20 14: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6	49모75**	박*현	경기도 이천시	2024-12-20 14:1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7	49모75**	박*현	경기도 이천시	2024-12-20 14: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8	65더91**	임*형	경기도 성남시	2024-12-20 16:3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9	29로83**	이*엽	서울특별시	2024-12-20 17: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70	230모95**	송*석	서울특별시	2024-12-20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71	131모64**	박*강	서울특별시	2024-12-20 17:4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2	346두37**	김*진	서울특별시	2024-12-20 18:0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3	121보77**	함*현	경기도 안성시	2024-12-20 18: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4	261서41**	강*철	서울특별시	2024-12-20 1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5	141로76**	이*해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20 19: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6	26보62**	김*규	서울특별시	2024-12-20 19: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77	서울32053**	전*완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0 20:44	공릉동 삼육애교편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78	229주50**	박*신	서울특별시	2024-12-20 22:4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779	72머12**	안*민	서울특별시	2024-12-21 10: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80	72머12**	안*민	서울특별시	2024-12-21 10:2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81	222호66**	윤*정	경기도 성남시	2024-12-21 13:3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82	26루03**	김*준	서울특별시	2024-12-21 17: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83	서울38리40**	이*재	서울특별시	2024-12-21 19: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784	14두23**	J*H*S*N*E*I*A*E*E*	경기도 평택시	2024-12-21 20:1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85	14두23**	J*H*S*N*E*I*A*E*E*	경기도 평택시	2024-12-21 20: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86	14두23**	J*H*S*N*E*I*A*E*E*	경기도 평택시	2024-12-21 20:2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87	56너29**	정*형	서울특별시	2024-12-21 20:30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88	334나84**	이*용	경기도 화성시	2024-12-22 01:31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89	77가04**	정*진	서울특별시	2024-12-22 09:1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90	257저84**	공*숙	서울특별시	2024-12-22 11:1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791	186오56**	이*근	전라남도 무안군	2024-12-22 11: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92	186오56**	이*근	전라남도 무안군	2024-12-22 11:2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93	72서28**	이*홍	서울특별시	2024-12-22 14:2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794	서울82배22**	김*현	서울특별시	2024-12-22 16:28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795	20수61**	김*현	경기도 양주시	2024-12-23 08: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96	55보75**	김*만	경기도 안산시	2024-12-23 09:28	학여울역교차로~대치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797	117마34**	서*은	경기도 수원시	2024-12-23 09:4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98	24라65**	사*훈	경기도 안산시	2024-12-23 14: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99	70주47**	정*우	전라남도 순천시	2024-12-23 17:0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60000
800	229저52**	윤*미	서울특별시	2024-12-23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01	52구63**	장*웅	서울특별시	2024-12-23 1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02	161마41**	오*빈	경기도 수원시	2024-12-23 18: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803	157리45**	김*철	인천광역시	2024-12-23 18: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804	10조79**	박*현	경기도 화성시	2024-12-23 19:0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05	63수75**	김*의	경기도 부천시	2024-12-23 19: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06	서울32아26**	채*석	서울특별시	2024-12-23 20: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07	305러11**	이*진	서울특별시	2024-12-23 20: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08	46로84**	이*재	경기도 성남시	2024-12-24 07:4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09	35고62**	최*갑	서울특별시	2024-12-24 08: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810	09버94**	한*우	서울특별시	2024-12-24 08:28	동일로 마들역-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11	281모30**	문*	인천광역시	2024-12-24 0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12	서울31아67**	임*순	서울특별시	2024-12-24 09: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13	143나93**	장*석	서울특별시	2024-12-24 16: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14	27수90**	V*L*A*U*V*	경기도 평택시	2024-12-24 16: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15	13라25**	원*	경기도 부천시	2024-12-24 17:2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16	277도47**	주*회*디*이*인*스*먼*	경기도 성남시	2024-12-24 18: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17	45로61**	주*회사시너지파아브	서울특별시	2024-12-24 18: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18	176수17**	민*혜	충청남도 천안시	2024-12-24 19:0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19	35너45**	박*민	대구광역시	2024-12-24 19: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20	11보37**	이*수	경기도 안양시	2024-12-24 20: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821	29구29**	정*진	서울특별시	2024-12-25 20: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822	396부26**	김*우	경기도 안성시	2024-12-26 07:5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823	02저12**	박*유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6 08:1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24	51무88**	박*욱	서울특별시	2024-12-26 09:1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825	58로39**	박*배	서울특별시	2024-12-26 09: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26	198마58**	C*U*C*R*N*M*R*E	경기도 평택시	2024-12-26 12: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27	198마58**	C*U*C*R*N*M*R*E	경기도 평택시	2024-12-26 12:0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28	51로07**	C*O*R*D*U*T*S*A*N *J*	경기도 평택시	2024-12-26 12: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29	51로07**	C*O*R*D*U*T*S*A*N *J*	경기도 평택시	2024-12-26 12:5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30	202거82**	김*복	서울특별시	2024-12-26 13:5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31	16부23**	권*일	서울특별시	2024-12-26 16: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32	144가83**	최*경	경기도 용인시	2024-12-26 16:51	중랑교교차로~삼육서울병원교 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33	94로17**	배*훈	경기도 용인시	2024-12-26 17: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34	52주13**	권*수	경기도 성남시	2024-12-26 20: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835	165라62**	이*원	서울특별시	2024-12-26 21:5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836	390소57**	이*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12-26 23: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837	경기81자87**	김*길	경기도 광주시	2024-12-27 07: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38	27수90**	V*L*A*U*V*	경기도 평택시	2024-12-27 09:3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39	377무78**	정*현	서울특별시	2024-12-27 1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0	77가04**	정*진	서울특별시	2024-12-27 14:4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841	77가04**	정*진	서울특별시	2024-12-27 14:4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842	24우37**	백*택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27 16:2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3	05조19**	J*H*S*O*D*V*D*,*이	경기도 평택시	2024-12-27 17: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4	64누69**	임*은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27 17: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45	05조19**	J*H*S*O*D*V*D*,*이	경기도 평택시	2024-12-27 17:3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6	05조19**	J*H*S*O*D*V*D*,*이	경기도 평택시	2024-12-27 17: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7	158고81**	이*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7 17: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48	141로76**	이*해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27 18:5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49	서울31바53**	이*철	서울특별시	2024-12-27 1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50	23노03**	유*상	충청남도 계룡시	2024-12-27 1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51	30노15**	이*상	서울특별시	2024-12-27 20:41	공릉동 삼육애교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52	108모64**	P*E*O*이*O*N*이*H*E*	경기도 평택시	2024-12-28 12:0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53	108모64**	P*E*O*이*O*N*이*H*E*	경기도 평택시	2024-12-28 12:0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54	60모67**	한*석	경기도 화성시	2024-12-28 14:5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855	107너61**	이*우	서울특별시	2024-12-28 17: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856	164버37**	박*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8 18: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857	15너65**	이*선	경기도 광주시	2024-12-28 19: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58	342더56**	주*희*엠*	서울특별시	2024-12-29 11: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59	342더56**	주*희*엠*	서울특별시	2024-12-29 11:5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0	342더56**	주*희*엠*	서울특별시	2024-12-29 11:5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1	89루60**	노*춘	서울특별시	2024-12-29 14:1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2	77가04**	정*진	서울특별시	2024-12-29 15:3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863	57거30**	이*훈	서울특별시	2024-12-29 16:3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864	22무31**	S*L*D*N*L*R*V*	경기도 평택시	2024-12-29 20:3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5	22무31**	S*L*D*N*L*R*V*	경기도 평택시	2024-12-29 2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6	22무31**	S*L*D*N*L*R*V*	경기도 평택시	2024-12-29 20: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7	108모64**	P*E*O*이*O*N*이*H*E*	경기도 평택시	2024-12-30 07: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8	108모64**	P*E*O*이*O*N*이*H*E*	경기도 평택시	2024-12-30 07: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9	15호32**	(*)*피*어	서울특별시	2024-12-30 09:3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70	284버93**	권*지	대구광역시	2024-12-30 10:3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71	46루97**	이*영	서울특별시	2024-12-30 11: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872	06소67**	최*규	경기도 안산시	2024-12-30 13: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73	서울32사58**	김*섭	경기도 하남시	2024-12-30 18: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74	16머18**	김*한	서울특별시	2024-12-30 1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75	394우20**	김*구	경기도 군포시	2024-12-30 19:3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876	서울31바66**	고*태	서울특별시	2024-12-30 20:40	서울윤중초등학교~여의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77	09구15**	최*희	서울특별시	2024-12-31 04:5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878	186모39**	김*성	경기도 고양시	2024-12-31 08:37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79	300두37**	허*빈	서울특별시	2024-12-31 08: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80	69버72**	최*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31 09: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881	56로24**	M*N*Z*R*S* *N*N*R *S	경기도 평택시	2024-12-31 14: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82	56로24**	M*N*Z*R*S* *N*N*R *S	경기도 평택시	2024-12-31 14:5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83	258라14**	김*혜	경기도 수원시	2024-12-31 15:3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884	10라64**	정*철	경기도 수원시	2024-12-31 17: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85	62우47**	유*진	경기도 용인시	2024-12-31 18: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86	399루33**	오*재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31 18: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87	196저20**	한*민	광주광역시	2024-12-31 19:08	중계역~하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88	211누84**	권*진	서울특별시	2024-12-31 19:34	공릉동 삼육대학교캠퍼스(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89	49고44**	김*한	서울특별시	2024-12-31 20: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90	73보92**	최*혁	서울특별시	2024-12-31 20:49	공릉동 대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57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5.3.13. ~ 2025.3.26.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도건종합 건설(주) (임중빈)	건축공사업 03-06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3303호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타)	종합공사사업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2개월 (2025.3.28. ~ 2025.5.27.)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선진에너지건설 (주) (김은택)	건축공사업 01-4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1711호 (코리아비지니스센타)	종합공사사업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5.3.28. ~ 2025.4.27.)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영성종합건설 (홍종배)	건축공사업 01-47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707호 (여의도동, 제일빌딩)	종합공사사업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1개월 (2025.6.24. ~ 2025.7.23.)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코리아건설(주) (이교영)	건축공사업 01-45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14, 901호 (양평동6가, 세종맨캐뮤스퀘어)	종합공사사업 실태조사 자료(2022년 자본금)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법 제81조 제9호	영업정지 2개월 (2025.5.6. ~ 2025.7.5.)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3. 28. ~ 2025. 4. 10.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납부기한 : 2025. 4. 10.
 -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용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반송물 별첨 구 문
	성명	주소			반송서유	반송일자	
1	박*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문*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7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4	*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일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전*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6	노*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2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79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청정종합건설(주) (최동현)	건축공사업 01-10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24, 4층 402호(석촌동, 빛나빌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 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 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5. 4. 1.)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8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6.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5. 4. 3.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87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6호(2010.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2호(2024.10.4.)로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가락몰)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531,830㎡
- 건축물의 규모

사업단계		1단계 (금회)	2-1단계 (완료)	2-2단계 (완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설계중)	3-1단계 (철거예정)	3-2단계 (설계중)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건축 면적	기정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변경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증감	-	-	-	-	-	-	-	-	-	-
연면적	기정	211,913.35㎡	217,579.48㎡ (5,666.13㎡)	274,646.48㎡ (57,067.00㎡)	277,596.04㎡ (2,949.56㎡)	279,727.83㎡ (2,131.79㎡)	347,742.87㎡ (68,015.04㎡)	347,742.87㎡ (0.00㎡)	438,145.13㎡ (90,402.26㎡)	443,235.13㎡ (5,090.00㎡)	532,951.53㎡ (89,716.40㎡)
	변경	212,592.73㎡	218,258.86㎡ (5,666.13㎡)	275,325.86㎡ (57,067.00㎡)	278,275.42㎡ (2,949.56㎡)	280,407.21㎡ (2,131.79㎡)	348,422.25㎡ (68,015.04㎡)	348,422.25㎡ (0.00㎡)	438,824.51㎡ (90,402.26㎡)	443,945.51㎡ (5,090.00㎡)	533,630.91㎡ (89,716.40㎡)
	증감	증)679.38㎡	-	-	-	-	-	-	-	-	-

사업단계		1단계 (금회)	2-1단계 (완료)	2-2단계 (완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설계중)	3-1단계 (철거예정)	3-2단계 (설계중)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층수	기정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증감	-	-	-	-	-	-	-	-	-	-
공사 기간	기정	2011년 ~2024년	2013년 ~2014년	2020년 ~2024년	2021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7년 ~2031년	2027년 ~2031년
	변경	2024년 ~2025년	-	-	-	-	-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대표 문영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31.12.31까지

- 1단계(업무동,판매동,물류작업장) : 2011년 ~ 2024년(완료)
 - 주차램프 지붕 : 2024년 ~ 2025년(금회)
- 2-1단계(친환경센터) : 2013년 ~ 2014년(완료)
- 2-2단계(채소2동) : 2020년 ~ 2024년(완료)
- 2-3단계(수산동) : 2024년 ~ 2027년(설계중)
- 2-4단계(합동청사) : 2021년 ~ 2024년(완료)
- 2-5단계(냉동창고) : 2023년 ~ 2024년(완료)
- 2-6단계(환경동) : 2027년 ~ 2031년(예정)
- 3-1단계(금융관리동) : 2024년 ~ 2027년(철거예정)
- 3-2단계(채소1동) : 2024년 ~ 2027년(설계중)
- 3-3단계(파일동) : 2027년 ~ 2031년(예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2133-4465)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건설공사팀(☎3435-0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90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에너지정보관 외 1개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에너지정보관>

기 준	변 경
1. 명 칭 : 에너지정보관	1. 명 칭 : 에너지정보관
2. 등록번호 : 제 서-3호	2. 등록번호 : 제 서-3호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4. 설 립 자 :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 설 립 자 :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5. 대 표 자 : 최성광	5. 대 표 자 : 이주수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7. 규 모 : 연면적 2,766㎡	7. 규 모 : 연면적 2,766㎡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기 준	변 경
1. 명 칭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1. 명 칭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2. 등록번호 : 제 서-15호	2. 등록번호 : 제 서-15호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4. 설 립 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4. 설 립 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5. 대 표 자 : 최홍훈	5. 대 표 자 : 권오상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7. 규 모 : 연면적 11,220㎡	7. 규 모 : 연면적 11,220㎡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정훈(02-2133-522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9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붙임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열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2. 열람기간 : 2025. 3.13. ~ 2025. 3.27.(14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한희진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hhzin@seoul.go.kr
※ 이메일 제출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발송 후 유선(☎2133-7205, 7206, 7193)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신속·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 일부 변경하여 높이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여건 개선 및 입체공원 도입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6. 변경내용

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③재건축사업 부문 중 3. 건축물의 밀도계획 (158쪽, 250쪽)	Ⅰ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 그동안 역세권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상향에 소극적이었으나,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주변을 주거·상업·업무 기능으로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거수요를 담는 지역 거점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함 •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위원회 심의 통해 350m 이내까지 완화 가능) 지역* 위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우선 검토하되, 대상지의 중심지 위계, 인근지역의 용도지역, 개발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대상지 범위를 결정함 * 해당 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하며, 간선도로변에 접한 범위는 주변 개발여건(현황), 대상지 규모(면적), 교통계획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부영향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 이 경우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육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하며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고려하여 상향 여부를 검토함	Ⅰ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 (현행과 같음) • ----- 원칙으로 하며, 용도지역 상향여부 및 범위에 대해 대상지의 중심지 위계, 인근 용도지역, 개발계획안,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함 * (변경없음) • 역세권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아 사업여건이 불리한 구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신통기획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함

구 분	현 행	변 경
	<u>*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 등은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u> • (신 설)	<u>*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공시지가를 의미함</u> <u>**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 등은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u>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관련 구체적인 사항 등은 필요시 시장이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입체공원 설치 및 제공에 따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③재건축사업 부문 중 3. 건축물의 밀도계획 (170쪽, 260쪽)	다) 상한용적률 Ⅰ 상한용적률 확대 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Ⅰ (신 설)	다) 상한용적률 Ⅰ (현행과 같음) Ⅰ (현행과 같음) Ⅰ 입체공원 조성 및 제공 • 공원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은 시설조성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에 합산함 [입체공원 상한 용적률 적용기준] • 공원 시설 조성 및 제공에 따른 상한 용적률(%p) $= (\text{기준})\text{허용용적률} \times 0.7 \times \alpha\text{입체공원}$ •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상한 용적률(%p) = $(\text{기준})\text{허용용적률} \times (\text{공원면적}/\text{대지면적})$ ※ α입체공원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대해 입체공원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상한 용적률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으로 함

구 분	현 행	변 경
		- 정비사업 입체공원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은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향후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이 외에 입체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입체공원 조성·운영기준」을 따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입체공원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계획함

다.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 완화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중 3. 건축물의 밀도계획 (159쪽)	■ 공공기여 계획 수립기준 • 용도지역 상향 시 아래의 공공기여 부담률 기준에 적합한 공공시설등을 조성하여 기부채 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시 용도지역별 구분 없이 공공기여율 10% 이상으로 동일하게 운영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함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 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 동일한 여건으로 간주하 여 계획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표 55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table><tr><th rowspan="2">변경 기정</th><th colspan="3">일반주거지역</th><th rowspan="2">준주거 지역</th></tr><tr><th>제2종 (7층)</th><th>제2종</th><th>제3종</th></tr><tr><td>제1종일반</td><td>10%이상</td><td>10%이상</td><td>20%이상</td><td>30%이상</td></tr><tr><td>제2종 (7층)</td><td>-</td><td>-</td><td>10%이상</td><td>20%이상</td></tr><tr><td>제2종일반</td><td>-</td><td>-</td><td>10%이상</td><td>20%이상</td></tr><tr><td>제3종일반</td><td>-</td><td>-</td><td>-</td><td>10%이상</td></tr></table> ○ (신 설)	변경 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제1종일반	10%이상	10%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 (7층)	-	-	10%이상	20%이상	제2종일반	-	-	10%이상	20%이상	제3종일반	-	-	-	10%이상	■ 공공기여 계획 수립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표 55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table><tr><th rowspan="2">변경 기정</th><th colspan="3">일반주거지역</th><th rowspan="2">준주거 지역</th></tr><tr><th>제2종 (7층)</th><th>제2종</th><th>제3종</th></tr><tr><td>제1종일반</td><td>10%이상</td><td>10%이상</td><td>20%이상</td><td>30%이상</td></tr><tr><td>제2종 (7층)</td><td>-</td><td>-</td><td>10%이상</td><td>20%이상</td></tr><tr><td>제2종일반</td><td>-</td><td>-</td><td>10%이상</td><td>20%이상</td></tr><tr><td>제3종일반</td><td>-</td><td>-</td><td>-</td><td>10%이상</td></tr></table> • 표55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 유산주변에 해당하여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 (이하 “높이규제지역”)으로서 1단계 용도지역	변경 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제1종일반	10%이상	10%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 (7층)	-	-	10%이상	20%이상	제2종일반	-	-	10%이상	20%이상	제3종일반	-	-	-	10%이상
	변경 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제1종일반	10%이상	10%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 (7층)	-	-	10%이상	20%이상																																																						
제2종일반	-	-	10%이상	20%이상																																																						
제3종일반	-	-	-	10%이상																																																						
변경 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제1종일반	10%이상	10%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 (7층)	-	-	10%이상	20%이상																																																						
제2종일반	-	-	10%이상	20%이상																																																						
제3종일반	-	-	-	10%이상																																																						

구 분	현 행	변 경															
		상향에도 불구하고 높이규제에 따라 최대 개발 가능 용적률이 상향된 법정상한 용적률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공공기여율을 적용함 [적용예시]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1단계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이 200% → 250%로 증가되었으나 높이규제에 따라 해당구역의 개발가능용적률이 220%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일반지역</th><th>높이규제지역</th></tr> </thead> <tbody> <tr> <td>(용도지역 상향 전) 법정상한</td><td>200%</td><td>200%</td></tr> <tr> <td>(용도지역 상향 후) 법정상한</td><td>250%(+50%)</td><td>250%(+50%)</td></tr> <tr> <td>개발가능 용적률</td><td>250%(+50%)</td><td>220%(+20%)</td></tr> <tr> <td>공공기여율</td><td>10%</td><td>4%</td></tr> </tbody> </table> - 구릉지 지형이거나 도시자연공원 또는 학교 시설 인접지역 등 기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높이계획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율을 추가 완화 적용할 수 있음	구 분	일반지역	높이규제지역	(용도지역 상향 전) 법정상한	200%	200%	(용도지역 상향 후) 법정상한	250%(+50%)	250%(+50%)	개발가능 용적률	250%(+50%)	220%(+20%)	공공기여율	10%	4%
구 분	일반지역	높이규제지역															
(용도지역 상향 전) 법정상한	200%	200%															
(용도지역 상향 후) 법정상한	250%(+50%)	250%(+50%)															
개발가능 용적률	250%(+50%)	220%(+20%)															
공공기여율	10%	4%															

라. 입안동의율 용어 및 동의서 서식 등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중 “실행지침” (209쪽)	Ⅱ 정비계획(안) 입안 시 주민동의율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현행과 같음) - (생략)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중 “실행지침” (219쪽)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중 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th><th style="width: 35%;">동 의</th><th style="width: 35%;">반 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정 비 사 업 추 진 (정비 계획 입안)</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 colspan="2"> ※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의 효력은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인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은 향후 주민 공람 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열람 가능함 ※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한 장의 입안 동의서에 동의 ↔ 반대 수정(변경)은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 </td></tr> </tbody> </table>		동 의	반 대	정 비 사 업 추 진 (정비 계획 입안)	()	()	※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의 효력은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인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은 향후 주민 공람 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열람 가능함 ※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한 장의 입안 동의서에 동의 ↔ 반대 수정(변경)은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중 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th><th style="width: 35%;">동 의</th><th style="width: 35%;">반 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정 비 사 업 추 진 (삭 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 colspan="2"> ※ 정비구역 지정 _____ 제16조 _____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_____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_____ 동의서에 _____ - 동의서 _____ </td></tr> </tbody> </table>		동 의	반 대	정 비 사 업 추 진 (삭 제)	()	()	※ 정비구역 지정 _____ 제16조 _____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_____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_____ 동의서에 _____ - 동의서 _____	
	동 의	반 대																
정 비 사 업 추 진 (정비 계획 입안)	()	()																
	※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의 효력은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인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은 향후 주민 공람 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열람 가능함 ※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한 장의 입안 동의서에 동의 ↔ 반대 수정(변경)은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																	
	동 의	반 대																
정 비 사 업 추 진 (삭 제)	()	()																
	※ 정비구역 지정 _____ 제16조 _____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_____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_____ 동의서에 _____ - 동의서 _____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중 “실행지침” (220쪽)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서 (중 략) 2. 반대 동의내용 :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에 반대합니다.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반대 동의서 (중 략) 2. 반대 동의내용 : ----- ----- ----- 정비구역 지정에 -----.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②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중 “실행지침” (221쪽)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 동의/입안 반대) 철회서 (중 략) 철 회 내 용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 지 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 입안 반대)를 철회합니다. ※ 입안 동의서 또는 반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되며, 본 철회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함 (예시 : 입안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로 처리) (예시 : 입안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서 제출 없이 철회서만 제출 → 의견 미개진으로 처리)	(000구 00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동의/반대) 철회서 (중 략) 철 회 내 용 ----- ----- ----- 정비구역 지정 (동의/ 반대)를 철회합니다. ※ 동의서 ----- ----- ----- (-- : 동의서 ----- -----) (-- : 동의서 ----- -----)

마. 재건축 현황용적률 적용 경과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변 경
- 본보고서 - ③ 재건축사업 부문 중 3. 건축물의 밀도계획 (265쪽)	4) 경과규정 - 기존 정비구역도 현황용적률, 사업성 보정계수, 건물기부채납계수 등 완화되는 규정 적용 가능함 - 다만, 착공 이후 사업장은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 최대한 유지 및 일반분양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 (신 설)	4) 경과규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일 ('24.9.26.) 이전 종전의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공람을 시행한 경우에는 종전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현황용적률, 사업성 보정 계수, 건물기부채납계수 등 완화되는 규정 적용 가능함

7.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8. 경과조치

- 변경된 기본계획은 시행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의 변경 및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적용한다.

[붙임]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에 따른 의견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핸드폰)	
거주지 주소			
의견			
제출일	2025년 월 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80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라세인	서울 후 제2830호	최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3, B동 903호 (고척동)	폐업 ('24.12.30 .)		
2	인셀딴 (We together)	서울 후 제1589호	정선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134, 110동 504호 (상일동)	폐업 ('25.01.31 .)		
3	인셀딴쁘띠	서울 후 제1214호	주문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3동 806호 (서초동)	폐업 ('24.11.30 .)		
4	오혜 마곡지사	서울 후 제583호	박준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6가길 31, 601호 (등촌동)	폐업 ('25.03.0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9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51명 (7,876명 → 7,927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증 32명 (7,128명 → 7,160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9명 (742명 → 761명)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51명 (7,876명 → 7,92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증 32명 (7,125명 → 7,157명)
 - 5급 이하 소계: 증 32명 (7,040명 → 7,072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742명 → 761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691명 → 710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2282-8644, FAX 02-6973-9921
- 이메일: jeunsan@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76” 을 “7,927”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128” 을 “7,160”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42” 를 “761”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61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7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제2조(정원의 총수) -----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					
<u>7,876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u>7,927명</u> -----					
같이 구분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						-----					
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2. -----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u>7,128명</u>						<u>7,160명</u>					
3. 교육전문직원 정원 <u>742명</u>						3. ----- <u>761명</u>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876					총 계	7,927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4		33	11		4급	44		33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현행						개정안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42					특정직 계	761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69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710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5-2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97호(2024.2.22.)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중구 고시 제2024-84호(2024.12.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사업의 명칭 :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97.2㎡
- 규 모 : 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10,172.1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와이드427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김도남)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여의도동, 세우빌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75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대지	18,760.1	1,397.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합 계				18,760.1	1,397.2	-	-	-	-

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 02-3396-5774)에 비치

◆ 금천구고시 제2025-31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9호(2024. 6. 27.)로 결정된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주민제안에 의한 필지분할가능선 신설(금천구 가산동 237-5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가. 변경없음
 - 나. 변경없음
 - 다. 변경없음
 - 라.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8	가산동 237-54	501.5	-	필지분할가능선 신설	·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지분할가능선 신설
		496.2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20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5-228호

도시관리계획(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1.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 재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중 구 청 장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5.3.10.(월)~2025.3.31.(월)(21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
(☎02-3396-5955 / FAX: 02-3396-8777, 전자우편 : baejhn@junggu.seoul.kr)
- 열람사항 : 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도서
- 열람내용
 - 1) 도시관리계획(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730번지 일대	-	증) 337,980	337,980	-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730번지 일대	• 도심 연접부 노후·저이용 상업지역의 도시관리방안 필요 • 도심, 신당역세권 인접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 유도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같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같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같음)
 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같음)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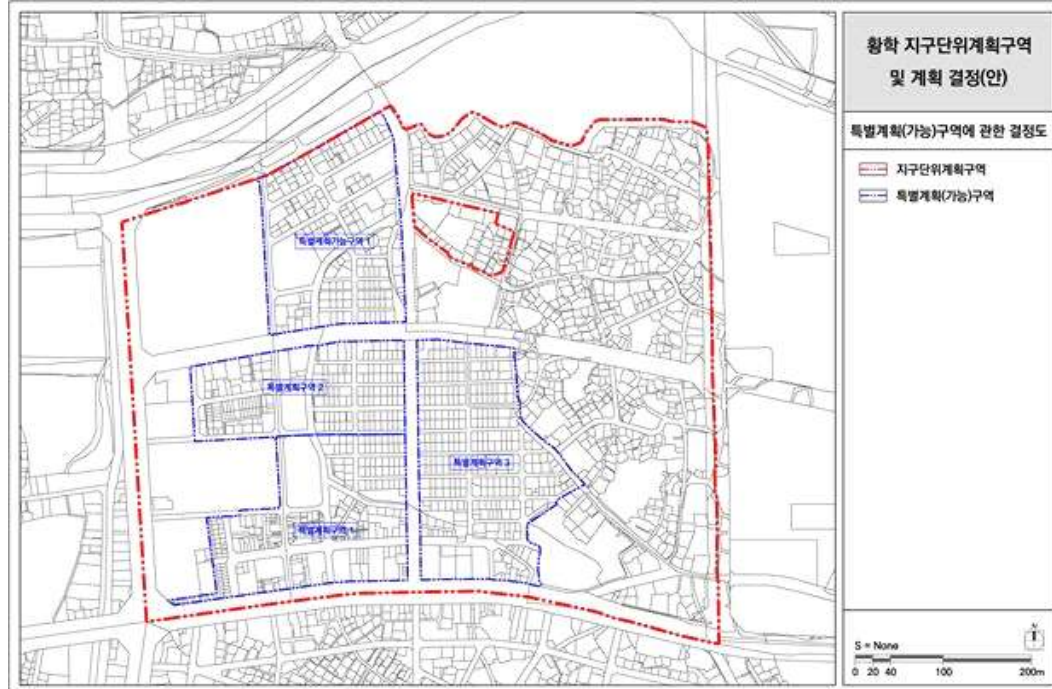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



◆ 중구공고 제2025-244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형전광판 설치 및 디지털 경관조명 규제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중 구 청 장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5.03.13. ~ 2025.03.27.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82 / 전자우편 : kevinkh3223@junggu.seoul.kr)

○ 열람사항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 주요내용 : 변경 결정조서 참조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 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 바랍니다.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4.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에 의한 기준을 적용

■규제사항(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발광 광고물	-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 직접조명방식, 조명에 직접 색상사용 불가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
			창문이용 광고	- 투시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 광고물 색채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금지	
		정동길/덕수궁길/덕수궁 돌담길에 면한 건축물	〈보전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1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2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 참조
		서학당길/ 배재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일반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2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3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변경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발광 광고물	-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 직접조명방식, 조명에 직접 색상사용 불가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단,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일:2024.1.1.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에 따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세종대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적용 제외
			창문이용 광고	- 투시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 광고물 색채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금지	
		정동길/덕수궁길/덕수궁 돌담길에 면한 건축물	〈보전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1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2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 참조
		서학당길/ 배재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일반권역 적용〉 - 수량 :업소당 2개 이내 - 가로형 간판설치 : 3층 이하 - 광원노출·점멸조명 : 설치불가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 따름		

■ 권장사항(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유형	-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한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 - 연립형 간판은 지주이용간판, 벽면을 활용한 공공연립간판, 연립돌출간판으로 설치하며 조화된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	-
		형태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 간판 권장	-
		크기	- 입체문자형일 경우 윗층과 아래층 사이 창문간 벽면 폭의 40% 이내, 최대 40cm	-
		색상	-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무채색계열과 브라운계열 색상 사용을 권장	-
		재료	- 간판의 베이스 재료를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 돌, 화반죽 등을 권장	-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직접조명방식은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	-

나) 야간조명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을 반영하여 야간조명을 계획

■ 규제사항(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물 조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직접광원의 노출금지 - 조명기구 노출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 - 문화재일 경우 '공공지침 제38조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야간경관계획'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연출	-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 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 20(cd/m²)이하 - 백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2조 참조
변경	건축물 조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직접광원의 노출금지 - 조명기구 노출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 - 문화재일 경우 '공공지침 제38조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야간경관 계획'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연출	단,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일:2024.1.1. 행정안전부장관) 지정에 따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세종대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적용 제외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 20(cd/m²)이하 - 백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2조 참조

■ 권장사항(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내부조명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건축물	-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을 권장 -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1층 매장부의 디스플레이 공간부에 야간조명 권장 - 건축물 1층부 내부조명은 색 온도(3000K)의 광원 사용을 권장	야간조명 지정구역에 한해 규제사항 으로 적용
건축물 외부 야간 경관 조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업 등의 조명 방법을 고려하면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 연출을 권장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 조명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 정동길/덕수궁돌담길/덕수궁길/배재학당길/서학당길에 면한 대지 중 가로에 면하여 건축물이 아닌 담장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위의 외부야간경관 조명지침을 담장에 연출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 결정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 고
옥외광고물	- 제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됨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형 전광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	-
야간조명	- 제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됨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경관 조명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	-

◆ 마포구공고 제2025-449호

도시관리계획(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1206호(2019.12.3.)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319호(2020.11.5.)로 (재)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3. 13. ~ 2025. 3. 27.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73)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s://urban.seoul.go.kr>)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대앞 지구단위계 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마포구 서교동 일대	220,762.0	증) 443,967.0	664,72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1호 (2016.04.2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270,547.6	감) 32,023.0	238,524.6	서울시 공고 제1987-53호 (1987.02.0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대앞 지구단위계 획구역	◦ 위치 -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 마포구 서교동 일대 ◦ 구역면적 증가 - 220,762㎡ → 664,729㎡ (증 443,967.0㎡)	◦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 홍대앞 일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수립목적을 확장하고, 기 결정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홍대 앞 전역으로 확장(지구단위계획 미수립 개발진흥지구 포함)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간선부(양화로)와 도시 공간적 역할 및 위상이 상이한 홍익로 일대를 확장 구역계 내 편입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축소 - 270,547.6㎡ → 238,524.6㎡ (감 32,023.0㎡)	◦ 홍대 앞 일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공간적 역할 및 위상이 상이한 홍익로 일대 제척(감 32,031㎡) ◦ 소규모 잔존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역계 일부 조정(증 8㎡)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된 도서 참조)

라. 열람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

바.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5-49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359호(2004.11.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1호(2021.7.1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59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개화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28-3번지 등 8필지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1) 면 적: 1,821㎡
- 2) 내 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5. 14.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별도 첨부

아. 관계도서: 생략(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3층 공원녹지과 비치, ☎02-2600-4187)

수용 또는 사용 할 조서(토지)

- ☐ 사업명: 개화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강서구청장

입원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실 이용 사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8필지		1,821	1,821									
1	개화동 산28-3	임야	20	20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2	개화동 산29-3	임야	56	56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3	개화동 460-85	답	17	17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4	개화동 460-2	대지	622	622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5	개화동 산36-8	임야	99	99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6	개화동 산43-6	임야	13	13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7	개화동 산8-8	임야	521	521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8	개화동 산91-11	임야	473	473	공원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강서구공고 제2025-5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결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59호(2023.6.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결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4-39호(2024.5.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마곡MICE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767-3, 767-6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결녹지)사업

다. 사업명 : 마곡MICE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라.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면적 : 241.2㎡ (금회 시행면적 : 241.2㎡)

○ 규 모 : 도로 확장 (B=3m, L=77.7m)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길 **

○ 성 명 : 성*진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4. 12.

사. 공사완료 : 2024. 12. 23.

◆ 금천구공고 제2025-30호

도시계획시설(목골지구)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28호(2020.06.0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45호(2021.12.02.)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목골지구)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목골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3번지 일대
3. 면 적: 6,213.50㎡
4. 주요시설 변경내용
 - 기반시설: 217.77㎡⇒532.09㎡ (증 314.32㎡)
 - 조경시설: 762.70㎡⇒256.79㎡ (감 505.91㎡)
 - 휴양시설: 180.40㎡⇒221.59㎡ (감 41.19㎡)
 - 운동시설: 0㎡⇒38.46㎡ (신설 38.46㎡)
 - 녹지 및 기타: 5,052.63㎡⇒5,164.57㎡ (증 111.94㎡)
5. 열람기간: 2025. 3. 13. ~ 2025. 3. 26. (14일간)
6. 열람장소: 금천구청 공원녹지과(☎2627-1659)
7. 관련도서: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8.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복합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금천구 시흥동 산 132-3번지 일대)

구	단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비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비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계	6,213.50	1,160.87	-	-	-	11	6,213.50	1,048.93	-	-	-	-	15			
	소	217.77	217.77	-	-	-	-	532.09	532.09	-	-	-	-	1	(증)314.32㎡		
		도로	93.03	93.03	-	-	-	-	379.81	379.81	-	-	-	-		(증)286.79㎡	
		광장	124.74	124.74	-	-	-	-	-	-	-	-	-	-		(감)124.74㎡	
		사방설비	-	-	-	-	-	-	152.28	152.28	-	-	-	-		(증)152.28㎡	
조	경시	762.70	762.70	-	-	-	-	256.79	256.79	-	-	-	-	8	(감)505.91㎡		
	휴양시	180.40	180.40	-	-	-	5	221.59	221.59	-	-	-	-	2	(증)41.19㎡		
운	동시	-	-	-	-	-	6	38.46	38.46	-	-	-	-	4	(증)38.46㎡		
	복지	5,052.63	-	-	-	-	-	5,164.57	-	-	-	-	-	-	(증)111.94㎡		
시설율 (40%이하)		1,160.87 ÷ 6,213.50 × 100% = 18.68					1,048.93 ÷ 6,213.50 × 100% = 16.88										
특정시설률 (변경 20%)		-					-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경정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고층차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합계	시흥동 산 132-3	6,213.50	1,160.87	-	-	-	11	합계	시흥동 산 132-3	6,213.50	1,048.93	-	-	-	15	
				소계	217.77	217.77	-	-	-			-	1	(증)314.32㎡				
				도로	93.03	93.03	-	-	-			-	-		(증)286.78㎡			
				광장	124.74	124.74	-	-	-			-	-			(감)-124.74㎡		
									가	가	152.28	152.28	-	-	-	(증)152.28㎡		
											-	-						
											-	-						
											-	-						
		소계	나	762.70	762.70	-	-	-	소계		256.79	256.79	-	-	-	8	(감)505.91㎡	
				762.70	762.70	-	-	-				(감)762.70㎡						
											-	1	(증)15.31㎡					
											-		(증)157.41㎡					
									수경시설	나	15.31	15.31	-	-	-		(증)84.07㎡	
											-							
											-							
											-							
									임음벽	(1)						5	신설	
		소계		180.40	180.40	-	-	-	소계	(2)	221.59	221.59	-	-	-	3	신설	
				176.30	176.30	-	-	-				2	(증)41.19㎡					
				124.74	124.74	-	-	-					(감)176.30㎡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국유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국유지					
	시설명	다-2	51.56	51.56	-	-	-	-	-													
		평상	①		4.10	4.10	-	-	-	1												(감)4.10㎡
		등의자	②		-	-	-	-	-	4												
																						(증)133.20㎡
																						(증)88.39㎡
	시설명																			2		
		소계			-	-	-	-	-	6										4		(증)38.46㎡
		체력단련시설 ③			-	-	-	-	-	6												
																						신설
																				4		신설
	시설명	소계		5,052.63	-	-	-	-	-													(증)111.94㎡
		녹지			5,052.63	-	-	-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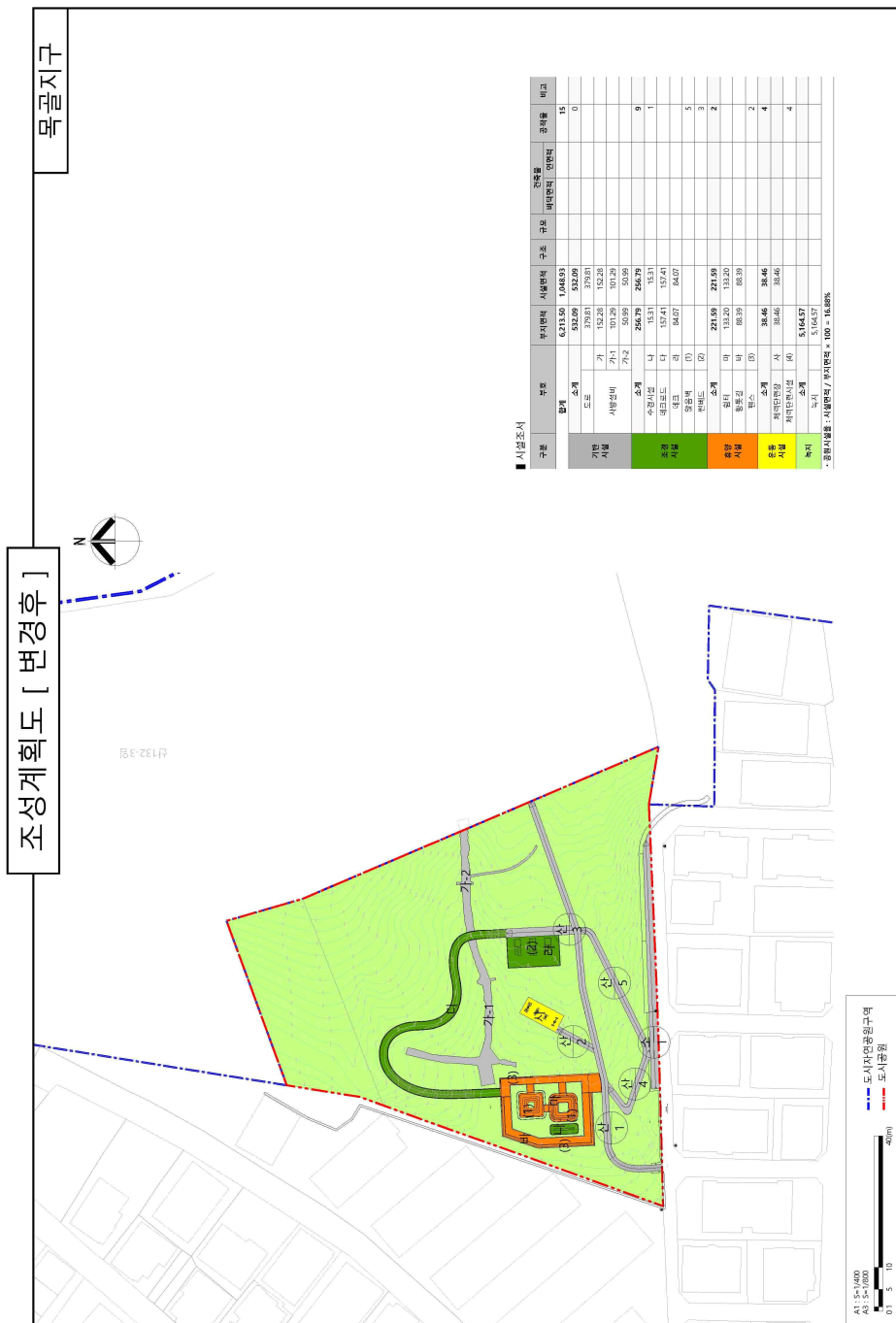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전]

목골지구



■ 시설조서

[illegible]



◆ 서초구공고 제2025-4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근린공원)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5호(2021.7.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148-1번지 일대의 청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호(2019.5.16.), 제2020-32호(2020.2.27.), 제2020-251호(2020.12.31.), 제2022-1호(2022.1.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근린공원)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148-1 등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2019년 도시계획시설(청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9,536㎡) 및 조성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9,5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토지조서) 참조

아. 공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2155-6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9필지		9,536	9,536					
1	원지동 산4-83	임	1,546	1,54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2	원지동 산4-84	임	254	25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3	원지동 산117-2	임	1,200	1,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4	원지동 148-1	답	694	69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5	원지동 산44-1	임	450	4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6	원지동 산44-3	임	2,909	2,9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 원지동 산44-2번지에서 필지 분할(' 21. 6월)됨에 따라 지번 변경								
7	원지동 421	전	83	8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8	원지동 산33-2	임	1,400	1,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9	원지동 산4-86	임	1,000	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없음 -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씨지이앤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서울시계내 한강 (한남대교)	(선박2척) 384.61㎡	신분당선 복선전철 실시설계 지반조사	' 25. 03. 10. ~ ' 25. 03. 31.	' 25. 03. 0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강버스 (대표 김선직)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1, 4층	한강	선박 2척(총648㎡) - 한강버스 101 - 한강버스 102 ※ 한강버스는 도선사업 시 승선신고서 작성 면제 지정 선박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선박의 운항 (도선사업)	' 25. 2. 27. ~ ' 25. 12. 31.	' 25. 2.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쥬서울요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2 파라다이스 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86번지 한강 파라다이스 계류장	마리나 선박대여업	다니엘호 (동력수상레저기구)	2025.3.6 ~ 2025.10.31.	2025. 3.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8.61㎡	반포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 25. 03. 12. ~ ' 25. 03. 31.	' 25. 03. 0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그린우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2-1	서울시계내 한강 (가양대교~청담대교)	(선박2척) 448.16㎡	한강교량 충돌방지표지 및 안내표지 설치	' 25. 03. 17. ~ ' 25. 04. 16.	' 25. 03. 0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10동 309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27-6	(선박2척) 613.062㎡	뚝섬유선장 상부공사보조	' 25. 03. 19. ~ ' 25. 07. 18.	' 25. 03. 09.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24-3, 하계동 351-16, 351-17, 공릉동 733-1
 - 면 적: 288㎡(일시 1,08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경춘철교 교량분수 제작·설치
 - 내 역: 노즐류, 배관류 및 펌프 보호박스 등 설치
5. 점용기간: 2025.3.4.~2029.3.4.
6. 공사기간: 2025.3.4.~2025.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8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에스피이엔에스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201-401호(고색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37 등 16필지
- ※ 성동구 송정동 73-37, 73-12, 94-1, 성동구 용답동 242-3, 241-10, 241-1, 동대문구 장안동 204-13, 204-23, 204-9, 204-19, 25-12, 24-6광진구 중곡동 680-3, 동대문구 이문동 352-2, 중랑구 중화동 382-2, 381-5
- 면 적: (일시) 25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 내 역: 지반조사 18공(D76㎜, 심도 18~85m)

5. 점용기간: 2025.3.4. ~ 2025.4.30.(개소당 2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8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상계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13-2(일시 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55-4(일시 10㎡)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52-71(일시 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역난방 열수송관 하자보수 공수
5. 점용기간: 2025.3.4. ~ 2025.5.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8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씨지이앤씨(주)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906호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446(1개소), 한남동 781(1개소)
 - 면 적 : 일시 5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조사
5. 점용기간 : 2025.03.06.~2025.05.31 중 2일(조사지점 당 1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9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1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94번지 및 마포구 합정동 465-4번지 일대
 - 면 적 : 영구 11,237㎡, 일시 22,45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 내 역 :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 확장 및 개선, 양화대교 북단 연결로 신설
5. 점용기간 : 2024.08.00. ~ 영구
6. 공사기간 : 착수일~ 2028.6.26.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0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4.7.), 제2011-98호(2011.4.21.), 제2011-112호(2011.5.6.), 제2011-259호(2011.9.80),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5.10.), 제2012-191호(2012.7.26.), 제2013-190호(2013.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2.23.), 제2017-196호(2017.6.1.), 제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7.25.), 제2020-6호(2020.1.2.), 제2020-562호(2020.12.24.) 및 제2021-31호(2021.1.21.), 제2021-142호(2021.3.25.), 제2022-388호(2022.9.22.), 제2022-419호(2022.10.20.), 제2022-435호(2022.11.3.), 제2023-13호(2023.1.12.), 제2023-332호(2023.8.3.), 제2024-424호(2024.8.29.) 및 제2024-439(2024.9.12.), 제2025-54호(2025.1.23.), 제2025-101호(2025.2.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1호(2025.2.27.)로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산출에 대한 정정사항[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일반분양자→조합원) 및 추정비례율 오기]이 있어
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정정사유>

- ①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로 산정하여 조합원 추정액으로 정정하고자 함
- ② 추정 분담금 산출에서 추정 비례율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109.76% → 109.36%)

<정정내용>

I.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마)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109.36% (=1,337,472,778 천원 - 817,905,178 천원) ÷ 475,100,678 천원 ● 총수입 추정: 1,337,472,778 천원 ● 총지출 추정: 817,905,178 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475,100,678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해당 금액은 약식 감정평가 금액임(평가 업체명: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 ● 종전자산 =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반영하여 공시가격 대비 보정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단위: 천원] <table><tr><td>토지 추정액</td><td>건물 추정액</td><td>국공유지 추정액</td><td>현금청산자추정액</td><td>종전자산 추정액</td></tr><tr><td>341,334,432</td><td>184,810,144</td><td>9,110,599</td><td>41,933,299</td><td>475,100,678</td></tr></table> ※ 당 사업지의 개별 자산 가액의 수준, 조합원 수, 사업지 규모,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정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최종 종전자산 추정액은 국공유지와 현금청산자 추정액을 제한금액임					토지 추정액	건물 추정액	국공유지 추정액	현금청산자추정액	종전자산 추정액	341,334,432	184,810,144	9,110,599	41,933,299	475,100,678																
	토지 추정액	건물 추정액	국공유지 추정액	현금청산자추정액	종전자산 추정액																										
	341,334,432	184,810,144	9,110,599	41,933,299	475,100,678																										
추정 분담금 산출 (정정 전)	●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 분담금(a-b)</th></tr><tr><td>39㎡</td><td>627,054 천원</td><td rowspan="10">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109.76%)</td><td rowspan="10">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tr><td>45㎡</td><td>741,345 천원</td></tr><tr><td>59㎡</td><td>1,062,122 천원</td></tr><tr><td>84㎡</td><td>1,444,939 천원</td></tr><tr><td>105㎡</td><td>1,744,121 천원</td></tr><tr><td>142㎡A</td><td>2,446,209 천원</td></tr><tr><td>142㎡B</td><td>2,269,751 천원</td></tr><tr><td>142㎡C</td><td>2,263,993 천원</td></tr><tr><td>172㎡A</td><td>2,648,975 천원</td></tr><tr><td>근린생활시설</td><td>31,053,706 천원</td></tr></table>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39㎡	627,054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109.7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45㎡	741,345 천원	59㎡	1,062,122 천원	84㎡	1,444,939 천원	105㎡	1,744,121 천원	142㎡A	2,446,209 천원	142㎡B	2,269,751 천원	142㎡C	2,263,993 천원	172㎡A	2,648,975 천원	근린생활시설	31,053,706 천원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39㎡	627,054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109.7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45㎡	741,345 천원																													
	59㎡	1,062,122 천원																													
	84㎡	1,444,939 천원																													
	105㎡	1,744,121 천원																													
	142㎡A	2,446,209 천원																													
	142㎡B	2,269,751 천원																													
	142㎡C	2,263,993 천원																													
172㎡A	2,648,975 천원																														
근린생활시설	31,053,706 천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5. 2. 27.)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4호로 고시하였으나,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관련 첨부된 관계도면에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북가좌동 74-107일대	26,163.6	2025.01.23. (자치구 요청일)
2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미아동 75 일대	55,000.69	2024.12.31. (자치구 추천일)
3	광진구	중곡1	중곡1동 254-15 일대	81,343.9	2025.01.23. (자치구 요청일)
4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개봉동 120-1 일대	76,163.5	2025.01.23. (자치구 요청일)
5	용산구	한남1	이태원동 730 일대	44,034.9	2024.02.27. (자치구 추천일)
6	관악구	신림4	신림동 306 일대	40,437.0	2025.01.10. (자치구 추천일)
7	동작구	사당16	사당동 305-35 일대	41,316.8	2024.11.21. (자치구 요청일)
8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불광동 359-1 일대	104,783	2025.01.23. (자치구 요청일)
9	구로구	구로동 719 일대	구로동 719 일대	44,231.9	2025.01.15. (자치구 추천일)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자동 실효하

며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도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30-1694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02-901-6839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05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964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5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82	
동작구	도시정비1과	02-820-9816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743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 일대



○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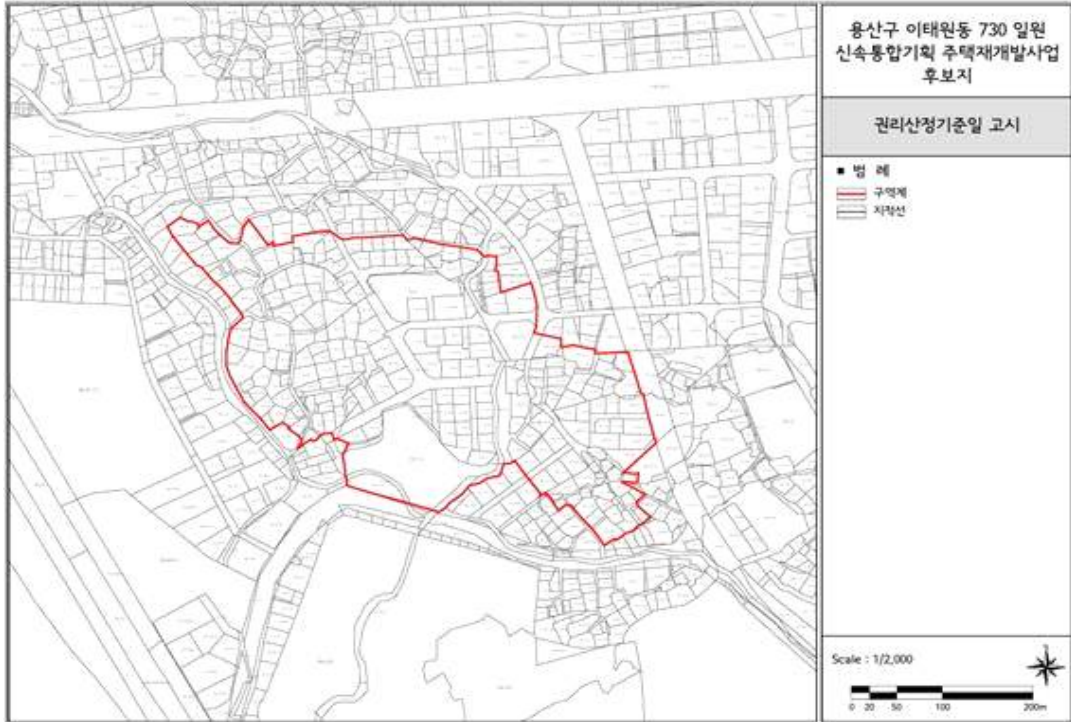
○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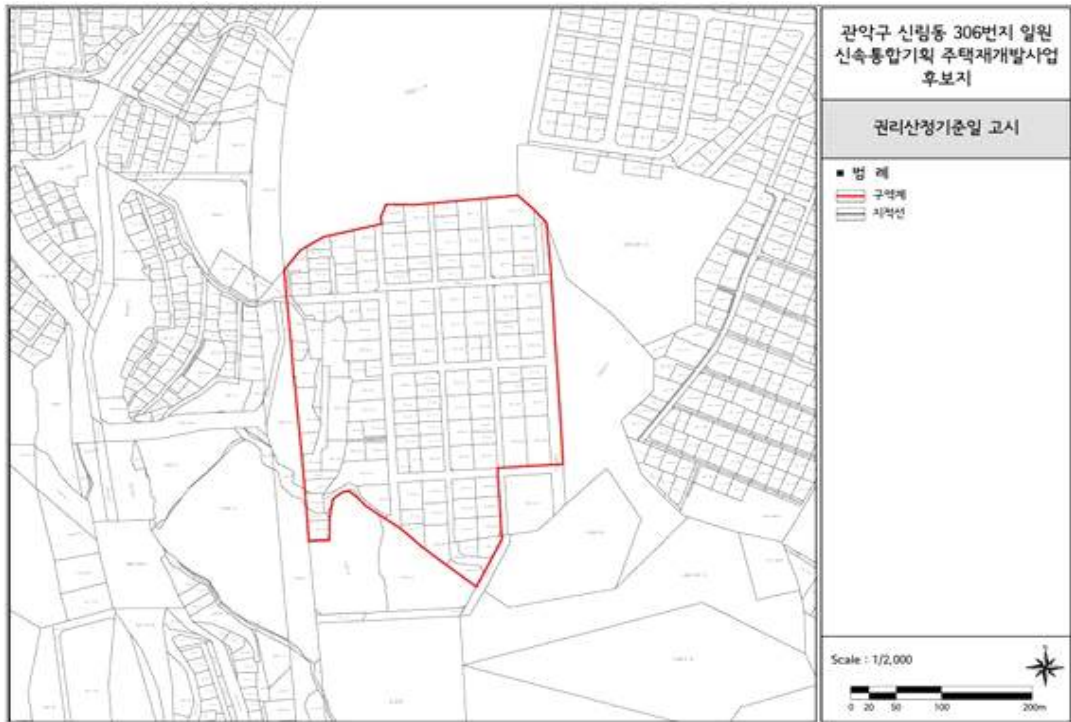
○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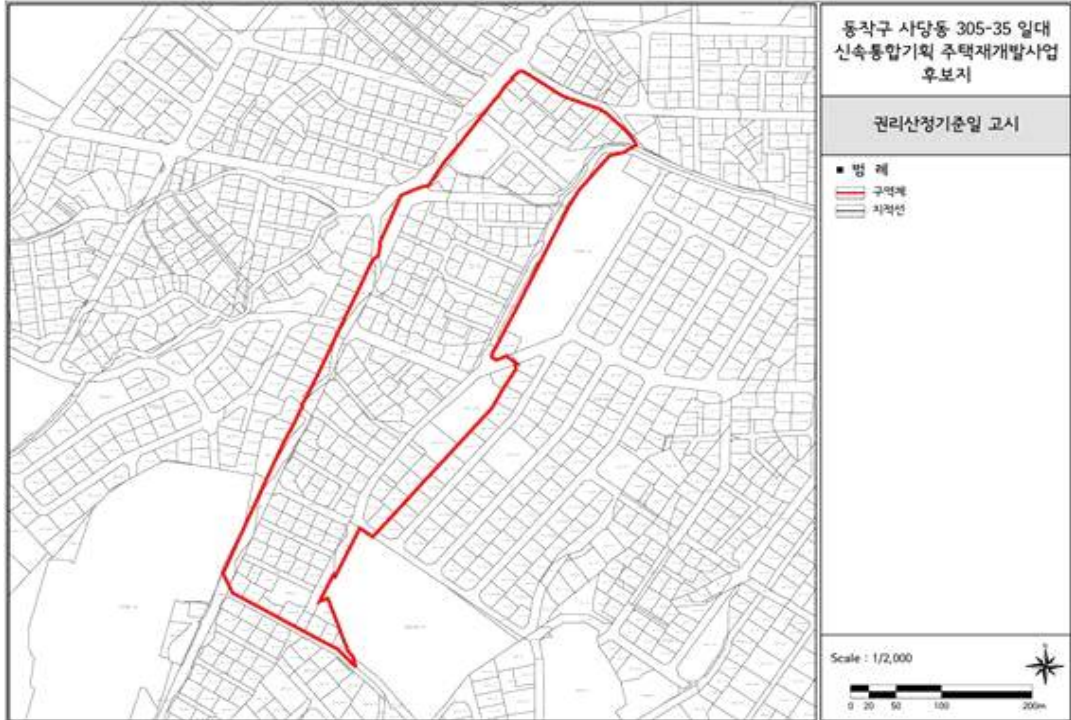
○ 용산구 이태원동 73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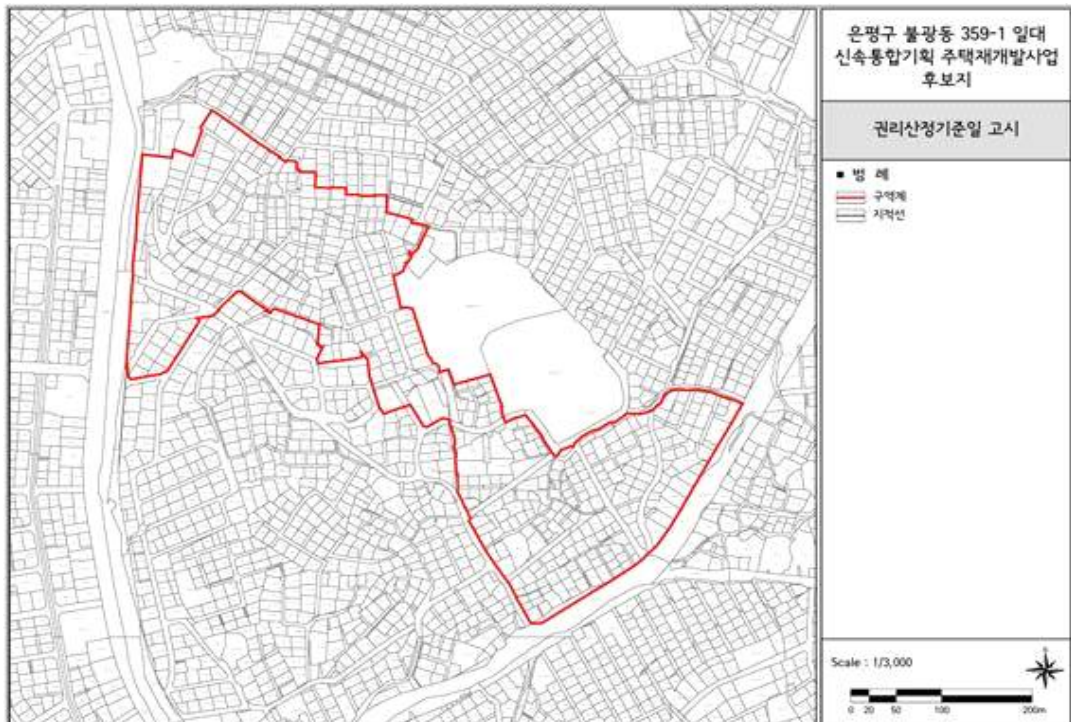
○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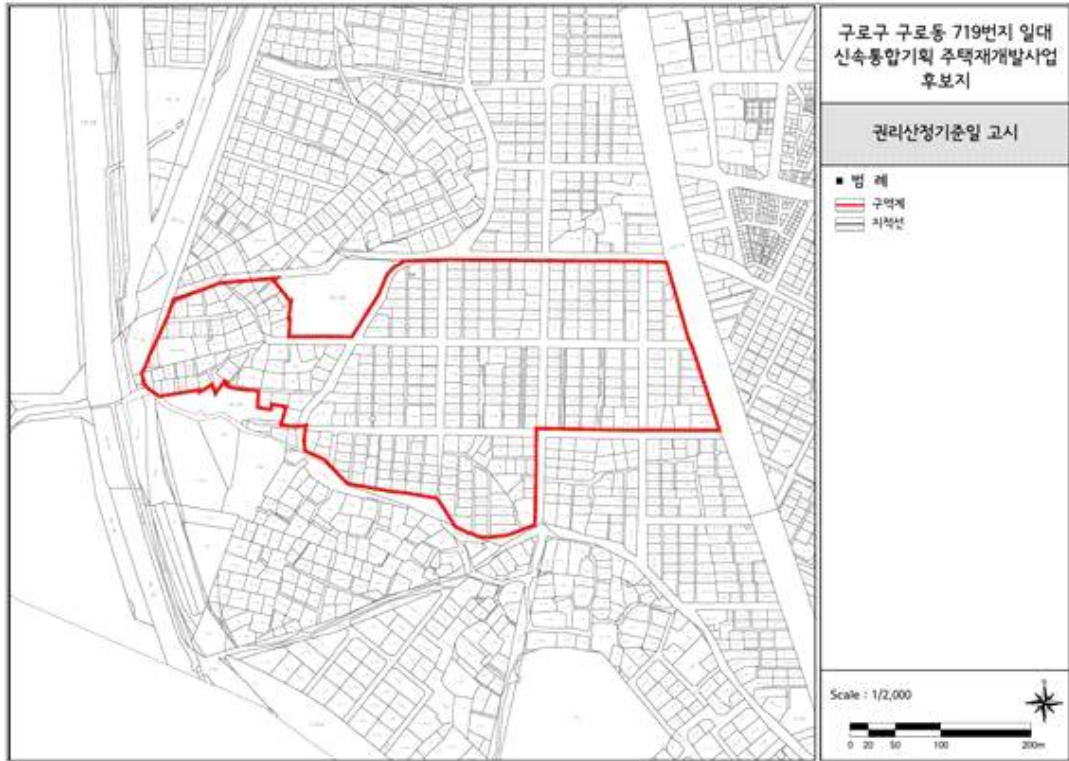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



○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719 일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